

Military History

#### 2016. 6. 제99호



- 요동지역의 고구려부흥운동과 검모잠
- 고려시대 동계 지역의 수(戍) 조사 연구
- 고려후기의 영토분쟁
- 호마의 전래와 조선시대 호마목장의 설치
- 명초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
- 1945~1948년 항공력 건설 노력과 그 의의
- 6 · 25전쟁 초기 김홍일의 활동과 예편
- 남베트남 패망시기 한국군의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총력적 대비의 실태와 과제
-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군사적 천재'의 의미
- 19세기 카프카스 전쟁과 체르케스 민족의 이주 문제





第 99 號 2016.6.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 Contents | 2016. 6. 제99호

1	<ul><li>요동지역의 고구려부흥운동과 검모잠</li></ul>	김강훈
39	<ul><li>▶ 고려시대 동계 지역의 수(戌) 조사 연구</li><li>- 간성과 강릉을 중심으로 -</li></ul>	홍영호
77	<ul><li>▶ 고려후기의 영토분쟁</li><li>− 쌍성총관부와 동녕부를 중심으로 −</li></ul>	신안식
113	▶ 호마의 전래와 조선시대 호마목장의 설치	이홍두
145	▶ 명초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	김경록
189	▶ 1945~1948년 항공력 건설 노력과 그 의의	김기둥
223	▶ 6·25전쟁 초기 김홍일의 활동과 예편 - 한강선 방어전투를 중심으로 -	이동원

Military History







#### Contents | 2016. 6. 제99호

257	▶ 남베트남 패망시기 한국군의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이신재
289	▶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총력적 대비의 실태와 과제	박휘락
323	▶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군사적 천재'의 의미	임익순
371	▶ 19세기 카프카스 전쟁과 체르케스 민족의 이주 문제	신동혁

부 록

1.	연구소 동정	405
2.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 안내	407
3.	『軍史』誌 投稿案内	409
4.	연구윤리예규	412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동지역의 고구려부흥운동과 검모잠

김 강 훈\*

- 1. 머리말
- 2. 중국 측 사서의 검모잠 관련 기사 재검토
- 3. 검모잠의 거병 배경과 기반
- 4. 당군의 대응과 요동 · 요서지역 고구려 유민의 동향
- 5. 맺음말

#### 1. 머리말

『三國史記』, 『日本書紀』, 『唐書』 등 여러 史書에는 백제부흥운동을 일으킨 인물이 여럿 등장한다.1) 그에 비해 고구려 멸망 후 부흥운동을 전개한 인물로는 劍牟岑, 安勝?). 高延武만이 확인될 뿐

<sup>\*</sup>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박사과정

<sup>1)</sup> 복신, 도침, 흑치상지, 사타상여, 여자진, 정무 등이 대표적이다. 백제부흥운동에 관해서는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김영관, 『백제부흥운동연구』, 서경, 2005 참조.

<sup>2)</sup> 중국 측 기록에서 劍牟岑은 鉗牟岑, 劒牟岑 등으로, 安勝은 安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료를 직접 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존중하여 劍牟

이며<sup>3)</sup> 이들의 활동은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중 검모잠과 안승은 고구려부흥운동의 軌跡을 추적하는데 주요한 인물로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sup>4)</sup> 그들의 활동이 韓·中 양측 사서에 남아 있으며, 당군의 대응조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측 사서에서 검모잠은 고구려 재건을 꾀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으며, 당이 검모잠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두 개의 行軍을 파견했다는 점에서 당시 사건의 파급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통해 고구려부흥운동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가능해졌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모잠의 거병 및 활동 지역을 한반도 서북부로 비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특히 남하 이전 즉 거병 초기의 활동을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검모잠이 殘民을 수합하여 南下를 시작한 窮牟城을 요동지역의 蓋牟城으로 추정한 연구가 발표되어<sup>5)</sup> 새로운 시각에서 고구려부흥운동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본고는

岑과 安勝으로 통일하여 지칭하겠다.

<sup>3)</sup> 陽玄基 墓誌에는 그가 東柵州都督府長史로 있던 시절 高定問 등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를 통해 문헌에는 전하지 않지만 고구려 부흥을 꾀한 인물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趙君平・趙文成 編,「大周故左羽林衛將軍上柱國定陽郡開國公右北平陽君墓誌」,『河洛墓刻拾零』,北京圖書館出版社,2007,173~174 쪽 "總章元年 授鹿陵府長上折衝 仍檢校東柵州都督府長史 誅反首領高定問等 封定陽郡公 食邑二千戶".

<sup>4)</sup> 검모잠과 안승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부흥운동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池內宏,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史研究』上世二冊, 吉川弘文館, 1960; 李丙燾, 「高句麗의 一部遺民에 대한 唐의 抽戶政策」,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村上四男, 「新羅と小高句麗國」, 『朝鮮學報』 37·38, 1966; 전준현, 「670년에 재건된 '高句麗國에 대한 연구」, 『력사과학』 82-2, 1982; 梁炳龍, 「羅唐戰爭 進行過程에 보이는 高句麗遺民의 對唐戰爭」, 『史叢』 46, 1997; 임기환, 「고구려 유민의 활동과 보덕국」,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강경구, 「高句麗 復興運動의 新考察」, 『韓國上古史學報』 47, 2005; 이상훈, 「검모잠의 최초 거병지 검토」,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노태돈교수정년기념논총 2)』, 사계절, 2014; 최재도, 「漢城의 高句麗國 再檢討」, 『동북아역사논총』 47, 2015. 5) 이상훈, 위의 논문, 72~74쪽.

이를 바탕으로 요동지역<sup>6)</sup>의 고구려<del>부흥운동</del>이라는 시각에서 검모 잠의 활동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중국 측 사서의 검모잠 관련 기사 재검토

668년 9월 평양성이 함락되고, 10월 보장왕을 비롯한 고구려 지배층은 당으로 끌려갔다. 7) 당 고종의 명에 따라 李勣은 이들을 먼저 당 태종의 무덤인 昭陵에 바친 후 이어서 장안으로 들어가 太廟에 바쳤다. 12월 당 고종은 含元殿에서 이들에 대해 상벌을 내리는 한편 고구려 故地에 대한 당의 지배정책을 결정하였다. 5부 176성 69만호로 구성되어 있던 고구려 영역을 9도독부 42주 100현으로 개편하면서 이를 총괄하는 안동도호부를 평양성에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고종은 南郊에서 고구려를 평정했음을 알리는 제사를 지내고 마지막으로 태묘를 배알하면서 고구려 戰役을 마무리하는 의례8)를 마쳤다

<sup>6)</sup> 한국학계에 사용하는 고구려시기 '요동'의 범위는 과거 요동군 영역 범위를 중심으로 하는 요하 이동 지역을 주로 일컫고 있지만, 그 지리적 범위는 불분명하다 (임기환, 「고구려의 요동 진출과 영역」, 『高句麗渤海研究』45, 2013, 79쪽). 이는 요동의 개념이 중원 왕조의 지방행정조직이나 군정 기관 혹은 그 관할범위를 가리키는 동시에 산해관 이동, 한반도 북부 이서의 광범위한 지역을 지칭하기 때문이다(김한규,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2004, 49~61쪽). 본고에서는 遼河 以東에서 鴨綠江 以北에 이르는 지역 중에서 고구려 초기 중심지인 환인·집안지역을 제외한 지리적 범위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對唐戰爭 과정에서 요동지역을 돌파한당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압록강이 주요 방어선의 기능을 하였으며(『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20年 9月), 또한 고구려 후기 국내성이 別都로 지칭되는(『新唐書』卷220, 列傳145, 東夷 高麗 "又有國內城漢城號別都") 등 압록강중류 일대 지역은 요동지역과 지방제도 및 군사방어체계에서 별도로 운영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sup>7)</sup> 고구려 멸망과 이후 당이 고구려 戰役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資治通鑑』 卷201, 唐紀17, 高宗 總章 元年 9·10·12月條 및 『唐會要』卷14, 獻俘 참조.

고구려 멸망 이후 유민들이 당의 지배정책에 맞서 봉기한 시점과 지역을 명확히 보여주는 기록은 없다. 다만 평양에 안동도호부가설치되고 薛仁貴가 檢校安東都護로서 군사 2만을 거느리고 鎭無하게 되면서 고구려 유민의 저항이 촉발된 것으로 여겨진다.9) 이후고구려 유민 중에 흩어지고 도망가는 자가 상당수 발생하였는데,이는 당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신라, 일본 열도 등으로 이주했다기보다는 아직 당에 항복하지 않는 성이나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추측되기 때문이다. 당이 본격적으로 고구려 고지 지배를 시도하자유민들의 반당항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669년 정월 당의 승려 法安이 신라에 와서 자석을 구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10)</sup> 당시 승려들이 첩보 활동에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법안이 파견된 목적을 정보 수집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11)</sup> 다만 당이 요구한 물품이 자석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파견 목적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자석은 쇠붙이에 상하여 내장이 나왔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한 발열등의 증상에 사용되었다.<sup>12)</sup> 지혈제의 일종인 자석을 요구했다는

<sup>8)</sup> 戦場에서 돌아와 太廟와 太社에 승리를 보고하는 동시에 俘虜와 전리품을 바치는 의례를 獻俘禮라고 한다. 최근 唐代 헌부례에 대한 연구로는 王博,「唐代軍礼にお ける「獻俘礼」の基本構造」,『史觀』167, 2012와 李正範,「唐 後期 獻俘禮의 거행 과 황제권력의 顯示」,『서울大 東洋史學科論集』37, 2013이 있다.

<sup>9)『</sup>舊唐書』卷199, 列傳149, 東夷 高麗"遣左武衛將軍薛仁貴總兵鎭之 其後頗有逃散".

<sup>10) 『</sup>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 9年 正月"唐僧法安來傳天子命求磁石".

<sup>11)</sup> 이상훈,「羅唐戰爭의 軍事的 原因과 新羅의 戰爭準備」, 『역사와 경계』 79, 2011, 21~22쪽; 『나당전쟁연구』, 주류성, 2012, 80쪽.

<sup>12)</sup> 이현숙, 「7세기 신라 통일전쟁과 전염병」, 『역사와 현실』 47, 2003, 140~142쪽. 자석의 용도를 서해 횡단에 필요한 항해용 나침반 제작이라고 보기도 한다(최근식, 『신라해양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198~199쪽). 그러나 황해를 횡단하는 항로는 654년 倭의 遣唐使가 新羅道를 통해 萊州에 이르렀고(『日本書紀』卷25, 孝德天皇 白雉 5年 2月), 660년 13만 명에 이르는 당군이 백제를 공격하기위해 이용(『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7年 3·5月)할 정도로 이미 6세기 중반에 항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었다(고경석, 「신라의 對中 해상교통로연구」, 『신라사학보』 21, 2011, 114~116쪽).

것은 당군이 전투에서 피해를 입어 부상자가 상당수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당시 당이 한반도 이외의 여러 곳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다량의 지혈제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추정하기도 한다.13) 그러나동골궐과 서돌궐이 각각 630년, 659년 당의 공격을 받아 붕괴되어羈蘼支配를 받고 있었으며, 토번과 당이 본격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한 시기는 670년 4월 토번이 安西 4鎭을 함락하면서부터였다.14) 그러므로 당이 자석을 필요로 했던 전장은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승려 법안은 이후 润江 이남에서 검모잠에게 살해되었다. 15) 이는 법안이 신라에 자석을 요구한 후에 곧바로 당으로 돌아가지 않고 평양으로 가서 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법안은 안동도호부와 관련해 모종의 임무를 가지고 파견되었다고 추정을 할 수 있으며, 그가 요구했던 자석은 당군이 고구려 고지에서 소비해야 할 약품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혈제인 자석을 요구할 정도로 당군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존재는 고구려부흥세력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669년 1월경에 당의 지배에 맞선 고구려인의 저항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고 당군과 고구려부흥군사이에 전투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당이 고구려 고지를 안동도호부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地理志에는 鴨綠水 以北의 현황을 기록하면서 여러성들을 未降城·已降城·逃城·打得城으로 분류하고 있다.16) 이에 대해서 667년 2월에서 9월 사이에 당군이 작성한 戰況表라는 견해가 일찍이 제기되었는데, 未降城에 기재되어 있는 新城이 667년

<sup>13)</sup> 이현숙, 앞의 논문, 140쪽.

<sup>14) 『</sup>新唐書』 卷215. 列傳140 突厥; 『資治通鑑』 卷201, 唐紀17. 高宗 咸亨 元年 4月.

<sup>15) 『</sup>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 10年 6月.

<sup>16) 『</sup>三國史記』卷37, 雜志6, 地理4 "鴨渌水以北 未降十一城 … 鴨渌水以北 已降城 十一 … 鴨渌以北逃城七 … 鴨渌以北打得城三 … ".

2월 당군에 포위되었다가 9월에 함락되었기 때문이다.17) 그런데 已降城에 기재되어 있는 南蘇城은 淵南生이 당에 투항하면서 함께 귀부하였다가. 667년 다시 고구려 측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그리고 신성이 함락된 이후 契苾何力이 이끄는 당군에게 재차 점령되었 다. 18) 압록수 이북의 현황을 기록한 자료가 667년 2~9월에 작성 되었다고 한다면. 고구려군이 주둔하고 있던 신성과 남소성이 각각 未降城과 已降城으로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668년 이적이 이끄는 당군의 주력부대는 신성을 떠나 평양 성으로 진공하였는데, 이 때 요동성, 안시성, 오골성 등을 공략해야 만 평양성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록이 전혀 보 이지 않는다. 아마도 이는 대부분의 성이 당군에 항복했기 때문으 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요동성. 안시성. 오골성은 已降城에 기재되 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未降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점 을 통해 볼 때 『삼국사기』 지리지의 압록수 이북 현황을 기록한 자 료는 고구려 멸망 이전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자료 는 總章 2년(669) 2월이라는 시기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고구려 멸 망 이후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9) 즉. 고구려 멸망 후 요동지역에서 다수의 성이 안동도 호부의 지배를 이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항성에 기재된 성들은 지방 지배의 주요 거점이자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11개의 미항성 중 요동

<sup>17)</sup> 池内宏,「高句麗討滅の役に於ける唐軍の行動」, 앞의 책, 335~336쪽; 노태돈, 『고 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223~225쪽.

<sup>18) 『</sup>新唐書』卷111, 列傳35, 諸夷蕃將 契苾何力 "勣已拔新城 留何力守 時高麗兵十五 萬屯遼水 引靺鞨數萬衆據南蘇城 何力奮擊破 斬首萬級 乘勝進拔八城".

<sup>19)</sup> 김강훈, 「679~681년 寶藏王의 高句麗 復興運動」, 『歷史教育論集』 50, 2013, 315~316쪽 참조. 이는 압록수 이북의 현황을 기록한 자료가 669년 2월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新城,遼東城,屋城,多伐嶽城 은 최고위 지방관이 주재하는 곳이자 요동지역에서 평양에 이르는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었다.20) 그리고 安市城은 645년 당 군의 침입을 결정적으로 물리쳤던 곳이자. 고구려 멸망 이후에는 671년 당군에 점령되기까지 고구려부흥운동이 발생한 지역이었 다.21) 압록수 이북 지역에 아직 항복하지 않은 성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는 것은 그만큼 요동지역에서 당의 지배에 맞선 저항이 격 렬히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고구려 유민 중 離叛者가 다수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 응으로 당은 669년 5월 고구려 유민에 대한 대규모 사민을 실시하 였다. 22) 부흥운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세력을 당 內地로 사민 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반당항쟁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였다. 사민의 경로를 파악해 보면 당시 고구려 부흥을 위한 움직임이 어느 지역에서 활발히 일어났는지 파악할 수 있다. 해로는 萊州를, 육로는 營州를 거쳤는데, 이 중 영주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영주는 중원세력이 고구려의 요동지역을 위협하는 거점이자 동시에 중원세력과 동북아 제종족 간의 교역 및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sup>23)</sup> 요동지역에 거주하던 유민은 영주를 경유하여 사민되었다. 24) 이는 고구려 멸망 후 요동지역에서 당군에 맞선 저항이 상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sup>20)</sup> 노태돈, 앞의 책, 231~242쪽.

<sup>21) 『</sup>資治通鑑』卷198, 唐紀14, 太宗 貞觀 19年 9月; 『資治通鑑』卷202, 唐紀18, 高宗 咸亨 2年 7月"高侃破高麗餘衆於安市城".

<sup>22) 『</sup>舊唐書』卷5, 本紀5, 高宗下 總章 2年 5月 "移高麗戶二萬八千二百 車一千八十乘 牛三千三百頭 馬二千九百匹 駝六十頭 將入內地 萊營二州般次發遣 量配於江淮以 南及山南幷涼以西諸州空閑處安置".

<sup>23)</sup> 이성제, 「고구려와 契丹의 관계-對隋·唐戰爭期의 動向과 그 意味-」 『北方史論叢』 5. 2005. 151쪽.

<sup>24)</sup> 日野開三郎、『小高句麗國の研究』、三一書房、1984、59~62쪽、

약 13만 명<sup>25)</sup>에 이르는 고구려 유민이 당 내지로 사민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당의 예상과 달리 반당항쟁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검모잠이 거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거병 시기와 배경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 측 사서에 기록된 검모잠 관련 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資治通鑑』, 『唐會要』, 『新唐書』에는 검모잠에 관해 다음의 기록이 남아 있다.

- A-①. 庚午 … 高麗 酋長 劍牟岑이 반란을 일으켜 高藏의 외손 安舜을 세워임금으로 삼았다. 左監門大將軍 高侃을 東州道行軍總管으로 삼아 병사를 보내 토벌하게 하였다. 안순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도망갔다(『資治通鑑』卷201、唐紀17、高宗 咸亨 元年 4月).
- A-②. 고려의 남은 무리 중 추장 검모잠이라는 자가 있어서 무리를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켜 고장의 외손 안순을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 조칙을 내려 左衛大將軍 고간에게 토벌하여 평정하게 하였다(『唐會要』卷73, 安東都護府 咸亨 元年 4月).
- A-③. 庚午 ··· 고려 추장 鉗牟岑이 반란을 일으켜 변경을 침입하니, 左監門衛 大將軍 高偘을 東州道行軍總管으로 삼고 右領軍衛大將軍 이근행을 燕山道行軍總管으로 삼아 토벌하게 하였다(『新唐書』卷3, 本紀3, 高宗 咸亨 元年 4月).

사료 A-①, ②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670년 4월 검모잠이 거병하여 안승을 국왕으로 세우자, 당은 고간과 이근행을 행군총관으로 임명하여 반란 진압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안승이 검 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도망가면서 검모잠의 거병은 실패로 돌아 갔다. 이와 달리 A-③에서는 검모잠이 거병하고 당의 변경을 침입

<sup>25)</sup> 문무왕 6년 연정토가 763호 3,543명을 거느리고 신라에 항복하는 기록(『三國史記』 卷6,新羅本紀6,文武王 6年 12月)에 따라 1호당 4.64명으로 환산하면, 약 13만 명이 당 내지로 사민되었다고 볼 수 있다(李文基,「墓誌로 본 在唐 高句麗 遺民 의 祖先意識의 變化」『大丘史學』100, 2010, 61쪽).

했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 안승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A-①, ②, ③ 모두 검모잠이 어떤 이유로 거병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A-①에서는 검모잠의 거병, 안승 즉위, 당 행군의 파견, 검모잠 피살이 모두 670년 4월조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들 사건이 같은 달에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후 1~2년의 사건을 일괄 기술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26) 그렇다면 먼저 670년 4월조에 기술된 각각의 사안들이 발생한 시기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출전 사건 개요

자치통감
(A-①) 검모잠 거병 → 안승 즉위 → 당 행군 파견 → 검모잠 피살

당회요
(A-②) 검모잠 거병 → 안승 즉위 → 당 행군 파견

신당서 본기
(A-③) 검모잠 거병 → 변경 침입 → 당 행군 파견

〈표 1〉 중국 측 기록의 검모잠 관련 사건 개요

이를 위해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검모잠 관련 기사를 검토하고 자 한다.<sup>27)</sup> 이를 통해 안승의 즉위와 검모잠 피살 시기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B-①. 고구려 水臨城人 牟岑 大兄이 殘民을 모아 窮牟城에서부터 浿江 남쪽에 이르러 당 관인과 승려 법안 등을 죽이고 신라로 향했다. 서해 史冶島에 이르러 고구려 大臣 淵淨土의 아들 안승을 만나 漢城 안으로 맞아

<sup>26)</sup> 전준현, 앞의 논문, 37쪽.

<sup>27)</sup> 존·씨·재미슨은 670년대 한반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관해서 중국 측 사서는 불완전하고 부정확한데 비해 『삼국사기』의 기록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다고 평가하였다(존·씨·재미슨,「羅唐同盟의 瓦解-韓中記事 取舍의 比較-」,『歷史學報』 44, 1969).

들여 받들어 임금으로 삼았다. 小兄 多式 등을 보내 다음과 같이 슬피고하였다. " … 지금 저희들은 본국의 귀족 안승을 맞아 받들어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 왕은 그들을 나라 서쪽 金馬渚에 살게 하였다(『三國史記』卷6,新羅本紀6,文武王 10年 6月).

B-②. 대왕이 답서에서 말하였다. … 함형 원년 6월에 이르러 고구려가 모반하여 漢官을 모두 죽였습니다(『三國史記』卷7,新羅本紀7,文武王 11年7月).

사료 B-①은 검모잠이 小兄 多式을 신라에 파견하여 안승의 즉 위를 알리고 신라에 원조를 요청하는 외교문서를 전달한 것을 중심 으로 그 배경과 결과가 함께 서술된 것으로 여겨지는데28). 내용상 여러 사건들이 기술되어 있고 그 시점도 차이가 있다고 추정된 다. 29) 먼저, 670년 6월 신라로 보낸 외교문서에 이미 안승을 왕 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안승의 즉위 시점 하한이 6월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안승의 즉위 시점을 보다 정확 히 파악하는데 유의할 사료가 B-2인데, 671년 문무왕이 당의 총 관 설인귀에게 보낸 서신 중 일부이다. 이는 신라가 당에 반역하였 다는 내용을 담은 설인귀의 서신을 반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서. 신라 측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종의 외교문 서로서 사실 관계에서는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30) B-② 에서 신라는 웅진도독부와의 갈등 양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구 려가 함형 원년(670) 6월에 漢官을 모두 죽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B-①에서 검모잠이 패강 남쪽에 이르러 당 관인과 승려 법안 을 죽였다는 것과 동일한 사건을 가리킨다.31) 검모잠이 당 관리를

<sup>28)</sup> 이정빈, 「고연무의 고구려 부흥군과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현실』 72, 2009, 146쪽.

<sup>29)</sup> 최재도, 앞의 논문, 145쪽.

<sup>30) 「</sup>答薛仁貴書」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박현숙, 「「답설인귀서」, 나당전쟁기 신라 외교의 표상」, 『내일을 여는 역사』 10, 2002와 김진한, 「「답설인귀서」에 보이는 신라·당 밀약 기사의 사료적 검토」, 『인문논총』 71-1, 2014 참조.

죽이고 안승을 임금으로 세웠으므로 안승 즉위 시기의 상한은 670년 6월이 된다. 결국 B-①에서 검모잠은 당 관인과 승려 법안 살해, 안승 옹립, 신라로 다식 파견 순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중첫 번째, 세 번째가 모두 670년 6월에 일어났으므로 안승의 즉위 시기는 670년 6월로 확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來投한 시점은 언제일까.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670년 7월 말로 보는데,32) 최근에는 한성 일대의 고구려부흥세력이 존속했던 시기를 672년 말~673년 초33), 673년 윤5월경34), 673년 말~674년 초35)까지로 보는 입장에서 안승의 내투시기를 한성 일대 고구려부흥세력의 소멸과 동일하게 보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어느 견해를 따르든지 간에 검모잠이 안승을 임금으로 세운 후 어느 시기에 안승이 검모잠을 죽였다고 보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검모잠이 피살당한 시점은 안승이 즉위한 670년 6월 이후가 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당 조정이행군을 파견한 시점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사료에 주목하고자 한다.

B-③. 함형 원년 4월 그 추장 鉗牟쪽이 반란을 일으켜 安舜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庚午 조칙을 내려 고간을 동주도, 이근행을 연산도행군총관으 로 삼아 토벌하게 하였다<sup>36)(『</sup>玉海』卷191, 兵捷 露布 三).

<sup>31)</sup> 양병룡, 앞의 논문, 51쪽; 金壽泰, 「統一期 新羅의 高句麗遺民支配」, 『李基白先生 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一潮閣, 1994, 340쪽; 최재도, 앞의 논문, 145~146쪽.

<sup>32)</sup> 池內宏, 앞의 책, 429쪽.

<sup>33)</sup> 임기환, 앞의 책, 331~333쪽,

<sup>34)</sup> 최재도, 앞의 논문, 159~160쪽. 조선 후기 편찬된『東史約』에서 석문 전투 이후 어느 시점에 안승이 검모잠을 죽였다고 한 기사를 근거로 검모잠 피살 시기를 672년 8월 이후로 추정하였다.

<sup>35)</sup> 이정빈, 앞의 논문, 151~153쪽. 검모잠이 피살된 시기를 670년 9월~12월 사이로 추정했다.

<sup>36) &</sup>quot;咸亨元年四月 其酋鉗牟岑反 立安舜爲王 庚午詔高偘爲東州道 李謹行燕山道行軍 摠管討之".

상기 사료는 宋代의 대표적인 類書로서 평가 받는 『玉海』37)에서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취합·정리한 '唐遼東道行臺大摠管李勣俘高麗 獻俘昭陵 檄高麗 含元殿數俘'조의 夾註 중 일부이다. 안동도호부 설치를 설명하는 본문에 당의 지배에 맞선 고구려 유민의 활동을 협주로 덧붙이면서, 함형 원년 4월 庚午에 내려진 조치가 당 행군 파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670년 4월의 시점에는 검모잠이 이끄는 고구려부흥세력을 진압하기 위해당 조정이 행군 파견을 결정하였던 것이다.38)

이러한 이해가 옳다면 A-①, ②에서 함형 원년(670) 4월조에 670년 6월 이루어진 안승 즉위와 그 이후 발생한 검모잠 피살이함께 기술된 것은 杜撰이며, 검모잠과 관련한 사건들이 시간의 흐름과 맞지 않게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이행군을 파견하여 검모잠 세력에 대해 진압에 나선 이유도 다르게보아야한다. 지금까지는 검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세우고 고구려를 재건하는데 성공하자, 이에 대응하여 행군을 파견하였다고 보았다.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잘못된 것이다. 당이 행군 파견을 결정한 이후에 안승이 국왕으로 즉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이 행군을

<sup>37) 『</sup>玉海』은 송대 대표적인 類書로서 王應麟이 천자의 조칙과 같은 공용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制度典故를 수집, 정리하여 편찬한 것이다. 이전의 유서에 비해 서술이 체계적이며 각 항목의 서술에서 여러 문헌을 상호 비교하여 고증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고증이 학문의 형식을 갖춘 것이 왕응린부터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卓用國,『中國史學史大要』,探求堂, 1986, 114~116쪽; 國史編纂委員會編,「叢書類解題:『玉海』」,『韓國古代史料集成-中國篇-』5,學研文化社, 2006, 23~25쪽).

<sup>38) 670</sup>년 4월 경오에 행군 파견이 결정되었다면 실제로 이들이 파견된 시기는 이보다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당대 행군은 府兵, 兵募, 蕃兵으로 구성되었는데, 부병만으로는 대규모 원정군을 편성하기 어려웠고 결국 각 州에 할당하여 주의 부담과 책임 하에 徵募・差遣된 자들인 병모가 행군의 주력이 되었다(菊池英夫,「節度使制確立以前における「軍」制度の展開(續編)」、『東洋學報』 45-1, 1962, 33~43쪽; 孫繼民, 『唐代行軍制度研究』、文津出版社, 1995, 83~119쪽). 그러므로 병모의 정발, 부대편성, 부대이동 등에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파견한 이유는 『신당서』 본기(A-③)에 기록되어 있듯이 '검모잠이 변경을 침입'했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측사서에 기록된 검모잠 관련 사건들은 다음의 순서로 재구성할 수있다.

#### 〈표 2〉 검모잠 관련 사건 개요

당 행군 검모잠 거병 → 변경 침입 → <mark>파견 결정 → 연승 즉위 (670년 6월) → 검모잠 피살 (670년 6월 이후)</mark>

## 3. 검모잠의 거병 배경과 기반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모잠 관련 사건들을 재조정하게 된다면 최초로 거병한 시기는 언제로 추정할 수 있을까. 39) 당이 행군 파견을 결정한 시기가 670년 4월이라면 검모잠 세력이 당의 변경을 침입한 시기는 이보다 이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먼저 고구려고지에서 당의 수도 장안까지 거리와 당시 문서 전달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 당대 문서 전달 속도는 최대 1일 500리였지만 실제로는

<sup>39)</sup> 검모잠의 거병 시기를 669년 초로 보는 견해가 있다. 당이 669년 5월 사민을 실시하면서 이유로 내세운 離叛者 중 대표적인 존재로 검모잠 세력을 상정하는 것이다(李丙燾, 앞의 책, 458~460쪽; 전준현, 앞의 논문, 37쪽; 손영종, 『고구려사』 2, 백산자료원, 1997, 253쪽). 그러나 『신당서』 고려전에 의하면 사민이 실시된후에 검모잠의 거병이 있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따르기 어렵다(이정빈, 앞의 논문, 139쪽). 또는 안동도호 설인귀가 669년 평양에서 新城으로 이동하자 평양 일대에 군사적 공백이 발생하였고 이 틈을 이용하여 검모잠이 거병하였다고 보기도 한다(村上四男, 앞의 논문, 40쪽). 이는 검모잠의 거병 지역을 평양일대로 보는 시각에 의한 것인데, 후술하듯이 검모잠은 요동지역에서 거병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역시 이를 따르기는 어렵다.

1일 백수십리 정도였다.40) 요서지역의 營州에서 平州, 幽州, 定州, 衛州, 東都 등을 거쳐 장안까지 이르는 노선이 3,745리였으므로 평균적인 문서 전달 속도로 계산하면 약 25일 정도 소요되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41) 그리고 당 조정에서 대응책을 논의하는 시간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그렇다면 검모잠 세력이 당의 변경을 침입 한 시기는 670년 초로 비정할 수 있다.

검모잠이 거병한 시기와 당의 변경을 침입한 시기 간의 시간적 차이도 존재한다. 검모잠이 처음 거병하였을 때는 그 세력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당에 위협을 가할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동도 호부 자체 병력을 활용하여 진압에 나섰을 것이다. 그런데 검모잠세력이 변경을 침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당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정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검모잠이 거병하고 변경을 침입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음의 기록이주목된다.

C. 총장 2년(669) 고구려민 3만명을 江淮와 山南으로 옮겼다. 大長 鉗牟복이 무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 [高]藏의 외손 安舜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고간을 동주도, 이근행을 연산도행군총관으로 삼아 토벌하게 하였다. 사평태상백 楊昉을 보내어 도망가고 남은 무리를 불러들이게 하였다. 안순이 鉗牟복을 죽이고 신라로 도망갔다. 고간이 도호부의 치소를 요동주로

<sup>40)</sup> 中村裕一, 「王言の公布」, 『隋唐王言の研究』, 汲古書院, 2003, 202~220等.

<sup>41)</sup> 營州에서 장안까지 이르는 경로와 里數는 김성한, 「唐 후기 각 州에서 東都를 거쳐 京師로 가는 교통노선」, 『中國古中世史研究』 21,2009,401~402쪽 참조.670년 4월 토번이 白州 등 서역 18州와 龜茲의 撥換城을 함락하자 당은 안서 4진을 폐지하였다(『舊唐書』卷5,本紀5,高宗 咸亨 元年 4月). 劉安志는 18주·발환성과 장안 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함락 소식이 전해지는데 빨라도 1달 정도가 걸린다고보고, 토번이 그곳을 함락시킨 시기는 670년 2월말 혹은 3월초였으며,4월에는 안서 4진 폐지를 결정했다고 보았다(劉安志,「從吐魯番出土文書看唐高宗咸亨年間的西域政局」、『魏晋南北朝隋唐史資料』18,2001,118쪽).

옮기고 반란병을 안시성에서 격파하였다. 또 천산에서 쳐부수고 신라의 구원병 2천명을 사로잡았다. 이근행이 發盧河에서 격파하고 다시 싸워 포로와 목 벤 수가 만에 이르렀다. 이에 평양의 패잔병들이 다시 軍列을 정비할 수 없게 되자, 함께 신라로 도망갔다. 그리하여 4년 만에 평정하였다 (『新唐書』卷220, 列傳145, 東夷 高麗).

위 사료는 안동도호부 설치 이후 고구려부흥운동의 발생과 당의 진압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 당이 4년 만에 고구려부흥운동을 평정했다고 표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근행이 發盧河에서 승리하면서 고구려부흥세력이 신라로 도망가고 부흥운동이 소멸하는 시기는 673년 윤5월이었다. 42) 그러므로 당이 인식했던 고구려부흥운동의 시작은 이로부터 4년 전, 즉 669년 5월에 실시된 사민이 된다. 여기서 4년 만에 '평정'했다는 의미는 고구려부흥운동전반을 가리키지만, 평양의 패잔병[平襄夷殘]이라는 표현으로 보아평정의 최종 목적은 검모잠과 안승 세력 진압이라고 할 수 있다. 43) 결국 사료 C는 검모잠의 거병과 남하 이후의 행적 그리고 검모잠사후 잔여 세력이 펼친 부흥운동의 움직임을 기술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검모잠의 거병에 앞서 기술되어 있는 669년 사민기사는 검모잠이 거병하게 된 배경을 서술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대규모의 사민은 고구려 유민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고, 그 준비 및 실행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이 촉발되었다고 여 겨진다. 더구나 사민의 대상이 정치·경제적으로 상층에 있었던 사 람들이었기 때문에 저항은 더욱 강하게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구려 고지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세력

<sup>42) 『</sup>資治通鑑』卷202, 唐紀18, 高宗 咸亨 4年 閏5月 "燕山道總管右領軍大將軍李謹行大破高麗叛者於瓠蘆河之西 俘獲數千人 餘衆皆奔新羅".

<sup>43)</sup> 이정빈, 앞의 논문, 149~150쪽.

들이 사민에 맞서 거병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그 중 하나가 검모잠 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44)

다음으로 검모잠이 거병할 수 있었던 사회적, 군사적 기반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대체로 검모잠을 지방 출신의 중급 귀족으로 파악하고 있다. 45) 이는 그가 水臨城 출신으로서 신라로 남하할 당시 소지한 관등이 大兄이었기 때문이다(B-①). 먼저 수림성은 구체적인 위치를 비정하기 어려운데, B-① 외에는 검모잠의 출신 지역을 말해주는 기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어의상의 유사함을 근거로 수림성을 津臨城(현 파주시 군내면)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 46) 그러나 이는 검모잠이 부흥운동을 펼친 지역을 대동강 일대로 보는 입장에 기반하여 한반도 서북부 일대에서 수림성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따르기 어렵다. 후술하겠지만 검모잠의 거병지역이 요동 일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림성 또한 요동지역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수림성으로 비정할 수 있는

<sup>44)</sup> 일찍이 陳寅恪은 당대 국제관계를 당과 주변 종족·국가 간의 단선적 관계가 아닌 다수의 종족·국가 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당의 국내외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국가로 토번을 언급하였는데, 토번이 강성하여 서북지역에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면 당은 동북지역에서 소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하였다(陳寅恪,「外族盛衰之連環性及外患與內政之關係」,「隋唐制度淵源略論稿 唐代政治史述論稿』, 三聯書店, 2004, 345~346쪽). 최근 670년 4월 안동도호 설인귀가 토번토벌군의 主將으로 서방으로 이동하여 東方에서 군사적 방비가 약해진 틈을 타 검모잠이 거병했다고 보는 주장이 나왔는데(菅沼愛語,「7世紀後半の東部ユーラシア諸國の自立への動き」、「7世紀後半から8世紀の東部ユーラシアの國際情勢とその推移』、溪水社、2013, 36쪽), 이는 陳寅恪의 학설이현재에도 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당의대외 정책에서 토번이 주요 변수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검모잠의 거병과 당의 대토번정책은 관련성이 없다고 본다. 검모잠은 670년 4월에 거병한 것이 아니라 669년 5월 실시된 사민에 저항하여 거병하였기 때문이다.

<sup>45)</sup> 조인성,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운동의 전개」,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동북아역 사재단, 2007.

<sup>46)</sup>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주석,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주석편 (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267쪽.

곳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의 과제로 삼고 여기서는 검모잠이 王都인 평양이 아니라 지방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어서 검모잠이 소지한 大兄이라는 관등을 통해 고구려 사회에서 그의 정치·사회적 위상을 추정할 수 있다. 7세기 고구려 관등조직은 12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 대형은 7위에 해당한다. 47) 대형 관등 소지자가 취임할 수 있는 관직으로 末若이 있었다.

D. 高麗記에 이르기를 … 그 武官으로 大模達이 있는데 衛將軍에 비할 수 있으며 莫何邏繡支 또는 大幢主라 한다. 皂衣頭大兄 이상이 취임한다. 그 다음으로 末若이 있는데, 中郎將에 비할 수 있고, 일명 郡頭라 하며, 大兄 이상이 취임하며, 1천인을 거느린다. 그 아래에 각각 등급이 있다(『翰苑』蕃夷部 高麗 所引「高麗記」).

『翰苑』에 인용된「高麗記」는 641년 내정 정찰을 목적으로 당에서 고구려로 파견된 陳大德이 귀국 후 작성한 보고서로서 7세기중반 고구려의 정치기구·지리 정보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48) 여기에는 大模達(莫何邏繡支, 大幢主)-末若(郡頭)-이하등급49)이라는 7세기 고구려 중앙군의 편제가 보이고 있으며, 각무관이 취임할 수 있는 관등이 규정되어 있어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특히 대형 이상 관등 소지자가 임명될 수 있는 말약의 異稱이 郡 頭라는 점에서 유의된다. 군두는 지방통치단위인 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명칭으로서 군에 파견된 지방관명으로 추정되기도 하며 또는 말약이 무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군 단위 지역에 주둔 했던 지방군의 지휘관으로 볼 수도 있다.50) 고구려에서는 군사

<sup>47)</sup> 임기환, 「4~7세기 관등제의 전개와 운영」, 앞의 책, 204~217쪽.

<sup>48)</sup> 吉田光男、「『翰苑』 註所引 『高麗記』について」、『朝鮮學報』 85, 1997.

<sup>49)</sup> 무관직을 대모달-말약-영천인급 지휘관-당주로 나누고, 말약을 1,000~10,000명을 지휘하는 군관직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신광철,「고구려 남부전선의 지휘관과 군사편제」,『韓國上古史學報』74, 2011).

제도와 지방제도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고 특히 지방관은 민정 권과 더불어 군정권도 함께 지니고 있어 해당 지역의 지방군을 지 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sup>51)</sup> 무관직인 말약이 지방관명인 군두라는 이칭으로 불려 질 수 있었다. 중앙군 무관으로서 천 명으 로 구성된 단위 부대를 지휘하는 관직이 말약이라면, 이에 상응하 는 지방군을 지휘하는 자를 군두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 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검모잠은 대형 관등을 지니고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관으로서 동시에 그 지역의 군대를 통솔하는 군사지 휘관으로 활동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도 방증될 수 있다. 고구려에서 대형 관등을 소지했던 인물들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담당했던 지 방관으로 활동한 경우가 많았다. 52) 대표적으로 봉상왕대 新城宰로서 신성 일대를 관할하고 있던 중 慕容廆의 침입을 물리친 공으로 小兄에서 大兄으로 승진한 高奴子53)와 5세기 초 令北夫餘守事를역임한 牟頭婁의 선조 중에 북부여지역을 통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大兄 冉牟, □道의 城民과 谷民을 통치했던 □□大兄과 慈□大兄54), 「충주고구려비」에 보이는 古牟婁城守事 大兄 耶□55)가 있었다.

<sup>50)</sup> 황병선, 「고구려 무관직의 등급과 임무」, 『력사과학』 1983-3, 1983, 44쪽; 노태돈, 앞의 책, 268쪽; 임기환, 앞의 책, 243쪽.

<sup>51)</sup> 노태돈, 앞의 책, 248쪽; 김현숙, 『고구려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2005, 389~390쪽; 임기환, 「지방·군사제도」,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1996, 181~182쪽. 고구려 지방군의 편제, 운용, 병졸집단의 구성 등이 지방통치조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는 전 영역이 군사조직으로 짜여있는 兵營國家의 면도를 지녔다(이문기, 「7세기 고구려의 軍事編制와 運用」, 『고구려연구』 27, 2007, 175~178쪽).

<sup>52)</sup> 박인호, 「溫達을 통해 본 6世紀 高句麗 貴族社會」, 『韓國古代史研究』 36, 2004, 241~242쪽. 고구려 관등은 크게 兄係와 使者係로 나뉠 수 있는데 지방관이나 부 대장으로 나간 인물들의 관등은 모두 형계였다(노태돈, 앞의 책, 476쪽).

<sup>53) 『</sup>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烽上王 2年 8月.

<sup>54) 「</sup>牟頭婁墓誌銘」; 武田幸男, 「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 『朝鮮學報』 99·100, 1981; 김현숙, 앞의 책, 274~276쪽 및 282~283쪽.

그리고 검모잠과 유사하게 고구려 후기 지방 출신으로 대형 관등을 소지한 인물로 柵州都督兼總兵馬를 역임한 李他仁의 祖父 福鄒가 있다.56) 복추가 어떠한 관직을 역임하였는지는 미상이다. 그렇지만 이타인 가문이 柵城 일대를 기반으로 하면서 여러 대에 걸쳐활동했던 고구려 지방세력으로 추정되고,57) 이타인이 柵州都督兼總兵馬로서 고구려의 12州와 靺鞨 37部落을 관장하였다는 점에서그 先祖들도 책성 일대의 지방관 혹은 무관으로 활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한다면, 이들과 동일하게 대형 관등을가지고 있던 검모잠도 지방관으로서 지방군의 군사지휘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구려 멸망 당시 검모잠이 실제로 지방관으로 주재했던 곳은 그가 남하를 시작한 窮牟城일 것이다. 고구려 후기 지방관으로는 褥薩, 處間近支, 可羅達, 婁肖가 있었다. 58) 이 중 욕살은 최고위 지방관으로서 대체로 위두대형 이상의 관등을 소지해야 임명될 수 있었으며, 그 아래의 지방관인 처려근지는 대형 이상 관등 소지자가임명되었다. 59) 그렇다면 검모잠은 궁모성의 처려근지일 가능성이

<sup>56)「</sup>李他仁墓誌銘」"君諱他仁本遼東柵州人也 ··· 祖福鄒本朝大兄 父孟眞本朝大相 ··· 干時授公柵州都督兼總兵馬管一十二州高麗統三十七部靺鞨".

<sup>57)</sup> 윤용구, 「중국출토의 韓國古代 遺民資料 몇 가지」, 『韓國古代史研究』 32, 2003, 309쪽; 안정준, 「「李他仁墓誌銘」에 나타난 李他仁의 生涯와 族原」, 『목간과 문자』 11, 2013, 217쪽.

<sup>58)</sup> 고구려 후기 지방통치체제와 地方官의 위계에 대해서는 임기환, 「高句麗 集權體制 成立過程의 研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49~157쪽; 노태돈, 앞의책, 242~266쪽; 김현숙, 앞의 책, 345~378쪽; 나동욱, 「6~7세기 고구려 지방군사운 체계」, 『史學研究』 95, 2009, 6~20쪽 참조.

<sup>59)</sup> 임기환은 고구려 후기 지방통치체제를 욕살-처려근지-루초의 3단계로 파악하고, 각 지방관이 취임할 수 있는 관등을 위두대형 이상-대형 이상-소형 이상으로 파 악하였다(임기환, 앞의 논문, 151~154쪽). 다만, 645년 당 태종이 안시성을 포위, 공격했을 때 15만 군사를 이끌고 출천한 북부 욕살 고연수, 남부 욕살 고혜진의 관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柵府元龜』卷170, 帝王部, 來遠 貞觀 19年條에 의하 면 고연수와 고혜진의 관등을 각각 위두대형, 대형이라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높다. 검모잠이 수림성 출신이라는 점, 대형 관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함께 고구려에서 대형 관등 소지자들의 활동상을 참고한다면, 검모잠은 여러 대에 걸쳐 요동 지방의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지방관 혹은 무관으로 활동한 중급 지방 귀족 가문 출신60)으로,본인은 궁모성의 처려근지로서 궁모성의 민정과 더불어 군정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검모잠은 '무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率衆叛]'고 한다 (A-②). 『삼국사기』에는 '무리'를 '殘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B-①), 여기서 검모잠이 거느린 '무리' 또는 '잔민'은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군사적 기반이었다.61) 이는 신라와 당이 백제부흥

고혜진의 관등인 대형이 위두대형의 오기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임기환, 앞의책, 242쪽). 그런데 『新唐書』·『舊唐書』 설인귀전에 따르면 당시 병력을 파견한 주체를 막리지로 기록하고 있다(이문기, 앞의 논문, 2007, 167쪽).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킨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고혜진과 고연수는 연개소문 정파에 속하는 인물로 추정된다(노태돈、『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93쪽). 아마도 정변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고연수는 관등이 대형임에도 불구하고 위두대형 이상이 취임할 수 있는 욕살에 임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sup>60)</sup> 검모잡은『신당서』본기와 열전 등에는 鉗牟岑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 여 宋代 편찬된 姓氏 자료집인 『古今姓氏書辯證』 권5에는 "箝耳 箝亦作鉗 西羌 復姓也 狀云周王季後爲虔仁氏 音訛爲箝耳"라 하여 羌族 출신인 鉗耳氏를 소개하 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사료에서 鉗耳氏를 강족으로 소개하고 있다(姚薇元, 『北朝胡姓考』, 中華書局, 1962, 324~326쪽). 北魏代 胡族의 復姓이 單姓인 漢姓으 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鉗耳氏는 王氏로 바뀌지만(『魏書』 권94, 열전82, 王遇 "王 遇 字慶時 本名他惡 馮翊李潤鎭羌也 與雷党不蒙俱爲羌中强族 自云其先姓王 後改 氏鉗耳 世宗時復改爲王焉"), 수·당대까지 鉗耳氏를 지칭하는 경우가 계속 존재하 였다. 復姓을 單姓으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直接减字인데(王盛婷,「北朝碑 刻胡姓改化姓氏詞初探」,『西華師範大學學報』2008-4,2008), 비록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鉗耳氏를 减字하여 鉗氏로 일컬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4세기 이후 고구려로 이주하는 중국계 유이민이 다수 존재하였다는 사실 을 고려한다면, 혹시 검모잠의 先祖가 鉗耳氏를 칭했던 羌族의 후예로서 중국을 거쳐 고구려에 이주했던 자일 가능성은 없을까. 검모잠의 先代에 대한 명확한 기 록이 없으므로 이상의 추론이 설득력을 가지기는 어렵다. 후일 새로운 자료가 나 타나길 기대해본다.

<sup>61)</sup> 池內宏은 '殘民'을 당군과 교전한 결과 남은 敗殘兵으로 해석하였다(池內宏, 앞의 책, 429쪽). 검모잠이 남하 과정에서 당 관인과 승려 법안을 죽였다는 점에서

운동을 일으킨 백제유민세력을 지칭한 표현에서 방증될 수 있다. 복신과 도침이 주류성을 근거로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무리[衆]'를 거느렸는데 이는 복신이 거느린 '병사[兵]'를 가리키는 것이었다.62) 그리고 신라는 신문왕 7년(687) 靑衿誓幢을 창설하였는데 이는 百濟殘民으로 구성되었다.63) 이러한 용례를 통해 볼 때 검모 잠이 이끈 '무리'와 '잔민'을 일반 백성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고구려 부흥군으로 파악해야 한다.

부흥군의 주축은 고구려 멸망 이전 궁모성에 주둔하고 있었던 지방군을 기반으로 하였을 것이다. 고구려 지방군의 편제는 당시 지방통치조직과 일체화되어 있었으며 운용 면에서 지방관이 지휘관으로 기능하며 병졸집단의 주력은 토착 주민으로 구성된 城兵이었다. 64) 고구려 멸망 이전 검모잠은 궁모성의 지방관으로서 지방군을 이끌었으며, 검모잠과 궁모성 주민은 군사지휘체계를 매개로 결합했던 경험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검모잠이 고구려부흥군을 조직·운용할 수 있었던 기반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65)

검모잠 세력은 일정한 군사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이정빈, 앞의 논문, 139 쪽, 주34).

<sup>62) 『</sup>舊唐書』 卷199, 列傳149, 東夷 百濟 "百濟僧道琛舊將福信率衆 據周留城以叛"; 『新唐書』卷220, 列傳145, 東夷 百濟 "璋從子福信嘗將兵 乃與浮屠道琛據周留城反".

<sup>63) 『</sup>三國史記』卷40, 雜志9, 職官 下 "九曰靑衿誓幢 神文王七年以百濟殘民爲幢衿色 靑白". 靑衿誓幢을 구성한 百濟殘民을 응진도독부 지배 하의 백제민으로 추정하 기도 한다(노중국,「신라 통일기 九誓幢의 성립과 그 성격」,『韓國史論』41·42, 1999, 196쪽).

<sup>64)</sup> 이문기, 앞의 논문, 2007, 175~178쪽.

<sup>65)</sup> 고구려 멸망 전 궁모성에 존재했던 지방군이 그대로 부흥군으로 조직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요동지역은 수·당과의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무대였으며 고구려유민에 대한 강제 사민의 주요 대상이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피폐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盧泰敦,「渤海 建國의 背景」,『大邱史學』19, 1981).

### 4. 당군의 대응과 요동 · 요서지역 고구려 유민의 동향

검모잠의 거병 사실을 기록한 중국 측 사료(A-①, ②, ③)에는 검모잠이 거병한 지역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검모잠이 궁모성으로부터 패강 남쪽에 이르러 당 관인을 죽였다고 한다(B-①). 궁모성은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수 없는데, 패강 즉 대동강 남쪽에 이르러 당 관인을 살해했다는 점 때문에 검모잠이 평양 인근 지역에서 거병했다고 인식되어 왔고. 지금까지 궁모성을 한반도 내에서 찾으려고 했다.

그런데 최근 이를 비판하며 검모잠이 변경을 침입했다고 인식되었다는 점과 당의 행군명이 일반적으로 원정 목적지를 나타낸다는 점66)에 착안하여, 검모잠의 거병지가 요동지역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 견해가 제기되었다.67) 사료 A-③에는 검모잠이 반란을 일으켜 변경을 침입하자 당이 고간과 이근행을 東州道行軍總管과 燕山道行軍總管으로 임명하여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동주도는 요동지역을, 연산도는 요서지역을 가리킨다고 지적하였다. 東州는 요동주의 준말로 파악되므로68) 고간은 요동지역으로 파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括地志』69)에 따르면 연산은 幽州

<sup>66)</sup> 北周 말 行軍制度가 전시출정제도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행군명은 出征戰區 혹은 작전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하였고, 이는 수당대에 정례화 되었다(孫繼民, 앞의 책, 6~7쪽).

<sup>67)</sup> 이상훈, 앞의 논문, 2014, 67~72쪽.

<sup>68)</sup> 김종복, 「高句麗 멸망 이후 唐의 지배 정책-安東都護府를 중심으로-」, 『史林』 19. 2003, 15~16쪽; 『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2009, 29쪽.

<sup>69) 『</sup>括地志』는 당 태종의 아들인 魏王 泰의 주도로 편찬된 官撰 地志로서 641년 완성되었다. 상고로부터 남북조 시대에 이르는 지명이나 행정단위 명칭의 변화를 고증하여 정리한 책으로 현재는 그 殘文이 『史記正義』、『通典』、『太平御覽』、『太平寶宇記』、『玉海』 등에 인용되어 전해지고 있다(李文基,「泗沘時代 百濟 前內部體制의 運營과 變化」、『百濟研究』 42, 2005, 67~68쪽).

漁陽縣 東南 60리에 위치한다고 하므로70) 현재의 北京 일대이다. 한편 『高麗圖經』에는 연산도로부터 육로로 가다가 遼河를 건너 동쪽으로 3,790리를 가면 高麗의 國境에 닿는다고 하였다.71) 그러므로 연산도는 현재 北京 以東에서 遼河 以西에 이르는 길로 추정할수 있다.72) 즉, 行軍名을 통해 보았을 때 고간은 요동지역으로, 이근행은 요서지역으로 파견된 것이다. 이는 다음 사료를 분석하면그 가능성에 무게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E-①. 大長 鉗牟복이 무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 [高]藏의 외손 안순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고간을 동주도, 이근행을 연산도행군총관으로 삼아 토벌하게 하였다. 사평태상백 楊昉을 보내어 도망가고 남은 무리를 불러들이게 하였다. 안순이 鉗牟복을 죽이고 신라로 도망갔다. 고간이 도호부의 치소를 요동주로 옮겼다(『新唐書』卷220, 列傳145, 東夷 高麗)
- E-②. 楊防을 사평태상백으로 삼아 安東으로 보내 高麗餘衆을 안무하게 하였다. 이 때 고려 추장 鈕牟岺이 무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고 고장의 외손 안순을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 조칙을 내려 左監門大將軍 고간을 동주도행군총관으로 삼아 병사를 이끌고 토벌하게 했다. 안순이 鈕牟岑을 죽이고 신라로 도망갔다. 양방과 고간이 비로소 안동도호부를 쳐서 빼앗아 평양성에서 遼東州로 옮겼다(『冊府元龜』卷429將帥部90. 拓土 楊防).

E-①에서 고간, 이근행과 더불어 楊昉<sup>73)</sup>이 함께 고구려 고지로

<sup>70) 『</sup>史記』 卷4, 周本紀4 "封召公奭於燕. <括地志云 燕山在幽州漁陽縣東南六十里>". 이는 『史記』 周本紀에 장수절이 주석을 덧붙이면서 괄지지를 인용한 부분이다.

<sup>71) 『</sup>高麗圖經』卷3, 城邑 封境"其國在京師之東北 自燕山道陸走渡遼 而東之其境 凡三千七百九十里".

<sup>72)</sup> 이상훈, 앞의 논문, 2014, 70~71쪽.

<sup>73)</sup> 楊昉은 보장왕의 잘못이며 670년 보장왕이 고간, 이근행과 함께 파견되었다는 주장이 있다(金秀美,『熊津都督府 硏究』, 전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7, 128~129쪽). 그 근거는 670년 4월 당시 당의 사평태상백은 보장왕이었다는 것이다. 사평태상백은 용삭 2년(662)에 공부상서가 개칭된 것인데 천하의 百工, 屯田, 山澤에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E-②에서 양방이 安東으로 가서 고구려 유민을 안무했다는 것이다. 이는 양방이 파견된 곳이 평양성에 설치된 안동도호부임을 의미한다. 고간과 이근행은 군사를 동원하여 고구려부흥세력을 토벌한데 비해, 양방은 '도망가고 남은 무리를 불러들였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평양지역에서 고구려 유민의 동요를 예방하고 반당항쟁이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는 활동을 전개했을 뿐이었다. 이는 양방이 파견된 평양에서는 고구려 유민의 군사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검모잠의 활동 무대가 평양지역이 아님을 시사한다.

양방이 맡은 역할은 이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E-②에서는 고간과 양방이 안동도호부를 평양성에서 요동주로 옮겼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74) 670년 6월 검모잠이 평양 일대를 점령하자(B-①, ②), 더 이상 평양성이 안동도호부의 치소로 기능하기 어렵게되었다. 이 때 양방은 안동도호부 관하의 관리들을 철수시키는 등 평양성에서 요동지역으로 안동도호부를 옮기기 위한 작업을 시행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관리들과 함께 당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75) 이후 동주도행군총관 고간이 안동도호로서

관한 정령을 관장하며, 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제칙과 조명을 받들어 행하였다(『唐六典』卷7, 工部尚書). 보장왕이 당에 끌려가서 받은 관직이 바로 사평태상백이었다. 그러나 보장왕이 제수 받은 정확한 관직명은 사평태상백 원외동정이었다. 즉, 정원 외의 명예직인 것이다. 그러므로 보장왕은 실제 工部의 일을 맡지않았고. 양방을 보장왕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sup>74)</sup> 이는『資治通鑑』高宗 儀鳳 元年(676) 2月條의 주에 실려 있는『資治通鑑考異』에 인용된『實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資治通鑑』卷202, 唐紀18, 高宗 儀封 元年 2月 "徒安東都護府於遼東故城 考異曰 實錄 咸亨元年楊昉高侃討安舜 始拔安東都護府自平壤城移於遼東州".

<sup>75)</sup> 당 태종의 후궁으로 越王 李貞의 어머니인 越國太妃 燕氏가 671년 7월 27일 사망하자 이 때 양방은 工部尚書로서 越國太妃를 昭陵에 陪葬하는 것을 監護하였다. 여기서 양방이 671년 7월 이전에는 당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周紹良‧趙超 編,「大唐越國故太妃燕氏墓誌銘」,『唐代墓誌彙編續集』, 上海古籍出版社, 2001, 192~194쪽 "以咸亨二年七月廿七日薨於鄭州之傅舍 春秋六十有三 … 仍令工

요동성에 주재하면서 검모잠 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군사 활동에 나 서게 되었다.

검모잠의 거병에 대한 당의 대응 조치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근행의 아들 李秀의 神道碑를 살펴보자.

E-③. 公의 諱은 秀이고 字는 玄秀이며 范陽人이다. … 아버지의 이름은 謹行 府君인데, 左金吾衛大將軍이었다. … 공은 어려서 英明하였고 장성해서는 특출났다. … 18세에 이르러 요수를 건너 적은 군사로 적을 막았다. 북소리가 들리고 깃발이 보이는 것이 어지럽게 섞이고 겹쳤다. 공이 이에 홀로 나가고 홀로 들어가며 종횡으로 활약하였으며, □하여 활을 쏘고 견고함을 무너뜨리고 창을 돌려 마음대로 적을 사로잡았다. … 開元 4년 4월 1일 나이 62세로 범양군 사저에서 죽었다. 76)(「李府君神道碑」)

신도비에 따르면 이수는 18세에 요수를 건너 전투에서 선봉으로 활약하면서 적을 격파하는데 공을 세워 유격장군에 배수되었다. 그가 開元 4년(716)에 6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으므로 672년에 18세의 나이로 요수를 건넜음을 알 수 있다. 이근행이 673년 윤5월 호로하 서쪽에서 고구려 유민을 격파하기 앞서 아내 유씨는 伐奴城에 남아 고구려와 말갈의 공격을 저지하였다.77) 이근행이 처와 함께 종군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아들도 함께 출정했다고 보는 것이

部尚書楊昉監護 率更令張文收爲副 賜東園秘器 陪葬昭陵"; 辛時代,「唐代安東都護府硏究」, 東北師範大學校博士學位論文, 2013, 61~62쪽). 그렇지만 670년 6월 검모 잠이 평양 일대를 점거한 이후 양방이 계속 평양성에 머무를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그의 귀환 시기는 670년 6월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sup>76)</sup> 岑仲勉,『金石論叢』, 中華書局, 2004, 289~290等 "公諱秀 字玄秀 范陽人也 ··· 考 諱謹行府君 左金吾衛大將軍 ··· 公幼而英明 壯而特達 ··· 及二九渡遼 什伍禦寇 耳以金皷 目以旌旗 紛紛紜紜 雜雜沓沓 公乃獨出獨入 一縱一橫 □飛鏃應弦以陷堅 迴戈隨手以包敵 ··· 以開元四載四月一日 春秋六十有二 薨于范陽郡之私第". 이수 신도비에 대해서는 馬馳(补오링 譯),『『新唐書』李謹行傳 보충 및 고증」,『한국고 대사탕구』17, 2014, 168~170쪽 참조.

<sup>77) 『</sup>資治通鑑』卷202, 唐紀18, 高宗 咸亨 4年 閏5月.

합리적이다. 연산도라는 행군명과 李秀의 신도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근행은 670년 4월 아내와 아들 등 가솔을 이끌고 요서지역으로 출정하였다가, 672년 요수를 건너 요동지역으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78) 이는 672년 7월에서야 이근행에 대한 기록이『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것과도 부합한다.79) 이후 이근행이 이끄는 당군은 한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고구려 부흥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신라군과 황해도 일대에서 충돌하게 된다.

한편 이근행이 이끄는 당군을 요동지역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고 약 2년의 시간을 지체하게 한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음 묘지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E-④. 君의 諱는 行節이고 □는 □該로서 太原人이다. … 마침 靑丘가 명을 거스르고 玄菟에서 재앙이 솟구쳤다. 軍將 등이 공은 어려서부터 전쟁을 익혔고 일찍이 六韜三略에 능통하니 마침내 表를 올려 鷄林道判官兼知子營總管으로 삼게 하고, 또 아뢰어 공을 押運使로 삼게 하였다. 이에 배를 巨海에 띄우고 遼川에서 노를 저었는데, 바람이 일어나물결이 요동치니 배가 부서지고 물에 빠졌다. 몸은 水府에 가라앉고 혼은 文德을 높이러 갔다. 그 변화의 자취의 때는 곧 唐 咸亨 2년이다80) (「大周故郭府君墓誌銘」).

상기 묘지명은 郭行節의 아들 思元이 어머니 유씨를 장사지낼 때 물에 빠져 죽은 아버지 곽행절의 혼백을 불러 함께 무덤을 만들면서

<sup>78)</sup> 岑仲勉은 672년 이수가 요수를 건넜다는 것은 호로하 전투와 관련이 있다고 하 였다(岑仲勉, 앞의 책, 299쪽). 그러나 호로하 전투는 673년 윤5월의 일로서 시기 가 맞지 않아 따르기 어렵다.

<sup>79) 『</sup>三國史記』卷7,新羅本紀7,文武王 12年 7月 "秋七月 唐將高侃率兵一萬 李謹行率兵三萬 一時至平壤 作八營留屯".

<sup>80)</sup> 周紹良·趙超 主編,「大周故郭府君墓誌銘」,『唐代墓誌彙編續集』,上海古籍出版社, 2001 "君諱行節 □□該 太原人也 ··· 屬靑丘背命 玄菟挺災 軍將等以公早習戎昭 夙靜韜略 遂表公爲鷄林道判官兼知子營總管 又奏公爲 押運使於是揚船巨海 鼓棹遼 川 風起壽驚 船壞而溺 形沉水府 神往脩文 其化迹之時 即唐咸亨二年之歲也".

작성한 것이다.81) 묘지명에 따르면 곽행절은 鷄林道判官 兼 知子營總管 및 押運使로 임명되었다가, 함형 2년(671) 풍랑을 만나 배가 부서져 물에 빠져 죽었다. 그의 관직을 분석해 보면, 신라정토군을 이끄는 계림도행군총관 설인귀 휘하에서 창고·무기·騎馬·防具 등을 관리하고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를 지휘하였다.82)이 자료에서 주목할 것은 곽행절이 물에 빠져 죽은 장소가 遼川이라는 점이다. 요천은 遼河를 가리키는데,83)이로부터 곽행절은 군수 물자를 실은 배를 이끌고 요동지역으로 가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조난의 위험을 무릅쓰고 해로를 통해 보급을 시도하는 모습은 요동지역에서 활동 중인 당군에게 육로를 통해 보급을 하기 어려웠던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요서지역에서 당의 행정력이 온전히 발휘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음을 암시한다.84)당군의 보급을

<sup>81)</sup> 권덕영, 「新羅 관련 唐 金石文의 기초적 검토」, 『韓國史研究』 142, 2008, 56쪽.

<sup>83)</sup> 植田喜兵成智, 위의 논문, 136쪽; 辛時代, 앞의 논문, 59쪽. 곽승훈·권덕영·권은주·박찬홍·변인석·신종원·양은경·이석현 역주,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658~659쪽에서는 遼川을 요동 일대 지역으로 보았다. 한편 곽행절이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하여 사망했다는 표현은 망자를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한 표현일 뿐 사건의 실상은 671년 신라가 당의 운송선을 습격한 사건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리하여 문무왕 11년 신라가 당의 漕船 70여 척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 사건(『三國史記』卷7,新羅本紀7, 文武王 11年 10月), 당 장수조헌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자 문두루 비법을 써서 배를 침몰시킨 사건((『三國遺事』卷2, 文虎王法敏)과 동일한 것을 다르게 표현했다고 파악한다(권덕영, 『신라의 바다 황해』, 일조각, 2012, 174~176쪽). 그러나 이는 곽행절이 익사한 장소가 요하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sup>84)</sup> 이와 유사한 사례가 「王慶墓誌銘」에 보인다. 고구려유민[高麗餘擊]이 遼川에서 전란을 일으키자 왕경은 수군을 이끌고 산둥지역[黃腄]을 출발하여 고구려고지로 향하였다. 한편 696년 5월 李盡忠이 영주를 점령하면서 요서 일대는 당의 통치력 에서 벗어났는데, 이 때 왕경은 行登州司馬로서 南運使에 임명되어 요동지역으로 군량을 보급하였다(周紹良 主編,「唐故朝議郞行登州司馬上柱國王府君墓誌銘」,『唐 代墓誌彙編』上,上海古籍出版社,1992,1249~1250쪽 "公諱慶字弘慶 東萊掖人. … 時高麗餘孽 作梗遼川 詔徵舟師 濟自黃腄 丘君以公有深謀遠算 遂要在中藍 同郗超 之入幕 類田疇之出塞 閱賞酬庸 拜上柱國 軍罷 勅授昭武校尉 營州都督府瀘河鎭將

저지했던 세력은 이근행을 약 2년 동안 요서지역에서 묶어두었던 존재와 동일한 실체일 것이다. 여기에서 이근행이 요서지역으로 파 견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669년 5월 당은 고구려 유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민을 단행하면서 요동 방면에 거주하는 유민은 영주를 경유하여 사민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주에 정착하는 유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훗날 발해를 건국하는 대조영 일행이 대표적이다.85) 또한 營州城傍 高麗人 王思禮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영주성인근에는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영주도독부의 지휘를 받으며 살았던 고구려인으로 구성된 군사집단이 존재하였다.86)

영주와 더불어 유주에 존재했던 고구려 유민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은 645년 고구려를 공격하여 점령한 요동성, 개모성, 백암성을 각각 遼州, 蓋州, 巖州로 개칭하고, 회군하면서 세주의 호구 7만 명을 중국으로 옮겼다. 87) 이들 중 포로로 붙잡은 1만 4천명을 당 내지로 사민하면서 유주에 집결시켰는데, 고구려 정벌에 실패한 당 태종은 회군하면서 유주에 이르러 고구려인들의 몸값을 錢과 布로 지불하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았다. 88) 이 때 1만 4천명에 달하는 고구려인 대부분은 유주에 정착했을 것으로 추정

<sup>···</sup> 萬歲通天元年 白虜趑趄 鋒交碣石 青林失律 火照甘泉 天子詔左衛將軍薛訥絶海長驅 掩其巢穴 飛蒭輓栗 霧集登萊 ··· 俄除朝議郎行登州司馬 仍充南運使 恩命光 臨 飭躬就列 情勤悅使 義篤均勞 紅栗齊山 飛雲蔽海 三軍歎美 僉曰得人 聖曆中運停還任"; 권은주,「鴻臚井石刻에 보이는 崔忻의 職名 재검토」,『韓國古代史研究』 46, 2007, 220쪽).

<sup>85)</sup> 宋基豪, 『渤海政治史研究』, 一潮閣, 1995, 25~26\.

<sup>86)</sup> 鄭炳俊,「'營州城傍高麗人'王思禮」,『高句麗研究』19,2005.

<sup>87) 『</sup>資治通鑑』卷198, 唐紀14, 太宗 貞觀 19年 10月 "凡征高麗拔玄菟橫山蓋牟磨米遼東 白巖卑沙麥谷銀山後黃十城 徙潦蕎巖三州戶口入中國者七萬人".

<sup>88) 『</sup>資治通鑑』卷198, 唐紀14, 太宗 貞觀 19年 10·11月 "諸軍所虜高麗民萬四千口 先集 幽州 將以賞軍士 上愍其父子夫婦離散 命有司平其直 悉以錢布贖爲民 讙呼之聲三日 不息 十一月 辛未 車駕至幽州 高麗民迎於城東 拜舞呼號 宛轉於地 塵埃彌望".

되며 이들은 유주의 城傍으로 조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89)

두 사례는 당 내지로 사민되는 과정에서 일부 고구려 유민들이 본래의 사회, 군사적 조직을 유지하면서 영주와 유주 일대에 정착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즉, 영주와 유주 일대에 사민된 고구려 유민들은 당의 지배에 맞서 군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 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들이 요서 일대에서 반당항쟁을 펼친 것으 로 추정된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이근행이 연산도행군총관 에 임명되어 요서지역으로 파견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면 670년 당시 검모잠의 거병과 요서지역 고구려 유민의 동향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 각각 독자적 세력이 일으킨 개별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영주 일대가 변경 지역이기는 하지만 당의 지배 영역이었기 때문에, 두 세력 사이에 어떠한 사전 교감도있을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요동 일대에서 검모잠이 중심이 된 부흥운동이 먼저 발생하고 이것이 요서 일대로 비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요서지역의 고구려 유민들이 반당항쟁을 시작하면서 고구려 고지로 되돌아가기 위해 東走하려 했을 것이 분명하므로당의 입장에서는 두 세력을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두 세력이 사전에 계획하여 함께 부흥운동을 일으켰을가능성이 있다. 당시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관련 사료가 매우 부족하지만, 당 조정의 대응을 통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을수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검모잠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책임자로 고간과 더불어 이 근행이 함께 행군총관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검모잠 세력의 진압이라는 파견 목적을 가진 이근행이 요서지역으로 출정

<sup>89)</sup> 정병준, 「唐朝의 高句麗人 軍事集團」, 『동북아역사논총』 24, 2009, 196쪽.

했다는 사실은 검모잠 세력과 요서지역의 고구려 유민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두 세력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당이 인식했다면, 이근행을 연산도행군총관으로 임명하면서 별도의 행군 파견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현재 그러한 사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즉, 당 조정은 요동지역의 검모잠 세력과 요서지역의 고구려 유민 세력을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당은 '검모잠이 반란을 일으켜 변경을 침입했다'(A-③)고 인식하고 있었다. 요동지역에서 거병한 검모잠이 당의 변경을 침입했다면, 그 지역은 요서 일대를 상정하기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검모잠과 관련한 여러 사료에는 거병한 이후 남하하면서 펼친 활동만 보이고 있을 뿐 당의 영역을 침범했던 모습은 찾을 수없다. '변경을 침입했다'는 구절의 의미를 검모잠이 안동도호부 치소인 평양성을 점령하고 다시 고구려를 일으키려고 했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지만,900 이는 검모잠의 거병 지역을 평양 인근으로 보는 입장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서 요서지역에서 발생한 고구려 유민의 반당항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요동지역의 검모잠 세력과 요서지역의 고구려 유민이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사전에 반당항쟁을 준비했다고 보면 '변경을 침입했다'는 구절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구려 멸망 이후 요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구려 유민과 요동지역에 잔존한 고구려 유민 간에 상호 관계망이 존재했고, 이를 통해 사전계획 하에 함께 반당항쟁을 일으켰다고 보면 어떨까 한다. 요서 · 요동 일대에서 대규모의 부흥운동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한 모종의 정보를 입수한 당 조정은 두 세력을 동일한 실체로 파악했으며, 이

<sup>90)</sup> 池內宏, 앞의 책, 432쪽. 이에 대한 비판은 이상훈, 앞의 논문, 2014, 67~68쪽 참조.

것이 검모잠 세력이 '변경을 침입했다'라는 인식으로 발전했다고 추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추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세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반당항쟁을 사전에 준비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 련하여 6세기 말~7세기 고구려의 西界를 요서 일대로 보는 최근의 견해에 주목하고자 한다. 요하 西岸을 따라 武厲羅를 비롯한 다수 의 군사기지가 존재하면서 요서 경영의 거점으로 기능했다고 보는 결해가 있으며 <sup>91)</sup> 현재 北鎮市 남쪽 寥屯鄉 大亮甲村 古城址로 비 정되는 武厲城이 고구려가 요서에 세운 전진기지로서 최전선 군사 거점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주장도 제기되었다.92) 또한 7세기 중 반 고구려는 요서 지역에 赤烽鎭과 같은 군사 시설을 촘촘하게 연 결하여 운영하는 등 요서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다고 보기도 한 다. 93) 즉. 6세기 말~7세기 고구려가 요서 일대에 城. 鎭. 羅 등 군 사 시설 및 거점을 다수 설치하여 수 당과 군사적으로 대립하거나 거란·말갈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고구 려가 운영한 요서 일대의 군사 거점들은 '최전선 거점인 무려성-關 所 기능을 맡은 다수의 羅-요동성'이 방어 체계를 구성하며 유기적 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94)

612년 수는 대규모의 군사를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하였는데, 무려라를 빼앗아 그곳에 요동군과 通定鎭을 설치하였다. 95) 그런데 645년 당의 이세적은 통정진에서 요수를 건너 현도를 공격하였다.

<sup>91)</sup> 이정빈, 「6세기 후반~7세기 초반 고구려의 서방변경지대와 그 변화」, 『역사와 현 실』 82, 2011.

<sup>92)</sup> 李成制,「高句麗의 西部 國境線과 武厲邏」,『大丘史學』113, 2013.

<sup>93)</sup> 정원주, 「7세기 고구려의 서계(西界) 변화」, 『영토해양연구』 8, 2014.

<sup>94)</sup> 李成制, 위의 논문, 2013, 16~23쪽.

<sup>95)『</sup>資治通鑑』卷181, 隋紀5, 煬帝 大業 8年"是行也 唯於遼水西拔高麗武厲邏 <高麗 置邏於遼水之西以警察度遼者> 置遼東郡及通定鎭而已".

수와 당은 요서 일대에 고구려가 설치·운영한 군사 거점들은 장악하고 이것들을 고구려 침공을 위한 군사 기지로 활용했던 것이다. 사료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요서지역의 다른 군사 거점도 마찬가지로 수·당에 의해 재활용되었을 것이고, 방어체계 및 이들을 거점으로 하는 교통로도 계속 이용되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실제로 696년 이진충의 난이 일어나고 乞乞仲象과 乞四比邓가 영주를 벗어나 고구려 고지로 돌아가는 경로로 통정진을 거쳐현도성에 이르는 이른바 北道를 이용했으리라 추정된다.96) 이는당시 고구려 유민들이 고구려 멸망 이전부터 사용하였던 교통로를통해 요동지역으로 되돌아 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6세기 후반~7세기 고구려인들이 사용하였던 요동 요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고구려 멸망 후에도 계속 기능했다고 할 수 있으며,요동지역의 검모잠 세력과 요서지역의 고구려 유민들은 이러한 교통로를통해 접촉하면서 반당항생을 계획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있다.

다음으로 지역적 연대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살펴보 았듯이 645년 유주에 방면된 고구려인들은 요동지역에서 붙잡혀 온 자들이었으며 669년 실시된 사민에서도 영주지역에 남은 고구려 유민 또한 요동지역 출신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었다. 유주와 영주지역으로 사민된 고구려 유민들은 대다수가 요동지역 출신임이 확인되는 것이다. 검모잠과 요서지역 고구려 유민들 간에는 요동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상호 연대 의식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97) 결국 검모잠은 고구려 유민 간의 친연성을 바탕으로 요서

<sup>96)</sup> 송기호, 앞의 책, 64~65쪽. 영주에서 요동으로 이르는 교통로는 燕軍城-汝羅守捉을 경유하는 남로, 회원진을 경유하는 중로, 통정진을 경유하여 현도성에 이르는 북로가 있었다(王綿厚,「唐"營州至安東"陸路交通地理考實」, 『遼海文物學刊』 1986-1, 1986).

<sup>97)</sup> 더구나 검모잠이 거병한 궁모성이 개모성이라면(이상훈, 앞의 논문, 2014, 72~74쪽), 645년 개모성 출신으로 당에 끌려갔다가 유주에서 방면된 고구려인들은 특히 검

지역 고구려 유민과의 연대를 추진하였고, 6세기 말~7세기 고구려 인들이 이용하였던 요동·요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통해 반당 항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오고 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670년 초 군사활동으로 표출되었고, 당은 두 개의 행군을 파견하여 대응하였다. 비록 검모잠은 평양 일대로 남하하였지만 요서·요동지역에서 고구려 유민의 저항은 672년까지 지속되었다. 〈李秀神道碑(E-③)〉와〈郭行節墓誌銘(E-④)〉에서 관련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요서지역의 고구려유민들은 이근행이 이끄는 당군과 672년에 이르기까지 대결하였고, 육로를 통해 요동지역으로 보급이 이어지지 못하게 할 만큼 세력을 떨쳤다. 그리고 신라를 토벌하기 위해 조직된계림도행군이 요동지역으로 보내져야할 만큼 671년 요동지역에서고구려유민들이 당군을 압박하고 있었으며, 672년 이수가 요수를 건너 싸웠던 존재는 고구려부흥세력을 제외하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671년 7월 고간이 안시성을 점령하면서98) 요동지역에서의 부흥운동은 소멸되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李秀神道碑〉를통해 672년에도 요동지역에서 고구려유민의 반당항쟁이 지속되고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검모잠이 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서와 요동지역에서 반당항쟁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검모잠이 유일한 부흥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삼국사기』지리지의未降城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이 요동지역에는 여러 고구려부흥세력이 존재하였고 검모잠은 그 중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검모잠이 남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요동지역에서 당군과 맞서는 군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었고, 이들과 연계된 요서지역의 고구려유민들의 반당항쟁도 쉽게 당군에 진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모잠과 지연적, 혈연적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로 묶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98) 『資治通鑑』卷202, 唐紀18, 高宗 咸亨 2年 7月 "高侃破高麗餘衆於安市城".

# 5. 맺음말

지금까지 고구려부흥운동에 관한 연구는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요동지역에서 발생한 고구려부흥운동이라는 관점에서 검모잠의 거병에 대해 고찰하였다.

668년 9월 당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고구려 고지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다. 이에 고구려 유민들은 당의 지배정책에 맞서 거병하였다. 『삼국사기』지리지의 압록수 이북의 현황을 기록한 자료에 등장하는 미항성의 존재와 669년 5월 실시된 사민의 경로를 통해볼 때, 요동지역에서 당군에 맞선 저항이 상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있다.

약 13만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사민은 고구려유민의 저항을 촉발하였고, 그 대표적인 존재가 검모잠이었다. 그는 고구려 멸망 전 궁모성의 지방관으로서 지방군을 이끌었다. 검모잠과 궁모성 주민은 군사지휘체계를 매개로 결합했던 경험이 존재하였고, 이것이 고구려부흥군을 조직할 수 있었던 기반으로 작용했다. 당이 고간과이근행을 행군총관으로 임명하여 검모잠 세력을 진압하면서 내세운이유는 검모잠이 당의 변경을 침입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는 검모잠이 거병한 지역이 요동지역이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또한 요동지역에서 거병한 검모잠 세력과 요서지역으로 사민된 고구려유민들이결합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들은 요동지역 출신이라는 친연성을 바탕으로 요동과 요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통해 반당항쟁을 계획하였다.

고구려유민의 군사활동을 진압하기 위해 고간은 요동지역으로, 이근행은 요서지역으로 파견되었다. 「이수신도비」와 「곽행절 묘지 명」을 통해 볼 때 672년까지 요동·요서지역에서는 고구려유민의 반당항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검모잠이 평양 일대로 남하하였지만 요동지역에는 여러 고구려부흥세력이 존재하 였기 때문에 요동지역에서 반당항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 으며, 이들과 연계된 요서지역 고구려유민들의 군사활동도 672년 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검모잠이 요동지역에서 거병하게 된 배경과 그 기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에 따라 검모잠이 어떠한 이유로 평양 일대로 남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남하 이후 어떻게 안승과 접촉하게 되어 그를 국왕으로세우게 되었는지, 요동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한성 일대에서 어떻게 부흥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지 못하였다. 검모잠의 남하 배경과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別稿를 통해 자세히논해보고자 한다.

[원고투고일: 2016,4.1. 심사수정일: 2016,5.20. 계재확정일: 2016,5.23.]

주제어: 고구려부흥운동, 검모잠, 안승, 궁모성, 요동지역, 요서지역, 고간, 이근행

<ABSTRACT>

# Revival Movement of Koguryo in Liaodong Region and Kommojam

Kim, Kang-Hun

Koguryo(高句麗) was fell by Tang(唐) in september, 668 and the Andong Dohufu(安東都護府) was set up in the territory of Koguryo. The people of Koguryo took up arms against the rule of Tang. The Mihang castle(未降城) in Amnok river(鴨綠水) north of status data of Samkooksaki(三國史記) jiliji(地理志) and route of force immigration tell us resistance was strong in the Region of Liaodong.

Nearly 13 million of force immigration on a large scale prompted the resistance of people of Koguryo. Kommojam(劍牟岑) was the key person of the resistance against Tang. He commanded the local military forces as local governor of Kungmo castle(窮牟城) before fall of Koguryo. Kommojam and people in Kungmo castle had been experienced in that combined through a military command system. This became the base that organized the movement of revival military forces of the former Koguryo. Kommojam invaded the fringeland of Tang. It means that Kommojam who took up arms in Liaodong Region and the displaced peoples of Koguryo to Liaoxi (遼西) Region combined. They had affinity in the way that came from Liaodong Region and had planned resistance movement through route of communication of Liaodong to Liaoxi.

In response to this, Tang started to suppress Go Gan(高偏) and Lee Kun haeng(李謹行). Go Gan was dispatched to Liaodong, Lee Kun haeng was sent out to Liaoxi. Nevertheless, military activity of Koguryo people had continued to 672 in Liaodong and Liaoxi Region. Although Kommojam proceeded towards Pyongyang area,

there were numbers of Koguryo revival army in Liaodong Region. Therefore the military activities against Tang had held in Liaodong Region and resistance movement in Liaoxi which were concerned with that was not subdued without difficulty.

Key words: Koguryo Revival Movement, Kommojam, Ansung, Kungmo castle, Liaodong Region, Liaoxi Region, Go Gan, Lee Kun haeng



# 고려시대 東界 지역의 戍 조사 연구

- 간성과 강릉을 중심으로 -

홍 영 호\*

- 1. 머리말
- 2. 東界 지역 戍의 문헌 분석
- 3. 東界 지역 戍 유적 조사 연구
- 4. 東界 지역 戍의 입지와 성격
- 5. 맺음말

## 1. 머리말

고려시대의 지방행정구역은 5道 兩界로 구분되며, 행정적인 성격의 5도와 달리 양계는 군사적인 성격으로 보고 있다. 양계는 北界와

<sup>\*</sup> 문학박사, 강원 현남중 역사교사

대표논저:「양양 후포매리 신라 산성의 고찰」, 『先史와 古代』30, 韓國古代學會, 2009;「『삼국사기』지리지 溟州 영현 棟隄縣의 위치 비정과 의미」, 『韓國史學報』 38, 高麗史學會, 2010;「『三國史記』所載 泥河의 위치 비정」, 『韓國史研究』150, 韓國史研究會, 2010;「신라의 동해안 연안항해와 하슬라-강릉 경포호 강문동 신라토성을 중심으로-」, 『白山學報』95, 白山學會, 2013;「산성과 고분으로 본 신라의 하슬라 진출과 경영」, 『新羅史學報』33, 新羅史學會, 2015; 『新羅의 何瑟羅 經營 研究』, 고려대 문학박사학위논문, 2012.

東界를 지칭하는데, 그만큼 두 지역이 거란족, 여진족 등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필요성이 컸다고 하겠다. 그러한 까닭에 사료에는 고려시대 국방유적과 관련하여 양계 지역에서 戍가 많이 보이며, 동해안인 동계 지역 역시 『고려사』나 『신증동국여지 승람』에 戍가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다.

成는 주둔군의 전방 초소적인 성격을 가졌을 것이라는 문헌사적인 연구 성과가 있다.1) 즉, 전방 일선의 州鎮(諸城)들이 외적의 침입에 대한 방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成를 설치하였으며, 결국 成는 적군의 동태를 탐지하여 그 정보를 본진에 보고하고, 적의 소규모 침입을 직접 격퇴하기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본진에서 교대로 파견된 병력이 상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2)

그런데 강원도 동해안의 경우 대학 박물관이나 학술기관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고고학적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戍'라고 이름을 붙인 유적이 한 곳도 없다. 그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된 대규모 학술조사 사업의 양적, 질적 성과로 보건대 의아스럽기조차 하다. 현재의 학술조사 성과로는 강원도 東界 지역에 위치하였던 戍의 역사적 현장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시대 東界 지역에 있는 '戍'의 실체부터 규명해야 하고.<sup>3)</sup> 그 위치와 입지를 찾아보는

<sup>1)</sup> 고려 전기 戍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성과는 사실상 없고, 다음 논문에서 州鎭軍을 다루면서 소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기백, 「고려 양계의 주진군」,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1968.

趙仁成,「高麗 兩界 州鎭의 防戍軍과 州鎭軍」,『高麗光宗研究』, 일조각, 1981. 宋容德,「高麗前期 國境地域의 州鎭城編制」,『韓國史論』5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宋容德, '高麗前期 國境地域의 州鎮城編制」, "韓國史論』 5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2005.

권영국, 「고려전기 동북면과 동해안의 방어체제」, 『숭실사학』30, 숭실사학회, 2013. 그러나 이들 논문들은 戍 유적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확인한 것이 아니다.

<sup>2)</sup> 이기백, 「고려 양계의 주진군」,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1968, 261~263쪽.

<sup>3)</sup> 주진군에 속한 전방초소의 성격인 戍에 대하여 적군의 동정을 살피려고 성 위에 만든 누각인 戍樓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孫永植,「城郭用語」,『韓國城郭의 研究』, 문화재관리국, 1987, 319쪽; 이기백·김용선,『고려사』병지 역주』, 일조각,

현장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의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成'로 이름을 붙인 유적이 없는 까닭에 현재로서는 사료나지리지는 물론이고 지명지와 구비전승 등의 문헌자료를 최대한 검토·분석하여 '成'에 관한 단서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즉, 문헌사료에 나타난 成들에 대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자료 속에서 각각의 成에 대한 단서를 찾아 戍 유적을 추정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 작업을 위하여 각종 문헌 자료에 나타난 '戍' 관련 기사를 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古地圖와 지역 출신의 個人 文集까지도 검토하여 戍에 관한 단서를 찾도록 하겠다.

다음으로는 문헌 조사를 통해 '成'로 추정되는 유적들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역사적 현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戍의 입지와 규모, 현상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과 사진으로 남겨 학술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유적들의 공통점을 찾고 출토 유물들도 비교·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戍의 위치를 비정하고, 입지와 성격 등을 확인하며, 戍의 역사적 전개와 변화까지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 글에서 東界 지역 戍의 역사적 현장을 확인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고,<sup>4)</sup> 이를 통해 고려시대 東界 지역의 군사방어체제를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sup>5)</sup>

<sup>2011, 391</sup>쪽)가 있을 정도로 그 성격 파악이 혼란스러웠다.

<sup>4)</sup> 이 글은 東界 지역 戍에 대한 필자의 다음 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을 밝힌다.

홍영호,「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2)-戍를 중심으로-」,『博物館誌』 19, 江原大學校 中央博物館, 2012, 49~72쪽.

홍영호, 「고성군 죽왕면 竹島(山)烽燧와 竹島戍에 대하여」, 『博物館誌』 21, 江原大學校 中央博物館, 2014, 19~44쪽.

<sup>5)</sup> 이 글은 남·북한 간의 분단으로 북한 지역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고려시대 兩界의 戍 현장을 처음 추적한다는 의의가 있다.

# 2. 東界 지역 戍의 문헌 분석

#### 가. 『고려사』의 戍

고려시대 동해안의 成는 역사적 사건의 기록 속에서 등장하거나, '〇〇成'라고 명칭만 전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려사』에는 桐津成, 臨遠戍가 강원도 삼척에 있으며, 동여진의 침입을 받았고, 寧波戍, 泉井戍, 鐵垣戍, 壓戎戍, 禾登戍 등이 보이며, 『신증동국여지 승람』 강릉대도호부에는 5개의 戍가 명칭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戍의 정확한 위치가 전해지지 않아 그 입지 조건을 알 수없고, 그로 인하여 戍의 성격을 밝히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 여기에서는 『고려사』를 살펴봄으로써 동계 지역 '戍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정보를 확보해 보겠다.

사료에서 戍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나타 난다.

A-1 靖宗2년(1036) 2월 辛未 東蕃賊船 寇三陟縣**桐津戍** 摽略人民 <u>守將</u> 設伏 草莽伺賊 還鼓譟掩擊 俘斬四十餘級 (『高麗史』 卷六 世家 卷第六)

A-4 文宗6년(1052) 6월 己卯 東女眞高之問等航海,來攻三陟縣**臨遠戍**. <u>守將</u>河周呂率兵出城,徇于軍日,"彼衆我寡,若人自爲戰,不愛其身,則戰必勝矣."遂擁干挺刃而進. <u>適有安邊都護判官 金崇鼎巡所管諸戍</u>,行至近境,賊聞其角聲,謂援兵徑至,遂驚亂,周呂軍,乘勝擊之,俘斬十餘級,賊奔潰.(『高麗史』卷七,世家 卷第七)

위 기사에 보이는 동진수(A-1), 영파수(A-2·3), 임원수(A-4)는 각각 지금의 삼척, 간성(열산현), 삼척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온다. 동해안 지역의 북쪽(북한)에서도 다음과 같이 戍가 보인다.

B-1 文宗 元年(1047) 1월 制,霜陰鶴浦兩縣<u>沿海處,設置軍戍,以扼蕃賊之衝</u>. (『高麗史』卷八十二 志 卷第三十六 兵二 鎮戍)

B-2 文宗 3年(1049) 6월 壬申 東北路兵馬使奏,"雲嵒縣 折衝軍隊正 惟古等十一人, 夜巡行到**泉井戍**, 有蕃賊四十餘人, 突入屯中, 軍卒皆奔匿, 惟古挺身奪擊, 賊遂潰走, 請量功授職."(『高麗史』卷七 世家 卷第七)

B-3 翼谷縣 校尉一, 左軍一隊, 寧塞一隊. **鐵垣戍**, 右軍·寧塞各一隊. 凝川貢 所, 左軍· 寧塞各一隊. 行軍四十六.

鶴浦縣 別將一, 校尉二, 隊正四, 抄軍二隊, 左右軍各一隊, 寧塞一隊. **壓戌戍**. 校尉一 除正二, 左右軍各一隊, 寧塞七人.

霜陰縣,校尉一,除正二,左右軍各一隊,寧塞一隊. **禾登戍**,左右軍各一隊, 寧塞五人. 福寧鄉,校尉一,除正二,左右軍寧塞各一隊. (『高麗史』卷八十三 志 卷第三十七 兵三 州縣軍 東界)

위의 B-1 기사의 학포현과 상음현은 안변도호부 소속인데,6) 연해처 요충지에 번적을 막기 위하여 戍를 설치하였음을 알려준다.7) 그리고 B-1 기사의 학포와 상음현의 軍戍는 B-3 기사로 볼 때 압융수와 화등수로 각각 추정된다. B-2 기사의 천정수는 북강원도동해안의 통천 지역으로 『大東地志』에는 지금의 수곶(戍串)으로비정하고 있다.8) B-3 기사의 철원수와 압융수는 안변 지역에 위치하며. 『大東地志』에는 압융수가 지금의 압융곶(壓戎串)으로 칭한

<sup>6) 『</sup>신증동국여지승람』 제49권 안변도호부, 건치연혁 및 고적조 참조.

<sup>7)</sup> 戍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태조 11년의 기사(『高麗史』卷82 志 卷第36 兵2, 태조 11 년(928) 4월 城運州玉山, 置戍軍)도 있으나 본고와 직접 관련될 것 같지 않아 사 료로 채택·활용하지는 않는다.

<sup>8)</sup> 金正浩, 『大東地志』, 通川 城池條, 泉井戍, 南五十三里今戍串. 『신증동국여지승람』제45권 통천군 봉수조에도 수곶봉수가 남쪽으로 53리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김정호가 언급한 천정수와 동일한 거리이다. 수와 봉수의 대응관계를 엿볼 수 있다.

다고 기록하였다.9)

이들 A와 B 기사로 보아, 戍는 東女眞(東蕃)의 침입과 매우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보면 동여진(동번)은 1005년(穆宗 8월)에 登州(현재의 안변)를 침입하기시작하여 顯宗~德宗~肅宗 연간에 이르기까지 약 1세기 동안 고려의 동해안 지역에 침입하여 약탈을 하였다. 이들은 소규모 海賊에불과하나 경주를 비롯한 영덕, 영일, 장기 등지의 경상도 지역은 물론이고, 극히 드물게는 울릉도와 일본에까지 침입하고 있다. 동계 지역인 지금의 강원도 동해안이나 함경남도의 동해안 일대는 당연히 더 많은 침입을 받았다. 이에 고려 조정은 연해 고을들에 築城을 하였고, 鎭溟都部署를 설치하여 수군력을 강화하였으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10)

한편 成는 北界 지역에도 설치되어 있다. 특히 북계 지역의 사료는 成의 성격과 규모를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데 다음과 같다.

C-1 宣宗8년(1091) 6월 甲辰 都兵馬使奏, "往年, 蕃賊寇昌州, <u>兵馬錄事 安先俊等領卒</u>, 出屯**德寧戍**, 遺郎將 高猛等, 追捕奮擊, 賊大潰, <u>校尉 崇儉隊正</u> <u>邊鶴等</u>突入賊中, 士卒增氣, 俘斬有功, 乞加職賞, 以勸將來."制可.(『高麗史』卷十 世家 卷第十)

C-2 十年 命金令器王寵之, 城長州定州, 及元興鎮. 長州城, 五百七十五閒, 戍六所, 曰 靜北高嶺掃兇掃蕃壓川定遠, 定州城, 八百九閒, 戍五所, 曰防戍押

<sup>9)</sup> 金正浩,『大東地志』, 安邊 鎮堡條, 鶴浦縣押戎戍, 今稱壓戎串, … 鐵垣戍, 在派川社海口歙谷界有小石城, 香燈戍, 東四十里霜陰縣 … .

<sup>10)</sup> 동여진의 침입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이 참고가 된다. 이창섭, 「11세기 초 동여진 해적에 대한 고려의 대응」, 『韓國史學報』30, 高麗史 學會, 2008, 77~109쪽.

한성주, 「고려시대 東女眞・東眞兵의 강원지역 침입에 대하여-東女眞 海賊의 침입을 중심으로-」,『인문과학연구』30,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221~253쪽. 정요근,「11세기 동여진 해적의 실체와 그 침략 추이」,『사학연구』107, 한국사학회, 2012, 45~88쪽.

胡弘化·大化安陸. 元興鎭城, 六百八十三閒, 戍四所, 日來降壓虜海門道安. (『高麗史』卷八十二 志 卷第三十六 兵二 城堡)

위의 C-1·2·3 기사는 成가 성의 (전방) 보루[堡子] 기능을 가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成는 상급지휘체계의 통제를 받았는데, A-4 기사의 삼척 임원수는 안변도호판관 김숭정이所管諸戍를 순시한 곳이므로 그의 지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또한 이들 기사를 통해 戍의 성격과 부대의 규모도 파악할 수 있다. B-3 기사에 보이는 학포현 소속의 압융수는 校尉가 지휘하고학포현의 별장 지휘체계에 속함을 알 수 있으며, 철원수나 화등수등에도 隊正 정도의 지휘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A-2 기사의 隊正도 영파수의 지휘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戍'의 지휘관은 校尉나 隊正 정도로 파악되는데, 고려의 군사편제에서는 최하위 단위 부대의 말단 지휘관에 해당한다.<sup>12)</sup> 城柵의

<sup>11)</sup> 고려시대에 국경지대인 北界(西北界)와 東界(東北界)에는 각기 安北都護府와 安 邊都護府 밑에 州·鎮 중심의 행정조직이 짜여져 있었다(朴龍雲,『高麗時代史 (上)』, 一志社, 1985, 299쪽).

<sup>12)</sup> 고려시대에 무반직은 정8품 산원 이상이 관인의 범주에 들었고 교위・대정은 관인과 군인의 사이에 위치한 계층이었다. … 중략 … 그리고 장군에서 교위까지는 每品의 正品階에 두었고, 대정은 품외로 하였다.(李鎭漢,「高麗時代 武班職의 地位와 構成」,『軍史』37, 國防軍史研究所, 1998, 53~54쪽). 별장과 교위 및 대정을 향리 중에서 선발하여 충원하는 규정도 있다(『고려사』卷八十一 志 卷第三十五 兵一 兵制, 문종 23년(1069) 3월 二十三年三月 判, "諸州一品別將, 則以副戶長以上, 校尉, 則以兵・倉正・戶正・食祿正・公須正, 隊正, 則以副兵倉正, 副戶正・諸壇正, 試選弓科而差充").

고려시대 군대 편제에서 산술적으로 25명의 군인 가운데 1명이 대정이 되고(李 鎭漢, 위 논문, 1998, 47쪽 및 48쪽 각주 64번 참조), 단위부대인 伍는 50명으로

규모도 州鎭에 비하여 수십 칸에 불과하여 최소 단위 부대의 군사 들이 주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문헌 사료를 통해 東界 지역 '成'의 실체에 대하여 두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규모 자체가 전방 초소 및 보루의 성격이라는 점이다. 成의 지휘 편제와 배치된 부대의규모로 보건대 기본적으로 소규모 부대가 주둔하였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동해안 지역의 경우 바다로부터 침입하는 적(동여진)을 감시·조망·통제하는 목적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적의 침입시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그들을 대피시키며, 본대에 연락하여 지원군을 부르는 기능도 당연히 수행하였을 것이다. 成는 이러한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관방유적일 가능성이 높다.

#### 나. 지리지의 戍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成' 유적을 찾으려면 '戍'가 관방유적이므로 관방유적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의 주요관찬 지리지(이하 '지리지'로 약칭함)인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 기록된 城池 및 關防조 등을 검토해보면, 강원도의 경우강릉대호부에서 '戍'가 5곳 나오는데, 城郭이나 城池가 아닌 이미없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古蹟'조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표 1〉 저	지리지 수록	강릉	지역의	'戍'
---------	--------	----	-----	-----

구분	항목	내 용	비고
『신증동국여지승람』	古蹟	寧平戍 海令戍 化城戍 沙火戍 鐵甕戍	
『여지도서』	古跡	寧平戍 海寧戍 化城戍 沙火戍 鐵甕戍	

조직되었으며 그의 장은 校尉(伍尉 또는 尉: 正9品)이다(朴龍雲, 『高麗時代史(上)』, 一志社, 1985, 287쪽).

陳元英,「高麗前期 校尉・隊正에 관한 일고찰」,『史學志』27, 檀國大 史學會, 1994, 47~79쪽.

앞의 〈표 1〉과 같이 지리지에는 강릉 지역에만 '成'가 기록되었고, 강원도 다른 지역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기록도 상세하지 않고 거리 정도만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을 뿐이다.

… 寧平戍・海令戍(府 동쪽 10리에 있다)・化城戍・沙火戍(府 북쪽 20리에 있다)・鐵瓮戍、 $^{13)}$ 

이와 같이 강릉 지역의 成는 위치가 확실하게 전하지 않으므로 그 입지를 알 수 없다. 그 때문에 이들 成가 조선시대 강릉대도호 부 관할에 속하는 내륙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동해안 바닷가에 있 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들 지리지의 강릉 烽燧조에서 沙火山烽燧와 海靈山烽燧 가 보이는데, 강릉 지역 戍의 명칭인 沙火戍 및 海令戍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봉수조를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에 따라 주요 지리지 별로 정리해 보면, 간성군의 죽도산봉수, 정양수봉수, 수산봉수도 戍와 관련되는 명칭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세종실록지리지』 간성군의 봉수조에서 正陽戍와 戍山이 있는 것이다〈표 2〉.

구분	항목	강릉	간성	
『세종실록지리지』	봉수	於乙達, 吾斤, 所伊洞, 沙火, 注乙文	竹島山, <b>正陽戍, 戍山</b>	
『신증동국여지승람』	봉수	注文山烽燧, <b>沙火山烽燧</b> ,所同山烽燧, <b>海靈山烽燧</b> ,吾斤山烽燧,於達山烽燧	竹島烽燧,正陽山烽 燧,戍山烽燧	
『여지도서』	봉수	注文山烽燧, 沙火山烽燧, 所同山烽燧, 海靈山烽燧, 吾斤山烽燧, 於達山烽燧-并今 廢有遺址	古烽燧: 竹島烽燧, 正陽山烽燧, 戍山烽 燧-新羅時所設今廢	

〈표 2〉 지리지 수록 강릉·간성 지역 봉수와 추정 '戍'

위의 〈표 2〉와 같이 지리지의 봉수조에서 극히 적지만 成라는 명칭이 사용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신증동국여지승람』

<sup>13) 『</sup>신증동국여지승람』제44권, 강릉대도호부 고적조.

강릉의 봉수조에 보이는 '海靈山烽燧'와 '沙火山烽燧'도 古蹟조에 보이는 '海令戍' 및 '沙火戍'와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戍의 입지와 실체를 밝히려면 戍와 烽燧와의 관계부터 분석하는 것이 순서라 하겠다.

#### 다. 고지도의 戍

成의 위치와 입지 조건을 찾기 위하여 古地圖를 살펴보았을 때,「東輿圖」에서 위치가 표기된 成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東輿圖」에는 간성 지도에 成山이 표기되어 있어 成山烽燧로 추정되는데, 바로 그 옆에 古寧波戍라고도 기재되어 있어 주목된다. 또한正陽山도 바닷가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正陽戍烽燧(正陽山烽燧)로 추정된다. 고성 지도에는 靈津串이 표기되어 있어 靈津山烽燧로 추정된다. 고성 지도에는 靈津串이 표기되어 있어 靈津山烽燧로 추정되고, 高城浦와 강 하구를 두고 마주보는 위치에 浦口山이 표기되어 있어 浦口山烽燧로 추정된다. 歙谷 지도에는 강 하구의 곶에 鐵垣古曳가 표기되어 있어 鐵垣戍로 추정되고, 안변에는 鶴湖(鶴浦)를 둘러싼 壓戎串이 古戍로 함께 표기되어 있어 壓戎戍로 추정되다. 4의 그 밖에 北靑 지도에 장진포(장진호)가 바닷가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長津浦戍15)로 추정된다. 〈지도 6~9〉

이와 같이「東興圖」로 보건대 戍들이 모두 바닷가 산이나 바닷가의 곶에 위치하고, 烽燧와 戍가 서로 일치하는 곳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간성의 戍山烽燧는 사료에 보이는 (古)寧波戍에

<sup>14)</sup> 香灯古戍는 香燈戍로 볼 수 있다. 燈과 灯의 뜻이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B-3 기사에 상음현의 禾登戍도 안변도호부 소속이고, 발음도 같으므로 향등수로 추정된다.

<sup>15)</sup> 장진포수는 本府의 船卒들이 防守하고 있어 수군 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 된다.

<sup>『</sup>신증동국여지승람』 제49, 北青都護府 古蹟條, 長津浦 在府東四十七里 本府船卒防守今廢. 『大東地志』 北青 營衙條 長津浦戍, 南四十七里舊以本府船卒防守.

해당하고, 북청의 長津浦戍를 비롯하여 흡곡의 鐵垣戍 및 안변의 壓戎戍와 香灯戍는 東界에 편제된 戍이므로 수의 입지와 기능을 밝 히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다만 「東興圖」<sup>16)</sup> 가 조선시 대 말기에 만들어졌으므로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표기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신뢰도에 한계가 있다.<sup>17)</sup> 지도의 표기 사항을 검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여도」의 검증과 관련하여 1872년에 간행된 간성군 지방도가좋은 참고가 된다. 이 古지도에는 간성군의 봉수 2곳이 육지의 산(정양산과 죽도산)에 '烽臺'라고 표기되어 있다〈지도 10〉.18)특히육지의 竹島山에 봉대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죽도(산)봉수가 육지에있었기 때문에 전승되어 그려졌다고 볼 수 있겠다. 후술하겠지만이 지도는 죽도(산)봉수지가 죽도점(바위점)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 의의가 매우 크다. 나아가 이 지도는 죽도산봉수를 바닷가산에 표기하였다는 점에서 竹島成였을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19)

<sup>16) 「</sup>東興圖」는 조선 철종 연간에 제작된 작자 미상의 분첩절첩식(分帖折疊式: 折帖 裝) 전국 지도로 채색필사본이다. 「대동여지도」와 유사하여 金正浩가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고본(稿本: 처음 쓴 내용의 책) 또는 「대동여지도」에 자료를 보충한 필사본일 가능성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sup>17)</sup> 김정호는 고려시대 사료에 보이는 戍에 대해 일부 戍를 위치 비정하여 『대동지지』의 각 지역에 기입하였다. 반면 삼척의 경우 桐津戍, 臨遠戍가 『고려사』에 나오고, 주요 지리지에는 나오지 않지만, 『대동지지』에는 두 戍를 기록만 하고 구체적인 위치 비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戍의 위치가 설명되어 있는 곳은 당시까지의 자료를 동원·분석하여 그가 위치를 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김정호의 戍에 대한 위치 비정은 통일신라시대의 '今末詳'지명에 대한위치 비정처럼 논증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의 비정이 정확하다고 믿을 필요도 없다. 김정호의 위치 비정도 잘못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sup>18)</sup> 서울대 규장각(편), 『조선후기 지방지도』(강원도·함경도편), 2000, 杆城郡, "古烽臺距邑二十里南應襄陽德山山名竹島山."(이 지도는 1872년 지도로 보고 있으며, 덕산봉수는 지금의 속초 외옹치 봉수이다).

<sup>19)</sup> 홍영호,「고성군 죽왕면 竹島(山)烽燧와 竹島戍에 대하여」,『博物館誌』21, 江原 大學校 中央博物館. 2014. 19~44쪽.

따라서 古지도를 통해 볼 때 戍의 위치와 입지는 바닷가 연변 산의 봉우리나 곶에 위치하였고, 바다를 포함하여 주위를 조망하기에 아주 좋은 지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표 3〉.

〈표 3〉 고지도의 烽燧와 추정 戍

고지도	烽燧(추정 戍)
「東輿圖」	戍山烽燧(古寧波戍), 正陽山烽燧(추정 正陽戍), 鐵垣古曳(鐵垣戍), 壓戎串 (壓戎戍), 香灯古戍(추정 禾登戍), (추정 長津浦戍),
「간성군 지방도」	正陽山烽燧(추정 正陽戍), 竹島山烽燧(추정 竹島戍)

# 3. 東界 지역 戍 유적 조사 연구

### 가. 간성 지역의 戍 유적

앞에서 成가 봉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위치를 확인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戍의 현장 사례를 찾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 때 가장 주목되는 지역이 지금의 고성군, 즉 옛 간성군 지역이다. 왜냐하면 지리지와 고지도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전기의 봉수지 명칭에서 戍의 성격이 간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성 지역의 烽燧부터 조사하여 고려시대 東界지역에 분포한 戍의 입지와 성격을 확인하는 시도를 하겠다.

간성 지역의 봉수 3곳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죽도(산)봉수, 정양산(수)봉수, 수산봉수가 분포한다. 이 가운데『한국지명총람』에 는 마차진리에 있는 봉수가 정양산봉수와 죽도봉수로 연결된다고 언급하였다.<sup>20)</sup> 실제 마차진리 봉수가 成山烽燧라고 채록된 바

<sup>20)</sup>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60쪽.

있다.<sup>21)</sup> 이로 보아 마차진리봉수는 수산봉수로 볼 수 있다. 또한 正陽山烽燧도 고성군 문화원에서 간행한 지명유래지에는 반암리의 정양산(봉수봉)에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sup>22)</sup> 그러므로 수산봉수와 정양산봉수는 그 위치가 확인되었다.

다만 죽도(산)봉수는 논의가 필요하다. 竹島山烽燧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죽도산봉수,『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죽도봉수로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竹島를 설명하면서 이 섬(필자: 바위섬)에 병사들이 머물렀던 군사시설[營舍古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23) 그래서인지 죽도섬(바위섬)에서 봉수와관련된 기록이나 전설이 채록되지 않으나 죽도섬(바위섬)을 죽도산봉수로 생각하고, 24) 남쪽으로 양양 덕산봉수(현재 속초 대포항

봉화-봉(烽火峰)[봉우터, 봉으뚝] 【산】 마차진 북서쪽에 있는 산. 높이 100m. 이 조 때 봉수대를 두어서, 북쪽으로 정양산(正陽山), 남쪽으로 죽도(竹島)에 응했음. (필자: 봉수의 원래 순서는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마차진-정양산-죽도이며, 책의 설명이 잘못되었다).

- 21) 「고성 마차진리 봉수지, 소재지: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봉수봉. 위치 및 현상: 대진에서 7번 국도를 따라 북상하다가 명파리로 넘어가는 쑥고개의 우측(동편) 해발 133m 봉화봉 정상에 위치한다. 해안에 면해 있고 해발고도가 주변 지역보다 높은 곳이어서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 중략 … 이 봉수지의 명칭을 술산봉수(戌山烽燧)라 밝히고 있고, 남쪽으로 13km 거리인 정양산봉수(正陽山烽燧-거진읍 반암리소재)와 북쪽 고성군의 구장천(仇蔣遷) 봉수 사이에서 신호전달을 맡았음을 밝혀주고 있다. 해안을 따라 연결되는 연변봉수지 가운데 비교적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주변에서 토기편과 와 편들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수병들의 주거시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강원도편-』, 2000, 20쪽).
- 22) 정양산(正陽山) 봉수지: 반암리 마을의 서남방 800m 지점에 있는 해발 약 170m 높이의 정양산 정상에 있다. 해안에 면해 있으면서 남쪽과 북쪽 모두 트여 있어 봉수시설 입지로 알맞은 곳이라 생각되는 곳이다. … 하략 … (고성군문화원, 『지명유래지』, 1998, 152~153쪽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강원도편-』, 2000, 11~12쪽 참조).
- 23) 『신증동국여지승람』제45권, 간성군, 산천조, 竹島 在郡南二十里 周二里許 島上有 營舍古址 梧桐箭竹滿其上.
- 24) 지현병, 「고성군의 관방유적」,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학교 박물관 학술총서 10책, 1995, 123~126쪽.

외옹치), 북쪽으로 정양산 봉수와 연결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한편 명칭의 차이를 중시한다면 『세종실록지리지』를 편찬할 당시에는 바닷가 육지의 산인 죽도산에서 봉수를 담당하였다가, 『신증동국여지승람』 편찬 당시에는 죽도섬(바위섬)에서 봉수를 담당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죽도를 설명하면서 '營舍古址'로 서술한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미 군사시설이 폐기된 마당에 봉화를 두었을지 의문이다. 사실 조선시대 봉수지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는데, 죽도(바위섬)에서 군사시설[營舍古址]만 채록되었고 봉수 내용이 없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실제 봉수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더구나 죽도(섬)은 일종의 바위섬으로 규모가 매우 작아 사람이 거주할 만한 섬이 아니다. 바닷가에 가까이 붙어 있는 작은 바위섬을 옛 사람들이 산으로 인식했을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보면『세종실록지리지』나『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죽도산봉수와 죽도봉수는 죽도섬(바위섬)으로 볼 수 없다. 다행히 1872년에 간행된 간성군 지방도에 烽臺가 육지의 산에 그려져 있고, 竹島山에 있는 것으로 나온다〈지도 10〉.25) 즉, 죽도(산)봉수는 죽도(섬)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죽도(산)봉수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현재 죽도(섬) 서남쪽 인근의 바닷가의 낮은 산에 삼포리 봉수지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 경향은 죽도(산)봉수를 죽도(섬)으로 보고 있어 삼포리 봉수지는 조선 초기·전기 고성군의 봉수 3곳(죽도-정양산-수산)과는 다른 별개의 봉수로 간주하고 있다.26) 그러나

金聖範·沈榮燮,「軍事保護區域內 文化遺蹟 地表調査 概報-江原道 高城郡篇-」, 『文化財』30, 國立文化財研究所, 1997, 249쪽.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江原道 高城郡 軍事遺蹟-地表調査報告書-』, 遺蹟調 香報告 第10輯, 2003, 179쪽.

<sup>25)</sup> 각주 18번 참조.

<sup>26)</sup> 김정현은 고성군의 봉수를 북쪽에서부터 '마차진리봉수-정양산봉수-죽도봉수-삼 포리봉수지-봉포리봉수지'라고 하였다(金政賢,「高麗時代 嶺東地域의 海防遺蹟

필자는 죽도(산)봉수지를 삼포리 봉수지로 보고 있다. 삼포리 봉수 지에 대한 최초의 현장 기록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 다음 과 같이 찾을 수 있다.

 烽燧址 竹旺面 筍浦里, 土木局所管.
 筍浦里部落ノ東北約五十間ノ山頂ニ在リ約六間四方ノ石塚ノ外圍ニ土 壘アリ不完全.<sup>27)</sup>

위 기록에는 봉수지가 죽왕면 순포리에 있는데, 순포리는 현재 삼포리에 포함되고,<sup>28)</sup> 봉수 관련 지명도 삼포리 봉수지 남쪽에 다 음과 같이 남아 있다〈지도 3〉.

• 봉수-단(烽燧壇) 【산】 <mark>감인당 동쪽에 있는</mark> 산. 이조 때 봉수대가 있었 음. <sup>29)</sup>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와 『한국지명총람』의 채록 내용은 그 위 치와 지명으로 보아 삼포리 봉수지가 죽도(산)봉수임을 시사하고

硏究」, 강원대 사학과 문학석사학위논문, 2011, 51쪽 지도2 영동지역의 봉수터 분포). 그가 '봉수지'라고 이름붙인 곳은 역사성을 찾지 못한 것이고, 나머지 세곳은 연변봉수로 본 것이다. 그런데 죽도봉수를 바다의 바위섬(죽도섬)에 표시를 하였다. 오류가 계속되고 있다.

<sup>27)</sup> 朝鮮總督府,『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 高城郡, 45번 烽燧址 竹旺面 筍浦里.

<sup>28)</sup>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고성군, 52쪽 및 54쪽.

<sup>•</sup> 삼포-리(三浦里)【리】본래 간성군 죽도면(竹島面)의 지역인데, 1916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포월(浦月), 황포(黃浦), 순포(筍浦)의 세 마을을 병합하여 삼포리(三浦里)라 하여 죽왕면에 편입됨.

행정구역명인 죽도면은 이곳 죽도의 이름을 따서 붙인 행정지명이다.

<sup>•</sup> 대-섬[죽도]【섬】오호리 동쪽에 있는 섬. 대가 많고 그 질이 좋아서 옛날에 는 나라에 바쳐 활을 만들었으며, 이조 때 이 섬의 이름을 따서 죽도면(竹島面)이 되었다가,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죽왕면에 편입되었음.

<sup>29)</sup>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고성군, 52쪽.

<sup>●</sup> 봉수-동(烽燧洞) 【마을】 → 붕숫개.

<sup>•</sup> 봉숫-개[봉수동] 【마을】 봉수단 밑에 있는 마을.

있다. 동해안에는 백두대간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가 동-서로 가로 지르는 산 능선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지형의 동쪽 끝지점 (말단부)의 바닷가에 삼포리 봉수지가 위치하는 것이다. 봉수지는 바다의 바로 옆에 연한 낮은 산(해발 약 59m)<sup>30)</sup>으로, 북쪽에는 송지호, 동북쪽으로 죽도와 동해안, 남쪽으로도 동해안을 조망할 수 있다.

삼포리 봉수지에 관한 최초의 조사 내용을 보면 3단의 석단과이를 둘러싼 토루를 소개하고 있어 전형적인 연변봉수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도판 7〉.31〉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삼포리 봉수지에대하여 통일신라시대에 조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봉수대와 관련한 방형기단이 잘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32〉이 두 학술 기관은 동서로 바닷가까지 뻗은 산 능선에 위치한 삼포리 봉수지에 참호가개설되어 있다고 서술하지 않았다.

<sup>30) 『</sup>文化遺蹟分布地圖-高城郡-』에는 삼포리봉수지가 삼포리 봉수동 산60-3 임 일 대이며, 해발 약 59m로 서술하였다(江原文化財研究所,『文化遺蹟分布地圖-高城郡-』, 2005, 216쪽, 연변: 207번).

<sup>31)</sup> 삼포리 봉수지의 현황에 대해서는 최초의 학술조사를 소개하여 당시의 봉수 현 상을 파악해 보겠다.

<sup>「</sup>三浦里烽燧址, 소재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봉수동 위치 및 현상: 삼포리봉수지는 속초-고성간 7번 국도를 따라 북상하다가 대한불 교태고종 반야사 진입로로 진입하여 바로 우측 해발 약 59m 높이의 산 정상에 위치한다. … 중략 … 금번 조사 결과 석단은 3단으로 약 1.5m이고 주변으로 굴 러 떨어진 돌들이 흩어져 있다. 봉수지의 주변으로 폭 3m의 토루를 만들었으며 토루의 안쪽에는 화강석을 섞어서 쌓았다. … 하략 …」(지현병,「高城郡의 關防 遺蹟」,「高城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江陵大學校 博物館 學術叢書 10冊, 1995, 123~126쪽).

<sup>32)</sup> 이 조사는 삼포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를 소개하면서 봉수지를 언급한 것이다 (金聖範·沈榮燮, 「軍事保護區域內 文化遺蹟 地表調査 概報-江原道 高城郡篇-」, 『文化財』30, 國立文化財研究所, 1997, 249쪽). 봉수대에 방형기단이 잘 남아있고, 봉수단 지명이 있는 곳에서 반야사 뒤편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하고 있어 지금의 삼포리봉수지가 분명하다.

강원문화재연구소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견해를 받아들여 삼포리봉수를 통일신라시대의 봉수단으로 추정하였다(江原文化財研究所,『文化遺蹟分布地圖-高城郡-』, 2005, 216쪽).

그 후, 육사박물관의 조사에서 봉수지에 인공시설물이 설치되었다고 언급하고, 사진에서도 참호가 보이므로 어느 시기엔가 참호가 개설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33)</sup>

필자 역시 최근 삼포리 봉수지를 답사한 결과, 죽도(바위섬) 서남쪽 인근 육지의 바닷가 산에 위치한 이곳이 봉수지로 알려져 있고, 지명도 조선시대 봉수지로 전해지며, 방형으로 돌을 낮게 깔아쌓은 석축단(煙臺)과 함께 그 외곽으로 토루(필자: 방호벽)도 돌아가고 있으므로 봉수지로 인정한다. 왜냐하면 평면 방형의 석축 연대시설34)과 3단의 석축단, 외곽의 방호용 호 등은 전형적인 연변봉수의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삼포리 봉수지가 죽도(바위섬)에 인접해 있으므로 죽도산봉수로 판단된다.

그런데 삼포리 봉수지 일대에는 참호를 정비하면서 많은 기와가 노출되어 있다. 기와들은 격자문, 능형문 등이 보이고, 기와의 질과 두께, 색조 등에서 고려지대가 중심지대이다. 35) 특히 참호 공사로 노출된 토층의 단면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와들은 봉수대 석축단(연대) 및 방호용 호와 동일한 높이(level)가 아니라 봉수대

<sup>33)</sup>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江原道 高城郡 軍事遺蹟-地表調査報告書-』, 遺蹟調査報告 第10輯, 2003, 179쪽. "삼포리봉수는 인공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크게 교란된 상태이지만, 면석이 10m 내외의 정방형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 규모를 추정하게 해 준다. 면석은 1m 내외의 크기이다. 몇 년 전에 발생했던 고성 화재 때문에 1988년에 설치한 표석은 깨진 상태이다. 주변에서는 다수의 와편이 수습되고 있다. 연조 기단은 10m 내외의 정방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로는 70m둘레의 원형으로 패여 있고, 정상부 주변의 크기는 116m이다."

<sup>34)</sup> 동해 어달산 봉수도 발굴 결과 연대의 하단부가 방형이었다<도판 30~32>. 세종 29년 병조에서 마련한 연변봉수를 보면 연대의 형태와 규모는 방형이고 둘레에 호를 파고, 임시 건물도 설치하여 병기, 용수, 화기 등을 보관하였다(『世宗實錄』卷150, 29년 3월 丙寅, "沿邊各處煙臺造築 高二十五尺圍七十尺 臺下四面三十尺 外掘塹深廣各十尺 皆用營造尺 又於坑塹外面設木長三尺削皮銳上植地 廣十尺臺上造假屋藏兵器及朝夕供用水火器皿等物").

<sup>35)</sup> 육군박물관의 조사에서도 기와들을 고려시대 전기 이후에 제작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江原道 高城郡 軍事遺蹟-地表調查報告書-』,遺蹟調查報告第10輯, 2003, 182쪽).

석축단 밑의 층에 혼입되어 있었다. 봉수대의 운용 시기와 기와의 제작 시기가 서로 다른 것이다. 기와들은 수파문기와는 전혀 보이지 않고 무문 기와, 연질적색기와 등도 있어 고려시대까지 올라갈수 있다. 토기편도 극소수 발견하였으나 일반적인 질그릇편으로 시대 편년의 표식유물은 아니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 봉수대가통일신라시대에 조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필자는 통일신라시대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유물을 수습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삼포리 봉수지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설득력 있는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도판 3~7〉.36) 이렇게 보면, 『문화유적총람』에 채록된 삼포리 봉수지의 전승 내용이 의미가 있다.

高城三浦里烽燧址,
 女真 靺鞨族의 侵略을 경계하기 爲하여 築造한 것이라 전하며, 長廣7.27m(24尺), 높이 5.45m(18尺)인 石築壇이다.37)

위의 삼포리 봉수지에 관한 전승 내용은 봉수지의 운영 시기가 고려 전기 동여진의 침입 시기에 해당함을 시사한다. 삼포리 봉수지에서는 송지호 일대 북쪽 전면의 움직임은 물론이고, 동해 바다와 함께 죽도(섬)이 매우 가까워 죽도(섬)에서의 움직임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비록 평지에 대한 상대고도가 높지 않지만, 삼포리 봉수지는 주변을 관측감사·통제하고 해안을 따라 외길로 오는적의 침입을 차단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위치이다. 그리고 삼포리봉수지에 참호 시설을 만들면서 석축연대 밑부분의 단면이 드러났는데, 연대 밑에는 기와편이 많이 박혀 있었으며, 그 위에 불탄

<sup>36)</sup> 이미 육군박물관은 삼포리 봉수지의 성격과 기능에 의문을 갖고, 봉수지의 토루와 기단 주변에서 발견되는 다량의 와편과 사방 관측이 용이한 입지적 조건은 돈대 또는 망루 시설이었을 가능성도 추론할 수 있다고 하였다(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위의 책, 2003, 188쪽).

<sup>37)</sup>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上, 1977, 435等, 高城三浦里烽燧址.

흔적이 있었다. 특히 석축연대 밑에서 상당한 두께에 걸쳐 고려시대의 기와층이 드러난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고학적 층위상으로 죽도(산)봉수가 운영되는 시기의 건물 기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에 있었던 竹島戍의 건물(예: 초소 등)을 후대에 봉수대를만들기 위한 정지 작업을 하면서 파괴한 양상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삼포리 봉수지의 석축연대 하부에서 출토되는 기와편의 시대와 함께 봉수지가 바닷가의 산에 입지한 점을 고려하면 이곳을 고려시대의 戍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간성의 죽도산봉수가 '竹島戍'인지는 지리지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행히 『고려사』에서 다음과 같이 竹島戍를 찾을 수 있다.

「선종 원년(1084) 2월 무술일, 통로(東路)가 금양현(지금의 강원도 통천군) 관내 관해수(觀海戍), 고성현(지금의 강원도 고성군) 관내 환가수(黎猳戍), 한성현(필자: 지금의 강원도 간성인데, '杆'을 '扞'으로 오기함) 관내 <u>죽도수(竹島成)</u>에 화재가 나 군관을 파직하고, 각 현에 임시로 도량을 열어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38)

위의 기사는 죽도수가 분명히 존재하였음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삼포리 봉수지를 죽도수로 볼 수 있다. 고려 전기의 죽도수는 조선 초기·전기에 죽도(산)봉수지로 되었고, 오늘날에는 지금의 행정구역 명칭을 따라 삼포리 봉수지로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죽 도(산)봉수를 죽도(바위섬)로 간주하는 기존의 견해는 오류라 하겠 다. 다만 죽도수에서 일부 병력을 죽도(바위섬)로 파견 보냈을 수 있다. 39) 이 일대가 행정적·군사적 중심지로 마을이 있고, '戌' 정도의

<sup>38) 『</sup>高麗史』卷五十三 志 卷第七,五行一,火,"宣宗元年二月戊戌東路金壤縣管內觀海 戊高城縣管內豢猳戍杆城縣管內**竹島戍**灾責罷軍官 見任設道場于各縣 禳之."

<sup>39)</sup> 죽도(바위섬)에 기와편들이 있으므로 육지의 죽도수의 군사 책임자가 죽도(바위섬)을 통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죽도(바위섬)가 바닷가 백사장과 매우 가까워

군부대가 주둔하였으며, 죽도에도 일부 병력을 파견한 까닭에 행정 명칭에도 죽도(바위섬)가 상징화되어 죽도면이 되었을 것이다. 40) 따라서 竹島戍에서 竹島(山)烽燧로 변화하는 것은 고려 전기의 戍가 고려 말기~조선 초기에 烽燧가 되는 확실한 현장 사례가 된다.

결국 간성 지역에 있는 봉수 3곳은 모두 그 위치를 확인하였으며, 고려 전기에 成였음이 밝혀졌다. 이로써 간성군의 경우 동여진이 출몰하던 고려 전기의 戍 3곳 모두가 조선시대 초기·전기에 烽燧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4〉.

지역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비고(현재의 지명/위치)	고려시대
간성	戍山	成山	현내면 마 <mark>차진</mark> 리 봉화봉 (쑦고개 <mark>동</mark> 쪽 바닷가 산)	寧波戍
	正陽戍	正陽山	거진읍 반암리 봉화산(정양산)	正陽戍
	竹島山	竹島	죽도(산)봉수(현재 삼포리봉수지)	竹島戍

〈표 4〉 간성 지역의 烽燧 현황과 戍의 비정

## 나. 강릉 지역의 戍 유적

강릉 지역의 戍는 『신증동국여지승람』 古蹟條에 실려 있으므로이미 없어진 상태이고, 그 위치도 전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고적조에 실린 5곳의 戍 가운데 海令戍와 沙火戍는 봉수조에 海靈山烽燧와 沙火山烽燧가 있어 명칭상 관련성이 엿보인다. 그러므로 이들봉수지에 대한 문헌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戍와의 관련성을 찾아보겠다.

작은 초소 등을 운영할 만하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육지의 수자리는 봉수지로 변화하였고, 죽도의 파견초소는 수가 폐기될 때 함께 폐기되었거나, 봉수지로 변할 때 폐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sup>40)</sup> 행정명칭인 '죽도면'은 택당 이식이 편찬한『水城誌』가 처음이며,『輿地圖書』에 서도 죽도면으로 나온다.

먼저 沙火山烽燧가『한국지명총람』에 고려 때 沙火戍였다고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사화-산(沙火山)[사화산봉수] 【산】 사천면(沙川面) 사천진리(沙川津里) 앞 북쪽에 있는 산. 높이 35m. **고려 때 사화수(沙火戍)**가 있었고, **이조 때 봉화대**가 있어서, 남쪽으로 소동산(所洞山), 북쪽으로 주문산(注文山)에 응하 였음. 41)

채록 내용을 신뢰한다면, 고려 때 沙火戍가 조선시대에 와서 沙火山烽燧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화산 봉수는 그동안의 학술 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었다. 이에 필자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沙火山烽燧를 처음 찾아 소개하였는데, 42) 사천진리 북쪽의 뒷산으로 바닷가에 위치한 蛟門꿈을 마주보는 나지막한 산에 위치하고 있었다〈도판 8~11〉.43〉 강원도 동해안의 자연지형적 특징인 태백준령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가지능선의 해안끝 쪽 산에 烽燧가위치한 셈이다〈지도 4〉. 물론 지금의 사화산봉수 자리가 사화수였는지, 아니면 가까운 주변에 사화수가 별도로 있었는데, 사화산봉수지도 함께 포함시켜 통칭하여 불렀는지 의문이 남는다. 다행히그 답을 허균이 지은 『성소부부고』에서 찾을 수 있다.

「강릉부(江陵府)에서 30리 되는 곳에 사촌(沙村)이 있는데, 동쪽으로는

<sup>41)</sup>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명주군 68쪽.

<sup>42)</sup>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2)-戍를 중심으로-」, 『박물관지』 19.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49~72쪽.

<sup>43)</sup> 사화산봉수는 지금의 사천진리 마을 서낭당 자리로 바뀌었고, 지진해일(쓰나미)을 대피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담자는 어른들로부터 예전에 봉화대라고 전해진다고 들었다고 하였다(대담자: 최필수(1945년생), 前이장님, 현재 삼다도 횟집 운영. 033-644-0234).

봉화대는 1970년대에 간행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서도 '봉우재'라는 명칭으로 서술되고 있다(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江原道 篇),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 第8冊, 1977, 12쪽).

대해(大海)에 임했으며 북쪽으로는 오대(五臺)·청학(靑鶴)·보현(菩賢) 등여러 산이 바라보인다. 큰 내 한 줄기가 백병산(百屏山)에서 나와 마을 가운데로 흐르는데, 이 내를 빙 둘러 거주하는 이가 상하 수십 리에 거의 수백가(家)나 되며, 모두 양쪽 언덕에 의지하여 내에 면해서 문을 내었다. 내의 동쪽 산은 북대(北臺)로부터 내려와 꾸불꾸불 연속된 것이 용처럼 생겼는데, 바닷가에서 홀연히 솟구쳐 사화산의 수자리(沙火山戍)가 되었다. 수자리아래에는 옛날 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내가 무너질 때 늙은 교룡(蛟龍)이그 밑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 교룡이 가정(嘉靖) 신유년(1501, 연산군7)가을에 그 바위를 깨뜨리고 떠나는 바람에 두 동강이 나서 구멍 뚫린 것이문과 같이 되었으므로, 후세 사람들이 교문암 (蛟門巖)이라 호칭하였다.」 44)

위 사료에서는 沙火山戍와 함께 교문암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지금의 沙火山烽燧址가 沙火戍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사화수가 조선 초기·전기에 사화산봉수지가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해령수와 관련하여 동일한 명칭을 쓰는 해령산봉수가 주목되는데, 『한국지명총람』에는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해령-산(海靈山) [봉화재, 봉화봉] 【산】화비령(火飛嶺) 줄기 곧 나룻말 서북쪽 동해(東海)가에 솟아 있는 산. 산 위에 해령사(海靈祠)가 있고, 그 서북쪽으로 30m 되는 곳에 <u>이조 때 봉수대(烽燧臺)</u>가 있어서, 남쪽으로 오근산(吾近山), 북쪽으로 소동산(所洞山)에 응(應)하였음.45)

海靈山烽燧址는 지금의 강릉시 남쪽 강동면 안인리 군선강 하구의 남쪽 돌출부 산에 위치하는데, 봉화산으로도 불리우며 위치

<sup>44)</sup> 許筠,『惺所覆瓿稿』卷之七○文部四, 愛日堂記, "江陵府之三十里有沙村。東臨大海。北眺五臺,青鶴,箬賢等諸山。大川一派。出百屛山而注于村中。環川而居者。上下數十里殆數百家。皆依兩岸而面川開戶。川東之山。從北臺而來。蜿蜒如龍。至海上斗起。爲沙火山戍。戍之下。舊有大石。當川之潰。老蛟伏其底焉。嘉靖辛酉秋。蛟決其石去。分兩段而谺如爲門。後人號曰蛟門。··· 하략 ···"

<sup>45)</sup>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명주군 72쪽.

확인도 가능하다〈지도 5 및 11〉. 이곳은 조선시대에 수군포진인 安仁浦鎭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도판 12〉. 해령산봉수가 '해령수' 였다는 지명유래가 없으므로 해령수도 그 자리인지는 불분명하나, 간성군의 봉수와 수의 입지로 보건대 봉화산이 해령산이므로 동일한 곳으로 볼 수 있다. 海靈山烽燧의 입지도 戍의 입지와 동일하므로 가능성이 높다. 海令戍의 위치가 이곳이라면 '戍→봉수지(浦鎭)'로의 변화가 일치하는 좋은 사례가 된다.

이와 같이 강릉 지역의 成 5곳 가운데 2곳의 成를 추정하였다. 비록 2곳의 成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 2곳의 成를 찾음으로써 나머지 3곳도 추적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표 5〉.

지역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비고(현재의 지명/위치)	고려시대
	注乙文	注文山	주문진리	
	沙火	沙火 沙火山 사천진리		沙火戍
강릉		海靈山	안인진 해령산	海令戍
	所伊洞	所同山	포남동	
	吾斤	吾斤山	강동면 심곡리	
	於乙達	於達山	묵호 어달동	

〈표 5〉 강릉 지역의 烽燧 현황과 戍의 비정

# 4. 東界 지역 戍의 입지와 성격

고려시대에 州鎭城은 지역 방어를 위한 거점으로 보조적인 군사 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州鎭城과 함께 군사적인 주요 지점에는 일종의 감시초소 역할을 하는 戍가 요소마다 설치되 었다. 이처럼 고려는 州鎭城을 중핵으로 하여 그 주변에 戍를 배치 하는 형태로 일차적인 군사방어체제를 조직하였다. 46)

<sup>46)</sup> 宋容德,「高麗前期 國境地域의 州鎭城編制」,『韓國史論』51, 서울대 인문대학 국

그런데 현재 兩界 지역의 대부분이 북한 지역인 까닭에 成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東界 지역의 경우도 州鎮城과 戍의 배치 분포에 있어 그 입지와 특징을 규명하려는 본격적인 연구가 그동안 없었으므로 東界 지역 戍의 실체, 즉 입지적조건과 성격을 알 수 없었다. 이에 필자는 『고려사』 사료, 지리지, 고지도, 개인 문집, 지명유래, 전설 등에 나오는 戍를 분석하여 戍의 성격과 입지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도하였다.

특히 지리지에서 烽隊와 戍가 관련성을 보이는 간성 지역의 봉수 와 수를 조사 연구하였고 강릉 지역의 봉수와 수의 관계도 추적하 여 방증 자료를 확보하였다. 그 결과 지리지의 봉수조와 고지도인 「동여도」를 통해 간성군의 정양산봉수가 正陽戍이며, 수산봉수가 寧波戍라고 밝혔다. 죽도(산)봉수는 죽도섬(바위섬)으로 보는 기존 의 격해와는 달리 육지의 竹島山에 烽臺가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 古地圖를 찾아 지금의 삼포리 봉수지가 죽도(산)봉수임을 규명하였 다. 나아가 삼포리 봉수지(죽도산봉수)에 참호를 개설하면서 드러 난 토층의 단면에서 석축단(煙臺) 하부에 매우 많은 기와들이 혼입 되어 있으므로 죽도(산)봉수 이전에도 이곳이 운영되었는데. 기와 들이 고려시대가 중심시대이므로. 『고려사』 五行志(火)에 기록된 竹島戍로 보았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 전기 간성군의 烽燧 3곳 모 두 고려 전기의 戍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허균이 지은 『성소부부고』에서 沙火戍를 찾아내어 강릉의 沙火山烽隊도 사화 수와 위치가 같음을 확인하였다. 강릉의 海令成도 海靈山烽燧와 연 결된다고 추정하였다.

그러므로 동해안의 다른 지역도 봉수지의 상당수가 고려 전기에 戍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 글에서 다른 간성의 竹島戍-竹

사학과, 2005, 95쪽.

島(山)烽燧, 강릉의 沙火戍-沙火山烽燧 사료는 戍와 烽燧의 대응관계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간성의 영파수-수산봉수, 정양수-정양산봉수, 강릉의 해령수-해령산봉수 등도 戍와 烽燧가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간성과 강릉의 사례로 보건대 烽燧와戍가 일치하는 곳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戍로 추정되는 마차진리 봉화산(戊山烽燧, 古寧波戍), 정양산 봉화산(正陽戍烽燧, 正陽戍), 사화산 봉수(沙火戍), 해령산 봉수(海令戍)는 모두바닷가의 곶, 포구에 연하여 바다쪽으로 돌출한 산 정상부에 입지하거나, 바다에 연하여 적당한 높이의 산 정상부 일대에 입지하여바다를 향한 전망이 좋다〈지도 1~5〉. 이렇게 보면「동여도」에 표기된 戍의 비정은 신뢰할 만하다. 동여진 해적의 침입을 사전에 파악한다는 목적에서 이러한 입지에 戍가 설치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말~조선초기에 정비되는 沿邊烽燧도 그 목적과 기능이 戍와 유사하므로 戍와 동일한 곳에 입지하는 것이다. 또한 고려전기의 戍는 고려말기~조선초기에 왜구의 침입에 대응하여 설치되는 營鎭戍所47)로 일부 활용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戍는 소규모 적에 대한 방어적인 기능과 주둔군의 모습도 사료에서 보이는데, 이 점에서 戍는 烽燧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 다. 戍가 烽燈條가 아닌 關防條에 수록된 이유도 방어를 위해 駐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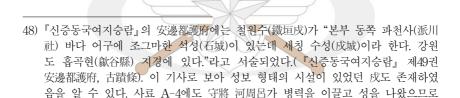
<sup>47)</sup> 이 시기 營鎭戍所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車勇杰,「高麗末 倭寇防守策으로서의 鎭戍와 築城」,『史學研究』38, 韓國史學會, 1984, 129~157等.

최종석, 「고려말기 지역방어체제와 그 시대성」, 『역사와 현실』85, 한국역사연구회, 2012, 305~348쪽.

그런데 고려전기의 戌와 고려말기의 戌는 차이가 있다. 고려 전기의 수는 양계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본성인 주진성과 연계된 보조적 방어시설이고, 고려말기의 수는 연해지역에 설치되어 주변 성곽과 연계되지 않은 채 그 자체로만 존립하였다(최종석, 위논문, 2012, 312쪽).

軍이 존재하고, 城柵과 城堡가 존재했기 때문일 것이다.48) 시간적으로도 烽燧는 戍보다 뒤의 시기에 설치되므로 戍와 烽燧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는 없다.49) 하지만 동해안의 경우 바다로부터 침입하는 적을 감시한다는 점에서 戍나 烽燧는 그 입지가 서로통할 수 있다.50) 이러한 입지의 특성 때문에 戍 가운데 병선이 정박 가능한 일부 戍는 후대에 왜구를 막기 위한 水軍浦鎭(萬戸鎭)이되었고,51) 일부의 戍는 감제와 봉화를 하기에 유리한 까닭에 烽燧體制에 편입되었다. 이와 반대로 동해안에서 (浦)鎭을 중심으로 하는 水軍 위주의 방어체제와 沿邊烽燧體制에 포함되지 못한 나머지戍들은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出城] 성보시설이 있었을 것이다.

<sup>49)</sup> 봉수체제는 고려시대 의종 3년(1149)에 서북면 병마사 조진약의 상주에 의하여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하되 평상시에는 한 번씩 올리고 2급에는 2 거, 3급에는 3거, 4급에는 4거씩 올렸다. 봉수대에는 防丁2명, 白丁 20명을 두고 각각 평전 1결을 주도록 하였다(『高麗史』卷八十一 志 卷第三十五 兵一 兵制 五軍條, 西北面兵馬使 曹晉若奏, "定烽獲式, 平時, 夜火晝烟各一, 二急二, 三急三, 四急四, 每所防丁二・白丁二十人, 各例給平田一結.") 주둔군의 표현이 없고, 2개조로 운영된다고 보면, 방어를 위해 군사가 주둔한 모습은 아니다.

<sup>50)</sup> 고려 말~조선 초에 萬戶가 포진-봉화를 모두 관리하고, 동해시 어달동 봉화와 망상동 심곡리 산성 간에 연락체계가 있었다는 전설도 참고가 된다.

<sup>51)</sup> 그러한 사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萬戶가 책임자로 있는 成들을 많이 찾을 수 있고, 戍가 營鎭城이 되는 사례도 있어 방증이 된다. 이 점에서 삼척의 오화리산성도 필자의 주장(홍영호,「오화리산성의 고고학적 검토에 대한 토론」,『寥田山城 學術세미나』, 삼척문화원, 2002, 33~48쪽)처럼 桐津戍였다가 三陟浦鎭으로 되었을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있다.

# 5. 맺음말

이 글의 목적은 고려시대 동해안 지역인 東界의 관방 유적인 戍를 찾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자는 사료, 지리지, 문집, 고지도 등 문헌 자료에서 戍에 관한 단서를 추적하 였고. 현장 조사를 통해 戍의 실체를 규명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리하여 문헌 자료에서는 주요 지리지의 烽燧條에서 東界 지역의 戍가 관련이 있음을 간취하였고, 채록 자료도 검토하여 戍로 볼수 있는 유적을 찾아내었으며, 古지도인「東興圖」등에 표기된 戍의 입지를 참고한 후, 戍로 추정되는 유적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확인하였다. 그 결과 戍로 볼 수 있는 유적들의 공통점을 찾게 되었고. 東界 지역 戍의 입지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재 파악된 東界 지역 成의 위치와 입지로 보아 그 성격과 기능은 바다로부터 쳐들어오는 소규모 적에 대한 감사·통제·방어를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成의 분포가 후대에 만들어지는 烽燧址와 일치하는 곳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입지는 사료에서 成가 東女真의 침입과 관련되는 관방 유적임을 말해주듯이 바닷가 연변의 산이나 곶과 같은 지점에 위치하여 바다를 조망하기에 유리하였고, 소규모의 군대가 주둔하여 방어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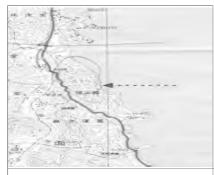
고려 전기의 成는 이후 고려후기·말기~조선초기를 거쳐 왜구를 막기 위하여 水軍浦鎭체제가 확립되면서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좋은 포구를 가진 戍의 경우 水軍浦鎭으로 발전하였고, 일부는 동해안의 沿邊烽燧체제에 포함되었으며, 그 속에 포함되지 못한 戍들은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 66 | 軍史 第99號(2016. 6)

[원고투고일: 2016.4.2, 심사수정일: 2016.5.21, 게재확정일: 2016.5.23.]

주제어 : 동계(東界), 수(戌), 봉수(烽燧), 강릉(江陵), 간성(杆城)





〈지도 1〉 고성 마차진리 봉수지(戍山烽燧, 寧波戍) 도엽번호 NJ52-6-10 고성, 1:50,000 (1996년 8월 인쇄)



〈지도 2〉 고성 정양산 봉수지(正陽戍烽燧) 도엽번호 NJ52-6-17 간성, 1:50,000 (1997년 6월 인쇄)



〈지도 3〉 삼포리 봉수지[죽도(산)봉수]와 죽도의 위치 - 봉수동 지명 있음. 육사박물관, 2003, 127쪽 도면에 추기: 삼포리 봉수지[죽도(산)봉수지](⇨), 죽도(ㅇ)]



〈지도 4〉 강릉 사화산봉수(沙火戍) 도엽번호 NJ52-10-05 강릉, 1:50,000 (1990년 6월 인쇄)



〈지도 5〉 강릉 해령산봉수(海令戍) 도엽번호 NJ52-10-12 구정, 1:50,000 (1990년 6월 인쇄)









「東輿圖」의 正陽山(正陽戍烽燧)(下)



삼포리 봉수지[죽도(산)봉수]와 죽도산 위치도 - 육지의 산에 표시됨.

- \* 삼포리 봉수지[竹島(山)烽燧](分)、古烽臺距邑二十里南應襄陽德山山名竹島山.
- \* 정양산 봉수지[正陽戍烽燧](今), 古烽臺距邑二十里山名正陽山. \* 마차진리 봉수[戍山烽燧]는 표기되어 있지 않음. (서울대학교 규장각(편), 2000, 『조선후기 지방 지도(강원도·함경도편)』, 1872년경).







〈도판 2〉 고성 戍山봉수(寧波戍) 원경 (왼쪽은 동해, 오른쪽 고개가 쑥고개임)



〈도판 3〉 삼포리 봉수지[죽도(산)봉수]의 석축단(연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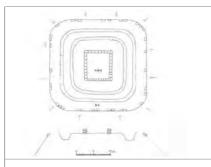
〈도판 4〉 삼포리 봉수지[죽도(산)봉수]의 석축단(연대시설) 하부 기와혼입층



〈도판 5〉 삼포리 봉수지[죽도(산)봉수]의 기와편 노출 상태



〈도판 6〉 삼포리 봉수지[죽도(산)봉수] 수습 기와편



《도판 7》 삼포리 봉수지[죽도(산)봉수] 실측도 추정 복원도(지현병, 1995,「高城郡의 關防遺蹟」,『高城郡의 歴史와 文化遺蹟』, 江陵大學校 博物館 學術叢書 10册, 125쪽)



〈도판 8〉 강릉 사화산봉수지(沙火戍) 근경



〈도판 9〉 강릉 사화산봉수지(沙火戍)와 서낭당



〈도판 10〉 강릉 사회산봉수지(沙火戍)에서 본 동남쪽 바다



〈도판 11〉 강릉 사화산봉수지(沙火戍) 앞 바닷가의 교문암



〈도판 12〉 강릉 해령산봉수지(海令戍) 원경

<ABSTRACT>

# A study on the frontline guard post[Soo, 戌] in Eastern frontier province[Donggye, 東界], Goryeo Dynasty

Hong, Young-Ho

Eastern Seaside of Gangwon province is organized as Eastern frontier province[東界] as military zones in the Goryeo Dynasty. Therefore many military sites exist, and the frontline guard post, called Soo[戍] are distributed. But the location and function of these sites are not clear. This article is revealing location and function of these sites.

I conducted a extensive literature search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verified by field survey. As a result, these sites are defined as a frontline guard post and played a role of function in monitoring and preventing the enemy[東女真, Jurchen pirates] invading through the sea in early Goryeo Dynasty. Therefore, these site is located on the promontory and mountain of the beach.

Some of these sites became reused as a signal fire station to protect its area from the invasion of Japanese Pirates[倭寇] from late Goryeo Dynasty to early Joseon Dynasty.

Key words: Donggye[Eastern frontier province], Soo[frontline guard post], Eastern Jurchan pirates, signal fire station, Gangreung, Ganseong

## 고려후기의 영토분쟁

- 쌍성총관부와 동녕부를 중심으로 -

신 안 식\*

- 1. 머리말
- 2. 원 직할령의 형성
- 3. 영토수복 활동
- 4. 맺음말

### 1. 머리말

고려의 대몽전쟁기(1231~1270, 고종 18~원종 11) 지방사회의 저항이 대정부·대몽골이라는 이중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반면, 전쟁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주목되는 사실은 투몽(投蒙) 현상이었다. 대몽전쟁기의 저항에는 일반 민의 유망(流亡)과 농장으로의 투탁(投託) 등도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이는 강도(江都) 정부의 가혹한 수탈과 산성·해도입보책(山城·海島入保策)과 같은 대몽항쟁

<sup>\*</sup>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전략에 대응한 행위였다. 이에 비해 민의 투몽 행위는 항쟁의 왜곡된 표현이기도 하였으나,1) 토지탈점으로 인한 토지 소유관계의 변화와2) 대몽전쟁 수행을 위한 과중한 부세수탈을 피하고 생활의 근거지인 지방사회를 보호하려는 민의 자위적 대응이었다는3) 점 또한 지적되었다. 결국 투몽 행위는 몽골의 고려 통제방식과도 관련되어 원나라 지역으로 인구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대몽전쟁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고려 중앙정부에 반기를 든세력들이 몽골에 직접 투항하였고, 이는 원나라 직할령을 배태한결과를 가져왔다. 고려의 영토로서 원나라 직할령이 되었던 지역은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4)·동녕부(東寧府)5)·탐라총관부(耽羅摠管府)6) 등이다. 이들 지역이 주목되는 것은 원나라 직할령일 뿐만아니라 쌍성총관부와 동녕부는 북방지역으로 이후 고려와 원나라의변경문제로도 연결되었다는 접이다. 또한 쌍성총관부의 설치가 고려의 항복으로 대몽강화교섭이 이루어지는 초기였다는 사실과 동녕부가 무인정권의 몰락 및 삼별초 항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원나라직할령이 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들 지역은 북방으로부터 국도(國都) 개경(開京)을 보위하는 중요한 지역이었고, 이를 직할령으로삼았다는 것은 고려 중앙정부의 본토 장악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고 하겠다.7)

<sup>1)</sup> 투몽에 대해서 尹龍爀은 민생과 관련된 民擾的인 성격이며 항몽 전열을 약화시키고 적의 침략전쟁 수행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변태적인 형태의 저항사건으로 파악하였다(「高麗 對蒙抗爭期의 民亂에 대하여」,『史叢』 30, 1986, 53~55쪽).

<sup>2)</sup> 姜晋哲,「高麗의 權力型 農莊에 대하여」,『韓國中世土地所有研究』, 1989, 205~209쪽.

<sup>3)</sup> 申安湜, 『高麗 武人政權과 地方社會』, 景仁文化社, 2002, 273~280\.

<sup>4) 『</sup>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5년 12월 기축.

<sup>5) 『</sup>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11년 2월 정축.

<sup>6) 『</sup>고려사』 권27, 세가27, 원종3, 원종 14년 윤6월 병진.

<sup>7)</sup> 쌍성총관부와 동녕부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에서 자세히 언급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양계(兩界) 지역에 설치되었던 쌍성총관부와 동녕부의 설치와 수복 과정에서 나타난 고려왕조의 영토의식을 살펴보려고 한다. 북방지역의 영토분쟁은 고려전기 성종~현종대의 거란 침략과 고려중기 숙종~예종대의 여진 정벌 등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대외적 영토분쟁의 경험은 원 간섭기의 직할령 설치와 수복 과정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원 간섭기의 영토분쟁에 대한 이해는 고려왕조의 영토의식과 국경의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8)

## 2. 원 직할령의 형성

#### 가. 쌍성총관부

쌍성총관부는 1258년(고종 45) 12월 조휘(趙暉)·탁청(卓靑) 등이 몽골에 투항함으로써 이루어졌다.9) 이들이 투항하게 된 배경은 고려의 대몽항쟁의 전술에서 비롯되었다. 고종 45년 몽골의 산길 대왕(散吉大王) 등이 몽골 군사를 이끌고 동북면 일대를 침입했을때 동북면병마사 신집평(愼執平)은 고주(高州)·화주(和州)·정주(定

<sup>8)</sup> 이 글은 필자의 고려시대 강역 연구(「고려시대의 강역」,『한국군사사』 11, 육군 군사연구소, 2012, 251~351쪽) 중에서 원간섭기 북방영토에 대한 내용을 수정 보 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sup>9)</sup> 쌍성총관부에 관한 연구 성과로는 다음 논문들이 주목된다. 方東仁,「雙城摠管府 考(上)」,『關東史學』1, 1982; 方東仁,「東寧府置廢小考」,『關東史學』2, 1984; 金九鎮,「麗元의 領土紛爭과 그 歸屬問題 - 元代에 있어서 高麗本土와 東寧府 · 雙城總管府 · 耽羅總管府의 分離政策을 중심으로」,『國史館論叢』7, 국사편찬위원회, 1989; 方東仁,「麗 · 元 關係의 再檢討 - 雙城摠管府와 東寧府를 중심으로」,『國史館論叢』17, 국사편찬위원회, 1990; 周采赫,「몽골 · 고려사 연구의 재검토」,『國史館論叢』8, 국사편찬위원회, 1989; 이정신,「쌍성총관부의 설립과 그 성격」,『韓國史學報』18, 2004.

州)·장주(長州)·의주(宜州)·문주(文州) 등 15주의 주민들을 저도 (豬島)로 옮겼으나, 저도의 성이 크고 사람은 적어 수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죽도(竹島)로 옮기려 하였다. 그러나 죽도는 너무 좁고 또 우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옮겨 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신집평이 강제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쳤기 때문에 죽도로 옮겨간 사람은 10명 중 2~3명에 불과하였다. 한편 죽도로 이주한 자들은 식량이 부족하여 중앙정부에 식량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식량을 운반해 오도록 독촉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평이 심해지고 군사들의 수비도 해이해지자 이 틈을 타서 조휘·탁청 등이 삭방도 (朔方道)의 등주(登州)와 문주(文州) 등의 사람들과 모의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급기야 몽골에 투항까지 하였던」이 것이다. 이후 조휘·탁청은 몽골로부터 총관(總管)과 천호(千戸)로 각각 임명되었다.

조휘는 본래 한양부(漢陽府) 사람이었고, 뒤에 용진현(龍津縣)으로 옮겨온 인물이다.<sup>11)</sup> 조휘가 한양부에서 용진현으로 옮겨간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무인집권기의 시대상을 고려해 볼 때, 유민(流民)의 발생과 중앙에 의한 지방사회의 통제 강화, 재지세력 간의 지방사회 주도권 쟁탈 등과 같은 재지질서의 변동에서 밀려난 인물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또한 조휘가 용진현으로 옮겨가긴 했지만 이 지역의 재지세력에 의해 차별 받았을 것으로도<sup>12)</sup> 여겨진다. 탁청 역시 자세한 이력을 알 수 없지만, 조휘와

<sup>10) 『</sup>고려사절요』 권17, 고종 45년 10월.

<sup>11) 『</sup>고려사』 권130, 열전43, 반역4, 조휘.

<sup>12)</sup> 재지사회에서 이탈하여 타 지역으로 옮겨간 사례 중에 그 지역 사람들의 반감을 받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5년 5월, "是月 盗起横川 殺横及洪川二縣民三十餘人 初 横川民屎加大 有八子一壻 居山谷閒九人漁獵以生 洪・横人 疾之 訴於道內巡行夜別抄指揮 請捕之 至其家 會九人出獵 惟取父母妻子 盡殺之 於是 九人謀報讎 遂起爲盗 至忠淸道 夜涉簞淺 疑爲狄兵朝野驚擾 使夜別抄探之 乃知").

비슷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런데 조휘·탁청이 몽골에 투항했던 고종 45년 12월이 시기적 인 면에서 주목된다. 우선 고종 45년 3월에 대사성 유경, 별장 김 인준 등이 집정자 최의를 제거함으로써 최씨정권이 무너졌고.13) 이를 기회로 몽골의 대대적인 침략이 감행되기에 이르렀다. 몽골은 4대 헌종(憲宗. 1250~1259. 고종 37~46)이 즉위하면서. 고려에 대한 적극적인 침략을 가해 왔다. 특히 고종 45년 3월 최씨정권의 몰락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몽골의 침략은 더욱 강렬했다. 고종 45 년 4월에 몽골 군사 척후 기병 1.000명이 수안(涿安) 경내에 침입 하였고.14) 몽골 장수 여수달(余愁達)과 보파대(甫波大) 등이 각각 기병 1.000명을 커느리고 와서 가주(嘉州)와 곽주(郭州)에 진을 쳤 으며, 15) 이어서 몽<mark>골 군사</mark>의 척후 기병이 서경(西京)을 지났다고 하므로 강도(江都)에 계엄령을 내렸는가 하면 16) 몽골 군사가 염주 (鹽州)와 백주(白州) 등 고을에 들어오고 여수달은 평주 보산역(平 州 寶山驛)에 진을 치기도17) 했다. 또한 몽골의 주력 부대를 이끈 차라대(車羅大)는 옛 서울 개성에 주둔하였는데 일부 기병들이 승 천부(昇天府) · 교하(交河) · 봉성(峯城) · 수안(守安) · 동성(童城) 등지에 침입하여 주민들의 양과 말을 약탈하였고.18) 몽골 기병과 군사들 이 갑곶(甲串)에 진을 치기도19) 하였다.

이와 같은 몽골의 기세는 강도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을 뿐만 아니라 국왕과 무인정권에서도 몽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sup>13) 『</sup>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5년 3월 병자.

<sup>14) 『</sup>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5년 4월 신축.

<sup>15) 『</sup>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5년 6월 기축.

<sup>16) 『</sup>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5년 6월 경자.

<sup>17) 『</sup>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5년 6월 갑진.

<sup>18) 『</sup>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5년 8월 경인.

<sup>19) 『</sup>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5년 9월 임자;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 3, 고종 45년 9월 경오.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이런 상황을 더욱 압박했던 것이 조 위·탁청 사건이었다.

몽골 장수 차라대 부대에 이어서 또 다른 주력부대를 이끈 산길 대왕과 보지관인(普只官人) 등이 화주(和州)에 주둔하게<sup>20)</sup> 되었다. 이 때 조휘·탁청이 화주 이북을 들어 몽골에 투항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몽골에서는 곧바로 이 지역을 쌍성총관부로 만드는 동시에 조휘에게는 총관, 탁청에게는 천호라는 벼슬을 내려주었다. 그런데 원나라 기록에서는 조휘·탁청을 찾아볼 수 없다. 대몽전쟁시기에 고려 영토를 원나라의 직할령으로 만든 최초의 사건이었고, 이 지역이 공민왕대에 고려로 탈환될 때까지 약 100년 가까이 직할령으로 있었지만 원나라 기록에서 이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몽골은 1231년(고종 18)에 고려 침략을 개시한 이래로 약 27년 동안 줄기차게 침략해 왔지만, 고려 중앙정부를 좌우하던 무인정권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지 못했다. 하지만 최씨정권의 마지막 집정자 최의가 제거 당함으로써 무인정권의 권력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런 상황은 몽골에게 고려 국왕과 무인정권을 강하게 압박할 수있는 기회였다. 그 결과 강도 정부는 1259년(고종 46) 몽골에 항복하게 되었고, 고려의 태자가 직접 몽골 조정으로 친조(親朝)하게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다면 조휘·탁청이 몽골에 투항하여 고려 영토를 쌍성총관부로 삼았다면, 그 관할 영역이 어디였는지가 궁금해 질 수밖에 없다. 쌍성총관부 관할 영역은 고려의 동북 변경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이는 곧 예종대 유관이 개척한 9성의 위치와도<sup>21)</sup> 연결된다.

<sup>20) 『</sup>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5년 12월 기축.

<sup>21) 9</sup>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두만강 북쪽 700리설(『고려사』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方東仁,『韓國의 國境劃定연구』, 一潮閣, 1997, 115~175쪽; 金九鎭, 「公嶮鎭과 先春嶺碑」,『白山學報』21, 1976), 길주이남설(韓百謙, 『東國

동계 지역과 관련된 지리적 동향은 〈표 1〉과 같다.

〈표 1〉동계 지역의 지리	1석 농향
----------------	-------

사건	지 명
고려장성의 동계	요덕진·정변진·화주
예종 3년 9성	함주 · 영주 · 웅주 · 복주 · 길주 · 의주 · 공험진 · 통태진 · 평융진
예종 4년 女眞 반환	함주 · 영주 · 웅주 · 복주 · 길주 · 숭녕진 · 통태진 · 진양진 · 선화진
고종 45년	쌍성총관부 설치
공민왕 5년 수복	화주 · 등주 · 정주 · 장주 · 예주 · 고주 · 문주 · 의주 · 선덕진 · 원흥진 · 녕인진 · 요덕진 · 정변진 등

※ 이 도표는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동계조를 참고하여 정리함.

《표 1》에서 보면, 고종 45년 12월 조휘·탁청이 몽골에 투항한 이후 몽골은 화주에 쌍성총관부를 세웠다고 하였지만, 그 관할 지역이 자세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공민왕 5년에 쌍성총관부를 탈환했을 때 수복한 지명들이 확인되는데, 화주·등주·정주·장주·예주·고주·문주·의주·선덕진·원흥진·영인진·요덕진·정변진 등이었다. 그 외의 지역으로 『고려사』지리지 동계조에서 함주·복주·길주·북청주부 등이22》확인된다. 이 중에서 문주·등주·고주·화주·장주·정주·요덕진·영인진·선덕진·원흥진 등은 역참(驛站) 지역으로23) 동계의 교통 요지였다.

地理志』; 柳馨遠, 『旅菴全書』 疆界考; 申景濬, 『疆界考』 東女眞 9성조; 丁若鏞, 『疆界考』; 金正浩, 『大東地志』), 함·홍평야설(津田左右吉, 「尹瓘征略地域考」, 『朝鮮歷史地理』, 東京 南蠻州鐵道株式會社, 1913; 池内宏, 「完顔氏の曷懶甸經略と尹瓘の九城の役」,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9, 1923) 등이 있고, 최근에는 이 지역을 직접 답사하여 두만강 북쪽에 위치를 비정한 연구도(최창국, 「선춘현과 공험진: 고지도 및 『세종실록』 『지리지』를 바탕으로」, 『안보문화와 미래』 창간호, 한국미래문제연구원, 2008) 있다.

<sup>22) 『</sup>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동계.

<sup>23) 『</sup>고려사』 권82, 지36, 병2, 참역, 삭방도.

쌍성총관부의 치소였던 화주는 개경에서 '장단→동주→교주→ 철령→등주→화주'로 이어지고, 서쪽으로 '화주 →서경→의주(義 州)'로 연결되는 동계 지역의 교통 요충지였다. 또한 화주는 북쪽으 로 장주와 정주를 거쳐 동북쪽의 여진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기도 하였다. <sup>24)</sup> 이들 지역은 개성에서 동북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산악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방어에 취약하였다.

양계	역도	성곽	넓이 (間)	문	수구	성두	차성	첩원 (間)	중성 (間)	연대	주진군					
		장평진	535	4						광종 20	672					
		화주	1,014	6	3				180	광종 24	1,656					
		고주	1,016	6					1	광종 24	1,158					
		문주	578	6		Cost		10		성종 3	1,088					
		진명현	510	5	000	YPM	1			목종 8	495					
   동	샄	금양현	768	6		1/1			,	목종 8	541					
=	의 방	용진진	501	6		1	1	-		목종 9	517					
   계	5 도	등주	602	14	2	7				목종 11	1,396					
'11	_ [	의주	652	5	50		3			현종 7	827					
		요덕진	634	6	16		1			현종 14	1,039					
			장주	575	戍 6	静北・高	高嶺・掃	兇・掃	蕃・壓川	定遠	정종 10	1,449				
								정주	809	戍	5 防戍	·押胡·	·弘化·	大化・	安陸	정종 10
		원흥진	683		戍 4 🤻	降・壓	虜・海	門・道安	2	정종 10	1,425					
		영흥진	424	4						정종 12	619					
평 균	군(약)		664	6							1,057					

〈표 2〉 삭방도의 성곽 시설과 주진군25〉

《표 2》에서 보면, 삭방도 지역의 성곽은 북계(北界)의 성곽과는 규모 면에서는 비슷하였지만 성곽 시설과 주진군의 인원수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26) 그것은 운중도(雲中道)와 삭방도 지역이

<sup>24)</sup> 원 간섭기에 들어가면 화주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정주 → 함주 → 황초령 → 강계 → 만포' 등 원나라로 통하는 새로운 驛路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sup>25)</sup> 동계 주진군의 현황은 行軍의 인원수가 적혀 있지 않고 기록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추정치가 근사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표 2>의 주진군은 基幹常備軍을 중심으로 계산하였다(李基白, 「高麗 兩界의 州鎭軍」,『高麗兵制史研究』, 1968, 250~253쪽).

<sup>26)</sup> 신안식,「고려시대 兩界의 성곽과 그 특징」,『軍史』 6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오늘날의 함경도 일대로서 평야보다는 산악 지역이 많이 분포했고,<sup>27)</sup> 삭방도 지역은 동여진과의 접경 지역이었으므로 흥화도(興化道) 지역보다 방어적인 면에서 중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장평진·진명현·용진진·금양현·원흥진의 성곽은 해안과 인접한 거리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해적의 침공을 대비하였던<sup>28)</sup> 것으로 이 해된다. 이는 "문종이 임금이 되자 병부낭중 김경을 파견하여 동해 로부터 남해에 이르기까지 그 연해에 성보(城堡)와 농장을 만들어 해적 침공의 요충을 장악하게 하였다."라는<sup>29)</sup> 기록을 통해서도 이 들 지역의 역할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주성은 해적 소탕에도 일조 하였다.<sup>30)</sup>

화주·고주의 성곽은 광종대에 축조되었는데, 이것들은 삭방도 지역의 다른 성곽보다 규모 면에서 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화주는 995년(성종 14)에 화주안변도호부(和州安邊都護府)로 고쳤다가, 1018년(현종 9)에 낮추어서 화주방어사(和州防禦使)로 만들어 본영

<sup>27) 『</sup>고려사』 권7, 세가7, 문종1, 문종 8년 8월 경신, "東路兵馬使奏 長州地高且險 城中無井 乞令設柵南門外平地 徙民居之 有急入城 從之"

<sup>28) 『</sup>고려사』 권7, 세가7, 문종1, 문종 4년 1월 기축, "放朝賀 東北面都兵馬使朴成傑奏 上年十月 海賊 奪鎭溟兵船二艘而去 兵馬錄事文揚烈 即率兵船 與元興都部署判官宋齊罕 追至賊穴 焚蕩盧舍 斬馘二十級而還 其功可賞 制 付都兵馬使";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2, 문종 22년 7월 정유, "東界兵馬使奏 判官任希悅 都部署副使裴行之 元興鎭副使石秀珪等 又巡椒島 夜至閻羅浦 遇賊船艘 擊破三艘 餘賊登岸奔潰 追斬三十餘級 王厚加爵賞"; 『고려사』 권9, 세가9, 문종3, 문종 27년 6월 병신, "兵馬使奏 東蕃海賊 寇東京轄下波潛部曲 奪掠民口 元興鎭都部署軍將 率戰艦數十艘 出椒島與戰 斬十二級 奪俘十六人 王喜 賜知兵馬事秘書監李成美 領軍都部署將軍廉漢等 銀藥合各一事 其餘有功將吏 職賞有差"; 『고려사』 권11, 세가11, 숙종1, 숙종 원년 6월 갑술, "鎭溟都部署使 文州防禦判官李順蹊等 與海賊戰 敗之斬首十七級"; 『고려사』 권11, 세가11, 숙종1, 숙종 2년 7월 임신, "東女眞賊船十艘 寇鎭溟縣 東北面兵馬使金漢忠 遣判官姜拯 與戰克之 獲船三艘 斬首四十八級"

<sup>29) 『</sup>고려사』 권82, 지36, 병2, 성보.

<sup>30) 『</sup>고려사』 권11, 세가11, 숙종1, 숙종 원년 6월 갑술, "鎮溟都部署 使文州防禦判官 李順蹊等 與海賊戰敗之 斬首十七級"

(本營)으로 삼았을 정도로<sup>31)</sup> 삭방도 지역의 중심이었다. 또한 요덕 진성은 삭방도에서 운중로(雲中路)로 가는 길목에<sup>32)</sup> 자리 잡고 있 었다.

'고려장성(高麗長城)'이 축조된 이후 정종대에는 정주·선덕진·원 흥진에 관문을 설치하였고,<sup>33)</sup> 장주·정주·원흥진에는 보자(堡子)인수(戌)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성곽들의 축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아니었고<sup>34)</sup> 방어력의 효율성을 중요시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점은 1108년(예종 3) 윤관의 여진 정벌에서 그 효율성을 잘 보여주었다. 이때의 정벌군 17만이 주둔한 곳이 장춘역으로<sup>35)</sup> 장주 소속이었다. 장주는 〈표 2〉에서도 볼 수 있듯이 6개의 수(戌)가설치되었고, 정벌군이 북방 지역으로 나아가는데 이용된 관문이 정주였다.

함주·복주·길주·북청주부 등은 1356년(공민왕 5) 쌍성총관부를 탈환했을 때 같이 수복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일찍이 예종대의 윤관이 개척한 9성에도 포함되었던 지역들이다.<sup>36)</sup> 이들 지역은 여 진에게 반환된 지역이었지만, 원 간섭기에는 쌍성총관부의 관할 지 역으로 편성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두만강 북쪽 지역으로

<sup>36)</sup> 예종대의 9성은 다음과 같다.

성곽	咸州	英州	雄州	福州	吉州	宜州	公險鎭	通泰鎭	平戎鎮
규모(間)		950	992	774	670				
徙民(戶)	13,000	10,000	10,000	7,000	7,000	7,000	5,000	5,000	5,000
기타	鎭東軍	安嶺軍	寧海軍				鎭	鎭	鎭

<sup>31) 『</sup>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동계, 화주.

<sup>32) 『</sup>고려사』 권100, 열전13, 두경승, "景升 踰鐵關從耀德 雲中路行 所至風靡"

<sup>33) 『</sup>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동계, "前此 朔方道以都連浦爲界築長城 置定州 · 宣 徳 · 元興三關門"

<sup>34) 『</sup>고려사』 권6, 세716, 정종 10년 11월 을해, "兵馬使金令器奏 今築長 · 定二州及 元興鎭城 不日告畢勞效甚多"

<sup>35) 『</sup>고려사절요』 권7, 예종 2년 12월 을유, "瓘 · 延寵至東界 屯兵于長春驛 軍凡十 七萬 號二十萬"

나아가는 중요 교통로였을 것으로도 생각된다.37)

따라서 화주를 중심으로 한 쌍성총관부는 고려의 동북 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고려의 중앙정부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도피처로도 이용되었다. 고려의 입장에서는 영토 상실과 외세의 지리적 압박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공민왕 5년 고려장성 북쪽의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도 작용했다고 하겠다.

#### 나. 동녕부

쌍성총관부에 이어서 몽골의 직할령이 되었던 지역이 동녕부였다. 38)이 사건은 1269년(원종 10) 10월에 서북면의 최탄(崔坦)과한신(韓愼)등이 반란을 일으켜 몽골로 투항함으로써 39)이루어졌다.이 시기에는 이들 뿐만 아니라 삼화현인 교위 이연령(三和縣人校尉李延齡)·정원도호낭장 계문비(定遠都護郎將 桂文庇)·연주인현효철(延州人 玄孝哲)등이 '무진정변(戊辰政變)'40)으로 집권한

<sup>37)</sup> 鄭枖根, 『高麗 · 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08쪽.

<sup>38)</sup> 동녕부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方東仁,「東寧府置廢小考」,「關東史學』 2, 1984; 朴煌, 「高麗末 東寧府征伐에 대하여」,『中央史論』 4, 중앙대학교사학연구회, 1985; 金九鎭,「元代 遼東地方의 高麗軍民」,『李元淳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교학사, 1986; 金九鎭,「麗・元의 領土紛爭과 그 歸屬問題 - 元代에 있어서 高麗本土와 東寧府・雙城總管府・耽羅總管府의 分離政策을 중심으로」,『國史館論叢』 7, 국사편찬위원회, 1989; 方東仁,「麗・元關係의 再檢討 - 雙城總管府와 東寧府를 중심으로」,『국사관논총』17, 1990; 이정신, 「원간섭기 동녕부의 존재형태」,『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 金潤坤教授定年紀念論叢』,韓國中世史學會, 2001; 이정신, 『고려시대의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경인문화사, 2004; 池内宏,「高麗恭愍王朝の東寧府征伐に就いての考」,『東洋學報』 8-2, 東洋學術協會, 1918.

<sup>39) 『</sup>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10년 10월 을해; 『고려사』 권26, 세가26, 원 종2. 원종 10년 10월 경자.

<sup>40)</sup> 임연에 의해 김준이 제거 당한 시기가 1268년(원종 9) 곧 '무진년(戊辰年)'이란

임연(林衍)의 처단을 내세우며 저항을41) 일으켰다. 이들은 재지세력의 일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연주인 현효철은 일찍이 명종대에조위총이 저항을 일으켰을 때 조위총 세력에 끝까지 가담하지 않고 저항하여 무인정권의 포상을 받았던 현덕수(玄德秀) 일족으로42) 파악된다. 그런데 연주인이 임연정권에 대한 저항에 가담하였던 것은 대몽전쟁기 지방사회의 황폐화 및 몽골과의 긴장관계에 따른 새로운 전쟁의 조짐에 맞선 지방사회의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최탄 등이 저항을 일으킨 시기는 임연의 원종 폐립에 따른 몽골의 압력이 가중되어 전쟁 기운이 감돌던 시점이었다. 이들은 용강(龍岡)·함종(咸從)·삼화현(三和縣)의 사람들을 모아 함종현령 최원(崔元)을 죽이고, 밤에 가도(假島)의 군영에 들어가 분사어사 심원준(沈元濬)·감창 박수혁(朴守奕)과 경별초(京別抄) 등을 죽였다. 이들이 처단한 지방관과 경별초는 무인정권의 전국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자들이다. 이로 볼 때 이들의 저항은 무인정권의 정국 운영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다시 서경유수 및 용주·영주·철주·선주·자주 등 5개 주의 관리들을 죽이고 의주부사 김효거(金孝巨) 등 22명을 붙잡아 몽골에 투항하였다. 43) 이들이 투항하자 몽골은 이들 지역에 동녕부를 설치하여 44) 무인정권을 압박하고 고려 국왕을 견제하는 방편으로 이용하였다. 45) 동녕부는 쌍성총관부와 더불어 고려 내정이 문란한 틈을타서 역(役)을 회피하려는 자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자의

점에서 이 정변을 '무진정변(戊辰政變)'이라고도 한다.

<sup>41) 『</sup>고려사절요』 권18, 원종 10년 10월.

<sup>42) 『</sup>고려사』 권99. 열전12. 현덕수.

<sup>43) 『</sup>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10년 10월.

<sup>44) 『</sup>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11년 2월 정축.

<sup>45)</sup> 주채혁, 「몽골—고려사 연구의 재검토」, 『國史館論叢』 8, 국사편찬위원회, 1989, 45쪽.

도피처로서 이용되기도 하였다. 46) 물론 최탄 등의 투몽은 지배층의 수탈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민의 투몽과는 구별되었지만, 이들이 혼란스런 고려사회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했다는 점은 무인정권 붕괴와 저항세력들의 동향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몽골에서는 이들 지역을 곧바로 동녕부로 삼았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몽골의 행중서성(行中書省)에서<sup>47)</sup> 관리했다. 이 때 몽골에 편입된 지역이 서경의 54개 성과 서해도의 6개 성이었다.<sup>48)</sup> 이런 점은 앞서 동계의 조휘·탁청 등이 항복했을 때 곧바로 쌍성총관부를 설치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고려와 몽골의 강화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쟁점이 개경으로의 출륙환도(出陸環都)였다. 때문에 쌍성총관부의 설치는 개경과 멀리 떨어진 동북 지역을 직할령으로 삼음으로써 강도정부를 간접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결과 고종 46년에 고려의 항복뿐만 아니라 태자의 입조도 성사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하지만 김준정권과 임연정권은 최씨정권의 대몽항전을 계속 유지했던 반면, 국왕 원종은 몽골과 더욱 밀착하려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원종 11년에 "최탄이 몽고 군사 3,000명을 청하여 서경으로 와서 진수하였다. 황제는 최탄과 이연령에게 금패(金牌)를 현효철과한신에게는 은패(銀牌)를 차등 있게 주었고, 조서를 내려 직접 몽골에 속하게 하되 서경을 동녕부라 개칭하여 자비령(慈悲嶺)을 고려와 국경으로 삼았다."라고49) 했듯이, 최탄이 몽골 군사 3,000명을 진수시키는 동시에 몽골의 직할령으로 하되 그 명칭을 이 때 와서

<sup>46) 『</sup>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11월 윤11월.

<sup>47)</sup> 행중서성은 행성(行省)이라고도 했는데, 본래 중앙의 정무기구인 중서성의 재상이 지방에 파견되어 임시로 사무를 처리한 것에서 기원하였다. 최고 관직인 승상은 종1품이다.

<sup>48) 『</sup>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10년 12월 신묘.

<sup>49) 『</sup>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11년 2월 정축, "崔坦請蒙古兵三千 來鎭西京 帝賜崔坦李延齡金牌 玄孝哲韓愼銀牌有差 詔令內屬 改號東寧府 畫慈悲嶺爲界"

동녕부로 바꿨음을 알 수 있다.

쌍성총관부에 이어서 동녕부의 설치는 국왕 원종 및 무인정권에 게는 상당히 위기적인 상황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이런 점은 원종 11년 2월에 동녕부가 설치된 이후 같은 해 5월에 무인정권 붕괴50) 및 삼별초 해체<sup>51)</sup> 등 일련의 정치적인 상황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리라 판단되는 근거이다.

결국 쌍성총관부와 동녕부의 설치는 고려 내부의 혼란을 틈탄 재지세력의 자진 투항 및 몽골의 대고려 압박정책 등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곧 대몽전쟁의 실패로 인한 영토의 상실이었고, 무인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왕권의 회복을 원나라에 의지한 결과였던 것이다.

## 3. 영토수복 활동

#### 가. 동녕부의 복구

원나라 직할령으로써 가장 먼저 수복된 지역은 동녕부였다. 직할 령이 된 시기는 쌍성총관부보다 늦었지만 원나라 직할령 중에서 가 장 먼저 수복된 것은 그만큼 고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게 작용했 을 것이다. 동녕부 수복 과정을 『고려사』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sup>50) 『</sup>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11년 5월 계축, "御史中丞洪文系 直門下省事 宋松禮誅惟茂 流其黨司空李應烈 樞密院副使宋君婓 罷書房三番及造成色 朝野大 悅".

<sup>51) 『</sup>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11년 5월 무진, "遣將軍金之氐入江華 罷三 別抄".

#### 〈표 3〉동녕부 수복 과정

		<u> </u>
1	원종 10년 10월	· 임연을 처단한다는 명분으로 최탄 · 한신 반란 · 최탄 무리가 반역한 실상을 원나라에 보고
2	원종 10년 12월	• 원니라 황제의 조서로 최탄 무리와 서경 54성 및 서해 6성 군민 등이 투항했음을 확인하고, 최탄에게 칙명을 내려 원나라 행중서생에서 관리 • 동선역의 역리들이 최탄에게 투항
3	원종 11년 정월	• 원나라 도당에 최탄의 모함을 항변
4	원종 11년 2월	<ul><li>원나라의 조서를 통해 서경을 동녕부로 개칭</li><li>자비령을 고려와 국경으로 삼음</li><li>원종이 원나라 황제에게 글을 보내 서경 반환 요청</li></ul>
(5)	원종 11년 5월	· 임유무 제거로 무인정권 붕괴 · 삼별초 해산
6	원종 11년 6월	· 삼별초 항쟁
7	원종 11년 8월	· 동녕부 반환 요청
8	원종 13년 6월	• 원나라에서 파견한 군대 식량과 사료를 동녕부에서 공급하도록 요청
9	원종 15년 2월	· 동녕부로 도망간 자들을 동정군으로 보충 요구
10	충렬왕 즉위년 8월	· 소경 조유를 <mark>동녕</mark> 부에 파견 · 고려에서 도망간 사람들을 조사하여 찾아오게 함
10	충렬왕 즉위년 10월	<ul> <li>서경대흥부록사 양수 등이 왕을 따라 갈 것을 요청하여 수행하는 것을 최탄이 도중에 양수를 잡아감.</li> <li>왕이 서경에 이르렀을 때 서경이 동녕부에 속했기 때문에 왕은 은과 모시[納를 내어 식량과 사료를 바꿔다가 따라온 신하들에게 줌</li> </ul>
12	충렬왕 2년 8월	• 동녕부 천호 한신이 와서 자기 편 사람들을 심사함
(13)	충렬왕 4년 2월	· 사신을 동녕부에 파견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을 심사하여 데려오게 함
14)	충렬왕 4년 4월	· 은과 포(布)로 동녕부에서 쌀을 사들임 · 서북면의 여러 고을들이 모두 동녕부에 속했는데, 오직 의주 · 정주 · 인주 세 고을은 붙지 않고 관리들과 백성들이 나와 왕을 맞았으며 공급과 접대가 다른 고을보다 융숭함
(15)	충렬왕 4년 7월	• 동녕부 반환 요구
16	충렬왕 4년 9월	· 낭장 조감과 녹사 이구를 동녕부에 파견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을 찾아오기 위하여 조사하고 소집하게 함
17)	충렬왕 4년 10월	· 소윤 조유와 별장 이봉을 동녕부에 보내 곡주 · 수안군 · 은률현의 사람들과 물건들을 조사하여 데려오게 함

18)	충렬왕 5년 2월	· 소윤 조유를 동녕부에 보내 기미년(己未年, 고종 46, 1259) 이래로 서해도 백성으로 동녕부에 망명하여 간 자들을 조사하여 데려오게 함
19	충렬왕 6년 정월	· 친종장군 박연과 중랑장 이인을 동녕부에 보내 부장(夫匠)을 조사하여 데려오 게 함
20	충렬왕 6년 4월	• 중랑장 지선을 동녕부에 보내 선대 임금들의 능묘를 발굴한 데 대하여 물음
21)	충렬왕 6년 9월	· 원나라에서 야속달과 최인저를 보내 수달단으로 개원로 · 북경로 · 요양로 에 있는 자들을 동녕부로 이송하였는데, 이것은 장차 일본 정벌에 동원하려는 것이었음
22	충렬왕 6년 11월	· 동녕부에서 관할하는 여러 성 및 동경로 연해의 주현들에 초공(稍工) · 수수(水手)가 많으니 3,000명을 징발하여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게 하여 주기 바란다는 글을 원나라 중서성에 보냄
23	충렬왕 7년 정월	· 개원로 동녕부의 왕만호와 야선대왕이 모두 사신을 보내 왔는데, 일본 정벌 때문에 온 것이었음
24)	충렬왕 8년 9월	· 친종장군 <mark>정인경</mark> 을 요심(遼瀋)에 보내고, <mark>중랑장</mark> 정복균을 동녕부에 보내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사하여 데려 오게 함
25	충렬왕 10년 4월	<ul> <li>왕의 일행이 중화현에 들렀는데 원나라의 촉응사 낭가대와 동녕부 달로화적 등이 와서 매와 말을 바침</li> <li>동녕부에 들러 낭가대와 달로화적 등에게 은과 모시를 차등 있게 내림</li> </ul>
26	충렬왕 10년 5월	· 동녕총관 홍중희가 와서 말을 바침
27	충렬왕 11년 정월	• 동녕부 천호 최탄 등이 와서 왕을 위하여 연회를 베품
28	충렬왕 11년 11월	· 원나라에서 "동녕부가 우리나라의 수안 · 곡주를 빼앗으려고 다투었다."는 이유로 단사관 소독해를 보내 시찰하게 하였고 또 동정(東征)을 위한 선박 건조도 독려함
29	충렬왕 13년 3월	・원나라에서 형부시랑 육십(六十)을 보내 동녕부 사건을 조사 해명케 함
30	충렬왕 13년 8월	• 동녕부 역어중랑장 구천수가 쌍성의 첩자 홀도대와 덕산 등을 붙잡아 옴
31)	충렬왕 16년 3월	<ul> <li>황제의 명령으로 동녕부를 폐지하고 서북의 여러 성을 돌려줌</li> <li>왕이 총관이었던 한신과 계문비를 대장군으로, 현원렬을 태복윤으로, 나공언과 이한을 장군으로 각각 임명함</li> </ul>
32	충렬왕 16년 6월	・ 대장군 한신으로 하여금 서경 군시들을 인솔하여 동계로 가서 합단을 방어하게 함

<sup>※</sup> 이 도표는『고려사』권26~30의 내용을 참고함.

동녕부는 1269년(원종 10) 10월에 최탄 등이 몽골에 투항함으로써 성립되었다(〈표 5-13〉-①). 고려와 원나라의 교류에서 중요한교통로 역할을 했던 곳이 서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었는데, 원나라는 처음에 이를 직접 장악할 목적으로 행중서성에 예속시켰다(〈표 5-13〉-②). 하지만 원나라는 원종 11년에 이 지역을 동녕부로 개편함과 동시에 최탄을 총관으로 임명하여 총관부(總管府)로 승격시켰다.52)이로써 원나라는 중원의 동북 일대를 아울렀던 개원로(開元路)를 중심으로 고려 영토에 쌍성총관부와 더불어 동녕부를 설치함으로써 그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53)

동녕부에 예속된 북계 지역이 서경 54개 성, 서해도 6개 성 등도합 60여개였고(〈표 5-13〉-②), 그 상세한 자역은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북계 대부분의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원나라는 고려와의 국경을 자비령을 경계로삼았다(〈표 5-13〉-④). 그런데 북계 전 지역이 동녕부에 예속된 것은 아니었음도 드러나는데(〈표 5-13〉-④), 이는 "왕이 의주에 머물렀다. 당시에 서북면의 여러 고을들이 모두 동녕부에 속했는데, 오직 의주·정주·인주 세 고을은 붙지 않고 관리들과 백성들이서로 이끌고 와서 왕을 맞았으며 공급과 접대가 다른 고을보다 융숭하였다."라고54〉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다. 북계의 대부분 지역을 동녕부에 예속시켰지만, 의주·정주·인주를 제외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이들 지역 또한 동녕부의 영향권에서

<sup>52) 『</sup>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11년 2월 정축.

<sup>53)</sup> 동녕부의 설치 결과를 주채혁은 "동녕부가 설치되면서 1269년~1270년에 걸쳐 몽골정권의 정치군사적 원조하에 결정적으로 武人정권이 제거되고 王政이 되살아나지만 이에 이어 삼별초세력의 섬멸전이 전개되었음을 볼 때, 이는 사실상 몽골침략에 항전하는 고려세력의 씨를 말리는 작전기지의 성격을 갖는 것인 동시에 몽골정권의 입김에 의해 기사회생한 고려왕권과 몽골왕권의 가장 견고한 연결고리 구실을 한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앞의 논문, 1989, 45쪽).

<sup>54) 『</sup>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1, 충렬왕 4년 4월 기묘.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이다.

서경을 중심으로 한 동녕부는 국도 개경에서 의주를 넘어 원나라 지역의 심양로(瀋陽路)로 나아가는 주요 교통로였다. 이는 곧 고려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수복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간 이유이기도 했다.

동녕부가 원나라 직할령으로 넘어갔을 때 고려는 곧바로 반화을 요구했다. 동녕부로의 승격 이후 원종 11년 2월과 8월에 각각 반 환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표 5-13〉-④·⑦). 이런 점은 고려에서 강도정부가 아직 유지되었고. 원나라의 다음 목표가 일본 을 정벌하기 위한 전진기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원 나라에서 고려에 파견된 군대의 식량과 말의 사료를 공급하거나 (〈표 5-13〉-⑧). 동녕부로 도망간 자들을 동정군으로 보충할 것 (〈표 5-13〉-⑨) 등을 요구했던 것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고 려에서는 동녕부 소속 특정 지역을 수복하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별장 이봉을 원나라에 파견하여 수안(遂安)·곡주(谷州)를 돌 려달라고 요청하였다."라는55)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안과 곡주는 원래 황주목 소속이었는데, 56) 이들 지역은 개경에서 '평주 (平州)→협계(俠溪)'를 기점으로 동녕부와 쌍성총관부 지역으로 나 아갈 수 있었던 교통의 요지였다. 이런 영토의 수복은 원나라와의 긴밀한 협조 내지는 비록 원나라의 직할령이었지만 양계 지역에 대 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고려 정부의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 정부가 동녕부 수복을 도모한 이유는 무엇보다 고려 본토로 부터 인구의 대량 유출을 막으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 구의 유출 배경으로는 전쟁 포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투몽 현상 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sup>55) 『</sup>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1, 충렬왕 4년 8월 정사.

<sup>56) 『</sup>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황주목, 곡주.

최씨정권의 몰락과 대몽강화 이후의 고려왕조는 전반적으로 사회가불안정하였다. 그것은 국왕과 무인세력들 간의 갈등과 몽골의 압력등이 가중되었고, 일반 민의 처지도 불안정한 정치운영에 따른 수탈의 가중과 몽골의 과다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집권 무인세력 및 권세가들에 의한 토지탈점과 관리들의 민에 대한 침탈, 몽골의 횡포 및 과중한 요구에 의한 부담 등이 지방사회 동요의 요인이었다. 토지탈점은 무인정권의 전 시기를 통해서자행된 것이었다. 그리고 중앙 통제의 이완에 따른 관리들의 빈번한 착취와 정부의 재정적인 보완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관리들의 부담이 곧 민의 침탈로 이어졌다고 하겠다. 특히 민의 처지에가장 위협적인 사항은 몽골의 정복에 따른 복속사업과 물품 및 군량요구 등이었다.

이러한 실정은 민으로 하여금 대몽전쟁기부터 계속되어 온 저항을 확대시키게 하였다. 원간섭 초기에는 주로 기존 대몽항쟁의 지속과 정부에 대한 저항 또는 변칙적인 투몽 등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원간섭 초기는 대몽강화로 인하여 형식상 전쟁이 끝난 것으로이해되는 시기였다. 그런데 국왕과 집권 무인세력은 대몽관계에 있어서 계속 대립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전국에 걸쳐 전면적인 전쟁의 기운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점은 이 시기에아직까지 몽골의 요구대로 출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인정권이그대로 온존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이해된다. 무인정권은 대몽강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들의 계속적인 정권유지에 있어서는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때문에 무인정권은 전국에 걸쳐 대몽강화에 따른 적극적인 조처를 시행하지 않았다.57) 또한 김준(金俊)과임연은 이민족의 간섭이라는 위기감을 고조시켜 사직(社稷)의 보위

<sup>57)</sup> 고종 18년 몽골의 침략 이후 시행된 해도입보책이 다시 환원된 시기는 1261년 (원종 2)에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었다(『고려사』권58, 지12, 지리3, 북계).

자로 자임함으로써 집권력을 강화하였다. 이는 곧 대몽전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정책에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따라서 민은 고려정부와 몽골에 대한 계속적인 저항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저항세력의 동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 1258년(고종 45)조휘와 1269년(원종 10) 최탄 등의 투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투몽 현상은 "지금 어리석은 백성들 중에 역(役)을 도피하는 자, 죄를 범하고 도망한 자, 공사노비(公私奴婢)로서 천민 신분을 모면하려는 자들이 서로 모여, 귀국의 주둔군과 서경에 가서의탁하고 있으면서 제멋대로 횡행하고 있다. 심지어 일반 민들을유인해 가는 일들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라는58) 자료에 잘 반영되어 있다. 즉, 역에서 도피하려는 자, 죄를 범하고 도망하는 자, 공사노비들로 천민 신분을 모면하려는 자 등이 투몽하였던 것이다.무인집권기 민의 저항 원인이 사회경제적·신분제적 모순에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투몽은 저항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 나타났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의 투몽 지역은 대체로 몽골군의 주둔 지역과 쌍성총관부·동녕부였다.

동녕부 지역으로의 투몽 방지대책으로 고려 정부는 추쇄책(推刷策)을(〈표 5-13〉-⑩・⑱・⑯・⑰・⑱・⑲・⑭・⑭) 마련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점을 원나라에서도 굳이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추쇄책만으로 내부의 반발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대몽강화 이후 원나라의다음 목표는 일본 정벌이었다. 이를 위해 동녕부는 개원로(開元路)·북경로(北京路)·요양로(遼陽路) 등의 군사를 이송하는 기지로 이용되거나(〈표 5-13〉-㉑), 초공·수수 등과 같이 정벌에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였고(〈표 5-13〉-②・②), 일본 정벌을 독려하는 임무(〈표 5-13〉-②・③)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동녕부는 고려 정부의 지배로부터 이탈하려는 세력의

<sup>58) 『</sup>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11년 윤11월.

투항 혹은 원나라의 일본 정벌을 위한 지원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런데 고려 정부와 동녕부의 관계는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동녕부 지역이 원나라의 직할령이 됨으로써 서경에 이르 렀던 원종 자신이 은과 모시를 내어 식량을 바꿔다가 신하들에게 주는(〈표 5-13〉-①)등 영토의 상실을 실감할 수 있었고, 부족한 쌀을 동녕부에서 구입하기도(〈표 5-13〉-④)하였다. 또한 원나라지배가 강화되던 1284년(충렬왕 10) 이후에도 왕의 일행을 위해원나라의 착응사 낭가대(郎哥歹)와 동녕부 달로화적(達魯花赤) 등이와서 매와 말을 바치자 왕 또한 낭가대와 달로화적에게 은과 모시를 하사했고(〈표 5-13〉-②), 총관 홍중희가 말을 바치거나 천호최탄 등이 왕을 위하여 연회를 여는(〈표 5-13〉-②) 등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녕부에서 황주의 수안과 곡주를 빼앗으려던 사건을 원나라 조정에서 직접 조사하여 해명하기도(〈표 5-13〉-②》·②))하였다.

그런데 동녕부는 1290년(총렬왕 16) 3월에 "황제의 명령으로 동녕부를 폐지하고 서북의 여러 성들을 우리나라에 다시 돌려주었다. 왕이 그 총관이었던 한신·계문비를 대장군으로, 현원렬을 태복윤으로, 나공언·이한을 장군으로 각각 임명하였다."라고<sup>59)</sup> 하여 고려영토로 다시 수복되었다. 동녕부에 대한 반환 요구는 계속 있었지만(〈표 5-13〉-④·⑦·⑤), 충렬왕 16년에 수복된 배경에 대해서는자세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동녕부의 반환에 중대한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이 1287년(충렬왕 13) 원나라에서 일어난내안(乃顔)의 반란이었음은 추정 가능하다고 하겠다.60)

<sup>59) 『</sup>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6년 3월.

<sup>60)</sup> 동녕부의 반환 배경에 대해 방동인은 "합단적(哈丹賊)의 봉기가 바로 그 요인이 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원은 고려에 대하여 그 중간지대에 놓이는 서북 제성을 돌려줌으로써 哈丹賊과의 제휴를 사전에 봉쇄하고자 했을 것이고, 또 고려는 동녕부에서의 반고려적 주동자들을 안무함으로써 이들과 哈丹賊과의 결합을 사전에 봉쇄한 것으로 추측된다."라고(方東仁,「東寧府 置廢小考」、『關東史

고려에서 내안의 반란이 일어난 것을 파악한 것은 충렬왕 13년 5월이었고, 즉시 토벌군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원나라 조정에서도 이를 허락하였다. 61) 하지만 같은 해 8월에 반란을 진 압했기 때문에 군사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전갈을 62) 받았다. 이후 원나라 지역에서 내안 잔당들의 반란은 계속되었다. 63) 그런데 고려 정부는 원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난 초기에는 적극적인 군사 동원을 시도했지만, 점차 본토를 수비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고 64) 원나라에서도 고려의 군사 동원을 자제시키는 65) 편이었다. 원나라는 고려에서 군사 동원보다는 군량 등을 조달하려고 66) 했을 뿐 오히려 병기를 검열하여 67) 고려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學』 2, 1984; 『韓國의 國境劃定研究』, 一潮閣, 1997, 재수록, 110쪽)하였고, 주채혁은 "1290년대에 이르면 전충국을 장악하여 당시까지 최대의 戶口를 파악할 정도로 몽골정권의 지배기반이 튼튼히 구축된 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1289년에 카이투가 카라코롬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1290~1291년 사이에 요양행성지역에서 쿠빌라이 대칸에 대항하는 카단(哈丹, Qadan)이 반란을 크게 일으켜 고려를 위협하여 다시 강화(江華)로 천도를 하기도 하였던 때였으므로 서북면(西北面)의 기지를 차라리 고려에 반환하는 것이 전략상 유리했다고 파악했을 수도 있다."라고(앞의 논문, 1989, 36쪽) 하였다. 이들 논문에서는 동녕부의 반환을 원나라에서의 반란과 같은 내부 변화에서 그 배경을 찾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sup>61) 『</sup>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3년 5월 임인;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3년 6월 임술.

<sup>62) 『</sup>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3년 8월 정묘.

<sup>63) 『</sup>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3년 11월 을미, "公主至西京 聞賊起咸 平府道梗 遂還"

<sup>64) 『</sup>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4년 2월 신유, "遣將軍吳仁永如元 時 北賊叛亂 我國宜起兵助戰 而王難之 遣仁永入奏曰 今東鄙未寧, 請親率征北兵 移鎮 雙城"

<sup>65) 『</sup>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4년 3월 임인, "將軍吳仁永還自元言 帝 以乃顏餘黨復叛 發兵親征 以我國軍 戍東藩"

<sup>66) 『</sup>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4년 4월 경오;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5년 2월 병인.

<sup>67) 『</sup>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4년 7월 정해, "元遣摠管金之茂來 閱兵器";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5년 윤10월 기축, "元尚書省及樞密院差官來 閱東征日本時合浦兵器"

한편 동녕부 반환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던 사건이 내안의 잔당이었던 합단(哈丹)의 고려 침략 계획이었다. 68) 이를 고려에서 파악한 것이 충렬왕 16년 정월이었고, 같은 해 2월에는 고려 군사를 동계 지역으로 파견하였으며69) 원나라에서도 쌍성을 수비하기위해사람을 보내기도70) 하였다. 합단적의 침략 소식을 접한 충렬왕이같은 해 3월에 원나라로부터 귀국하였고, 이를 계기로 몽골 황제의명령으로 동녕부의 반환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71) 충렬왕은 같은해 7월에 부지밀직사사 정인경을 서북면도지휘사로 임명하여 서경(西京)을 지키게 하였다. 72) 이로써 동녕부는 1269년(원종 10)부터시작된 원나라 직할령을 마감하고 21년만에 고려 영토로 복구되었다.

결국 동녕부의 수복은 고려 정부의 지속적인 반환 요구와 원나라 내부의 혼란을 계기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후자는 1219년(고종 6) 거란유종(契丹遺種)을 고려와 몽골의 연합으로 강동성(江東城)에서 격퇴했듯이,73) 합단 세력이 고려를 정복 혹은 연합했을 때 원나라 자체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녕부 수복의 의의는 무엇보다 이후 탐라총관부의 반환과 쌍성총관부의 탈환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sup>68) 『</sup>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6년 정월 갑자, "將軍吳仁永等還自元言 乃顏餘黨哈丹賊 將侵我東鄙"

<sup>69) 『</sup>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6년 2월 을해, "遣中軍萬戶鄭守琪屯禁 忌山洞 左軍萬戶朴之亮屯伊川 韓希愈屯雙城 右軍萬戶金忻屯豢猳 羅裕屯通川 以 備丹賊"

<sup>70) 『</sup>고려사』 권30, 세기30, 충렬왕3, 충렬왕 16년 3월 임자, "闍梨帖木兒遣人來 戍雙城"

<sup>71) 『</sup>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6년 3월 정묘.

<sup>72) 『</sup>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6년 7월 경신.

<sup>73) 『</sup>고려사절요』 권15, 고종 5년 12월, 고종 6년 정월.

#### 나. 쌍성총관부의 탈환

쌍성총관부는 동녕부보다 먼저 설치되었지만 1356년(공민왕 5)에 고려의 적극적인 정벌에 의해서 탈환되었다. 그런데 고려 정부는 쌍성총관부에 대한 반환 요구에 있어서는 앞서 동녕부보다 소극적이었다.

〈표 4〉 쌍성총관부의 탈환 과정

(1)	고종	・조휘 ・ 탁청이 화주(和州) 이북 땅을 들어 몽골에 투항
	45년 11월	· 몽골에서는 화주에 쌍성총관부 설치
2	충렬왕 6년 7월	· 원나라 중서성에서 고려의 쌍성 민호(民戶) 추쇄 요구 수용
3	충렬왕 10년 정월	· 쌍성으로 도망한 자들을 조사 적발
4	충렬왕 12년 7월	· 쌍성의 유민을 추쇄하라는 황제의 명 <mark>령을 받</mark> 음
(5)	충렬왕 13년 8월	· 동녕부 역 <mark>어중링장</mark> 구천수가 쌍성 <mark>의 첩</mark> 자 홀도대와 덕산 등을 붙잡아 옴 · 낭장 정지연을 <mark>원나라</mark> 에 보내 쌍성의 첩자를 체포한데 대하여 보고
6	충렬왕 14년 2월	· 원나라에서 합단적 침략에 대해 고려군 파견을 요청했는데, 충렬왕 은 직접 쌍성에 주둔하여 방어하기를 청함
7	충렬왕 14년 4월	· 충렬왕이 북쪽을 정벌할 군사를 이끌고 쌍성을 지키겠다고 요청하였 고 황제도 이미 허락하였음을 확인
8	충렬왕 14년 6월	· 쌍성 달로화적이 내조
9	충렬왕 14년 8월	· 만군(蠻軍)들이 쌍성에서 왔는데 남녀노소 모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몸에는 거적[苫]을 두르고 있어서 홍자번이 옷 200벌을 줌
10	충렬왕 16년 2월	· 중군만호 정수기를 금기산동에 주둔시키고, 좌군만호 박지량을 이천(伊川)에 주둔시키고, 한희유를 쌍성에 주둔시키고, 우군만호 김혼을 환가에 주둔시키고, 나유를 통천에 주둔시켜 합단적의 침범에 대비함
(1)	충렬왕 16년 3월	· 도리첩목아가 사람을 보내 쌍성을 수비함
(12)	충렬왕 16년 11월	· 합단이 쌍성을 침입함
(13)	충렬왕 21년 4월	• 원나라 요양성(遼陽省)에서 쌀 3,000석으로 쌍성을 구휼함
14)	충렬왕 22년 7월	• 원나라에서 첩목아를 보내 쌍성의 인물을 추쇄함
15)	충혜왕 원년 4월	·5도 인민 가운데 쌍성 · 여진 · 요양 · 심양 등으로 이주한 유민에 대한 추쇄를 요구함
16	충목왕 3년 정월	· 쌍성 인구를 단속함

17)	공민왕 4년 12월	• 환죄이자춘]가 쌍성 등의 천호로써 와서 왕을 알현함
18	공민왕 5년 3월	· 환조[이자춘]가 내조함 · 기철이 쌍성의 불온한 자들과 반역을 도모한다는 소문
19	공민왕 5년 5월	· 정동행중서성이문소 철폐함 · 평리 인당과 동지밀직사사 강중경을 서북면병마사로, 사윤 신순 · 유흥, 전대호군 최영, 전부정 최부개를 부사로 임명하여 압록강 이남 의 8참을 공격하게 했으며, 밀직부사 유인우를 동북면병마사로, 전대호군 공천보와 전종부령 김원봉을 그 부사로 임명하여 쌍성 등을 수복하게 함
20	공민왕 5년 6월	· 쌍성 사람 조도적이 내조함
21)	공민왕 5년 7월	· 동북면병마사 유인우가 쌍성을 함락함 · 화주·등주·장주·정주·예주·고주·문주·의주 등의 주(州)와 선 덕진·원흥진·영인진·요덕진·정변진 등의 진(鎭)을 수복함

※ 이 도표는 『고려사』 권24~39의 내용을 참고함.

《표 4》에서 보듯이, 쌍성총관부는 고종 45년에 설치된 이후 원종대에는 그곳과 관련된 자료가 『고려사』에서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동계 안집사가 보고하기를, 양주(襄州)의 백성 장세와 김세 등이 수령 및 아전·선비들을 죽이려고 음모하다가 발각되어 처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도당들인 천서 등이 가만히 고화주(古和州)의 조휘에게 투항해 가서 그에게서 군사 400여 명을 청하여 가지고 양주에 들어와 인민들을 데리고 바다 섬으로 옮겨가 산다고 거짓말로 속여 지주(知州) 및 관리·인민들 1,000여 명을 배 3척에 나누어 강제로 싣고 가 버렸습니다."라고74) 하였듯이, 저항세력의 도피처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었다. 여기에서 보면 쌍성총관부가 '고화주'로 인식되었는데, 이는 화주가 쌍성총관부의 치소(治所)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쌍성총관부가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충렬왕 이후부터이다. 그 이유는 앞서 동녕부와 마찬가지로 유민 추쇄책에

<sup>74) 『</sup>고려사』 권27, 세가27, 원종3, 원종 12년 3월 기사.

따른 것이었다(〈표 5〉-②·③·④). 그 시기가 충렬왕 6·10·12년 이라는 점은 제1·2차 일본 정벌 이후로서 고려에 대한 배려 차원 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표 5〉-⑤에서 보면, 동녕부의 관리가 쌍성의 첩자를 체포한 사실이 있었다. 동녕부와 쌍성총관부는 원나라 직할령이었는데, 첩자의 존재는 상호 감시 혹은 직할령으로 써의 경쟁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그 시기가 1287년(충렬왕 13)이었다는 것은 내안과 같은 원나라 내부 반란세력과의 연대에 대한 감시 목적이었을 것으로도 판단된다.

쌍성총관부가 특히 주목되었던 것은 합단의 침략이었다. 합단의 침략에 대해 같은 직할령이었던 동녕부의 경우에는 〈표 4〉에서도 보았듯이 적극적인 대비책이 거론되지 않았다. 쌍성총관부의 경우 에는 쌍성의 달로화적이 고려 조정에 내조하기도(〈표 5〉-⑧) 했다. 그런데 쌍성총관부가 원나라 직할령이었지만 군사력이 정비되지 않 았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표 5〉- ⑨의 만군(蠻軍)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때문에 합단에 대한 방어는 고려 정부에서 더 적극적이었다(〈표 5〉-⑥・⑦). 이는 "장군 오인영을 원나라에 파견 하였다. 당시에 북방의 역적이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는 마땅히 병력을 파견하여 토벌을 도와야 할 것이었으나 왕이 곤 란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오인영을 원나라에 보내 고하기를 '지금 동쪽 변방이 아직 평안하지 못하니 청컨대 내가 직접 북쪽을 정벌 할 군사들을 인솔하고 쌍성으로 이동하여 주둔하고 있으면서 지키 겠습니다.'라고 요청하였다.".75) "장군 오인영이 원나라에서 돌아 와 말하기를, '내안의 잔당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군대를 징발하여 황제가 친히 정벌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군대는 동변 (東藩)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76) 등의 자료

<sup>75) 『</sup>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4년 정월 신유.

<sup>76) 『</sup>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4년 3월 임인.

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합단적의 본격적인 침략에 대한 정보를 고려 정부에서 접한 것은 1290년(충렬왕 16) 정월이었다. 77) 그런데 합단적의 침략을 계기로 동녕부가 충렬왕 16년 3월에 고려로 환수되었던 78) 것에 비해, 고려 정부와 몽골이 서로 쌍성총관부를 적극 방어하려고 하였다(〈표 5〉-⑩·⑪). 같은 직할령이었지만 동녕부는 환수되고 쌍성총관부는 그대로 존치된 것은 비단 합단적의 침략이 그 계기였지만 고려 정부의 환수 노력이 쌍성총관부보다는 동녕부에 더 적극적이었던 것에서도 기인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합단적의 침략 경로가 고려의 서북면이 아니라 동북면이었던 것도 원나라와 고려 정부의 주된 방어 지역이 서북면에 있었음을 염두에 둔 결과였을 것이다. 따라서충렬왕 16년 10월에 합단적의 기병이 원나라 개원로의 남경(南京)과 해양(海陽) 지경에 이르자(의) 고려 정부는 강화도로 피신할 준비를 했고, 80) 합단적의 고려 침략은 그해 11월 쌍성 지역에 대한 공략을(〈표 5〉-⑫)시작으로 충렬왕 17년 6월에 그 잔당들이 소멸할81) 때까지 지속되었다.

합단적 침략으로 쌍성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원나라는 이를 고려로 반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려 정부의 환수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충렬왕 16년에 동녕부를 환수 받은 것에 일차적으로 만족한 결과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원나라는 쌍성에 대한 진휼과(〈표 5〉-⑮) 인구 단속(〈표 5〉-⑭·

<sup>77) 『</sup>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6년 정월 갑자, "將軍吳仁永等還自元言 乃額餘黨哈丹賊 將侵我東鄙"

<sup>78) 『</sup>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6년 3월 정묘.

<sup>79) 『</sup>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6년 10월 병신.

<sup>80) 『</sup>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6년 11월 갑진;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6년 11월 무신;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6년 11월 경술.

<sup>81) 『</sup>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7년 6월 신미.

(b) 등을 통하여 직할을 유지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고려 정부에서는 쌍성 등 원나라 지역으로 흘러들어간 유민 추쇄를 계속요구하였다(〈표 5〉-(b)).82)

쌍성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환수 노력은 공민왕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355년(공민왕 4) 12월에 이자춘(李子春)이 쌍성의 천호로써 알현하자(〈표 5〉-⑰), 공민왕은 "그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몸은 비록 외지에 있었으나 마음은 왕실에 있었으므로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들을 크게 가상히 여겼던 것이다. 지금 그대도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욕되게 행동하지 않으니 내가 앞으로 그대를 옥처럼 다듬어서 성공시켜 주겠다."라고83) 회유하였다. 쌍성 지역의천호였던 이자춘을 회유한 것은 그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준비였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표 5〉-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공민왕5년 3월에 이자춘의 내조와 더불어 기철 등과 같은 부원세력을 쌍성의 불온한 자들과 반역을 도모했다는 혐의로 제거할84) 수 있었다.

부원세력의 척결은 고려와 원나라의 긴장관계를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쌍성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탈환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였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공민왕 5년 5월에 "정동행중서성이문소를 철폐하였다. 평리 인당과 동지밀직사사 강중경을 서북면병마사로, 사윤 신순·유홍, 전대호군 최영, 전부정 최부개를 부사로 임명하여압록강 건너의 8개의 참(站)을 공격하게 하였으며 밀직부사 유인우를 동북면병마사로, 전대호군 공천보와 전종부령 김원봉을 그 부사로 임명하여 쌍성 등지를 수복하게 하였다."85). "각 군대의 만호·

<sup>82)</sup> 方東仁은 합단적의 침략 이후에는 쌍성 지역에 대한 원나라의 지배가 이완되었고, 고려 정부의 환수 노력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方東仁,「雙城摠管府置廢考」,『韓國의 國境劃定研究』, 1997, 182~189쪽).

<sup>83) 『</sup>고려사』 권38, 세가38, 공민왕1, 공민왕 4년 12월 신미.

<sup>84) 『</sup>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2, 공민왕 5년 3월 갑진;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2, 공민왕 5년 5월 정유.

진무·천호·백호의 패(牌)들을 회수하라고 명령하였다."86), "강안전과 모든 절에 진병도량(鎭兵道場)을 차리고 5일간 계속하였다."87) 등 원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강경책을 시도하였다(〈표 5〉-⑩).

쌍성 지역을 탈환하기에 앞서 고려 장수 인당이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파파부(婆婆府) 등 3개의 역참을 공격하여 격파하였다. 88) 이는 앞서 압록강 건너 8개의 역참을 공격하게 한데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고려와 원나라의 연결 통로를 차단하기 위함이었고, 앞서 동녕부가 일찍이 고려로 환수됨으로써 압록강 너머까지 군사적인 행동을 펼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 정부의 군사 행동은 쌍성 지역 토착세력들의 동태에도 영향을 주었고, 급기야 조도적이 내조함에(〈표 5〉—②》) 따라 금패(金牌)를 주고 고려쌍성지면관군천호의 벼슬을 주었다. 89〉 조도적이 고려 정부에 협력하였던 것은 최탄의 손자 조돈의 역할이 있었다.

조돈은 쌍성총관부의 총관이었던 최탄의 손자였다. 최탄의 총관 직책은 그 아들 조양기로 이어졌지만,90) 조양기의 아들 조돈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조카 조소생으로 이어졌다.91) 조돈은 충숙왕 때 고려로부터 감문위 낭장과 좌우위 호군에 임명되었다가 충숙왕이 죽자 다시 최탄의 근거지였던 용진현(龍津縣)으로 돌아갔던 인물이다.92) 조돈이 총관이 되지 못한 데는 고려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지만, 조소생이 총관이 되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 수

<sup>85) 『</sup>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2, 공민왕 5년 5월 정유.

<sup>86) 『</sup>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2, 공민왕 5년 5월 임인.

<sup>87) 『</sup>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2, 공민왕 5년 5월 계묘.

<sup>88) 『</sup>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2, 공민왕 5년 6월 계축.

<sup>89) 『</sup>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2, 공민왕 5년 6월 기미. 조도적은 쌍성총관부의 총관이었던 최탄의 후예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탄의 손자 趙暾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고려사』 권111, 열전24, 조돈).

<sup>90) 『</sup>고려사』 권130, 열전43, 반역4, 조휘.

<sup>91) 『</sup>고려사』 권111, 열전24, 조돈.

<sup>92) 『</sup>고려사』 권111, 열전24, 조돈.

없다. 하지만 조돈이 공민왕 5년 쌍성 지역에 대한 탈환 과정에서 고려 정부와 협력 관계를 형성한 데는 쌍성총관부 내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원래 고려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고려 정부의 적극적인 군사 행동과 쌍성 지역 인물들의 귀부는 193) 원나라 연호 사용을 중지하기에까지94) 이르렀다. 이에 대해 원나라에서는 80만 병력을 동원하여 고려를 토벌하겠다고 위협하였다.95) 하지만 원나라의 군사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침내 공민왕 5년 7월에 동북면병마사 유인우가 이끈 병력에 의해 쌍성지역을 탈환하였다.96) 이 과정에서 큰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고, 다만 총관 조소생과 천호 탁도경 등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이판령 (伊板嶺) 북쪽의 입석(立石) 땅으로 도망치기도97) 하였다. 결국 1258년(고종 45)에 쌍성총관부가 설립된 이래 1356년(공민왕 5)까지 약 99년만에 고려 영토로 복구되었다(〈표 5〉—21)).

이 때 고려 영토로 탈환된 지역은 화주(和州)·등주(登州)·장주(長州)·정주(定州)·예주(豫州)·고주(高州)·문주(文州)·의주(宜州)· 선덕진(宣德鎭)·원흥진(元興鎭)·영인진(寧仁鎭)·요덕진(耀德鎭)·정 변진(靜邊鎭) 등이었는데,98)『고려사』 지리지에는 함주(咸州)·길주 (吉州)·복주(福州)·북청주부(北靑州府)·삼살(三撒) 등 4개 지역이99 더 밝혀져 있다. 그런데 고종 45년 최탄과 탁청이 화주 이북의 땅을

<sup>93)</sup> 쌍성 지역의 대표적인 세력으로는 '趙暉—趙良琪—趙暾—趙小生'의 趙氏系列과 '李安社—李行里—李椿—李子春—李成桂'의 李氏系列 등이 있었다(金九鎭, 앞의 논문, 1989, 81~82쪽).

<sup>94) 『</sup>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2, 공민왕 5년 6월 을해, "停至正年號"

<sup>95) 『</sup>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2, 공민왕 5년 6월 을해, "元 囚本國節日使金龜年 于遼陽省 聲言發八十萬兵來討 西北面兵馬使印 請濟師以備".

<sup>96) 『</sup>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2, 공민왕 5년 7월.

<sup>97) 『</sup>고려사절요』 권26, 공민왕1, 공민왕 5년 7월.

<sup>98) 『</sup>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2, 공민왕 5년 7월.

<sup>99) 『</sup>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동계.

몽골에 붙였다고<sup>100)</sup> 하였는데, 공민왕 5년 7월에 탈환된 지역에는 등주·고주·문주·의주와 같이 화주 이남의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점은 쌍성총관부의 영역 혹은 지배 범위와 연결되는 것으로 원간섭기의 영역 변화과정에서 찾아봐야<sup>101)</sup> 할 것이다.

따라서 고려의 쌍성총관부 탈환은 원나라의 지배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강역 설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는 앞서 예종대 윤관의 9성 구축 당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 4. 맺음말

고려왕조의 영토로서 원나라 직할령이었던 쌍성총관부와 동녕부는 고려의 동북 양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도 개경을 보위하는 중요한 지역이었고, 이를 원나라 직할령으로 삼았다는 것은 고려 중앙정부의 본토 장악력을 극도로 약화시킬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고려왕조는 이들 지역에 대한 반환을 끈질기게 요구하였다. 그 결과 동녕부는 20여 년 만에 수복되었던 반면, 쌍성총관부는 공민왕 5년에 직접 탈환할 때까지 유지되었던 차이가 있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쌍성총관부는 1258년(고종 45) 12월 조휘와 탁청 등이 몽골에 투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들이 몽골에 투항했던 고종 45년 12월이 시기적인 면에서 주목된다. 우선 고종 45년 3월에

<sup>100) 『</sup>고려사절요』 권17, 고종 45년 10월.

<sup>101)</sup> 方東仁, 앞의 논문, 1997, 182~189쪽과 이정신, 「쌍성총관부의 설립과 그 성격」, 『韓國史學報』18, 2004, 279~288쪽에서는 쌍성총관부의 지배범위에 대해 분석하였다.

유경과 김인준 등이 집정자 최의를 제거함으로써 최씨정권이 무너 졌고, 이를 기회로 몽골의 대대적인 침략이 감행되기에 이르렀다. 몽골의 기세는 강도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을 뿐만 아니라 국왕과 무인정권에서도 몽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 로 몰고 갔다. 이런 상황을 더욱 압박했던 것이 조휘와 탁청 사건 이었던 것이다.

쌍성총관부에 이어서 몽골의 직할령이 되었던 지역이 동녕부였다. 이 사건은 1269년(원종 10) 10월에 서북면의 최탄과 한신 등이 반란을 일으켜 몽골로 투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최탄 등이 저항을 일으킨 시기는 집정자 임연의 원종 폐위에 따른 몽골의 압력이 가중되어 새로운 전쟁의 기운이 감돌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북계에서 최탄 등의 저항은 임연정권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고, 원종과 몽골에게는 무인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몽골에서는 이 지역을 곧바로 동녕부로삼았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몽골의 행중서성에서 관리했다. 이는 앞서 동계의 조휘와 탁청 등이 투항했을 때 곧바로 쌍성총관부를 설치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들 원나라 직할령의 설치는 원종과 무인정권에게는 상당히 위기적인 상황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특히 동녕부 설치 과정에서 고려와의 국경에 대한 몽골 조정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는데, 이는 쌍성총관부가 성립되는 과정과 비교되는 점이다. 또한 『고려사』 등의 기록에서 보면, 고려왕조에서는 먼저 설치된 쌍성총관부의 반환보다는 동녕부에 대한 반환 요구가 더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반환 과정의 선후 문제를 떠나서 고려왕조의 영토의식을 살펴볼 수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경을 중심으로 한 동녕부가 화주를 중심으로 한 쌍성총관부보다 왕조적 영토의식의 표출이 보다 더강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쌍성총관부와 동녕부는 대몽항쟁의 실패에 따른 영토의 상실이었지만, 이후 이 두 지역의 수복 문제는 원제국 내의 고려왕조 위상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동녕부의 수복은 고려와 원나라의 결속이 더욱 공고하게 된 시기에 이루어졌던 반면, 쌍성총관부의 탈환은 반원(反元)의 의미가 강조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결과였다. 또한이 두 지역은 향후 북방 국경문제와 연동되는 중요성을 지녔다. 따라서 이 두 지역의 설치와 수복 문제는 고려왕조 영토의식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원고투고일: 2016.3.30. 심사수정일: 2016.5.20. 게재확정일: 2016.5.23.]

주제어 : 원나라, 투항, 직할령, 쌍성총관부, 동녕부, 영토분쟁, 국경, 서경, 화주,

수복. 탈환

<ABSTRACT>

# Th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late of Goryeo Dynasty(918~1392)

# - focusing on Ssanseongchonggwanbu and Dongnyeongbu-

Shin, An-Sik

As the territory of the Goryeo Dynasty, the 'Jikhalryeong' (which means the territory of direct control of a country and union) of Yuan Dynasty were Ssanseongchonggwanbu and Dongnyeongbu. These were important areas to defend the Gaegyeong as the region of Northeast Yanggae. And having been made them to the Jikhalryeong of Yuan Dynasty could weaken mainland grip of the Goryeo Dynasty. Since the Goryeo Dynasty was persistent, it demands the return of these areas. As a result, while Dongnyeongbu that were returned in 20 years, Ssanseongchonggwanbu was maintained until 1356 when it was recaptured directly.

The installation of Ssanseongchonggwanbu was done when Johwi and TakCheong was surrendered to the Mongol in the December 1258. During this period, the Military Rule was destroyed by removing Choiui of Yoogyeong and Kiminjun, and this situation has been the opportunity of a large-scale invasion of the Mongol. Mongolia pressures put a weight on the Gangdo government. Because of this reason, King and the Military Rule had no choice to accept the demands of Mongolia. It was more pressure this situation that was the surrender of Johwi and Takcheong.

Dongnyeongbu was established when it was surrendered to the Mongol by Choitan and Hanshin in October 1269. During this period, Imyeon deposed king Wonjong, which was heightened the tension with Mongol. So it was applying that the resistance of Choitan etc in Bukgye was a great blow to the regime of Imyeon, king Wonjong and Mongol have been a good opportunity to pressure the Military Rule. However, in Mongol it did not make this region as soon as Dongnyeongbu, at first it was managed by Haengjungseoseong of Mongol.

Installation of Ssanseongchonggwanbu and Dongnyeongbu was quite as crisis situations to the king Wonjong and the Military Rule. In particular, there was direct mention of Mongolia on the border in Dongnyeongbu installation process, it was compared with Ssanseongchonggwanbu installation process.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was much more effort for the return of Dongnyeongbu than Ssanseongchonggwanbu first installed in the Goryeo Dynasty. This issue of the return process can be said that would be appreciated the territory consciousness of the Goryeo Dynasty.

Eventually, Ssanseongchonggwanbu and Dongnyeongbu were the loss of territory to be done from the failure of struggle with Mongolia, after returning problem of these two regions was directly related to the phase of the Goryeo Dynasty in the Yuan Dynasty. The return of Dongnyeongbu has been made when more close of the Goryeo Dynasty and Yuan Dynasty happened. The recapture of Ssanseongchonggwanbu was a result of anti-Mongolia. Since these two regions was also an important issue connected with northern border.

Key words: Yuan Dynasty, surrender, Jikhalryeong, Ssanseongchonggwanbu, Dongnyeongbu, territorial disputes, border, Seogyeong, Hwaju, restoration, recapture

# 호마의 전래와 조선시대 호마목장의 설치\*

이 홍 두\*\*

- 1. 머리말
- 2. 호마의 기원과 한반도 전래
- 3. 호마의 교역과 마종 개량
- 4. 조선시대 호마목장의 설치
- 5. 맺음말

#### 1. 머리말

조선시대 말은 이전부터 전래한 토마(土馬)와 북방의 호마(胡馬)로 구분한다. 토마는 마갑과 중무장한 기병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병은 체형이 큰 호마를 사용하였다. 중앙아시아에서 산출되는 호마는 서역마(西域馬)·몽고마(蒙古馬)·달단마(韃靼馬)로 구분한다. 서역마는 아랄해(Aral sea)·카스피해(Caspian sea) 접경지역과 중국의 서쪽 신강성 위글자치구의 타림분지를 통하여

<sup>\*</sup> 이 논문은 2014년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연구지원사업(중견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5458).

<sup>\*\*</sup> 홍익대학교 교수

도달되는 모든 지역, 오늘날 이란과 터키지역에서 사육된 마종으로 '아랍마'의 원조다. 서역마 중에는 대완마(大宛馬)가 뛰어나서 이를 한혈마·천리마·천마·용마 등으로 불렀다. 몽고마는 서역마와 함께 아시아 말의 주종을 이루는데, 대체로 몽고고원에서 흥기한 흉노·선비·돌궐·거란·몽고 등에 의해 개량되었다. 특히 B. C. 3세기 말 몽고고원에서 일어난 묵득선우가 서역의 대완마를 얻어 그들의 토종마인 몽고마를 개량하였다. 10세기 초에 지금의 내몽고 지역에서 거란(907~1125)이 일러났는데, 이 지역의 백산(白山)·흑수(黑水) 사이의 광대한 초원은 유명한 명마 산지로서, 중국에서는 이곳에서 산출되는 말을 기북마(冀北馬)라 하여 중시하였다. 거란이 멸망한 후 몽고의 후신 달단이 등장하면서 달단마라고 칭했다.1)

서역마와 몽고마는 흉노의 기마문화를 매개로 한반도에 유입되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등자(證子)와 마면갑(馬面甲)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려 충렬왕 2년(1276) 원나라가 탐라도에 몽고마를 들여와 몽고식 목장을 설치하면서 몽고마의 숫자가크게 증대하였다. 그리고 고려 정종 원년(945)부터 예종대(1105~1122)까지 여진의 달단마가 고려에 대량으로 전래되었다. 당시 여진이 달단마를 공납한 횟수는 총 127회이며, 조공마의 숫자는 대략 4천~5천 필에 이른다. 한편 조선초기에는 야인정벌에 따라 국교가 단절됨으로써 여진의 달단마를 직접 교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간의 사무역을 통해 소량의 달단마를 수입할 뿐이었다. 그러나 성종대부터는 호마의 사무역을 금지함으로써 호마의 소형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조선시대의 마목장 설치는 건국 직후 여진의 호마 수입이 단절되고, 명나라가 제주목장을 탈취하려고 하자, 전마확보의 위기에 직면한 태종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졌다. 태종은 제주목장

<sup>1)</sup> 南都泳,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6, 8~30쪽.

의 암수 호마 1천8백 필을 전라도 진도에 옮기고, 1백여 필은 사복시의 건의에 따라 강화도 길상산에 방목하였다. 2년 후 길상목장이 완성됨으로써 종마의 숫자가 크게 증대하였다. 세종은 동왕 7년 (1425)에 진강목장을 설치하고 양마(良馬)의 산출에 진력하였다. 특히 강화도 부속섬에 설치한 신도목장과 보음도목장에서는 호마를 별도로 방목했는데, 그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새끼 말을 섬 밖으로 반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조는 강화도 장봉도목장을 호마 전용목장으로 확대시켜 그 새끼를 전국의 이름난 목장에 종마로 분배하였다. 그러나 성종대부터 목장을 폐지하여 둔전을 설치함으로써 호마의 숫자가 점차 감소하였다.

그동안 일본과 중국 등 외국 학계에서는 호마의 마종(馬種)과 마산(馬産)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만, 한국 학계에서는 호마가 전마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호마의 한반도 유입 과정이나, 호마를 종마로 한 개량마의 계보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달단마를 서역마의 잡종으로 인식할 뿐 연구를 소홀히 한 결과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달단마의 계통 파악도 부진한 실정에 있다. 몽고마의 기원에 대해서는 Stegmann과 강상파부(江上波夫)가 프르제발스키마(중국 북방마)로 인식하였다. 2) 그러나 독일 Wager와 중국 사성협(謝成俠)은 몽고 야생마로 본 것이 다르다. 3) 그리고 조선의 달단마를 몽고마로 보는 견해, 4)와 서역마로 보는 견해가 상호 대립한다. 5) 한국 학계는 호마가 몽고마 계통이라는 견해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홍두가 고구려 호마를 서역마로 해석한 것이

<sup>2)</sup> Stegmann. F, P., 『Die Rassengeschichte der Wirtschaftstiere und ihre Bedeutung für die Geschichte der Menschheit』, Fischer, 1924; 江上波夫, 『騎馬民族國家』, 중앙공론사, 1967.

<sup>3)</sup> Wagner, W., 『Die Chinesischen Landwirtschaft』, Parey, 1926; 謝成俠, 『中國養馬史』, 북경과학출관사, 1959.

<sup>4)</sup> 加茂儀一,『家畜文化史』, 日本法政大學出版局, 1973.

<sup>5)</sup> 林田重幸、「日本在來馬の系統」、『日本畜産學會報』28. 1958.

주목된다.6) 여기서는 먼저 호마의 기원과 한반도 전래를 밝히고, 다음으로 호마의 교역과 마종 개량에 대해 고찰하되, 고려시대는 여진이 조공한 달단마를 종마로 사용하였고, 조선시대는 북방에서 수입한 달단마를 종마로 사용한 문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조선 시대 호마목장의 설치와 호마생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2. 호마의 기원과 한반도 전래

한국의 마종은 고려 충렬왕 13년(1287) 재래마인 향마와 북방에서 전래한 호마로 구분하였다. 7) 그런데 필자는 한국의 호마를 삼국시대의 서역마, 고려전기의 달단마, 고려후기의 몽고마, 조선전기의 달단마로 구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여기서는 먼저 고구려고 분벽화에 보이는 말과 마구·갑주·궁시·명적(鳴鏑)과 신라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흉노의 기마문화를 통해 삼국시대 호마의 전래 문제를 고찰한다. 다음으로 고려가 조공무역을 통해 여진으로부터 달단마를 수입한 과정을 통해 고려전기의 호마 전래를 고찰하며, 마지막으로 국가가 일반 백성을 매개로 달단마를 수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조선시대 호마의 전래를 살펴볼 것이다.

삼국은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마전을 수행하였고, 3~4세기부터는 중장기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대형마가 등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삼국의 토종 과하마는 소형이기 때문에 마갑과 중무장한 기병의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었다. 『삼국사기』 여러 곳에 보이는 양마는 체형이 큰 호마이거나 호마와 토마가 교접한 개량

<sup>6)</sup> 이홍두, 「고구려 胡馬의 유입과 鐵騎兵」, 『歷史와 實學』 52, 2013.

<sup>7) 『</sup>高麗史』 卷 125, 兵志, 馬政.

마이다. 그런데 고구려는 호마를 흉노의 후예인 선비(鮮卑)로부터 수입하였고, 백제는 말갈에서, 신라는 동옥저를 통해 수입하였다.

고구려의 호마 유입 과정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하나는 야생의 호마가 국경을 넘어 유입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고구려가 흉노와 접촉하여 호마를 얻게 된 경우이다. 전자는 대무신왕 5년 (A.D. 22) 잃어버린 신마(神馬)가 어느 날 부여 말 1백여 필과 함께 나타난 것이고,8) 후자는 고구려가 속국이었던 동호(東胡)의 선비와 말을 교역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9) 유리왕 31년(A.D. 12) 신나라 왕망의 요청에 따라 고구려가 흉노정벌을 위해 기병부대를 중앙아시아 파견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10)

고대나 중세 전쟁의 승패는 무기와 전술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무기보다 전술의 영향이 더 컸다. 고대 한중간 전술적 핵심은 기동력이었다. 그런데 중국은 마차로 기동력을 실현하였고, 고구려의 기동력은 기병이었다. 고구려 기병의 기동력은 등자(鐙子)로부터 나왔는데, 등자는 흉노가 처음 발명하였다. 그들은 궁시(弓矢)를 주된 무기로 사용하였고, 일명 우는 화살이라고 부르는 명적도 만 들었다.<sup>11)</sup> 특히 〈그림 1〉의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에 보이는 등자 와 만궁(彎弓), 〈그림 2〉의 고구려 삼실총 개마무사 전투도에 보이 는 마갑과 마면갑 및 무사의 갑주(甲冑) 등은 흉노가 창안한 기마 문화다. 이로써 고구려가 흉노의 기마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역마도 함께 수입했을 것이다.

<sup>8) 『</sup>三國史記』卷 14, 高句麗 本紀 2, 大武神王 5年 3月.

<sup>9) 『</sup>三國史記』卷 13, 高句麗 本紀 1, 琉璃王 11年 4月.

<sup>10)</sup> 이홍두, 앞의 논문, 2013, 9~10쪽.

<sup>11)</sup> 南都泳, 앞의 책, 1996, 24~25쪽.





〈그림 1〉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그림 2〉고구려 삼실총 개마무사 전투도

신라는 북방 기마민족으로부터 서역마를 받아들였다. 1973년 황남대총의 유물을 발굴할 때 5~6세기에 조성된 천마총의 천마도 (天馬圖)가 그것을 입증한다. 한편 중국에서는 서역마를 천마(天馬)나 신마로 불렀는데, 다음의 사료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신마는 서역에서 왔다. 오손마(烏孫馬)를 얻으니 좋은 말이어서 천마라고 불렀다. 대완의 한혈마(汗血馬)를 얻었는데, 체형이 매우 크므로 오손마를 서극(西極)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고, 대완마의 이름을 천마라고 불렀다.12)

위 사료는 중국의 한무제가 오손마를 천마라고 했으나, 뒤에 체형이 큰 대완의 한혈마를 서극이라고 불렀다는 내용이다. 한나라는 장건(張騫)이 대완마를 들여올 때 그와 함께 말 사료로 이름난 목숙(苜蓿)을 가져와 재배한 기사가 있다. 13) 『삼국사기』에도 신라가 목숙전(苜蓿典)을 설치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sup>14)</sup>, 대완마의 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호마의 전래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고려전기 여진이 조공한 달단마이고, 다른 하나는 고려후기 원나라가 전래한

<sup>12) 『</sup>史記』卷 123, "大宛列傳, 神馬當從西北來, 得烏孫馬好, 名曰天馬, 及得大宛汗血馬益壯, 更名烏孫馬曰西極, 名大宛馬曰天馬"

<sup>13) 『</sup>史記』卷 123, 大宛列傳 63.

<sup>14)</sup> 南都泳、「三國時代의 馬政」 『東國史學』7, 1961.

몽고마다. 10세기 초 여진은 송화강을 중심으로 서여진과 동여진으로 분화되었다. 동여진은 흔히 '30성 부락(三十姓部落)'이라고 불리었고, '흑수말갈'과 혼용해 쓰였으며, 서여진은 '압록여진'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옛 부여·고구려·발해·예맥의 영토로 명마의산지였다.

여진의 기병 편성은 선두에 돌파용 타격무기를 장착한 중장기병 20기를 배치하고, 후방에는 궁시로 무장한 30기의 경기병을 배치했다. 중장기병이 돌진하면 경기병이 뒤에서 엄호사격을 하였다. 15) 여진의 중기병과 경기병의 이러한 비율은 중형의 달단마와 소형의 토마에 대한 비율과 유사하다. 여진이 고려에 조공한 말은 〈표 1〉에서와 같이 토마(土馬)·마(馬)·준마(駿馬)·양마(良馬)·명마(名馬)로 구분하는데, 토마는 경기병에 사용하였고, 마·준마·양마·명마는 중기병에 사용하였다. 특히 토마가 3척(尺) 정도로 체구가 작았던 반면에, 달단마에 해당하는 마와 준마 이상은 4척 1촌(寸)부터 4척 7촌까지의 중형마였다.

여진이 조공한 말들은 수초가 풍부한 높고 추운 지방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척박한 환경에서도 매우 강건했다.16) 여진의 달인(韃人)들은 그들만의 양마지법(養馬之法)으로 달단마를 길들였다. 양마지법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수초의 양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 살의 수마를 거세하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여진의 모든 말은 봄부터 한 달까지 수초를 양껏 먹여 살을 찌웠지만, 이후부터는 우리에 고삐를 메고 풀을 조금씩 먹였다. 수초를 조금씩 먹여 소식으로 단련시키면, 원거리 전쟁에 출전하더

<sup>15)</sup> 여진족은 중국 선진시대 문헌에서 숙신(肅慎)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만주 길림성 일 대에서 농경과 유목생활을 했다. 한대(漢代)와 삼국시대는 읍루(邑婁), 후위시대(後魏時代)는 물길(勿吉), 수・당대에는 말갈(靺鞨) 등으로 종족의 명칭이 변동했다가 거란족의 요나라가 발해를 멸망시킨 이후부터는 여진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었다 (유재성,『한민족전쟁통사』Ⅱ-고려시대편, 국방군사연구소, 1993, 163쪽).

<sup>16) 『</sup>宋史』卷 198, 志卷 151, 兵12, 馬政條, "河東一路水草甚佳, 地勢高寒, 必宜馬性"

라도 내성이 길러져 지치지 않았다. 이러한 양마지법으로 길들인 수말을 선택하여 종마를 남기고 거세함으로써 강건한 전마를 얻을 수 있었다.<sup>17)</sup>

고려 초기 여진은 수만 필의 준마를 고려에 조공하였으며, 18) 여진의 조공마가 고려에 가장 많이 공급된 시기는 현종 원년(1010) 거란이 40만을 이끌고 침공한 거란의 2차 침공 때였다. 19) 고려는 행영도통사 강조가 40만의 방어군을 편성했는데, 당시 여진으로부터 수만 필의 말을 수입하였다.

고려는 11세기 중엽부터 50여 년간 여진을 장악하여 주도권을 잡았다. 그러나 숙종 9년(1104) 제1차 정주성 전투에서 동여진의 완안부에게 패배함으로써 여진의 조공마 수입은 크게 감소했다. 정주성 전투에서 고려가 패배한 이유는 기동력이 열세했기 때문이다. 즉, 고려는 보병이 주력군이었던 반면, 거란은 기병이 주력군이었다. 이에 고려는 윤관의 건의로 기병대인 별무반을 창설하여 제2차 정주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따라서 여진의 달단마 조공은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예종 10년(1115) 아골타가 금제국을 건국함으로써 여진의 달단마 조공은 또다시 단절되었다. 이후 1백 50년간 북방에서 달단마가 유입되지 않았으며, 이로써 고려의 전마는 빠르게 소형화가 진행되었다.

<sup>17)</sup> 王國維編,『蒙古史料四種中』,「黑韃事路戔證」,499等,"韃人養馬之法,自春初罷兵後,凡出戰好馬,並恣其水草,不令騎動,直至西風將至,則取而控之,繫於帳房左右,啖以呰少水草,經月後臕落而實,騎之數百里,自然無汗,故可以耐遠而出戰。尋常正行路時,並不許其吃水草,蓋辛苦中吃水草,不成臕而生病。此養馬之良法,南人反是,所以馬多病也。其牡馬留十分壯好者,作移刺,馬種外餘者多扇了,所以無不强壯也"

<sup>18)</sup> 여진이 고려에 조공한 말의 숫자는 태조 19년(936) 일리천(一利川)에서 후백제와 교전할 때 흑 경기병 9천 5백 필, 정종 2년(947) 거란을 방어하기 위해 광군 30만을 선발할 때 수만 필, 정종 3년(948) 동여진의 대광 소무개가 말 7백 필을 바친 사례가 있다(『高麗史』卷 81, 志第 35, 兵 1, 五軍條; 『高麗史』卷 2, 世家 定宗 3年 9月).

<sup>19)</sup> 金渭顯, 『遼金史研究』, 裕豊出版社, 1985, 166쪽.

하지만 고려는 워나라 간섭기간 중 몽고의 마필 관리방식에 영향 을 받았다. 즉. 원나라에서는 충렬왕 원년(1275) 경상·전라도에 중앙 관리를 파격하여 각 섬의 목마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동왕 2년에는 탐라도목장을 설치하고. 몽고마 1백 60필을 탐라도에 방 목하여 몽고식 마목장을 건설하였다.20) 이때부터 탐라도는 명마의 산지로 중국에 알려졌다. 이로써 여진의 금나라 건국 이후 끊겼던 호마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몽고 기병의 절반 이상 이 가죽 투구만을 쓴 경기병이었던 반면, 3분의 1은 중기병이었다. 그런데 중기병은 투구와 갑옷을 입고. 이들이 타는 말도 마갑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체형이 커야 했다. 21) 몽고말은 대체로 체고가 125~132cm(약 4척 1촌~4척 4촌)이며 체중은 250kg 정도였다. 성질이 온순하지만 지구력이 강하고 거친 먹이에도 잘 견뎠다. 22) 그런데 당시 몽고로부터 들여온 호마는 서역마와 교잡한 몽고마였 다. 23) 다시 말해서 몽고마는 B.C. 3세기 말 흉노의 선우 묵득이 동호와 서쪽의 월씨국을 정복한 이후 서역의 한혈마를 수입하여 몽 고마를 개량하였다.

한편 10세기 초 거란(907~1125)은 지금의 내몽고 지역에 요나라를 세우고, 그곳의 백산과 흑수 사이의 넓은 목초지에서 기북마(冀北馬)를 생산하였다. 24) 그런데 거란이 멸망한 후 몽고의 후신달단이 등장하면서 기북마는 달단마로 불렸다. 고려 전기에 여진이조공한 말이 곧 이 때의 달단마였다. 이후 달단마는 거란 영토였던요동과 두만강 접경지역을 대표하는 말이 되었는데, 조선이 여진과국경을 사이에 두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수입한 여진의 달단마는 고려

<sup>20) 『</sup>高麗史節要』卷 19, 忠烈王 2年 8月.

<sup>21)</sup> 정해은, 『고려시대 군사전략』,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 225쪽.

<sup>22)</sup> 남도영, 앞의 책, 1996, 19쪽.

<sup>23) 『</sup>成宗實錄』卷 281, 成宗 24年 8月 5日.

<sup>24)</sup> 謝成俠、『中國養馬史』、北京 科學出版社、1959、29쪽、

전기의 달단마와 같은 혈통의 말이었다. 아무튼 여진의 달단마는 서역마보다 체구는 작았지만, 지구력이 강해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냈다.

# 3. 호마의 교역과 마종 개량

조선시대의 호마 교역은 고려시대보다 크게 축소되었다. 그것은 조선이 4군과 6진을 개척함에 따라 여진과의 충돌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고려 전기의 호마 교역은 여진의 여러 부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지만, 여진이 금나라를 세운 예종 10년부터는 호마교역이 단절되었다. 그리고 원나라 복속기에는 원이 탐라도에 몽고식 목장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몽고마 1백 50필을 전국의 목장에 종마로 분배함으로써 호마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공민왕의 반원정책으로 몽고마 대신 여진의 달단마 교역을 재개하였지만, 그 숫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러한 국제적 변동에 따라 고려 말호마의 숫자는 100에 한두 마리에 불과할 정도로 호마의 숫자가 크게 줄었다 25)

조선은 건국 직후 명나라의 과도한 징마요구로 인해 전마가 크게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나라가 제주목장을 탈취하려는 야 욕을 보이자, 태종은 장기적인 전마확보책의 일환으로 제주목장의 종마를 본토의 목장으로 옮겨 방목하였다. 그리고 세종과 세조는 마종 개량을 위해 여진의 달단마를 민간 교역을 통해 적극 수입하 였다. 그런데 조선시대 호마 교역의 문제를 정리함에 있어서 고려

<sup>25) 『</sup>高麗史』 卷 124, 列傳 47, 辛禑 5年 10月, "馬有二種, 曰胡馬者, 從北方來者也, 曰鄉馬者, 國中之所出也, 國馬如驢, 無從而得良焉, 胡馬居百之一二"

시대 달단마의 교역을 고찰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 된다. 여기서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여진에서 달단마가 수입되는 과정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조선시대에 교 역한 달단마가 종마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고찰하려 고 한다.

먼저 고려 전기 여진이 달단마를 고려에 진상하는 조공무역에 대해 살펴보자. 10세기 전후 여진은 동아시아의 명마 산지로 유명했는데, 고려에 대한 마무역은 고려건국 초부터 성행하였다. 태조 왕건이 동왕 19년(936) 후백제와 전쟁 때 여진으로부터 1만 필의 말을 수입하여 후백제를 평정하고 후삼국을 통일한 사실,<sup>26)</sup> 정종 2년 (947) 거란의 기병을 방어할 목적으로 30만의 광군(光軍)을 선발한 사실 등이 여진에서 들여온 달단마 유입을 짐작케 한다. 한편정종 3년(948) 동여진의 대광소무개가 달단마 7백 필을 조공마로바친 사실은 고려와 여진의 마무역의 규모가 매우 컸음을 시사한다.

그러면 고려 전기에 여진의 달단마가 대량으로 유입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 두 가지 사실과 관련이 있다. 먼저 고려와 거란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진부족은 친고려정책을 견지하였다. 고려 초기의 경우, 그러한 사례를 보면, 현종 18년(1027)까지는 납공자가 추장이나 수령 등의 직급을 사용하다가 이후부터는 귀덕 장군·봉국대장군·영새장군·유원장군 등의 고려 직첩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문종연간(1046~1082)부터는 많은 동여진부락이 거란의 직첩을 고려에 바치고 고려의 직첩을 받아갔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여진부족들이 처음에는 거란에 회유되었다가 고려 쪽으로 다시 옮겨갔음을 볼 수 있다. 27) 이러한 사실은 여진부락이 호마의

<sup>26)</sup> 李龍範,「麗丹貿易考」,『東國史學』3, 1955.

<sup>27)</sup> 金渭顯, 앞의 책, 1985, 168쪽.

납공을 매개로 고려와 우호관계로 전환했음을 뜻한다. 다음으로 여진이 고려에 호마를 납공한 대신 그들은 고려에서 생활필수품을 교역하여 생활의 안정을 누렸다. 여진이 고려에 납공한 호마의 가격은 정종 3년(948) 대광소무개가 말을 가져왔을 때 정해졌다. 당시여진의 1등마는 은주자(銀注子) 일사(一事)와 면견(綿絹) 각 한필, 2등마는 은발(銀鉢) 일사(一事)와 면견 각 한필, 3등마는 면견 각 한필로 정했다. 28) 당시 송·요와 비교한 고려의 국제 마가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현재 사료가 부족하여 알 수가 없다. 그러나고려의 국내 마가보다는 비쌌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무튼 여진과의호마 교역을 통해 고려는 전마를 얻어 기병의 전투력을 강화하였고, 여진은 물자가 충족하여 생활의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

여진부족들이 말을 공납한 횟수는 〈표 1〉을 통해 알 수 있다. 태조 원년(918)에서 인종 원년(1123)까지 200여 년간 여진·동여진·서여진·북여진·동북여진·동서여진·철리국·동흑수·흑수말갈·여진 말갈 등이 공납한 회수가 120회 정도다. 그런데 당시 여진이 공납한 말의 품종을 구분하면, 명마 8회, 양마 14회, 준마 31회, 마50회, 토마 16회였다. 여기서 말의 등급을 구분하면, 명마는 대마(大馬)인 달단마를 말하고, 양마와 준마는 달단마의 개량종을 지칭하는데, 이들은 모두 1등급에 해당된다. 그리고 마(馬)는 2등급, 토마는 3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충렬왕 때 원나라에서들여온 달단마를 『고려사』에서 모두 '마(馬)'로 기록한 것은 당시들여온 몽고마의 체구가 중간정도였기 때문인 듯하다.29) 그리고

<sup>28) 『</sup>高麗史』卷 2, 世家 2, 定宗 3年 9月.

<sup>29)</sup> 북방의 호마는 몽고마와 달단마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달단마 (몽고마)와 대완마(서역마)의 차이를 인정할 뿐 달단마와 몽고마는 동일한 북방 계통의 말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두 말의 역사적 배경이 다른 것만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차이는 몽고마의 체구가 달단마보다 작다는 것인데,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몽고마의 한반도 전래는 고려 원종 14년(1273)에 원나라가 제주도를 속령으로 만들어 대규모의 목장을 설치하고, 몽

3등급으로 분류된 여진의 토마를 고려가 수입한 것은 토마가 체구는 작았지만, 산악지형의 전투에서 전투력을 크게 입증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고려왕조 전 시기의 토마수입 횟수가 16회였던 바, 현종대 토마수입 횟수는 〈표 1〉에서 보듯이 15회로 전체의 93%를 차지한다. 그러면 고려가 현종대에 거란에서 토마를 집중적으로 수입한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거란 성종이 고려 정벌을 천명하자, 동여진이 양마 1만 필을 거란에 바치면서 고려를 적국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30) 다시 말해서 동여진은 거란의 견제로 인하여 고려에 달단마를 수출할 수 없게 되자, 고려가 차선책으로 토마를 수입하여부족한 전마를 대체하였다. 31) 특히 6차 거란전쟁 때 강감찬장군이 귀주 일대에서 퇴각하는 거란군을 궤멸시켰는데, 당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인은 산악지형에서 토마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고마를 목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조선의 태종이 제주목장의 몽고마를 강화도 길상목장과 전라도 진도목장에 들여와 종마로 사용함으로써 몽고마의 혈통이 계승되었다. 한편 고려에서는 정종 원년(945)~예종대(1105~1122)까지 수천 필의여진 달단마를 수입하여 종마로 사용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준마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금나라가 건국되면서 달단마의 수입이 끊겼다. 그런데 원나라가 멸망한이후 조선에서 여진의 달단마를 수입하였지만, 세종의 야인정벌에 따라 수량이 감소하였다. 성종대부터는 달단마 수입을 법으로 규제함으로써 달단마 수입이 끊기는 상황에 이르렀다.

<sup>30)</sup> 안주섭, 『고려거란전쟁』, 경인문화사, 2003, 117쪽.

<sup>31)</sup> 현종 즉위년에 발발한 2차 거란전쟁의 기동로는 홍화진 → 통주 → 곽주 → 운전 → 안북부를 통과하는 북계 서로인데, 이 지역은 지형의 기복이 심한 구릉지대로써 말이 기동을 발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산악지형의 기마전은 말이 비탈길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체구가 작은 토마를 전마로 활용한 전술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안주섭, 앞의 책, 2003, 121쪽).

〈표 1〉거란 달단마의 고려 유입 상황표

연대	출처	부족명	공납자명	공납마 마종	비고
정종 3년 9월	『고려사』권 2	동여진	대광, 蘇無蓋	馬	馬 700필
현종 3년 2월	『고려사』권 4	여진	추장, 麻尸底	土馬	30姓자제 인솔
현종 5년 2월	"	철리국	萬豆	馬	추장의 使臣
현종 9년 1월	"	서여진	未閼達	馬	7인
″ 1월	"	동서여진	추장,鋤栗弗・阿主	馬	40인
" 2월	"	서여진	凌擧・渠伊	馬	
″ 2월	"	동여진	揉於	馬	부락을 인솔
″ 2월	"	서여진	麻捫・麻閼達	土馬	
" 4월	"	동서여진	仇陀囉·渠逸	土馬	20인
" 4월	"	동여진	추장, 阿盧大	土馬	
" 5월	"	"	牛那・特烏・伊弗	土馬	
" 5월	"	서여진	陀億・實弗	馬	10인
" 6월	"	서북여진	加乙弗	馬	30인
″ 7월	"\Q	동여진	烏頭朱	土馬	30인
" 10월	"	동서여진	鹽之·渠伊那	馬	50인
″ 12월	"	동북여진	阿次·烏乙弗	馬	14인
현종 10년 3월	"	철리국	阿盧大	土馬	추장의 使臣
" 7월	"	서여진	추장, 阿羅弗	馬	
" 12월	"	동흑수	추장, 仇突羅	土馬	
현종 11년 2월	"	동여진	黔弗羅	土馬	7인
현종 12년 1월	"	흑수말갈	추장, 阿豆陁弗	馬	
″ 3월	"	서여진	毛逸羅・羅忽羅	土馬	
현종 13년 12월	"	동여진	史彬	馬	
현종 14년 1월	『고려사』권 5	흑수말갈	烏沙弗	馬	80인
" 4월	"	여진말갈	群豆	馬	70인
현종 15년 7월	"	동서여진	추장圖羅 · 奴乙堅	馬	
현종17년 윤5월	"	"	추장	土馬	부락자제 인솔
현종 18년 2월	"	흑수말갈	장군, 阿骨阿駕	土馬	
현종 19년12월	"	동여진	沙逸羅	馬	
현종 20년 2월	"	동서여진	阿忽沙·一羅骨盖	土馬	100인
현종 21년 1월	"	동여진	烏乙那	馬	50인
″ 2월	"	"	毛逸羅	土馬	
" 5월	"	"	蘇勿盖	馬	馬 9필
″ 12월	"	"	睦史·阿骨·閼那	馬	
현종 22년 1월	"	"	尼牛弗	馬	
″ 3월	"	여진	沙逸羅	土馬	40인
" 6월	"	서여진	寧塞大·軍阿志大	良馬	27인
" 6월	"	동여진	大完, 沙伊羅	良馬	58인
″ 11월	"	"	毛伊羅	馬	

덕종 2년 1월	『고려사』권 5	철리국	사신	良馬	
정종 2년 2월	『고려사』권 6	동여진	장군, 開路	駿馬	71인
" 3월	"	"	추장, 貴正	駿馬	82인
" 9월	"	"	장군, 阿骨	駿馬	135인
정종 6년 1월	"	"	장군, 巴桀	駿馬	40인
<sup>7</sup> 2월	"	"	장군, 徭實	駿馬	48인
// 3월	"	"	장군, 阿骨	馬	馬 15필, 33인
/ 9월	"	서북여진	장군. 耶盤	駿馬	馬 13필
기 12월	"	동여진			馬 35필, 50인
	"		원윤, 阿豆簡	馬	
정종 7년 2월	"	서여진	장군, 尼亏大	名馬	18인
<u>″11월</u>	"	동여진	沙伊羅·耶於盖	馬	62인
정종 8년 1월 #	"	,,	수령, 昆豆	駿馬	
<u>″</u> 11월			장군, 冬弗	馬	
정종 9년 3월	"	"	장군, 開老	馬	40인
정종 10년 10월	"	"	장군, 烏乙達	駿馬	144인
정종 11년 2월	"	"	장군, 巴乙達	駿馬	65인
" 4월	"	"	沙於豆	駿馬	35인
" 4월	"	"	要於羅	良馬	70인
문종 1년 11월	『고려사』권 7	"	장군, 馬志,高謝	駿馬	46인
문종 2년 1월		"	장군, 仇羅麻里弗	名馬	40°I
"1월	"	"	장군, 沙伊羅	土馬	3591
문종 3년 1월	U	"	阿骨	駿馬	32인
<u> </u>	12	" (Q)	麻離害	良馬	
	"	LIOTEL MO	7		20인
<u> </u>	"	서여진	符巨	良馬	20인
<u>" 4월</u>	"	동여진	沙伊羅	駿馬	79인
문종 4년 3월	"	-	장군, 益漢	駿馬	12인
<u>" 3월</u>	"		장군, 阿加主	駿馬	30인
<i>"</i> 3월		"	중윤	駿馬	4인
<i>"</i> 3월	"		장군, 要羅羅	駿馬	38인
문종 6년 1월	"	서여진	장군, 包加主	良馬	
" 1월	"	동여진	장군, 多老	良馬	10인
" 1월	"	서여진	장군, 高反知	馬	
″ 2월	"	동여진	元甫・阿麟	良馬	29인
<sup>"</sup> 9월	"	"	장군, 沙時賀	駿馬	40인
문종 7년 2월	"	"	阿夫漢	駿馬	33인
" 7월	"	"	장군, 古刁達	馬	30인
문종 8년 1월	"	"	중윤. 英孫	名馬	18인
" 4월	"	북여진	장군, 高遮	駿馬	39인
″ 10월	"	동여진	장군, 尼多弗	駿馬	28인
문종 12년 5월	『고려사』권 8	"	장군, 霜昆	良馬	33인
<u> </u>		"	장군, 高刀達	駿馬	50°FI
<u> </u>	"	"	正位, 沒於金	駿馬	18인
/ 1월 / 1월	"	"		良馬	35인
문종 13년 11월	"	"	장균, 卵爬名 장군, 毛下		249l
<u> </u>	"	"	正甫高史	阪内	24 <u>21</u> 23 <u>9</u> 1
문종 17년 2월	"	"	正用同史 장군, 懷化,霜昆	阪内	2011
	"	"	정군, 限记,相庇 장군, 霜昆		
	"	"		良馬	160
문종 19년 2월 " 081	"	"	尼之達	駿馬	16인
" 2월 " 081	"	"	장군, 阿符漢	良馬	27인
<u> </u>	"	"	장군, 仍蔚	駿馬	17인
문종 25년 8월		"	장군, 沙於賀	良馬	20인
문종 26년 9월	『고려사』권 9	"	霜昆	駿馬	
문종 27년 2월	"	"	대장군, 蘇德	名馬	14인
문종 28년 6월	"	"	장군, 祖仰仁	馬	
" 8월	"	"	장군, 所羅	名馬	28인

문종 28년 9월	『고려사』권 9	서여진	장군, 古守	馬	10인
문종 30년 1월	"	동여진	장군, 張向	駿馬	19인
″ 1월	"	"	장군, 開老	名馬	10인
문종 31년 2월	"	"	장군, 方鎭	駿馬	20인
″ 11월	"	"	장군, 康守	名馬	58인
문종 35년 5월	"	"	장군, 陳順	馬	23인
" 8월	"	"	장군, 胡幹	馬	
문종 37년 2월	"	"	장군, 姚彬	馬	
선종 1년 3월	『고려사』권 10	동여진	장군, 分那老	馬	20인
선종 4년 2월	"	"	장군, 怪八	馬	19인
선종 6년 8월	"	"	장군, 西害	馬	14인
″ 11월	"	"	추장, 高舍	馬	21인
″ 2월	"	"	도령·也沙	馬	17인
선종 7년 2월	"	"	都도령・褭於乃	馬	22인
″ 9월	"	"	장군, 阿於大	馬	15인
선종 8년 3월	18	" (2)	장군, 皆多漢	馬	40인
선종 9년 2월	"	"5"	장군 <mark>, 三彬</mark>	馬	
헌종 1년 2월	"	"/	장군, 所羅	馬	28인
″ 2월	"	"	장군, 豆門	馬	48인
숙종 7년 10월	『고려사』권 1	"	霜昆	馬	30인
″ 12월	"	47	추장, 古羅骨	馬	30인
숙종 8년 2월	『고려사』권 12	2	장군, 高夫老	馬	30인
예종 5년 10월	"	서여진	古伋,果下	駿馬	98인
예종 8년 4월	"	여진	烏羅骨實顯	名馬	
예종 9년 4월	『고려사』권 10	동여진	古羅骨史顯	馬	12인
인종 1년 11월	『고려사』권 15	5 "	추장, 實現	馬	
충렬왕 2년 8월	『고려사』권 20	8 원	塔刺赤	馬	馬 160필(제주)
충렬왕 5년 10월	『고려사』권 2	9 "	郎哥万	馬	馬 150필(각섬)
충렬왕 24년 10월	『고려사』권 3	l "	達魯花赤 도리대	馬	馬 14필
공민왕 16년 10월	『고려사』권 4	여진	納哈出의 使臣	馬	
공민왕 18년 11월	"	"	納哈出의 使臣	馬	
공민왕 23년 11월	『고려사』권 4	1 "	納哈出의 使臣	馬	
신우 3년1월	『고려사』권 46		納哈出의 使臣	馬	

한편 조선시대의 호마 확보는 먼저 국내에 마목장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목축하였다.<sup>32)</sup> 그러나 건국 직후에는 종마로 사용할 호

<sup>32)</sup> 조선이 마필을 자체 생산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1413년(태종 13년) 7월 북경 에서 돌아온 사신이 "제주의 마필은 원나라의 소유이므로 중국으로 옮기려 한

마가 크게 부족하여 여진에서 호마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야인들은 호마를 가지고 조선의 마포·식기·지물·소금·쇠 등 일상용품을 교환하였다. 조선은 일상용품으로 교환한 호마가 군사력을 강화시킨 셈이다. 조선은 여진과의 호마 교역을 위해 건국 직후에는 북평관을 설치하였고, 태종 6년(1406)에는 동북면의 경성과 경원에무역소를 설치하였다. <sup>33)</sup> 야인과 거래하는 호마의 환율 문제는 세종 8년(1426)에 호조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즉, 야인의 대마(大馬) 1필에 상등이면 면포 45필, 중등이면 40필, 하등이면 35필로 하고, 중마(中馬) 상등은 30필, 중등은 25필, 하등은 20필로 하며, 소마(小馬) 상등은 15필, 중등 10필, 하등이면 6필로 하였다. 그러나 조선에 적대적인 여진의 여러 부족과 우호적인 동맹가첩목아가 서로 호응하여 경원부를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1410년(태종 10) 길주도 찰리사 조연(趙涓)이 여진 부족 수백 인을살해하였고, <sup>35)</sup> 이 때문에 여진의 달단마 교역이 크게 감소하였다.

세종 6년(1424) 사복시가 "경원과 경성에 시는 백성들을 매개로 하여 여진족에게 생필품을 주고, 달단마를 교역하여 종마로 사용할 것을" 요청한 바, 세종이 함경도 도절제사에게 "달단의 암수 종마를 감영의 물건으로 그곳 군민이 사는 것처럼 사들이고, 마필수와 털빛과 나이를 보고하도록"36) 지시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가 직접 야인의 달단마를 매수하지 않고 백성이 대신토록 한 것은 국가가 군수물자의 매매를 감독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국가는 야인의 달단마가 필요할 때는 민간이 대행토록 했는데,

다"는 명나라 조정의 계획을 태종에게 보고하면서 시작되었다(『太宗實錄』卷 26. 太宗 13年 7月 18日)

<sup>33) 『</sup>太宗實錄』 卷 11, 太宗 6年 5월 10日(己亥).

<sup>34) 『</sup>世宗實錄』 卷 31, 世宗 8年 1月 7日(壬寅).

<sup>35) 『</sup>太宗實錄』 卷 19, 太宗 10年 3月 9日(乙亥).

<sup>36) 『</sup>世宗實錄』 卷 25. 世宗 6年 8月 6日(戊申).

1449년(세종 31)년 세종이 함길도 감사에게 "민간에서 매매하는 야인의 말이나 그곳에서 생산된 말이 있으면 값을 넉넉하게 주고 암수 말 10 필을 보내도록"<sup>37)</sup> 지시한 사실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세종은 왜 함길도 지역에서 달단마를 매수하도록 지시하였을까. 그것은 함길도에서 달단마가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함길도에서 토마의 암말을 방목하면, 달단의 수마가 개원 (開原)을 건너와 교접을 통해 혼혈종인 준마가 산출되었다. 따라서태조가 탔던 팔준마(八駿馬)는 조선에서 산출된 달단마의 혼혈 품종으로 호마와 동급으로 인식하였다. 다시 말해서 강화도 진강목장에서 산출된 벌대총(伐大驄)이라는 준마를 용마(龍馬)라고 불렀던,38)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한편 세종이 탔던 밤색말(栗色馬: 밤색 빛깔을 띤 말)과 옥비흑마(玉鼻黑馬: 코끝이 검은 말)39) 등의명마 역시 달단마 내지는 달단마와 교접한 혼혈 품종이라고 생각된다.

성종대에 이르러 호마의 숫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것은 "원나라 세조가 제주목장에 호마를 방목한 세월이 오래되어 목장의 말들이 모두 과하마가 되었다"40)는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사실성종대 전국의 마목장 수는 세종·세조대보다 증가하였지만, 호마의숫자는 증가하지 않았다. 그 원인은 북방으로부터 달단마 수입이단절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세종과 세조대에는 종마로 사용할 달단마를 10여 필 단위로 민간무역을 통해 수입하였지만, 성종대에는 호마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호마의 씨가 끊겼던 것이다. 성종은 평안도 절도사 정난종(鄭蘭宗)이 "야인들이

<sup>37) 『</sup>世宗實錄』卷 123, 世宗 31年 2月 23日(甲戌).

<sup>38) 『</sup>增補文獻備考』 卷 125, 兵考 17, 馬政.

<sup>39) 『</sup>世宗實錄』卷 25, 世宗 6年 8月 6日(戊申).

<sup>40) 『</sup>成宗實錄』 卷 278, 成宗 潤5月 17日(庚戌).

기근으로 그들의 말을 곡식으로 교환할 것을 청한다"는 치계를 영 돈녕 이상의 관료들과 의논했는데, 이극배(李克培)가 "야인들이 파 는 말을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하되, 마가는 관포(官布)로 지급하 자"<sup>41)</sup>는 주장을 받아들여. 달단마의 수매를 허용하였다.

한편 중종대에는 호마의 가치가 더 커졌다. 호마는 성질이 순하여 길들이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재주와 품질이 뛰어나 전마로서 가치가 크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종 때는 암말 두 필을 요동의 수말 한 필과 교환했는데, 중종 때는 호마의 가격이 2~3 배가 됨으로써 국내 마필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당시의 실정을 중종 7년(1512) 함경북도 절도사 윤희평(尹熙平)은 치계를 올려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마로 야인들의 모물(毛物)과 교환하는 것은 금하는 법령이 있지만, 말과 말을 교환하는 것은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변방 사람들이 우리나라 마소 7~8필을 주고 호마 한 필과 바꿉니다. 그러므로 야인들의 마축(馬畜)은 날로 번성하지만 조선의 축산은 날로 줄어듭니다. 지금부터는 말과 말을 교환하더라도 엄하게 금하고 법을 어긴 자는 금물을 잠매(潛賣)하는 조항으로 논죄하고. 적발하여 단속하지 않는 병사와 진장도 중죄로 논해야 합니다. 42)

위 사료에서 함경도 사람들이 야인의 호마 1필과 조선의 토마 7~8필을 교환하기 때문에 야인들의 마축은 크게 번성하지만, 조선의 마축이 쇠퇴하게 되자, 말과 말의 교환을 법으로 금지했다고 할수 있다. 그동안 토마를 가지고 호마를 교환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았다. 그런데 중종 7년 이후 말과 말을 바꾸는 행위를 금령

<sup>41) 『</sup>成宗實錄』卷 172, 成宗 15年 12月 12日(乙未).

<sup>42) 『</sup>中宗實錄』卷 16, 中宗 7年 潤5月 28日(辛丑), "以牛馬,易胡人毛物,已有禁令,以馬易馬,曾無禁防,邊人因此給我牛馬七八頭,易胡馬一匹,以是胡人馬畜日繁,邊方畜産日減,自今雖以馬易馬,亦令痛禁,犯者以潛賣禁物條論斷,不糾撿兵使及鎭將,亦重論"

으로 만들어 규제함으로써 야인으로부터 호마를 수입하여 개량종의 양마를 확보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 졌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 후기에도 계속되었으나, 도리어 목축방법의 소홀과 청나라에서 수입하는 달단마의 종자마저도 값이 등귀하여,<sup>43)</sup> 달단마가 크게 감소하였다.

### 4. 조선시대 호마목장의 설치

조선시대의 말은 다방면으로 사용되었지만, 기병에게 전마를 공급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 따라서 국가 위정자들은 '군정은 말보다 급한 것이 없다'<sup>44</sup>라고 하여 기동력이 우수한 호마의 생산에 주력하였다. 태종과 세종이 호마목장을 전국에 설치하여 4군 6진을 개척한 반면, 성종후반기부터 목장을 폐지함으로써 전마가 부족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전마로 사용할 호마의 수입 문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 안이 되었지만, 조선은 여진으로부터 호마를 수입할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명나라가 달단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45) 조선은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 전마 1만 필을 바쳤고, 46) 이로 인해 여진은 자국과 적대적인 조선에게 달단마를 조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북경에서 돌아온 사신이 '원나라가 방목했던 제주목장을 명나라가 탈취하려고 한다'<sup>47</sup>)는 보고를 받고, 태종은 제주목장을

<sup>43) 『</sup>增補文獻備考』 卷, 125, 兵考 17, 馬政.

<sup>44) 『</sup>世宗實錄』卷 21, 世宗 5年 8月 2日(庚戌)

<sup>45) 『</sup>太宗實錄』 卷 18, 太宗 9年 10月 12日(庚戌).

<sup>46) 『</sup>太宗實錄』卷 19, 太宗 10年 2月 13日(庚戌).

<sup>47) 『</sup>太宗實錄』 卷 26, 太宗 13年 7月 18日(乙未).

지키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였다. 즉, 제주목장의 몽고마 암수 1천 8백 필을 가까운 진도로 옮기고, 1백여 필은 유사시 수송이 편리한 강화도 길상산으로 옮겨 방목하는 조치를 취했다. 48) 한편 태종은 당번선군과 백성들을 진도에 이주시키고 목장에 목책을 세웠으며, 왜구의 침범을 막기 위해 수호군도 파견하였다. 그러나 전라도 도 관찰사 김정준(金廷儁)이 수초가 부족한 진도목장을 혁파할 것을 주장하자, 태종이 동왕 14년(1414) 11월 7일 목장을 혁파함으로써 진도목장을 통한 호마의 생산은 성과를 보지 못했다.

강화도에서는 목장을 설치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1415년(태종 15) 1월에 둘레 6만 7천 1백 43척의 길상목장을 완성하였다. 3년후 강화도 본섬의 길상·진강·북일곶목장과 부속섬의 신도·매도목장에서 목축한 말이 1천 2백여 필에 이르렀다. 이때 암말 5필과 수말 1필을 묶어 1둔(屯)으로 삼고 목자 1명을 배치했는데, 49) 성별에 따라 암·수말을 구분하면 수말 2백 필, 암말 1천 필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몽고마를 제주에서 처음 방목한 이후 강화도에서 호마를 생산하게 되었다.50)

세종 5년(1423) 강화도 암·수말의 총 숫자는 1천 6백 42필이 다. 51) 6년 동안 불어난 숫자가 4백 50여 필에 불과한 셈이다. 따라서 세종은 호마를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다. 먼저 강화도 본섬 전체를 목장으로 만들고, 다음으로 호마를 강화도 부속섬에 격리하여 방목하였다. 다음의 사료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sup>48) 『</sup>太宗實錄』 卷 26. 太宗 13年 8月 23日(己巳).

<sup>49) 『</sup>太宗實錄』卷 33, 太宗 17年 6月 4日(戊子), "江華府掌內, 鎭江山吉祥山北一串信島煤島等, 五處牧場內入放, 孳息馬匹, 雌雄幷一千二百餘匹, 牧子每一名, 雌馬五匹, 雄馬一匹爲一屯"

<sup>50)</sup> 태종의 강화도 마목장 설치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할 것; 이홍두, 「조선 시대 강화도 馬牧場의 置廢와 戰馬의 생산」『軍史』93, 2014, 105~136쪽.

<sup>51) 『</sup>世宗實錄』 卷 20, 世宗 5年 5月 21日(更子).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강화부 신도(信島)에 들여보내어 방목하는 흑오명마(黑五明馬)의 자웅마와 주둥이가 검고 눈도 검고 불알도 검고 발뒤꿈치도 검은 결백마(潔白馬)의 자웅마는 그 숫자가 적어서 번식이 많지 않습니다. 두 빛깔의 말을 각도 목장에서 골라 내고, 또 경상도 전라도로 하여금 암수 아울러 각 15필씩을, 충청도·경기도·평안도·함길도로 하여금 각각 10필씩을, 황해도·강원도로 하여금 각각 5필씩을 찾아서 올려 보내게 하여, 경기도 보음도(甫音島)에 방목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다만 평안도는 바치지 말게 하였다. 52)

위 사료에서 강화도 부속섬 신도에 암수의 흑오명마와 결백마를 격리하여 방목하였지만, 방목한 호마가 너무 적어 번식되지 않자, 두 종류의 말을 각도에 할당하여 그것을 강화도 보음도에 호마목장을 설치했음을 말하고 있다. 세종의 호마 확보책은 강화도 부속섬 신도와 보음도에 호마목장을 설치함으로써 그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한편 세종은 사람이 살지 않는 강화도 진법도에 호마 수마 1 필과 토마 8 필을 일찍이 방목했는데,53) 이러한 사실은 체구가 큰 호마와 몸집이 작은 토마와의 교접을 통해 4척 이상의 개량마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세종이 호마 목축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고려시대 종마로 사용되었던 달단마가 우왕 3년(1377) 1월 이후 수입이 끊어진 결과 대부분의 호마가 과하마로 퇴화되었기 때문이다. 54) 이는 세종 6년(1424) 사복시55) 제조가 "달단마를 수입하지 못한 지가

<sup>52) 『</sup>世宗實錄』卷 66, 世宗 16年 10月 14日(丁巳), "司僕寺啓, 江華府信島入放黑五明雌雄馬, 及烏觜烏眼烏腎烏蹄潔白雌雄馬, 其數尠少, 孳息不多, 兩色馬匹, 揀出於各道牧場, 又令慶尚・全羅道雌雄幷各十五匹, 忠淸京畿平安咸吉道各十匹, 黃海江原道各五匹, 推覓上送, 放於京畿甫音島"從之, 但令平安道勿進.

<sup>53) 『</sup>文宗實錄』卷 7, 文宗 1年 5月 1日(戊戌).

<sup>54)</sup> 달단마는 고려 국초부터 여진이 조공마로 진헌하였으며, 충렬왕 2년(1276) 이후 에는 원나라가 제주목장에 호마를 방목함으로써 호마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난 우왕 3년(1377)부터는 달단마의 수입이 끊겼다.

<sup>55)</sup> 사복시는 마정의 집행기관으로서 그 소관은 병조에 보고하고 의정부를 거쳐 집

50년이 넘어 그 종자가 멸종되었다"56)라고 한 데서 그것을 확인할수가 있다.

종마로 사용한 호마의 등급은 말의 털빛깔에 따라 구분했는데, 품등은 20~30여 종으로 구분하였다. 57) 특히 털빛깔이 흑오명색·철청색·결백색을 띤 웅마를 최상등으로 여겨 종마로 보호하였다. 세종은 이들 세 품종을 강화도 신도와 보음도에 전담시켜 목축코자하였지만, 이 세 품종의 호마는 매년 널리 구해도 쉽게 얻을 수가없었다. 58) 따라서 세종은 동왕 20년(1438) 의정부가 5색의 종마중에 오명마(五明馬)·철총마(鐵騘馬)·백마(白馬)는 귀한 색깔이므로 경상·전라·충청도에 각각 호마목장을 설치하여 특별히 번식시킬 것을 주장한 건의를 받아들였는데, 59) 이는 세종의 호마 확보책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세종은 동왕 31년(1449) 호마 생산의 본 고장인 함길도조차 종미로 쓸 호마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함길도 감사에게 "야인들에게 말 값을 넉넉히 주고 암·수말을 섞어 10필을 교역해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60) 이러한 사실은 세종대 후반기에도 종마로 사용하는 호마의 숫자가 크게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세조대에도 종마로 사용하는 수말 호마가 크게 부족하여 사 복시가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다.

행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문종 원년 김종서가 영의정으로서 사복시 제조를 맡은 뒤로는 그 소관이 제조를 통해 국왕에 직결되어 처리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그 중요성을 강화하여 제조 2명을 배치하고, 영조 때 『속대전』에서는 제조 2명 중 1명은 영의정이 겸임토록 하였다(南都泳, 앞의 책, 1996, 218쪽).

<sup>56) 『</sup>世宗實錄』 卷 25, 6年 8月 6일(戊申).

<sup>57)</sup> 南都泳, 앞의 책, 1996, 371쪽.

<sup>58) 『</sup>世宗實錄』卷 49, 世宗 12年 9月 13日(辛亥).

<sup>59) 『</sup>世宗實錄』卷 83, 世宗 20年 10月 6日(丁巳).

<sup>60) 『</sup>世宗實錄』 卷 123, 世宗 31年 2月 23日(甲戌).

- 가)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국가에서 경기도 임진현의 호곶(壺串), 강화도의 장봉도(長峰島)·신도(信島), 충청도 태안의 안면곶, 전라도 진도 등 목장 은 양마가 생산되므로 여기서 얻는 새끼말은 모두 나누어 주지 않고 그대로 길렀습니다"<sup>61)</sup>
- 나)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경기 강화도 장봉도 목장에 일찍부터 호마를 방목하여 따로 번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튼튼한 암말과 수말을 합해 46 필이 있사온데, 청컨대 5세 이하의 호마 10 필을 서울로 보내고, 나머지 수말 36 필 중 북일·진강 두 목장에 각각 18 필씩 보내어 감목관이 감독하도록 하고, 이빨 숫자를 본시에 보고하여 마적(馬籍)에 등록토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62)

위의 가)는 종마로 사용하는 호마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전국의 목장 중 임진현의 호곶목장, 강화도의 장봉도·신도목장, 충청도태안의 안면곶목장, 전라도 진도목장에서 태어난 새끼말을 외부로반출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고, 나)는 호마를 전문으로 목축하는 강화도 장봉도목장의 호마 46 필 가운데 10 필을 경기도 목장에보내고, 나머지 36필은 강화도 북일목장과 진강목장에 각각 18 필을 보내되, 호마의 혈통을 마적에 등록했다는 내용이다. 가)·나)를 종합해 볼 때 호마를 별도로 목축하는 호마목장의 증가와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목축한 호마의 개체수가 증가하자, 그곳의 암·수호마를 경기도에 있는 마목장과 강화도 본섬에 있는 두 목장에 분배함으로써 호마목장을 통한 호마의 생산이 증대했다고 하겠다.

여기서 호마를 마적에 등록했다는 것은 호마가 생산되면 관에 신고함으로써 통제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 목적은 마필의 증감을

<sup>61) 『</sup>世祖實錄』卷 5, 世祖 2年 12月 23日(戊午), "司僕寺又啓, 國家以京畿臨津壺, 江華長峯島·信島, 忠淸道泰安安眠串, 全羅道珍島等牧場, 爲良馬所聚, 所得孳息, 並不領賜. 以專其養"

<sup>62) 『</sup>世祖實錄』卷 9, 世祖 3年 9月 7日(戊辰), "司僕寺提調啓, 京畿江華長峰島牧場, 曾放胡馬, 別取孳息, 見在壯兒雄馬幷四十六匹內, 請揀出五歲以下良馬十匹送京, 其餘雄馬三十六匹, 北一鎮江兩牧場各送〔十〕八匹, 令監牧官監放, 毛齒報本司, 以錄馬籍"從之.

파악하는 데 있었다. 다시 말해서 종마로 사용되는 호마를 생산한 목자는 말의 나이와 털색과 소유관계를 관에 신고하였다. 관에서는 이를 조사 확인하여 5통의 마적을 작성했는데, 그 중 1통은 감목관 이 보관하고 나머지는 목사·지방 관찰사·사복시·병조에 보냈다. 특히 목장마는 소속 군(群)을 구별하기 위해 천자문의 글자를 깊이 낙인하여 농간을 막았다. 63) 그리고 수속을 끝낸 목자는 마필의 중 감이 있을 경우 즉시 관에 보고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당시 호마의 생산이 국가적 중대사였음을 시사한다.

사료 가)에서 전국의 호마 목장은 10여 곳이 있는데, 그 중 세곳이 강화도에 있었던 사실이 주목된다. 특히 장봉도목장은 세종대까지 소를 목축했지만, 세조대부터 호마목장으로 전환하여 호마 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사료 나)에서 "46 필의 호마 중 암·수말 14필을 경기도에 보내고 강화도 북일목장과 진강목장에는 수말 18 필을 각각 보냈다"는 내용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세조가세종의 호마 확보책을 계승한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조선 초기에 호마 숫자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제주목장에는 호마가 얼마쯤 있었을까? 이 문제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다. 먼저 명나라의 지나친 제주마 징발의 경우이다. 제주목장의 호마는 충렬왕 2년(1276) 원나라가 탐라에 몽고식 마목장을 설치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64) 그러나 고려 말 3만 필과 조선초기 7만 필을 명나라에 바쳐 그 합이 10만 필이었다. 그 중에 약 6~7만 필을 제주목장에서 차출했으므로 호마의 종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65) 다음으로 호마와 토마를 구별하지 않고, 한 울타리에서 방목한 경우이다. 중종 8년(1513) 12월 26일 한성부 좌윤 김석철이 "제주 3읍의 국둔마는 좋은 말과 나쁜 말이

<sup>63) 『</sup>續大典』 권4, 兵曹 廐牧

<sup>64) 『</sup>高麗史節要』卷 19, 忠烈王 2年 8月.

<sup>65) 『</sup>太宗實錄』 卷 16, 太宗 8年 12月 26日(戊戌).

섞었기 때문에 양마가 많지 않다"66)고 상소한 내용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사실, 호마의 잡종화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토마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인데, 넓고 개방적인 제주목장의 지형적 특성으로볼 때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양마가 있더라도 두살도 되기 전에 장사꾼들과 짜고 남몰래 방매한 경우이다. 당시 상인들은 토마를 호마로 교환하여 큰 이익을 챙겼다.67) 특히 세종 3년(1421)에는 상인들이 양마를 무분별하게 육지로 반출함으로써종마의 씨가 마르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68)

이와 같이 제주 목장에 호마가 감소한 것은 원나라 간섭기에는 엄격했던 호마의 관리체계가 조선 초기에 이르러 붕괴됨으로써 나 타난 결과였다. 따라서 한성부 좌윤 김석철이 "암·수말을 막론하고 두 살 이상으로서 털빛깔이나 품질이 좋은 말이 있으면, 생산되는 대로 해마다 무역하여 별도로 목장을 만들어 한 곳에서 기르면 좋 겠다"69)고 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시도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제주목장에는 4척 이상의 호마가 많지 않아 중국에 보내는 상공마(賞貢馬) 조차도 4척 이하의 토마를 바칠 수밖에 없었다.70)

한편 양계 지역에서도 달단마가 산출되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 하나는 함경도는 본래 달단마가 산출되는 지역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종 15년(1415) 황해도의 용매도 (龍媒島)와 평안도 선천의 신미도(身彌島)에 마목장을 설치하고, 제주목장의 호마를 방목한 사실이다. 먼저 전자와 관련하여 보면, 거란이 몽고 지역을 지배하고 중국과 고려를 침입하는 등 맹위를

<sup>66) 『</sup>中宗實錄』 卷 19, 中宗 8年 12月 26日(庚申).

<sup>67) 『</sup>增補文獻備考』 권 125, 兵考 17, 馬政.

<sup>68) 『</sup>世宗實錄』卷 12, 世宗 3年 6月 10日(辛丑).

<sup>69) 『</sup>中宗實錄』卷 19, 中宗 8年 12月 26日(庚申).

<sup>70) 『</sup>世宗實錄』 卷 49, 世宗 12年 9月 1日(己亥).

떨쳤다. 그러나 거란이 멸망하고 몽고의 후신 달단(韃靼)71)이 등장하면서 거란의 기북마는 달단마로 불렸고 고려의 종마로 사용되었다. 한편 13세기 초에 흥기한 원나라가 1367년(공민왕 16) 멸망하자, 몽고의 후예인 달단이 한반도 동북지역을 생활 터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선의 함경도와 경계를 이루었고, 달단마를 함께 공유하게 되었다.

달단과 국경선을 접한 함경도는 산이 깊고 풀이 무성하며 샘물이 좋았으므로 조선의 명마 생산지로 이름이 났다. 그런데 이곳에는 함흥의 도련포목장·홍원의 마랑이도목장·문천의 사눌도목장·영흥의 말응도목장·단천의 두언태목장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북쪽의 도련포목장과 남쪽의 제주도목장은 우리나라의 기북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하였다. 72)

도련포목장은 옛 옥저 때부터 신마가 나는 명산지였다. 「용비어천가」에는 "태조 이성계가 탔던 팔준마 중에 한 명마가 도련포에서산출되었기 때문에 이곳의 말을 용마라고 불렀다"<sup>73)</sup>고 기록하였다. 세종 때 국마 1백 92필을 방목한<sup>74)</sup> 도련포목장은 40리의 넓은 들판 가운데 있어 해마다 함흥·정평·홍원의 장정들을 동원시켜 목책을 세웠다. 따라서 먼 곳의 백성들이 역사(役事)에 고통이 따랐으므로 숙종 14년(1688)에 목장을 폐지했다가, 숙종 35년(1709)에다시 설치하였다.<sup>75)</sup>

서북면의 황해도 용매도에 제주 호마를 방목한 것은 태종 7년 (1407) 영의정부사 성석린(成石璘)이 "쓸만한 제주말을 골라서 육지 근처의 섬에 방목한다면 3년 안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76)고 주장한

<sup>71) 『</sup>明史』卷 327, 列傳 215, 韃靼.

<sup>72)</sup> 南都泳, 앞의 책, 1996, 234쪽.

<sup>73) 『</sup>英祖實錄』卷 23, 英祖 5年 潤7月 16日(戊子).

<sup>74) 『</sup>世宗實錄地理志』卷 155, 咸吉道 咸興府.

<sup>75) 『</sup>英祖實錄』卷 22, 英祖 5年 6月 30日(癸卯).

<sup>76) 『</sup>太宗實錄』 卷 13, 太宗 7年 1月 19日(甲戌), "濟州馬群, 中國亦謂之良, 其實則不

직후에 실행한 듯하다. 그것은 태종이 길상목장을 완성한 동왕 15년 (1415) 1월 21일에 "일찍이 제주말을 용매도로 옮겨 키웠는데, 그말이 제주말보다 나았다"<sup>77)</sup>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성종 때전 개성유수 고태필(高台弼)이 "원나라 세조가 제주에 목장을 설치하고 방목한 달단마의 혈통을 용매도의 호마에서 찾았던 사실"<sup>78)</sup>도 용매도목장에서 순종의 달단마가 생산되었음을 입증한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호마의 전래와 조선시대 호마목장의 설치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호마의 전래, 호마의 교역과 마종개량 및 호마목장을 설치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호마목장의 설치는 고려 전기까지 유지되었던 달단마의 교역체계와 고려말 몽고마의 유입이 와해되면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여진의 조공무역을 통한 달단마의 유입, 원의 탐라목장 설치와몽고마의 방목, 명의 과도한 징마요구와 조선의 야인정벌에 따른전마확보가 호마목장을 설치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종전에는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하고 탐라목장을 설치한 것을 호마의 한반도 전래의 시작으로 이해하였으나, 필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보았다. 이 문제는 고구려, 고려, 조선이 교역한 북방 유목민족의 실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해답이달라질 수 있다. 필자는 호마를 최초로 전래한 민족은 흉노인데,

及所聞, 宜令擇出可用者, 放于連陸諸島中, 馬政亦宜舉行三年, 有成"

<sup>77) 『</sup>太宗實錄』卷 29, 太宗 15年 1月 21日(庚申).

<sup>78) 『</sup>成宗實錄』卷 281, 成宗 24年 8月 5日(丁卯), "前開城府留守高台弼上書曰, 元世祖命作牧場, 以韃靼馬入放, 至于今號稱龍媒所生"

흥노는 몽고족으로 이후 선비·돌궐·거란·달단·몽고 등으로 계승 되었고, 그들에 의해 호마가 한반도에 전래되었다고 이해하였다. 따라서 고구려에는 선비의 서역마가 전래되었고, 고려 전기에는 여 진의 달단마가,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의 몽고마가 전래되었으며, 조선이 여진의 달단마를 수입하여 전마와 종마로 사용했다는 견해 를 제시하였다.

한편 호마의 교역과 마종 개량은 북방 유목민족의 흥망 성쇠와 관련이 있는 바. 고려 전기에는 여진이 조공무역을 통해 달단마를 고려에 공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마종개량도 어려움이 없었다. 특 히 고려 전기의 호마가 여진의 달단마에서 기원한다는 견해를 입증 하기 위해 거란 달단마의 고려 유입 상황표를 작성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가 몽고마를 탐라목장에 옮겨 와 서 방목하고. 전국의 목장에 몽고마를 종마로 제공함으로써 호마가 널리 퍼졌다. 고려에 조공한 여진 달단마의 마가(馬價)는 3등급으 로 나누어 지불하였다. 그리고 여진이 정종대(946~949)부터 예종 대(1105~1122)까지 1백년 동안 말을 공납한 횟수는 총 127회인 데. 말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토마 16회. 마 57회. 준 마 32회. 양마 14회. 명마 8회로서 조공마의 총 숫자는 4천~5천 필 정도였다. 한편 조선시대 호마의 교역과 야인정벌에 따른 군사 적 갈등으로 여진의 달단마 수입이 단절됨으로써 조선은 자체적으 로 호마목장을 설치하고. 호마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종마로 사용 할 호마의 숫자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다. 세종은 토마 암말 두 필을 호마 수말 한 필과 교환하는 제도를 확립하였고. 세조는 세종 의 호마무역 정책을 계승하여 호마의 종마 확보에 힘썼다. 그러나 성종대부터 호마의 공·사무역을 모두 금지한 결과 호마의 소형화 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조선시대는 명나라의 지나친 징마요구와 세종의 야인정벌에 따른

종마의 수입단절은 전마 확보를 어렵게 하였다. 즉, 원·명왕조교체를 실현한 명나라가 제주목장을 강탈하려고 하자, 태종은 전마 확보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주목장의 몽고마 1천 8백 필을 진도로 옮겼다. 그리고 1백 필은 강화도 길상산에 방목하여 종마로 사용했는데, 이것이 조선시대 마목장 설치의 시초였다. 세종은 태종의 강화도 전 섬의 목장화정책을 계승하여 목장 안의 백성을 이주시키려고 했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전 섬의 목장화는 무산되었다. 이후 세종은 강화도 부속섬에 마목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특히 부속섬에 설치한 신도목장과 보음도목장에서는 호마를 별도로 방목했는데, 호마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새끼말을 섬 밖으로 반출하지 않았다. 한편 세조는 강화도 장봉도목장을 호마 전용목장으로 확대하여 그 새끼말을 전국의 유명한 목장에 종마로 분배하였다. 그러나 성종대 이후 마목장을 폐지하고 둔전을 설치하는 사례가 속출함으로써 호마의 숫자가 점차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목장의 폐지는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원고투고일: 2016.4.2, 심사수정일: 2016.5.21, 게재확정일: 2016.5.24.]

주제어 : 호마, 달단마, 몽고마, 중장기병, 조공마, 호마의 사무역, 종마, 마목장의 폐지 호마목장 장봉도목장

<ABSTRACT>

# The Import of Manchurian Horses and the Installation of Manchurian Horse Ranches in the Joseon Dynasty

Yi, Hong-Du

Horses in the Joseon Dynasty are largely divided into native Jeju horses and northern Manchurian horses. Since Jeju horses were not able to bear the weight of the horse armor and heavily armed cavalryman, large-sized Manchurian horses were used for the the cavalry. Manchurian horses were classified by Central Asian horses, Daldan-ma horses(韃靼馬-highland wild horses), and Mongolian horses. Central Asian horses were imported in the Period of the Korean Three Kingdoms, and Daldan-ma horses were imported from Jurchen through tribute trade in the early Koryo Dynasty. The number of tributes through which Jurchen paid horses during the period from King Jeongjong (945~949) to Yejong (1105~1122) was 127, and the number of tributary horses was approximately 4~5,000 heads. In the late Koryo Dynasty, the Yuan Dynasty brought Daldan-ma horses to Tamra-do Island and installed Mongolian-style ranches there. In addition, it brought 150 Daldanma horses and distributed them to ranch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this increased the number of Manchurian horses in the country. As th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Jurchen was broken in the Joseon Dynasty, Manchurian horses could not be imported directly from Jurchen and only a small number of Manchurian horses were available through private trade. Even the private trading of Manchurian horses was prohibited from the reign of King Seongjong, and this accelerated the miniaturization of Manchurian horses. Under the rule of King Sejong, a male Manchurian horse

was traded with two female Jeju horses.

In the Joseon Dynasty, horse ranches were installed as one of King Taejong's efforts to secure war horses because the trade of Manchurian horses with Jurchen was stopped and Ming confiscated the Jeju ranch. Taejong moved 1,800 male and female Manchurian horses from the Jeju ranch to Jin-do Island in Jeolla-do, and 100 heads to Mt. Gilsang in Ganghwa-do Island. In addition, King Sejong installed Sindo and Boeumdo Ranches in islands affiliated to Ganghwa-do Island, and pastured Manchurian horses, and prohibited the colts from being carried out of the islands for preserving the breed. King Sejo expanded the Jangbong do Ranch in Ganghwa-do Island exclusively for Manchurian horses, and distributed colts from the ranch as breeding horses to other major ranches throughout the country. From King Seongjong, however, ranches were closed and instead government fields were installed, and this reduced the number of Manchurian horses gradually. The closure of horse ranches undermined the military power, and as a result, the country could not avoid Japanese invasion of 1592-1599 and Qing's invasio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Kings Sukjong and Jeongjo promoted the northern expedition policy, and installed the cavalry to content with Qing's Eight Banners and this increased the number of Manchurian horses temporarily. As horse ranches had to be closed for arable lands, however, the production of Manchurian horses had to decrease gradually.

Key words: Manchurian horses, Daldan ma horses (韃靼馬), Mongolian horses, the cavalry, tributary horses, he private trading of Manchurian horses, colts(種馬), the Installation of Manchurian Horse, the Jangbong do Ranch. The closure of horse ranches.

## 명초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

김 경 록\*

- 1. 머리말
- 2. 원말명초 군사상황과 홍무제의 군사인식
- 3. 홍무제의 군제정비와 통치구상
- 4. 홍무제의 군사정책의 특징과 한계
- 5. 맺음말

#### 1. 머리말

원명교체는 동아시아사 북방민족의 통치에서 한족중심의 통치로 전환되었다는 점 이외에 전통적인 한족중심의 각종 사상과 제도가 보다 정밀하게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시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상 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가운데 홍무연간 시대사 및 홍무제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있다.1)

<sup>\*</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 선임연구원

<sup>1)</sup> 홍무연간 혹 홍무제에 대한 연구는 전순동, 박원호 등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군사 문제에 관련해서 서인범의 연구가 주목된다. 전순동은 박사학위논문을 통해 홍무

그러나 명초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한정적이다. 그나마 대부분이 중국학계에서 이루어진 성과라 할 것이다. 홍무제의 군사사상과 명대 군사사상을 분석한 연구,<sup>2)</sup> 명초 元帥府-大都督府-五軍都督府로 변화된 중앙의 최고 군사기구와 衛指揮使司-都指揮使司로 변화된 지방군사기구를 비교분석한 연구,<sup>3)</sup> 명대 군제건설의원칙과 변화과정을 정리한 연구,<sup>4)</sup> 명대 군제사 연구의 한계와 경향을 분석한 연구,<sup>5)</sup> 홍무연간 북부 변방의 건설과정을 정리한 연구,<sup>6)</sup> 등이 있다.

전근대 조선시대 한중군사 및 동아시아사에서 기본적인 군사사 상, 군사제도, 전쟁사 분석에 필수적인 명의 군사제도 및 군사정책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명대 군사정책의 시작점인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을 분석, 정리한다. 홍무제는 명의 건국황제라는 점뿐만 아니라 명대를 관통하는 모든 제도와 전장을 제정

제와 명 왕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연구 성과를 도출했다. 전순동, 『명왕조성립사연구』, 개신, 2000. 박원호는 홍무제에 대한 저명한 평전인 오함의 『주원장전』을 완역하고, 조선과 명과의 관계사 연구에 큰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오함 저, 박원호 옮김, 『주원장전』, 지식산업사, 2003; 박원호, 『명초조선관계사연구』, 일조각, 2002. 서인범은 박사학위논문을 통해 명대 병제사를 일관하였으며, 명대 군사문제에 천학하는 연구성과를 내었다. 서인범, 『明代兵制史の研究』, 東北大學 박사학위논문, 1999. 기타 관련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전순동, 「명초 환관의 외교 활동 실태와 그 특성」 『중국사연구』77, 2012; 윤성익, 「明初(洪武~永樂期)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倭寇」 『명청사연구』35, 2011; 김경록, 「여말선초 홍무제의 고려·조선 인식과 외교관계」 『명청사연구』35, 2011; 「홍무제의 대외인식과 조공제도의 정비」 『명청사연구』37, 2012; 「명초 홍무제의 국가통치구상과 대명률」 『법사학연구』53, 2016; 임상훈, 「홍무제, 명대 환관 외교의 창시자:홍무제의 환관 억제와 그 실체」 『동양사학연구』129, 2014. 등.

<sup>2)</sup> 傅玉璋,「朱元璋的軍事思想-明初統治措施探索之五」,『安徽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1-1; 范中義,「明代軍事思想簡論。『歷史研究』1996-5.

<sup>3)</sup> 黄阿明,「明建國前朱元璋集團的軍事領導機構及其演變」『史林』2010-3.

<sup>4)</sup> 陳表義, 潭式玫,「明代軍制建設原則及軍事的衰敗」『暨南學報』(哲學社會科學) 18卷 2期, 1996.

<sup>5)</sup> 서인범, 「명대 군제사의 제문제」 『중국사연구』 14, 2001.

<sup>6)</sup> 趙毅, 胡凡,「論明代洪武時期的北部邊防建設」『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174 期, 1998.

하였으며, 자신이 경험한 원말의 시대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국 명의 지향점을 제시한 점에서 단순한 개국황제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장에서 주원장이 군사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을 전후한 원말 군사상황을 전체적으로 개관하는데, 이를 원군과 홍 군, 한인군웅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군사상황에 따라 홍무제가 경험하고 시행한 주요 군사활동을 명 건국 이전과 이후로 구분함으 로써 홍무제의 군사인식을 분석한다. 3장은 홍무제가 경험하고 인 식한 군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군제정비과정 및 편제상 의 특징을 정리한다. 특히, 군정체계와 군령체계를 구분하여 정리 하며, 이러한 군사체계가 통치구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한다. 4장은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이 가지는 특징과 그 한계를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명초의 군사체계, 군사사상, 군사정책 등을 시론적이나마 정리함으로써 조선과 명의 군사관계사 연구 및 조선 의 군사사 연구에 기초연구로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 2. 원말명초 군사상황과 홍무제의 군사인식

원나라의 중원통치는 모순적인 측면이 많았다. 大都를 중심으로 화북, 하남 등 장강 이북지역은 실질적인 지배를 한 반면, 장강 이남지역은 명목적인 지배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몽골족 중심의 한족천시 경향이 있었음에도 한족의 민족적 움직임의 여지가 많았다. 이는 원대 법률체계에서 蒙, 漢 이원적인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7) 즉. 정복왕조로서 몽골이 중원을 지배하면서 한편

<sup>7)</sup> 武波, 「元代法律問題研究-以蒙漢二元視覺的觀察爲中心-」 南開大學研究生院 博士

으로 漢法을 채용하고, 중국 전통의 법률제도를 학습 및 계승하면 서도 몽골전통의 蒙法을 승습하여 적용한 점이다. 그러나 원 지배층의 정치적 무관심과 경제적 착취는 고질적인 현상으로 많은 한인 농민들의 반발을 초래하였으며, 원말에 이르러 궁정의 내분과 정치부패로 말미암은 사회불안, 빈번한 황하범람과 같은 자연재해, 재정의 궁핍을 交鈔의 남발로 막고자 하였던 정책의 실패<sup>8)</sup> 등이 겹쳐 결국 원말 종교반란, 농민반란이 일어났다.

원대 국가재정의 원천은 대외적인 교역도 있지만,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곡창지역의 조세수입이었다. 원 중앙정부는 이곳을 중시하여 대규모 농업생산력을 위한 수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漕運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했다. 9) 정부주도의 수리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주요 운하를 관통하게 함으로써 국가재원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몽골지배층의 농민착취는 생산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만연하여 농민층을 비롯한 한족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원말에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뭄과 홍수 등 재변으로 인한 농민층의고통은 가중되었다. 특히, 1344년(지정 4) 황하의 대범람은 하남일대뿐만 아니라 산동지역까지 큰 피해를 주었다. 10) 황하의 범람에 대한 원 중앙정부의 대응은 하남행성의 주민을 강제 동원한 치수사업으로 이어졌으며, 기존의 재해와 착취에 추가된 노역 동원은주민의 반발을 초래했다. 11)

學位論文, 2010.

<sup>8)</sup> 叶世昌,「元代的紙幣流通制度」『中國經濟史研究』 1997-4期. 93~94쪽; 徐云子,「試論元代鈔法」『江蘇錢幣』 2011-1期. 4쪽. 원대 초법은 정교하게 갖춰진 제도로 인해 정액 발행, 높은 현금 태환율, 물가대비 일정한 비율 등으로 전국적으로 통용되었지만, 후기에 재정악화로 인해 과도하게 발행하여 불태환지폐로 바뀌어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었다.

<sup>9)</sup> 潘清,「元代江淮流域水利建設述論」『學術研究』2014-12期. 105쪽.

<sup>10)</sup> 程亞琼,「元代河南江北行省自然災害研究」暨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65~67等.

<sup>11) 『</sup>元史』권47, 本紀42, 順帝5. 1351년(지정 11) 원나라는 공부상서 賈魯를 總治河防 使로 임명하여 황하의 범람을 막도록 하였다. 가로는 汴梁에서 大名에 이르는 13

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던 농민들은 백련교를 비롯한 종교에서 현실의 탈출구를 찾았다. 당시 은밀하게 교세를 확장하던 종교는 다원적이며 외래적인 요소가 있었다. 현실의 어려움을 미래의구세주에서 찾아 彌勒佛과 明王의 出世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12) 1337년(지원 3)에 信陽州에서 胡閏兒가 봉기하였지만 곧 진압되었다. 이후 1351년(지정 11)에 潁州에서 劉福通, 杜遵道, 羅文素, 盛文郁 등이 백련교 宗師 韓山童을 옹립하여 봉기하고자 하였지만,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했다. 그러나 그 세력은 한산동의 아들韓林兒를 다시 추대하여 황하 제방공사에 동원되어 불만이 많았던하남지역 백성들을 선동했다.13) 이들은 원의 통치에 반대하고 새로운 명왕의 출세를 강조한 점에서 紅軍, 紅中軍, 香軍 등으로 불렸다.

초기 홍군은 영주에서 유복통, 두준도 등이 주도한 세력과 湖北의 蘄春, 黃岡에서 彭瑩玉, 布王王, 孟海馬 등이 주도한 세력이 淮水에서 漢水까지 원의 중부지역을 차단하며 세력을 떨쳤다. 이들은 1355년(지정 15) 한림아를 추대하여 황제를 칭하고, 亳州에서 宋용봉정권을 수립하고 연호를 龍鳳이라 했다. 홍군은 이후 주변의 세력을 병합하면서 원군과 전투를 치루었다. 홍군은 참여목적의 차이로 인하여 일원적인 지휘체계를 갖추지는 못했다. 한림아의 宋이가진 명성에 의탁하여 蘄水에서 국호를 天完, 연호를 治平으로 삼아 황제를 칭한 徐壽輝, 定遠縣의 土豪출신으로 濠州에서 봉기한郭子興 등이 원군에 연이어 패한 홍군과 함께 개별적인 군사집단으로 존재했다 14)

路의 백성 15만명을 동원하여 제방사업을 추진하여 백성들의 불만을 초래했다.

<sup>12)</sup> 구체적인 명교에 대한 내용은 吳晗, 「明敎與明朝」『讀史札記』, 三聯書店, 1956. 참 조하기 바란다.

<sup>13)『</sup>庚申外史』上.

<sup>14)</sup> 오함 저, 박원호 옮김, 『주원장전』, 지식산업사, 2003. 50~82쪽.

이 시기 군사상황은 원나라 군대, 한인군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수 있다. 군사측면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였던 원이 河南行省에서 발생한 白蓮敎徒의 亂을 기점으로 확산된 원말 한인군웅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면 적전분열의 양상을 보여주며 자중지란에 빠져기본적인 군사작전을 펼치지 못했다. 원나라는 하남에 방대한 官屯田을 설치하고 중원통치의 근거지로 大都를 비롯한 몽골지배층의 畿內를 보장하는 지역으로 인식하였으며, 많은 軍戸를 배치하여 군사요충지로 삼았다.15) 원의 한인 거주지역에 대한 군대편제는 지방에 몽골군과 探馬赤軍(色目諸部族軍)을 주력으로 한 駐防軍을 주둔시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복통을 비롯한紅軍에 대한 대응은 내부분열의 양상을 띄었다.

河南行省平章이었던 바얀(伯顏)의 도움으로 친왕에서 황제가 된順帝는 승상으로 권력을 전행한 바얀을 제거하고 승상이 된 톡토(脫脫), 다시바투르(答失八都魯), 볼로 테무르(孛羅帖木兒)와 차간 테무르(察罕帖木兒), 李思齊 등으로 하여급 홍군의 봉기에 대해 1351년, 뒤늦게 진압작전을 시행하였다. 중앙의 원군을 지휘한 톡토는 徐州를 공격하여 회복하였으며, 다시바투르는 襄陽을 점령하였고, 차간 테무르와 이사제는 山西방면에서 농민봉기군을 공격하였다. 1353년(지정 13) 張士誠이 봉기하여 泰州, 高郵를 점령하고 大周를 건국하자 톡토가 고우를 공격하여 장사성을 압박하는 등 군사적 우위를 점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권력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져 순제가 톡토의 병권을 박탈하여 진압군의 사기가 저해되었다.

톡토가 제거된 이후 하남행성평장정사 차간 테무르는 홍군토벌에 대한 공로를 바탕으로 중앙정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다시 바투르의 아들 볼로 테무르 역시 홍군토벌의 군공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1362년(지정 22)에 차간 테무르가 산동에

<sup>15)</sup> 周繼中,「元代河南江北行省的屯田」『安徽史學』1984-5期. 13~14쪽.

근거하던 田豊, 王士誠에게 살해되자 차간 테무르의 아들 쿠케 테무르(擴廓帖木兒)가 군권을 이어받아 산서지방을 거점으로 산동, 하남, 섬서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서쪽의 쿠케 테무르와 동쪽의 볼로 테무르는 홍군과 강남의 한인군웅에 대한 군사작전보다 상호간세력다툼 및 중앙 황실과 연결된 정치적 입장의 반목으로 내부분열중이었다. 당시 중앙정부는 순제와 황태자 아유시리다라(愛猷識理達臘)의 대립이 격렬하여 먼저 황태자가 쿠케 테무르와 연결되자순제는 볼로 테무르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쿠케 테무르와볼로 테무르의 대립은 1364년(지정 24) 볼로 테무르가 병력을 이끌고 대도에 들어가 권력을 장악하였지만, 황태자파의 반간책략과순제의 미온적 태도로 제거되고, 최종적으로 1365년(지정 25) 쿠케 테무르가 제도의 군마를 총괄하게 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16)

병권을 장악한 쿠케 테무르는 이사제를 비롯한 군사세력을 동원 하여 한인군응에 대한 토벌을 전개하였지만, 개별 군사세력이 군령 을 받지 않는 사태가 벌어져 결국 쿠케 테무르의 토벌작전은 실패 하였다. 이에 순제는 군사체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황태자가 大 撫軍院使로서 병권을 총괄하도록 했다. 비록 중앙에서 권력다툼은 일정하게 정리되었지만, 여전히 원의 주요 군사력을 보유한 세력이 일원적으로 지휘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17)

이 과정에서 원군은 홍군에 대한 진압은 일정하게 성과를 거두었지만, 강남이남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한인군웅들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이들이 군사적으로 체계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내부분열 및 군사충돌로 인하여 자체적인 군사력의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18) 원의 권력다툼은 원 중심 국제질서에서 자신의 왕위가 언제든 교체될 수 있음을 인지한 고려의

<sup>16) 『</sup>원사』권46, 순제 24년 4월.

<sup>17) 『</sup>원사』권47, 순제 27년 8월 갑인

<sup>18)</sup> 臺灣三軍大學 編, 『中國歷代戰爭史(明)』14, 中信出版社, 2013. 32~34쪽.

공민왕이 한인 군웅세력과 교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 다 <sup>19)</sup>

〈표 1〉홍무제의 주요 군사활동

시기	내용			
1352년(지정12)	廓子興 부대 투신			
1353년(지정13)	定遠 공략, 滁州 함락			
1354년(지정14)	滁州 웅거			
1355년(지정15)	和州 공략, 곽자흥 사망이후 곽자흥 군단의 군령권 총괄, 太平 공략			
1356년(지정16)	集慶 공략하고 應天府로 개칭, 徐達로 하여금 鎭江 공략케 함			
1357년(지정17)	長興, 常州, 寧國, 江陰, 常熟, 徽州, 池州, 揚州 점령			
1358년(지정18)	婺州 공략하고 寧越府로 개칭			
1359년(지정19)	徐壽輝 군대와 일전(潛山), 諸暨, 衢州, 處州 공략			
1360년(지정20)	陳友諒 군대와 일전(太平 회복)			
1361년(지정21)	진우량 정벌전쟁 시작			
1362년(지정22)	진우량 부장 胡廷瑞 항복			
1363년(지정23)	진우량 <mark>정벌전쟁</mark> 승리			
1364년(지정24)	주원장이 吳王 즉위			
1365년(지정25)	대장군 徐達의 장사성 정벌전쟁 시작			
1366년(지정26)	장사성 정벌전쟁			
1367년(오 원년)	장사성 정벌전쟁 승리, 방국진 정벌, 征虜大將軍 徐達의 북벌전쟁 시작 胡廷瑞의 福建 <mark>정</mark> 벌전쟁, 楊璟의 廣西 정벌전쟁			
1368년(홍무 원년)	명 건국, 황제 등극, 湯和의 福建 廣東 평정, 서달의 大都점령			
1369년(홍무 2)	元將 李士際 항복, 북원군대의 大同공격을 李文忠이 퇴패시킴			
1370년(홍무 3)	서달·이문충의 北征			
1371년(홍무 4)	탕화·寥永忠의 西川정벌전쟁, 傅友德의 蜀 정벌전쟁, 원 平章 劉益 투항			
1372년(홍무 5)	정로대장군 서달의 北征, 鄧愈의 吐番 정벌전쟁			
1373년(홍무 6)	쿠케 테무르의 大同 공격과 서달의 방어			
1374년(홍무 7)	이문충·藍玉의 北元전쟁			
1377년(홍무 10)	秦·晋·燕王府의 護衛에 羽林 등 衛軍 添設			
1380년(홍무 13)	胡惟庸의 獄, 中書省 폐지, 大都督府를 五軍都督府로 개편			
1381년(홍무 14)	부우덕·남옥·沐英의 雲南 정벌과 平定			
1382년(홍무 15)	남옥·목영의 大理 점령			
1383년(홍무 16)	征南군대의 복귀			
1387년(홍무 20)	풍승·부우덕·남옥의 요동 정벌(納哈出 투항)			
1390년(홍무 23)	晉王·燕王·齊王의 北元 정벌			
1393년(홍무 26)	藍玉의 獄			
1395년(홍무 28)	『皇明祖訓條章』			

\* 전거 : 『명태조실록』

<sup>19)</sup>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현실』64, 2007. 215쪽.

이상과 같은 원말 시대상황에서 주원장은 처음 곽자흥 부대에 투신한 이후 명 건국에 이르는 동안 다양한 군사경험을 하게 된다. 홍무제로 등극하기 이전까지 주원장의 군사활동 및 경험은 그의 군사인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역 중심으로 集慶전투, 陳友諒 정벌전쟁, 張士誠 정벌전쟁, 閩廣 정벌전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 이들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홍무제의 군사인식을 도출하기 위해 중점사항을 정리한다.

송 건국 이후 홍군에 대한 원군의 공격이 집중되자 원과 홍군은 치열한 전투를 치른 반면, 곽자흥집단의 주원장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1355년(지정 15) 곽자흥 사망 이후 곽자흥의 군사력을 흡수하고 1356년(지정 16) 集慶을 확보하고 應天府로 개칭했다. 이 시기 곽자흥 사망 이후 송은 곽자흥집단을 和州都元帥府로 삼고도원수 郭天敍, 부원수 張天祐, 주원장을 임명하여 지휘체계를 구성했다. 도원수 곽천서가 존재했지만, 가장 강력한 병력을 보유하고 유능한 무장을 거느린 주원장이 주도적으로 군사력을 장악했다.

주원장은 적극적으로 군사지휘능력이 있는 무장을 유입하여 徐達, 湯和, 周德興, 郭興, 郭英, 張龍, 張溫, 張興, 顧時, 陳德, 王志, 唐勝宗, 吳良, 吳禎, 費聚, 唐鐸, 陸仲亨, 鄭遇春, 曹震, 張翼, 丁德興, 孫興祖, 陳桓, 孫恪, 謝成, 李新, 何福, 邵榮, 耿君用, 耿炳文, 李夢庚, 郁新, 郭景祥, 胡泉, 詹永亨 등 鐘離시절부터 함께한 무장이 있을 뿐더러 常遇春, 胡大海, 繆大亨, 馮國用, 馮國勝(馮勝), 沐英, 李文忠, 朱文正, 寥永安, 寥永忠, 俞通海, 鄧愈, 藍玉등 무장을 추가로 유입했다. 뿐만 아니라 李善長, 葉琛, 章溢, 劉基를 비롯한 행정능력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여 대외적 군사충돌을 내부적으로 뒷받침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원말 혼란기에 주원장은 점진적으로 군사력을 확충하면서 강남 한인 지주를 포용

<sup>20)</sup> 臺灣三軍大學 編, 『中國歷代戰爭史(明)』14, 中信出版社, 2013. 31~85쪽.

하여 국가체계를 갖추는 원동력으로 활용했다.<sup>21)</sup> 한인 지주세력을 포용한 점은 단순히 이들이 가진 경제력을 흡수한 점뿐만 아니라 홍군의 봉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이 갖춘 의병조직을 군사력으로 끌어들인 점과 효과적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군수체계와 각종 군정체계를 한인 지주들의 능력과 지식에서 유도한 점이 군사적으로 중요하다.

1352년(지정 12) 주원장은 定遠縣의 土豪출신으로 濠州를 중심으로 웅거하던 곽자흥 부대에 들어갔다. 주도면밀한 성격과 재능으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낸 주원장은 단기간에 자신의 독립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22) 주원장이 곽자흥부대에서 군사활동을 하는 동안, 송 홍군은 원의 적극적인 진압작전으로 패전과 승전을 거듭하며 關先生, 破頭潘, 馮長舅, 沙劉二, 王士誠, 白不信, 大刀敖, 李喜喜 등이 군대를 분산시켜 산서, 섬서, 요동 등지로 이동했다. 송홍군이 원군과 접전을 벌이는 동안 그 남쪽의 徐壽輝, 陳友諒, 張士誠, 方國珍 등이 상호 세력충돌 과정을 거쳤다.

주원장은 집경을 근거지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인군웅들과 경쟁하였다. 1357년(지정 17) 주원장은 長興,常州,寧國,江陰,常熟,徽州,池州,揚州 등 응천부 주변지역을 점령하여 유력 군웅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비록 응천부 주변지역을 근거지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오랜 전란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군수 및 병력 조달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확장된 지역의 주민으로 하여금 군사활동에 필요한 糧草를 납부하도록 하였던 寨糧을 폐지하고 군민들을 보다 안정화시킬 수 있는 둔전을 시행하는 등 군수지원체계 개선에 노력하였다. 23) 1358년(지정 18) 주원장은 元帥 康茂才를 營田使兼帳前總制

<sup>21)</sup> 전순동, 『명왕조성립사연구』도서출판 개신, 55~94쪽.

<sup>22) 『</sup>명태조실록』권2, 을미년 정월 무인.

<sup>23) 『</sup>명태조실록』권8, 경자년 윤5월 갑신. 주원장은 각 군현의 채량을 폐지했다. 채량을 납부하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僉院 胡大海가 아뢰자 민심의 안정과 둔전의 시

로 임명하여 둔전을 조성하도록 했다.24)

둔전뿐만 아니라 엄격한 군기를 강조하여 군사적 승리 못지않게 점령지에 대한 안정화정책을 강조했다. 1359년(지정 19) 浙東지역을 확보한 주원장은 휘하 장수들에게 천하를 평정하려면 반드시 仁義를 강구해야지 군사력에만 의존해서는 백성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백성들을 최대한 위무하여 無恤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새로 점령한 지역에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도록 경계했다. 즉, 자신의 군대가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여 민심을 얻을 것을 요구한 것이다. 25) 주원장이 군웅으로 등장하는 초기에 구체적인 군민대책 및 군수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음에 비하여 다른 군웅들은 혼란기의 지도자로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집경을 근거지로 세력을 확대하던 주원장은 군사적으로 송 홍군이 북쪽에서 원군과 대치중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돌이 없었지만, 서쪽의 진우량, 동쪽의 장사성, 동남쪽의 방국진, 남쪽의 閩,廣西‧廣東 등과 대립하는 양상을 띄었다. 지리적, 군사적 측면에서 가장 위협세력이었던 진우량 세력의 정벌을 우선적이라 판단하고 진우량의 太平공격을 기회로 전면전을 감행하였다. 1360년부터 4년여 동안 진행된 진우량 정벌전쟁은 주원장이 경험한 가장 힘든 전쟁으로 당시 진우량은 한인군웅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지리적으로 장강의 상류에서 공세적인 입장에서 전쟁을 치루었다. 그러나 진우량의 압도적인 수군을 제압하면서 주원장은 한인군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진우량을 제압한 주원장은 당시 군사형세를 분석하고 하북의 볼로 테무르, 하남의 쿠케 테무르, 關中의 이사제와 張良弼 등 원

행을 위한 조치로 채량을 폐지했다.

<sup>24) 『</sup>명태조실록』권6, 무술년 2월 을해.

<sup>25) 『</sup>명태조실록』 27, 을해년 정월 을사. "仁義足以得天下而威武不足以服人心 夫克城 雖以武而安民必以仁 吾師比入建康秋臺無犯故一舉而涂定"

세력이 존재하지만 군율이 엄격하지 못하거나 군사력이 강하지 못 하거나 지리적으로 곤란한 점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26) 이에 비해 서천의 명옥진 세력은 고립적인 위치라 판단하고. 장강하류의 염전 을 바탕으로 세력을 구축한 장사성과 일전을 겨루었다. 27) 장사성 은 私鹽상인출신으로 송의 홍군과는 성격이 달랐다. 최하층이었던 鹽丁을 주축으로 봉기한 장사성은 신앙적인 구호없이 경제적인 불 평등에 대한 반감을 부추켜 세력을 확대하였으며, 주로 지주계층이 호응하였다.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원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전개되 어 한인군웅이었지만, 원에 대한 반감은 거의 없었다. 이는 주원장 과의 군사적 대립관계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원에 투항하고 원은 장사성을 통해 대도에 필요한 식량을 지원받았던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원의 太尉로 임명된 장사성은 江浙과 淮南 지역 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다. 28) 주원장과 장사성의 군사적 충돌은 1356년(지정 16) 양쪽이 경계를 이웃하면서 부터였다. 이후 장사 성이 1363년(지정 23) 오왕을 칭하고 세력을 강화하자<sup>29)</sup> 1365년 (지정 26) 장사성 정벌전쟁을 시작하여 1367년(오 원년) 장사성을 정벌한 뒤 연이어 방국진을 3개월만에 정벌함으로써 유력한 세력 을 모두 정벌하여 세력권에 두었다.

1367년(오 원년) 9월에 주원장은 천하의 형세를 분석하여 자신이 토지가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한 지역을 점령하여 본격적인 南征 北伐을 시행하고자 했다. 당시 군사적으로 원의 세력이 여전히 하남

<sup>26) 『</sup>명태조실록』 권14. 갑진년 4월 갑오.

<sup>27) 『</sup>皇明詔令』卷1, 太祖高皇帝上, 討張士誠令. 「토장사성영」에서 주원장은 자신이 거병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전란이 일어나자 흉도를 모아 바다의 섬을 요충으로 삼아 의지한 죄, 원에 거짓 항복하고 관리를 살해한 죄, 왕을 참칭한 죄, 절강성을 침입하여 다시 원에 항복한 죄, 원의 승상 다스 테무르(達識帖木兒)와 모의한 죄, 錢糧을 원에 보낸 죄, 원의 관리를 함부로 죽인 죄, 백성을 함부로 죽인 죄 등 장사성의 죄상을 천명하여 자신의 거병이 정당하였음을 강조하였다.

<sup>28) 『</sup>명태조실록』권16, 을사년 2월 병오.

<sup>29) 『</sup>명태조실록』권13, 계묘년 9월.

이북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천에 웅거한 夏國의 明昇, 운남의 원세력이었던 梁王, 원에 우호적이었던 복건의 陳友定 등이 있었다. 서달을 비롯한 군사지휘관을 남정북벌군 지휘관으로 임명하여 전방위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한 주원장은 1368년(홍무 원년) 대명의 건국을 천하에 반포했다.

명 건국 이후 홍무제의 주요 전역을 살펴보면 山東전쟁, 河南전쟁, 河北·大都전쟁, 山西전쟁, 陝甘전쟁, 北元정벌, 遼東전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30)</sup> 홍무제의 원 정벌전쟁은 명의 건국이 가지는 정통성문제까지 연결되었다.<sup>31)</sup>

홍무제는 서달의 북벌군이 대도를 점령하자 신속하게 북원을 추격하여 원정군을 파견하면서 한편으로 요동에 잔존한 북원세력의 축출작업을 전개했다. 1371년(홍무 4) 遼陽에 遼東衛를 설치하여 명군의 전진기지로 삼았으며, 뒤이어 定遼都衛指揮使司를 설치하여 당시까지 점령한 요동의 여러 지역을 총괄하였다. 32) 당시 요동의 북원세력은 군벌성격을 가졌으며, 북원정부에 절대적인 복속관계는 없었다. 홍무제는 요동에 대한 기본 군사정책으로 강력한 정벌과함께 광범위한 초무정책을 병행했다.

특히, 서북쪽의 쿠케 테무르가 사망한 뒤 홍무제의 주요 군사목적은 북원과 연결된 요동지역에 집중되었다. 홍무제는 우선적으로기존에 원 중심 국제질서에서 이탈하였다가 다시 북원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던 고려에 대해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여 고려 · 북원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했다. 33) 이는 직접적으로 고려에군마조달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고려의 입경을 금지하는

<sup>30)</sup> 臺灣三軍大學 編, 『中國歷代戰爭史(明)』14, 中信出版社, 2013. 93~133쪽.

<sup>31) 『</sup>皇明詔令』卷1, 太祖高皇帝上, 諭中原檄,

<sup>32) 『</sup>명사』권134, 열전22, 葉旺; 『명태조실록』권66, 홍무 4년 6월.

<sup>33)</sup>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현실』 64, 2007. 217~226쪽.

조치마저 취했다.

응천부에 수도를 둔 상황에서 요동의 변경까지 명의 군사력을 파견하는 것도 문제였으며, 무엇보다 군수지원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북쪽으로 북원 원정군을 파견하고 동쪽으로 대단위 원정군을 파견하기도 부담스러웠다. 이에 홍무제는 정요위를 중심으로지역적인 군사압박은 시행하되 대단위 군사활동보다 회유정책을 통해 원 잔존세력을 약화시키고, 고려와 이들 세력간 연대를 단절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회유정책의 바탕에는 홍무제의 군사인식 및군사정책이 결코 확장위주의 강병책이 아니었음이 존재한다. 홍무제는 因地主義 원칙에 따라 원주민의 자치적인 정치권을 인정하되명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요동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지역이었다. 홍무 제의 강력한 군사적 의지로 명 건국을 전후하여 공세적인 정벌전쟁이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무엇보다 원에 대한 북벌군이 원 세력을 漠北지역으로 밀어냈으며, 서북쪽에서 웅거하던 쿠케 테무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 남쪽으로 변방을 확대하여 평정하였기 때문에 1387년을 기점으로 남은 군사충돌지역은 요동이었다. 요동지역은 나가추를 비롯한 강력한 군사세력이 북원과연결고리를 맺고 정세가 불안정한 고려의 움직임도 예의주시되었던지역이었다. 34)

홍무제가 본격적으로 요동경략을 위한 군사작전을 시행한 시점은 1387년(홍무 20) 馮勝, 傅友德, 藍玉 등의 북벌군 20만명을 출진 시켜 나가추를 압박하였을 때이다.35) 풍승의 군대는 요동의 거점 인 大寧을 점령하고, 최대 원 잔존세력이었던 나가추를 추격하여 金山까지 점령하고, 奉集縣에 철령위를 설치했다.36) 홍무제의

<sup>34)</sup> 나가추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은숙, 「나가추의 활동과 14세기말 동아시아 정세」 『명청사연구』 28, 2007을 참조할 것.

<sup>35) 『</sup>명태조실록』권180, 홍무 20년 정월 계축.

적극적인 요동경략은 요동지역에서 원 잔존세력의 소멸과 명의 대여진 회유정책으로 이어졌으며, 고려 및 뒤를 이은 조선과 정치· 군사적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sup>37)</sup>

이상과 같은 원말명초 군사상황에 대해 홍무제는 신생 국가의 군 주라는 점에서 군사력의 강화 및 중앙집권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졌다. 특히, 건국 군주라는 점에서 홍무제는 사회경제문제뿐만 아니라 군사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첫째, 원말 강남을 중심으로 발생한 농민봉기 및 군웅의 등장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엄정한 군대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주원장이 처음 군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다른 한 인군웅이나 원군에 비하여 군대의 부패와 백성참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봤다. 이를 통해 주원장은 한인군웅 가운데 대표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후 명 건국이후 지속적으로 『대명률』, 『武臣大誥』등을 통해 군대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했다. 38)

둘째, 농민봉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리들의 농민수탈을 방지하고, 농민을 철저히 토지를 매개로 한 지역단위 공동체에 고정시켜 신생 명나라의 통치에 반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셋째, 민호와 군호를 철저히 분리시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군역 및 군사체계를 안정화시키고자 했다. 특히, 군역을 회피하여 도망하는 경향이 명 건국 이후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군호를세습화시켰다. 1383년(홍무 16) 홍무제는 병부에 諭示하여 國家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衛所의 군사로 삼은 것은 고금의 진리이므로

<sup>36) 『</sup>명태조실록』권182, 홍무 20년 6월 정유; 계묘; 정미; 권189, 홍무 21년 3월 신축.

<sup>37)</sup> 김경록, 「여말선초 홍무제의 고려·조선 인식과 외교관계」 『명청사연구』35, 2011. 13~22쪽.

<sup>38)</sup> 王振安,「從大明律的制定看朱元璋的法制思想」『新疆社科論壇』 1991-67]; 余洪波,「明朝大誥頒行動機新議」『河南社會科學』 10卷 2期, 2001; 李洪文, 楊小變,「明太祖重典治吏的措施探究」『邵陽學院學報』(社會科學版) 5卷 2期, 2006 등 참조.

군사의 도망과 어리석은 백성이 이를 숨겨주지 말도록 유시했다. 39) 이러한 홍무제의 군사인식은 통치구상에 그대로 반영되어 백성들을 토지에 연결시켜 징세와 역 부과의 근본으로 삼았던 점과 일맥상통한다.

넷째, 국가의 군사통치는 철저하게 황제에게 귀속되는 군사지휘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홍무제는 원말의 사회혼란 및 홍군에 대한 군사대응에서 황제권에서 벗어난 군벌세력이 독자적으로 세력화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일원적인 황제권에 직속되지 않은 군사력은 반란세력의 군사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인식으로 인해 홍무제는 군사활동에 가담하면서부터 철저히 자신의영향력하에 군사력을 두는 경향을 보였으며, 명 건국 이후 이를제도화하였다.

다섯째, 대외적으로 몽골의 군사적 위협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군사정벌을 시행하였지만, 다른 주변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충돌을 자제하여 명의 통치체제를 안정화시키고자 했다. 명중심 국제질서를 형성하면서 건국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군사력은 자칫 명의 통치체계를 위협할 수 있었다. 주변국과 잦은 군사충돌은 이에 따른 군비와 병력의 조달을 초래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행정체계는 백성들의 불만으로 위협받을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섯째, 기본적으로 원말 사회혼란과 정치변동의 과정을 거치며 유력 한인군웅으로 성장한 홍무제는 명을 건국하면서 전통 중화주 의를 주장하고 일원적인 황제중심의 군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원대의 군제를 개혁하고 건국과정에서 성장한 무장세력을 황제의 통치체계에 흡수함과 동시에 무관우대정책을 시행했다. 1376년(홍 무 9) 홍무제는 중서성으로 하여금 무관의 誥物을 定給하는 제도를

<sup>39) 『</sup>명태조실록』권153, 홍무 16년 4월 무자.

마련했다. 特受壁除, 已入仕及陞除로 구분하여 무관에게 임명장에 해당하는 고칙을 발급하는데, 대도독부, 중서성, 병부, 한림원, 中書舍人, 臺官, 司文監 등 관련 관부에서 엄격하게 勘合, 校閱, 磨勘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40) 이는 임명장의 발급에 황제의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무관들이 명 건국 이후 지속적으로 황제권력을 유지하는 세력으로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인식은 무관자손의 서용을 강조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41)

명초 홍무제는 원말 군사반란과 농민반란 등을 제압하고, 북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강병책을 주장하면서도 일면 모든 군사력은 철저하게 황제중심으로 편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또한, 전통적인 정치체제를 지향하여 건국과정에서 강병책은 필요하였지만, 건국이후 명 중심 국제질서의 안정화를 위해 대외적인 군사충돌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였다.

### 3. 홍무제의 군제정비와 통치구상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홍무제의 군사경험과 활동,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군제정비과정을 정리한다. 원말 농민봉 기군의 지휘관으로 성장한 주원장은 점차 세력을 확대하며 군제를 확립했다. 1364년(지정 24) 확대되는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지휘하 기 위해 部伍法을 만들었다. 42) 편제를 指揮, 千戸, 百戸, 總旗, 小 旗로 일원화시키고, 병사를 기준으로 5,000명에 지휘, 1,000명에 천호, 100명에 백호, 50명에 총기, 10명에 소기를 두었다. 5개의

<sup>40) 『</sup>명태조실록』 권105, 홍무 9년 4월 계묘.

<sup>41) 『</sup>명태조실록』 권106, 홍무 9년 6월 임자.

<sup>42) 『</sup>명태조실록』 권14, 4월 임술.

소기가 모여 총기를, 2개의 총기가 모여 백호를, 10개의 백호가 모여 천호를, 5개의 천호가 모여 위를 구성하는 형식이었으며, 몇 개의 위와 소를 모아 중요 군사거점에 군구개념의 都指揮使司를 만들었다.

주원장은 형식적이었지만 송 용봉정권으로부터 부여받은 오왕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吳를 건국하고 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체제정 비를 추진하였다. 주원장은 오왕에 즉위한 뒤 한 동안 명령을 공포 하며 "黃帝聖旨 吳王令旨"라는 명의를 쓰고, 百司의 官屬을 설치하 면서 실질적인 명대 관제는 시작됐다. 43) 오왕 즉위초기라는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원대의 관제를 모방하여 관제가 정해졌는데, 中書 省과 參議府, 都鎮無司 등의 관서가 대상이었다. 이때 정해진 관제 는 다음과 같다.

⟨표 2⟩ 오 원년 관제(정월기준)

	~			
구분	中書省	參議府	都鎭撫司	考功所
正1品	左右相國			
從1品	平章政事			
正2品	左右丞			
從2品	參知政事			
正3品		參議		
從3品		參軍, 斷事官		
正5品	左右司郎中		都鎭撫	
正6品	員外郎			
正7品	都事, 檢校	斷事經歷		考功郎
從7品	照磨, 管句			
正8品		知事		

\* 전거: 『명태조실록』권14.

이어 다음 달에 大都督府 등 군사체계에 관련된 관제를 제정했 다.44) 이때의 관제는 다음과 같다.

<sup>43) 『</sup>명태조실록』권14, 오왕 원년 정월 갑진.

<sup>44) 『</sup>명태조실록』권14, 오왕 원년 2월 무진.

구분	大都督府	行省	理問所	都鎭撫司	金吾侍衛 親軍都護府	統軍元帥府	各衛親軍指 揮使司	千戶所	萬戶府
從1品	大都督	平章政事							
正2品	左右都督	左右丞							
從2品	同知都督	參知政事			都護				
正3品	副都督					元帥	指揮使		
從3品	僉都督					同知元帥	同知指揮		
正4品			正理問			副使	副使		正萬戶
從4品				都鎭撫					副萬戶
正5品			副理問		經歷			正千戶	
從5品	經歷	郎中		副鎭撫				副千戶	
正6品								鎭撫百戶	
從6品		員外郎							
正7品						經歷	經歷		
從7品	都事	都事檢校			知事				
從8品		照磨 句	知事	知事	照磨	知事	知事		知事
正9品			1-7			照磨	照磨		照磨

〈표 3〉 오 원년 관제(2월기준)

\* 전거 : 『명태조실록』권14.

주원장은 1367년(오 원년)에 大都督府 등 아문의 관제를 제정했다. 45) 대도독부는 大都督(종1품), 左右都督(정2품), 同知都督(종2품), 副都督(정3품), 僉都督(종3품), 經歷(종5품), 都事(종7품)을, 各 行省에는 平章政事(종1품), 左右丞(정2품), 参知政事(종2품), 郎中(종5품), 員外郎(종6품), 都事・檢校(종7품), 照磨・管句(종8품), 理問所의 正理問(정4품), 副理問(정5품), 知事(종8품), 都鎮撫司의都鎮撫(종4품), 副鎮撫(종5품), 知事(종8품), 金吾侍衛 親軍都護府의 都護(종2품), 經歷(정6품), 知事(종7품), 照磨(종8품), 統軍元帥府의 元帥(정3품), 同知元帥(종3품), 副使(정4품), 經歷(정7품), 知事(종8품), 照磨(정9품), 라 衛親軍指揮使司의 指揮使(정3품), 同知指揮(종3품), 副使(정4품), 經歷(정7품), 知事(종8품), 副使(정4품), 經歷(정9품), 日期指揮(종3품), 副使(정4품), 經歷(정7품), 知事(종8품), 照磨(정9품), 千戸所의 正千戸(정5품), 副千戸(종5품), 鎮撫・百戸(정6품), 각 萬戸府의 正萬戸(정4품), 副萬戸(종4품), 知事(종8품), 照磨(정9품) 등이었다.

<sup>45) 『</sup>명태조실록』권14, 오왕 원년 3월 무진.

오 원년에 제정된 편제는 정1품 아문의 중서성을 중심으로 통치구조를 체계화한 것으로 무관직제는 중서성보다 한 단계 낮은 종1품 아문으로 구성되었다. 46) 이 단계의 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원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통일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일원적인 군사편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오 원년 편제는 다음해 명 건국과 동시에 황제체제로 전환되었다. 비록 황제체제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북원정벌, 요동경략, 토번정벌, 민·광정벌등 변방에서 다양한 군사활동이 전개되거나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실질적인 군사작전, 군사동원, 군수보급 등이 시급하였다.

대도독부의 편제뿐만 아니라 오 원년 3월에 武德衛, 龍驤衛, 豹韜衛, 飛熊衛, 威武衛, 廣武衛, 興武衛, 英武衛, 鷹揚衛, 驍騎衛, 神武衛, 雄武衛, 鳳翔衛, 天策衛, 振武衛, 宣武衛, 羽林衛 등 17개 親軍指揮使司를 설치했다. 47) 경사를 중심으로 한 황제권의 직접수호 군사집단으로 친군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군사명령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형식상으로 대도독부가 친군위를 통제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독부를 비롯한 군사체계가 황제에게 종속되도록 의도한 것이다.

명 건국 이후 중서성 중심의 국정운영이 지속되는 가운데, 육부의 구체적인 직장을 제정한 것은 1372년(홍무 5)이었다. 48) 이때 제정된 병부의 직장은 천하의 軍衛, 武選, 廢驛, 甲仗의 정책을 담당하는 것으로 總部, 職方部, 駕部 등 3개의 屬司를 보유했다. 總部는 軍務, 符騐, 巡檢 등의 임무를 관장하였으며, 職方部는 城池, 郵置, 烽堠, 四夷歸化 등을, 駕部는 鹵簿, 馬政, 車輅, 驛傳, 兵器등을 관장했다. 다음 해에 육부와 諸司 관원의 정액이 정해졌는데, 병부는 尚書 2명, 侍郎 2명 그리고 속사의 3개 部에 매부마다 郎中.

<sup>46) 『</sup>명태조실록』권14, 오왕 원년 3월 무진.

<sup>47) 『</sup>명태조실록』권14, 오왕 원년 3월 경오.

<sup>48) 『</sup>명태조실록』권74, 홍무 5년 6월 계사.

員外郎이 각 1명. 主事 각 2명 등 모두 16명의 관원이 두어졌다. 49)

기본 편제 이외에 1376년(홍무 9) 서북쪽의 북원세력이었던 쿠 케 테무르가 사망하고 일단의 군사위협이 제거되자 보다 안정적인 통치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전국의 行中書省을 폐지하고 承宣布政使 司를 설치하여 황제에게 일원화시킴과 동시에 군령 및 행정명령체계를 뒷받침하는 驛傳체계를 병부로 하여금 정비하게 했다. 揚州府驛을 廣陵驛으로 鎮江府驛을 京口驛으로 개칭하는 등 232개의 전국 역전체계를 정비했다.50) 이는 군사정책의 중요한 측면으로 전국의 통치를 민호와 군호로 구분하되 이의 유기적인 결합을 의도한 것이다.

오 원년에 편성된 군제는 명 건국 이후 지속되었지만, 호유용의옥사를 계기로 전면 개편되었다. 1380년(홍무 13)에 대대적인 官制개편을 단행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중서성을 폐지하고 육부의 직능을 강화하고, 大都督府를 五軍都督府로 개편함으로써 모든 서무를 육부를 거쳐 곧바로 황제에게 일원적으로 집중되도록 하고 군사력을 5군으로 전환시켜 상호 견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51) 기존에중서성의 통제를 받아 군정의 실무업무를 담당하던 병부의 직능을 강화시켰다.

구분	屬司	官員	吏典
		尙書, 侍郎 各1명	
	總部	郎中, 員外郎, 主事 各1명	都吏 1명, 令史 2명, 典吏 4명
兵部	職方部	郎中, 員外郎, 主事 各1명	都吏 1명, 令史 2명, 典吏 4명
) \\ H	駕部	郎中, 員外郎, 主事 各1명	都吏 1명, 令史 2명, 典吏 4명
	庫部	郎中, 員外郎, 主事 各1명	都吏 1명, 令史 2명, 典吏 4명 承發典吏 1명, 架閣兼勾銷典吏 1명

〈표 4〉 홍무 13년 병부의 관리 정원현황

<sup>\*</sup> 전거 : 『명태조실록』권130, 홍무 13년 3월 무신.

<sup>49) 『</sup>명태조실록』권83, 홍무 6년 6월 신미.

<sup>50) 『</sup>명태조실록』권105, 홍무 9년 4월 임진.

<sup>51) 『</sup>명태조실록』권129, 홍무 13년 1월 계묘.

이때 육부의 직능을 강화하면서 육부의 관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는데, 육부의 관리는 모두 548명으로 尚書 6명, 侍郎 7명, 郎中24명, 員外郎 24명, 主事 44명 등 관원 105명이었다. 唐制에 비하여 32명이 감축된 것이며, 건국 초기에 비하여 71명이 줄어든수준이었다. 아전은 都東 24명, 수史 134명, 典東 285명 등 443명으로 唐制에 비하여 126명이 감축된 것이며, 건국 초기에 비하여 345명이 줄어든 수준이었다. 홍무 13년에 중서성을 폐지하고육부중심의 통치체계를 정립하면서 관리의 숫자를 줄인 것은 명 건국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통치체제의 정비과정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체계화되었음을 반영한다. 이 가운데 병부는 상서, 시랑 각 1명, 총부 10명, 직방부 10명, 가부 10명, 고부 12명 등 총 44명의 관리가 두어졌다. 52

원래 대도독부는 1364년 주원장이 자신의 군사세력을 체계화하기 위해 편제시킨 군사조직이었다. 53) 이때 변화된 관제는 중서성의 모든 직무를 육부로 나누어 분장시킴과 동시에 무엇보다 군사력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당시 변방 각 지역에서 주변 세력에 대한 정벌활동이 진행중이었으며, 실제 방대한군사력에 대한 지휘권이 무장세력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일원적으로 중앙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병력을 보유하고지휘하던 무장세력은 공신세력이었기 때문에 군사력을 일원적으로통제하되, 호유용의 옥사54)처럼 중앙에서 대도독부를 장악한 세력이 황제권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앙의 군사통제권을 5부로 나누고 이를 황제에게 직속시켰던 것이다. 오구도독부가 처음

<sup>52) 『</sup>명태조실록』권130, 홍무 13년 3월 무신.

<sup>53) 『</sup>명태조실록』권14, 3월 무진. 이때 편제된 大都督府의 군제는 다음과 같다. 大都督(從一品), 左右都督(正二品), 同知都督(從二品), 副都督(正三品), 僉都督(從三品), 經歷(從五品), 都事(從七品).

<sup>54) 『</sup>명태조실록』권129, 홍무 13년 1월 갑오.

설치되었을 때 직무분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丑 5〉明代 五軍都督府 約	統屬현황(홍무 13년 :	기준)
-----------------	---------------	-----

구분	統屬(在京)	統屬(在外)
┃ ┃ 左軍都督府	驍騎衛, 左水軍衛, 左留守衛, 左龍虎	山東都司, 遼東都司, 浙江都司, 廣東都司와 ユ
上字部首府 	衛, 英武衛	관할 衛所
右軍都督府	虎賁衛, 右水軍衛, 右留守衛, 右武德 衛, 廣武衛	狹西都司, 四川都司, 江西都司와 그 관할 衛所
中軍都督府	神策衛,廣洋衛,留守衛,中應天衛,和陽衛	蘇州衛, 太倉衛, 鎭海衛, 揚州衛, 高郵衛, 大河衛, 淮安衛, 沂州衛, 風陽左衛, 風陽右衛, 風陽 中衛, 皇陵衛, 長淮衛, 怀遠衛, 留守中衛, 留守 左衛, 徐州衛, 滁州千戶所, 徽州千戶所, 六安 千戶所, 廬州千戶所, 鎭江千戶所, 安丰千戶所, 信陽千戶所, 宿州千戶所, 洪塘千戶所, 河南都 司와 그 관할 衛所
前軍都督府	天策衛, 豹韜衛, 龍驤衛, 飛雄衛, 龍江衛	湖廣都司, 福建都司, 廣西都司, 福建行都司와 그 관할 衛所
後軍都督府	鷹揚衛, 江陰衛, 興武衛, 橫海衛, 蒙古左衛, 蒙古右衛	北平都司, 山西都司, 山西行都司와 그 관할 衛所

\* 전거: 『명태조실록』권129, 홍무 13년 1월 계묘.

위 표와 같이 명 전체 영역을 분리하여 담당하도록 한 도독부체 제는 재경과 재외를 구분함으로써 오군도독부의 군사적 역할이 중앙과 지방에 걸쳐 광범위하게 걸쳐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좌군, 우군, 후군도독부는 북방의 몽골 및 주요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방비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반하여 중군, 전군은 내지의 주요 거점과 강남의 안정적인 통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중앙의 오군도독부와 지방의 각 위소를 중심으로 군제는 계속 확대되어 1392년(홍무 23)에 전국에 17개 도지휘사사, 329개 위, 65개 守禦千戸所가 설치되었으며, 경위의 병력만 120여만명이었다.55) 이와 같은 방대한 상비군을 보유한다는점은 대외적으로 외침이나 정벌에 활용되지만, 대내적으로 절대황제권에 저항하는 각종 모반사건, 농민반란 진압, 치안유지, 특무

<sup>55) 『</sup>명태조실록』권205, 홍무 23년 10월 무자.

정치 등에 활용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상비군을 유지하는 비용측면 이었다. 이를 해결하는 방책을 제시한 인물은 劉基였다. 유기는 중국 고대 兵制를 참고하여 명대 고유의 軍制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衛所制度였다.

유기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이를 절충한 형식의 위소제도를 만들었다. 위소제도는 전국 단위의 皆兵으로 유사시복무와 평시 본업을 병행할 수 있고 소질과 출신이 보장되는 징병제의 장점과 직업군인으로 오랜 훈련기간과 높은 전투력을 유지할수 있는 모병제의 장점을 모은 것으로 전투역량과 생산역량을 병합한 형태였다.

1370년(홍무 3)에 杭州, 江西, 燕山, 青州衞를 都衞로 승격시키고, 뒤이어 河南, 西安, 太原, 武昌도 都衞로 승격시켰다. 군대와走馬를 조발하는 寶金符, 符牌를 통해 전력을 운용할 수 있었으며, 軍機文書는 都督府, 中書省을 제외하고 함부로 아뢸 수 없었다. 1372년(홍무 5)에 親王護衞指揮使司가 설치되고 매 府마다 護衛 3개가 두어졌으며, 각 衛는 左, 右, 中, 前, 後所를 두었다. 1374년 (홍무 7) 兵衛를 새로 정하여 정벌 등으로 병력을 조발하면 諸將이통솔하였다가 일이 평정되면 각 위로 다시 배속되었다. 다음 해에在京의 留守都衞를 留守衞指揮使司로 개편하고, 在外의 都衞를 都指揮使司로 개편하였는데 北平, 陝西, 山西, 浙江, 江西, 山東, 四川, 福建, 湖廣, 廣東, 廣西, 遼東, 河南 등 13개였으며, 甘州, 大同 등 行都指揮使司 2개였다.

위소는 京師에서 지방 郡縣에 이르기까지 모두 설치되었으며, 중 앙은 五軍都督府가, 지방은 각 都司가 통솔했다. 56) 홍무연간의 위소 병력은 주원장이 처음 봉기할 때 병력(從征), 통일과정에서 복속된 병력(歸稅), 형벌로서 복무하는 병력(謫發). 징발된 병력 등으로

<sup>56) 『</sup>명사』권89, 兵志65, 兵1.

이들은 모두 세습되었다. 명대 군인은 軍籍에 올라 일반 백성들의 民籍과 달리 신분·벌률·경제적으로 衛所에 소속되어 관리되었다. 군인 본인은 正軍, 자제는 餘丁(軍餘)이며, 장교의 자제는 舍人이 었다.

30여 년이 넘는 장기간의 전란은 전국을 황폐화시켰다. 명 건국 이후에도 각지에서 정벌전쟁이 벌어졌으며, 농민반란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전란으로 인한 황폐화와 자연재해는 신흥 명 제국의 기반을 위협하는 요소였기 때문에 홍무제는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다. 먼저 저하된 생산력은 감소한 노동력에 기인하였기 때문에 먼저 인구정책, 농업정책, 조세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했다. 먼저 인구정책은 士農工商의 4業 이외에 逸民이 발생하지않도록 하였으며,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인구를 농지와 연계시켜정착시켰다. 이러한 정착화과정은 里甲制로 표현되었으며, 생산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 조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명건국 이전 오왕으로 즉위한 홍무제는 1367년(오 원년)에 기존 세력권의 徐,宿,濠,泗,壽,邳,東海,襄陽,安陸 등의 군현과 이후 확장된 지역은 3년 동안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57)

명 건국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인 군사편제를 체계화시켰으며, 잔존하는 북원세력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명의 변방 방비체계를 확립시켰다. 홍무제의 군사정책이 크게 전환된 시점은 유력군융세력에서 명의 건국으로 황제체제를 갖춘 1368년(홍무 1), 호유용의 옥을 계기로 중서성 폐지와 육부체계의 확립이 시행된 1380년(홍무 13), 유력한 북원세력이었던 요동의 나가추가 투항함으로써 요동경략이 본격화된 1387년(홍무 20) 등이었다. 이러한시점을 기준으로 홍무제의 군사정책은 무장세력 중심의 지배체제기. 제국으로써 일원적인 군사체계 정립기. 황제중심의 군사체계

<sup>57) 『</sup>명태조실록』권23, 오 원년 5월.

강화기, 명 중심 국제질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체계 안정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홍무제는 북원세력의 제압과 군사반란의 대비를 위해 역대의 옛 제도를 따라 군정권을 일반 행정분야와 분리시켰다. 즉 五軍都督府를 통해 중앙의 병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병권을 흡수합으로써 재상의 권력을 분할하고, 군사력을 황제가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홍무제의 국가통치이념과 일치되는 것으로 황제중심의 전제권력을 확립하고자 했다. 홍무제의 군정권 직접 통제는 송대에 樞密院을 강화하여 재상권과 분리시켜 황제의 전제권력을 강화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홍무제는 무신들에 대한 대우를 강화하여 황제중심의 일원적인 지배구조를 안정화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1371년(홍무 4) 12월에 중서성으로 하여금 軍官, 軍士에 대한 優給의 例를 정하도록 했다. 58) 예를 들면 전사한 軍職에 대해 승습할 자제가 없이 부모나처가 있거나 어린 자제가 있다면 봉록을 모두 지급하되 3년 이후부터는 반으로 줄여 지급하도록 한 것 등이다

홍무제의 군사체계 정비과정은 실질적으로 1390년대에 마무리되었다. 특히, 『제사직장』을 반포하면서 자신의 통치구상에 입각한 통치체계를 편제하였다. 1393년(홍무 26) 3월에 홍무제가 勅命으로 제정하여 內府에서 간행한 『제사직장』은 명초 職官法典으로 명대 說官分職의 制度를 상세히 규정했다. 59) 『제사직장』은 홍무연간에 편찬되어 이후 『대명회전』으로 종합되기 전까지 명대 行政의 중요법전이자, 職官制度의 기준이 되었다. 『제사직장』은 『唐六典』의체제를 모방하여 諸司의 職掌을 분류한 것이었다. 60) 『제사직장』의 편찬에 관련된 중요인물은 예부주사였던 翟善이었으며, 翰林院의

<sup>58) 『</sup>명태조실록』권70, 홍무 4년 12월 계미.

<sup>59)</sup> 鞠明庫,「諸司職掌與明代會典的纂修」『史學史研究』2006-2. 53~57\.

<sup>60) 『</sup>명태조실록』권226, 홍무 26년 3월 경오.

儒臣이 참여했다. 명초 軍職衙門의 관원은 아래 표와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衙門	官員
都督府	左都督,右都督,都督同知,都督僉事
留守司	正留守, 副留守, 指揮同知
都指揮司	都指揮使(2), 都指揮同知(2), 都指揮僉事(4)
衛	指揮使(1), 指揮同知(2), 指揮僉事(4), 衛鎭撫(2)
所	正千戶(1), 副千戶(2), 所鎭撫(2), 百戶(10)
儀衛司	<b>儀衛正(1), 儀衛副(2), 典仗(6)</b>

〈표 6〉홍무연간 軍職衙門의 관원 인원수

역대 다른 왕조와 비교하면 위 표에 보이듯이, 명대 무직아문의 관원은 상대적으로 군사편제와 함께 체계화되었으며, 군령체계에 해당되는 도독부-도지휘사-위-소로 이어지는 체계뿐만 아니라 유수사, 의위사 등 중앙의 호위체계까지 포함된 점은 의미있는 체계라 할 것이다. 홍무제는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과 방위를 위해 武官 들에게 勳錄을 제수하여 우대하였다. 무관은 1품에서 6품에 이르기까지 上柱國에서 武騎尉의 爵勳을 제수하고, 해마다 俸米를 世禄으로 지급했다. 물론 이러한 무관에 대한 작훈을 관품에 따라 상세히 규정하고 운영한 주체는 이부였다. 뿐만 아니라 무관은 구체적인 資格을 제수했다. 홍무연간 무관의 자격과 給授는 아래 표와 같다.

	(- / 0122	
品秩	資格	給授
正1品	左都督, 右都督	初授特進榮祿大夫, 陞授特進光祿大夫
從1品	都督同知	初授榮祿大夫,陞授光祿大夫
正2品	都督僉事, 正留守, 都指揮使	初授驃騎將軍,陞授金吾將軍,加授龍虎將軍
從2品	都指揮同知	初授鎭國將軍,陞授定國將軍,加授奉國將軍
正3品	副留守, 都指揮僉事, 各衛指揮使	初授昭勇將軍, 陞授昭毅將軍, 加授昭武將軍
從3品	留守司指揮同知,各衛指揮同知	初授懷遠將軍,陞授定遠將軍,加授安遠將軍
正4品	各衛指揮僉事	初授明威將軍,陞授宣威將軍,加授廣威將軍
從4品		初授宣武將軍,陞授顯武將軍,加授信武將軍
正5品	儀衛正, 正千戶	初授武德將軍, 陞授武節將軍
從5品	衛鎭撫, 儀衛副, 副千戶	初授武略將軍, 陞授武毅將軍
正6品	典仗,百戶	初授昭信校尉, 陞授承信校尉
從6品	所鎭撫	初授忠顯校尉, 陞授忠武校尉

〈표 7〉홍무연간 武官資格과 급수

\* 전거:『諸司職掌』兵部,司馬部,銓選,資格.

전거: 『諸司職掌』兵部, 司馬部, 銓選, 官制.

홍무연간에 설치된 군사조직은 광역범위는 都司, 留守司였으며, 세부적으로 衛所로 구성됐다. 都司는 17개, 留守司는 1개였으며, 內外의 衛는 329개, 守禦千戸所는 65개였다. 이 가운데 在京에 설 치된 위는 金吾前衛, 金吾後衛, 羽林左衛, 羽林右衛, 府軍衛, 府軍 左衛, 府軍右衛, 府軍前衛, 府軍後衛, 虎賁左衛, 錦衣衛, 旗手衛 등 12개였다.

군사행정조직을 총괄하는 중앙부서는 五軍都督府였는데, 이에 소 속된 衛所는 다음과 같다.

7 H	<i>*</i> =		在外
구분	在京	都司	衛·千戶所
	留鎮軍 領軍左衛 軍左衛衛 軍 大 職 職 大 職 大 職 大 職 大 職 大 職 大 職 大 職 大 職	浙江都司	杭州右衛,杭州前衛,台州衛,寧波衛,處州衛,紹興衛,海寧衛, 昌國衛,溫州衛,臨山衛,松門衛,金鄉衛,定海衛,海門衛,磐石 衛,觀海衛,海寧千戶所,衢州千戶所,嚴州千戶所,湖州千戶所
左軍 都督		遼東都司	定 <mark>遼左衛</mark> , 定遼右衛, 定遼中衛, 定遼前衛, 定遼後衛, 鐵嶺衛, 東寧衛, 瀋陽中衛, 海州衛, 蓋州衛, 金州衛, 復州衛, 義州衛, 遼 海衛, 三萬衛, 廣寧左屯衛, 廣寧右屯衛, 廣寧前屯衛, 廣寧後屯 衛, 廣寧中護衛
		山東都司	青州左護衛,青州護衛,兗州護衛,兗州左護衛,登州衛,青州左衛,萊州衛,寧海衛,濟南衛,平山衛,德州衛,樂安千戶所,膠州千戶所,諸城千戶所,滕縣千戶所
	虎賁右衛 留守右衛 水軍右衛 廣武衛	雲南都司	雲南左衛,雲南右衛,雲南前衛,大理衛,楚雄衛,臨安衛,景東衛,曲靖衛,金齒衛,洱海衛,蒙化衛,馬隆衛,平夷衛,越州衛,六涼衛,鶴慶千戶所
		貴州都司	貴州衛, 永寧衛, 普定衛, 平越衛, 烏撒衛, 普安衛, 層臺衛, 赤水衛, 威淸衛, 興隆衛, 新添衛, 淸平衛, 平壩衛, 安莊衛, 龍里衛, 安南衛, 都勻衛, 畢節衛, 黃平千戶所
右軍都督府		四川都司	成都左護衛,成都右護衛,成都中護衛,成都左衛,成都右衛,成 都前衛,成都後衛,成都中衛,寧川衛,茂州衛,建昌衛,重慶衛, 敘南衛,蓀州衛,盧州衛,松藩軍民指揮司,巖州衛,靑州千戶所, 保寧千戶所,威州千戶所,雅州千戶所,大渡千戶所
7/3		陝西都司	西安左護衛,西安右護衛,西安中護衛,西安左衛,西安右衛,西安右衛,西安前衛,西安後衛,華山衛,泰山衛,延安衛,綏德衛,平涼衛,慶陽衛,寧夏衛,臨洮衛,鞏昌衛,西寧衛,漢中衛,涼州衛,莊浪衛,蘭州衛,秦州衛,岷州軍民指揮司,洮州衛,河州軍民指揮司,甘肅衛 山丹衛,永昌衛,鳳翔千戶所,金州千戶所,寧夏中護衛,甘州中護衛,西河中護衛
		廣西都司	桂林左衛,桂林右衛,桂林中衛,南寧衛,柳州衛,馴象衛,梧州 千戶所

	留守中衛神策衛	直隸	揚州衛, 和州衛, 高郵衛, 淮安衛, 鎭海衛, 滁州衛, 太倉衛, 泗州衛, 壽州衛, 邳州衛, 大河衛, 沂州衛, 金山衛, 新安衛, 蘇州衛, 儀眞衛, 徐州衛, 安慶衛, 宿州千戸所	
中軍 都督	廣洋衛 應天衛	中軍 留守司	鳳陽右衛,鳳陽衛,鳳陽中衛,皇陵衛,留守左衛,留守中衛,長淮衛,懷遠衛,洪唐千戶所	
府     	和陽衛牧馬千戶所	河南都司	歸德衛,陳州衛,弘農衛,汝寧衛,潼關衛,河南衛,睢陽衛,宣武衛,信陽衛,彰德衛,武平衛,南陽衛,寧國衛,懷慶衛,寧山衛,穎川衛,安吉衛,穎上千戶所,河南左護衛,河南中護衛,河南右護衛	
		直隸	九江衛	
	天策衛	湖廣都司	茶陵衛,武昌衛,武昌左衛,黃州衛,永州衛,岳州衛,蘄州衛,施州衛,長沙護衛,辰州衛,安陸衛,襄陽衛,常德衛,沅州衛,寶慶衛,沔陽衛,長沙衛,衡州衛,衢塘衛,鎮遠衛,平溪衛,淸浪衛,偏橋衛,五開衛,九溪衛,荊州左護衛,荊州中護衛,靖州衛,永定衛,郴州千戶所,夷陵千戶所,桂陽千戶所,德安千戶所,忠州千戶所,安福千戶所,道州千戶所,大庸千戶所,天平千戶所,麻遼千戶所,枝江千戶所,武岡千戶所,崇山千戶所,長寧千戶所武昌左右中三護衛	
前軍 都督	龍驤衛 豹韜衛	福建都司	福州中衛,福州左衛,福州右衛,興化衛,泉州衛,漳州衛,福寧衛,鎮東衛,平海衛,永寧衛,鎮海衛	
府	龍江衛 飛熊衛	福建 行都司	建寧左衛,建寧右衛,建陽衛,延平衛,邵武衛,汀州衛,將樂千戶所	
		江西都司	南昌左衛,南昌前衛,袁州衛,贛州衛,吉安衛,饒州千戶所,安福千戶所,會昌千戶所,永新千戶所,南安千戶所,建昌千戶所, 撫州千戶所,鉛山千戶所,廣信千戶所	
		廣東都司	廣州前衛,廣州左衛,廣州右衛,南海衛,潮州衛,雷州衛,海南衛,淸遠衛,惠州衛,肇慶衛,廣州後衛,程鄉千戶所,高州千戶所,廉州千戶所,萬州千戶所,儋州千戶所,崖州千戶所,南雄千戶所,韶州千戶所,德慶千戶所,新興千戶所,陽江千戶所,新會千戶所,龍州千戶所	
	横海衛鷹揚衛		北平都司	燕山左衛,燕山右衛,燕山前衛,大興左衛,永淸左衛,永淸右衛,濟州衛,濟陽衛,彭城衛,通州衛,蘇州衛,密雲衛,眞定衛,永平衛,山海衛,遵化衛,居庸關千戶所
後軍		北平 行都司	大寧左衛,大寧右衛,大寧中衛,大寧前衛,大寧後衛,會州衛,營州中護衛,興州中護衛	
都督 府	興武衛 江陰衛 蒙古左衛 蒙古右衛	山西都司	太原左衛,太原右衛,太原前衛,振武衛,平陽衛,鎭西衛,潞州衛,蒲州千戸所,廣昌千戸所,沁州千戸所,寧化千戸所,鴈門千戸所	
		山西 行都司	大同左衛, 大同右衛, 大同前衛, 蔚州衛, 朔州衛 北平三護衛(燕山左護衛, 燕山右護衛, 燕山中護衛) 山西三護衛(太原左護衛, 太原右護衛, 太原中護衛)	

\* 전거:『諸司職掌』兵部職掌, 職方部, 城隍.

『제사직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명초 홍무연간 군제정비는 홍무 말년에 완성되었으며, 이는 일부 변화는 있었지만, 명대지속되었다.

#### 4. 홍무제의 군사정책의 특징과 한계

홍무제의 군사인식은 구체적인 군사정책으로 홍무연간 시행되어 정착되었다. 홍무제의 군사인식 및 군사정책은 이후 동북아의 여러 국가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명대 군사정책의 기본으로 작용했다.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은 전례없이 모든 군사력을 황제에게 일원적으로 집중시켜 운영된 점, 편제상으로 정1품 아문으로 오군도독부를 두어 문관체계의 최고관부였던 정2품 아문육부보다 우위에 두어 무관에 대한 우대를 체계화한 점, 건국과정에서 필수적이었던 군사력을 북원제압 및 요동경략의 시작과 동시에 9변군진체제로 정리하여 문치중심의 통치를 시행한 점, 위소체제와 같은 민호와 군호를 명확하게 분리시켜 군사체계를 안정화시킨 점 등이 특징이다. 그러나 충군제도의 운영과 폐단, 군수조달체계의 복잡함 등의 한계가 있어 영락제 이후 효율적인 군사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각종 법제에서 문관보다 무관을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홍무연간 건국이후 존재하는 무장세력을 위무하고 이를 통치체계에 포용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비록 무관을 우대하더라도 이들의 우대책은 반드시 황제권에 의해 보호되도록 함으로써 황제중심의 통치체계를 위한 목적이었다. 역설적으로 홍무제는 문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공훈없이 封公되는 것을 금지했다. 61) 인사추천을 하는 관사에서 공훈없는 문관을 모호하게 주청하여 봉작을 받으면 해당관원과 봉작을 받는 이를 모두 참형에 처하도록 했다. 홍무제에게 있어 공후로 봉하는 기준은 외방에 나가 장수가 되고 조정에

<sup>61) 『</sup>大明律』 吏律職制,文官不許封公候. "凡文官 非有大功勳於國家 而所司朦朧奏請 輒封公侯爵者 當該官吏及受封之人 皆斬 其生前出將入相 能除大患 盡忠輔國者 同 開國功勳 一體封侯諡公 不拘此律"

들어와 재상이 되어(出將入相) 환란을 제거하고(能除大患) 충성을 다해 나라를 보필해야(盡忠輔國)했다.

무관에 대한 우대정책을 시행하면서 한편 군사력을 지휘하는 무관들의 반란에 대한 경계심으로 2가지 정책을 시행했다. 첫째는 친왕을 봉군하여 군사지휘권을 부여하고 무관이 보좌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했다. 명대 친왕은 封典제도의 일환으로 책봉되었다. 명대는 봉전의 범주를 친속과 신료로 구분하고, 친속은 다시 國王(親王)과 郡王으로, 신료는 功臣의 封爵·推封·襲封, 土官의 承襲, 文官의 封贈 등으로 구분하였다. 친왕제가 처음 제정된 것은 1369년(홍무 2) 제왕봉건의 제도에서 시작되었으며, 1370년(홍무 3) 親王을 분봉하면서 우선적으로 황태자를 제외한 열번째 황자까지 친왕으로 분봉했다 62)

	1 1/2	
구분	대상	封典
1	長子標	皇太子
2	2子 樉	秦王
3	3子 棡	晋王
4	4子 棣	燕王
5	5子 橚	吳王
6	6子 楨	楚王
7	7子 槫	齊王
8	8子 梓	潭王
9	9子 杞	趙王
10	10子 檀	魯王

〈표 8〉 홍무연간 親王 分封현황

이들은 변방의 요충지를 방비하였으며, 통상적으로 병력을 지휘하여 군사작전을 시행하여 해당지역을 순찰하였기 때문에 塞王이라불렀다. 새왕 이외에 齊王, 魯王, 趙王, 周王, 沈王, 伊王, 唐王, 野王, 楚王, 湘王, 蜀王, 潭王, 岷王 등은 내지에 분봉되었다. 친왕

<sup>62) 『</sup>명태조실록』권51, 홍무 3년 4월 을축.

자들을 봉번한 것은 황실의 인물들을 통해 변방을 방어하고 군사력에 대한 확고한 통제권을 확보하고자하는 홍무제의 정치, 군사전략에 의해 봉번제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변방의 친왕들은 군사권을 가졌지만. 내지의 친왕은 군사권이 없 었다. 변방의 친왕이 가진 군사권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었 으며, 발병은 홍무제의 재가를 거쳐 이루어졌다. 변방의 친왕과 내 지의 친왕이 자율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군사력은 親王護衛指揮使 司에 한정됐다. 친왕호위사는 守衛의 개념으로 설치된 것으로 王府 의 호위를 담당했다. 명분은 호위였지만, 홍무연간이후 실질적으로 왕부에 대한 감시의 기능을 담당했다. 1372년(홍무 5) 설치된 친 왕호위사는 처음 매 王府마다 3護衛로 구성되고. 衛는 左・右・ 前 · 後 · 中 5所로 구성됐다. 개별 所는 千戸 2명, 百戸 10명이 두 어졌다. 63) 호위사의 병력은 변방 친왕과 내지 친왕이 일률적이지 않지만, 대략 1,000~2,500명 병력이었다.64) 제도적으로 친왕의 제한된 군사권은 건문연간 연왕의 靖難之役에 건문제를 비롯한 황 제측이 연왕의 반발을 예견하지 못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역설적 으로 홍무제의 입장에서 무관들의 군사지휘권에 대한 경계심으로 친왕을 봉군했지만. 이들에 대한 경계심마저 작용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자신의 사후 가장 염려스러운 역사적 사건을 초 래하였다.

두번째는 군사지휘권의 작동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황제에게 군령권을 귀속시킨 점이다. 명대의 衛所制는 在京에서 在 外의 郡縣에 이르기까지 모두 설치되었다.일반 행정지역은 한 郡에 한 所를 설치하고, 소를 몇 개 묶어 衛를 설치했다. 일반 군인 112명에 대해 百戸所를 두고. 열개의 백호소에 千戸所를 두었으며.

<sup>63) 『</sup>명태조실록』권71, 홍무 5년 정월 임자.

<sup>64) 『</sup>명태조실록』권130, 홍무 13년 3월 임인.

다섯개의 천호소에 한개의 衛를 두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약 5,600명의 병력이 소속되었다. 위소에 소속된 병력은 명 건국과정부터 從征(주원장이 처음 봉기할 때 이후 개국에 이르기까지 수종한 군인), 歸附(건국과정에서 한인군웅이나 홍군, 원군에서 투항한군인), 謫發(각종 범죄에 연관되어 充軍의 형벌을 받은 자), 垛集(일반 백성 가운데 징발된 군인)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위소는 주둔지가 정해져 있어 주둔지를 중심으로 각종 군사임무를 수행하면서 한편으로 屯田을 경작하여 각종 비용을 충당했다.

홍무제가 지향한 군사지휘체계는 황제에서 五軍都督府, 都指揮使司, 指揮使司, 千戸所, 百戸所로 이어지는 군령체계였다. 이러한 군령체계에서 평소 오군도독부는 소관 위소의 병적에 올라있는 병력을 통솔하지만, 함부로 위소의 병력을 조발하지는 못했다. 병력의 조발은 철저하게 황제에게 귀속되어 있어 유사시 황제가 임명한지휘관에게 일정 위소의 병력을 조발하여 통솔하도록 하였으며, 군사활동이 종료되면 지휘관의 지휘권은 소멸되고 해당 병력은 원래의 위소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체계는 군사력의 사병화를 엄격하게 금지한 조치이며, 필요에 따라 임무를 부여하고 임무종료에 따라 원래의 군사편제로 전환되는 체계였다. 홍무제의 군사지휘체계 구상은 명대 군사지휘체계로 정립되었다. 전국을 위소체제로 편제하고 중앙은 五軍都督府가, 지방은 都司가 병력을 통제하도록 하였으며, 정벌 등 군사작전이 있으면 總兵官을 장수로 임명하여 調發된 위소의 군사력을 통솔하였다.65)

황제로부터 특정 군사력의 지휘권을 부여받은 무관은 해당 임무수행을 위해 관련 군사력의 發兵을 명령한다. 이를 調發, 調遣 등이라 한다. 명대 군사행위에서 세부적인 책임소재를 의미할 때, 조발과 조견은 차이가 있다. 명령의 주체가 조발 및 조견의 명을

<sup>65) 『</sup>명사』권89, 志65, 兵1.

내리면 이를 수행하는 군사지휘관은 조발과 조견의 임무를 수행해 야 했다. 皇命으로 군사를 發兵하도록 명을 내릴 때는 金牌를 사용 하고. 특정 인물을 차정하여 명을 내릴 때는 走馬符牌를 지참하여 보냈다. 66) 1371년(홍무 4) 홍무제는 工部로 하여금 金牌. 走馬符 牌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금패는 2개를 제작하여 中書省과 大都督 府에 각각 보관하였다가 制書로 發兵을 명하면 중서성과 대도독부 가 금패를 제출하고 內府에서 어보를 찍어 발급했다. 주마부패는 국가에 군사적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파견하는 사신이 차고 파견되 었다. 처음 예부에서 唐・宋代 走馬銀牌의 제도를 모방하여 제작하 도록 건의하자 홍무제가 尺寸은 당의 제도를 따르고, 格式은 송의 제도를 따르도록 지시하여 정밀하게 제작하였다. 금자패 20개, 은 자패 20개를 제조했는데, 패문은 "符分所至 即時奉行 違者必刑"이 었다. 주마부패는 鐵로 만드는데 너비는 2촌 5푼. 길이는 5촌의 크기에 위쪽에 飛龍 두 마리가, 아래쪽에 麒麟 두 마리를 새겼으 며 패 머리에 둥근 구멍을 뚫어 붉은 실로 매듭을 지었다. 주마부 패는 內府에 보관하였다가 調發할 때 사용하였다 67)

홍무제는 1368년(홍무 원년) 군사권에 대한 권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황제로서 군사권을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출정하는 장수들에 대한 각종 授節儀式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sup>68)</sup> 군사권에 관련된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명 통치구상의 일환으로 예치를 강조하였던 점을 활용하여 각종 의식으로써 군사의식을 제정했다.

홍무제는 군령권에 관련하여 보고절차 및 발병절차를 엄격하게 법제로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군사작전에 있어 작전권한을 자신이 직접 행사하기도 했다. 물론 황제중심의 명나라에서 최종 군사권은 황제에게 있지만, 광대한 영역과 급변하는 변방의 군사

<sup>66) 『</sup>명태조실록』권47, 홍무 2년 12월 을축.

<sup>67) 『</sup>명태조실록』권65, 홍무 4년 5월 을묘.

<sup>68) 『</sup>명태조실록』권33, 홍무 원년 7월 경술.

상황을 감안하여 황제가 해당 대장군을 임명하여 파견하여 해당 군대 를 통수하도록 하였다. 홍무제는 처음 봉기하면서 군사권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는데. 특히 오를 세운 이후부터 휘하의 군사지휘 관에게 전투를 맡기면서도 중앙에서 스스로 군사전략 및 전술을 세 워 이를 해당 군사지휘관에게 전달하여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주원장이 陳友諒과 그의 아들 陳理를 제압하고 1365년 徐達. 常遇 春. 胡廷瑞. 馮國勝. 華高 등으로 하여금 주 전력을 지휘하여 淮東. 泰州 등을 정벌하도록 했다.69) 이 지역은 張士誠. 方國珍과 접경 한 곳으로 주원장 군대의 東征이 본격화됨을 의미했다. 장사성과의 전쟁에서 서달은 전군을 지휘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수시 로 주원장은 자신의 군사방략을 현장 지휘관 서달에게 전달했다. 일례로 1366년 4월, 서달의 군대가 興化를 취하는 과정에 주원장 은 서달로 하여금 泰州, 興化, 海安, 通州, 高郵의 山川地勢를 그 림으로 그려 보고하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興化를 가장 중요한 군 사요충지로 판단하고 이곳을 우선적으로 공격하도록 군사작전을 하 달했다 70)

군사편제와 문관인사 등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홍무제는 군사 정책의 일환으로 군기의 제조와 조달에 관련된 사항도 중시하여 이 를 규정화했다. 『제사직장』에 규정된 홍무연간의 군기관련 사항은 이전의 왕조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적이었 다. 특히 軍器는 軍器局에서, 軍裝은 針工局에서, 군마관련 장비는 鞍轡局에서 관장하였다. 명대 군법에서 정해진 律은 매 100戸마다 銃手 10명, 刀牌手 20명, 弓箭手 30명, 鎗手 40명으로 할당됐 다. 71) 특히 軍器局, 針工局, 鞍轡局 등은 다양한 군기를 제조하여 조달했는데 물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up>69) 『</sup>명태조실록』권18, 을사 10월 신축.

<sup>70) 『</sup>명태조실록』권20, 병오 4월 무오.

<sup>71) 『</sup>諸司職掌』 工部職掌, 軍器軍裝.

衙門	물 품
軍器局	二意角弓,交趾弓,黑漆鈚子箭,有蠟弓弦,無蠟弓弦,魚肚鎗頭,蘆葉鎗頭,馬軍鴈翎刀,步軍腰刀,將軍刀,馬軍叉,紅油團牌,水磨鐵帽,水磨頭盔,水磨鎖子護項頭盔,紅漆齊腰甲,水磨齊腰鋼甲,水磨柳葉鋼甲,水銀摩挲長身甲,倂鎗馬赤甲
針工局	長胖襖, 袒ネ(+八)褲
鞍轡局	鞍, 轡, 鞭

〈표 9〉홍무연간 軍器軍裝 조달물품 및 담당아문

\* 전거:『諸司職掌』工部職掌, 軍器軍裝.

홍무제는 무관들의 형정에 대해서 무관편제로 별도로 편성했다. 이는 군사지휘체계와 일반 행정체계를 구분한 것으로 일반 행정체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형정을 군사지휘체계에 적용하기 어려워 별도로 오군도독부에 단사관제도를 두어 형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원래 斷事官은 원대에 중서성과 樞密院에 설치되어 刑政과 獄訟을 담당하던 관직이었다. 명 건국초기 行樞密院을 두었지만, 단사관을 설치하지 않고, 大都督府에 설치했다. 대도독부가 五軍都督府로 개편되자 左·右都督의 지휘를 받았다. 오군도독부의 단사관은 刑獄을 총괄했는데, 건문연간에 폐지됐다. 즉, 오군도독부와 그 예하衛所의 軍官과 군인, 軍戸에 대한 형법적용은 五軍都督府의 斷事官이 담당했다. 단사관의 휘하에 五司官(稽仁, 稽義, 稽禮, 稽智, 稽信) 등은 各司와 지방의 都指揮使司, 衛所의 刑名 등을 일을 담당했다. 72)

주로 무관들의 형정을 담당하였던 斷事官은 내부적으로 五司를 두어 在京과 在外로 나누어 각지의 무직아문을 관장했다. 이의 구체적인 관할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

<sup>72) 『</sup>諸司職掌』 五軍都督府斷事官.

	〈丑 10〉	홍무연간	斷事官의	刑政관할	체계
--	--------	------	------	------	----

五司	區分	해당 衙門
左司	在京	驍騎右衛, 英武衛, 鎭南衛, 龍虎衛, 留守左衛, 水軍左衛, 瀋陽左衛, 瀋陽右衛, 府軍左衛, 羽林左衛
	在外	浙江都司,山東都司,遼東都司
右司	在京	府軍右衛,水軍右衛,留守右衛,虎賁右衛,廣武衛,武德衛
	在外	陝西都司,四川都司,廣西都司,貴州都司,雲南都司
中司	在京	旗手衛,和陽衛,廣洋衛,留守中衛,牧馬所,神策衛,應天衛,府軍衛,虎賁左衛
	在外	直隸衛所,河南都司
前司	在京	豹韜衛,龍江衛,飛熊衛,金吾前衛,府軍前衛,留守前衛,天策衛,龍驤衛
	在外	湖廣都司,江西都司,廣東都司,福建都司,福建行都司
後司	在京	錦衣衛, 金吾後衛, 府軍後衛, 興武衛, 鷹揚衛, 江陰衛, 横海衛, 留守後衛, 蒙古左衛, 蒙古右衛
	在外	北平都司, 北平行都司, 山西都司, 山西行都司

\* 전거:『諸司職掌』五軍都督府斷事官、分問衙門.

홍무제는 명조의 형벌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가장 무거운 형벌로 充軍조항을 제정하여 다른 어느 왕조보다 엄격하게 시행했다. 특히, 『대명률』의 충군조항은 모두 46조항이었지만, 이후 1550년(嘉 靖 29) 充軍條例는 213조항이었으며, 1585년(만력 13) 39조항이늘어났다. 이처럼 홍무제 이후 명대 가장 중요한 형벌로서 충군은늘어났다. 중국의 역대 왕조 가운데 가장 엄중한 충군제도를 시행한 명은 각종 범죄에 대한 형벌로 충군을 활용했다. 명대 민호와군호로 구분된 호적제도에 기반하여 변방의 군호에 충역시킴으로써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박탈하였다. 명대 충군은 充軍,邊遠充軍으로 수준이 구분되지만, 문무관원이나 일반백성으로 삶은 박탈되었다. 충군은 刑政의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군역의 충원이란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충군운영에

있어 형정담당 관리들의 농간으로 억울한 충군 및 收賂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sup>73)</sup>

기본적으로 홍무제는 건국과정 및 건국 이후 명 중심 국제질서와 일원적인 황제중심의 통치체계를 구상하면서 군사관련 문제를 중요 하게 인식했다. 그러나 강력한 군사력, 효율적인 지휘체계, 안정적 인 군수보급. 엄정한 군기유지 등을 강조하였지만 이러한 홍무제의 의지와는 달리 각종 군사관련 문제는 명초부터 다양하게 발생하여 이의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74) 일례로 병률이 아닌 명례율에 나타 난「處決叛軍」 조항은 반란군에 대한 세세한 처리과정을 보여준다. 변경의 城池에서 군인이 謀叛을 하면 수어관이 잡아 관에 넘기고 드러난 자취와 증거가 명백하면 국문하여 자백을 받아 도지휘사사 에 문서를 보내도록 하였다. 이에 도지휘사사는 관원을 뽑아 보내 심문하여 억울함이 없으면 곧바로 율에 따라 처치하고 사유를 갖춰 오군도독부에 보고하며, 오군도독부에서는 황제에게 주문을 올려 아뢰도록 하였다. 만약 포정사나 안찰사가 가 있는 곳이라면 이들 이 함께 심문하여 처치하는데. 가령 군대가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 황에서 모반한 군인을 잡아 죽였으면 이 범위에 들지 않도록 규정 했다. 75) 『대명률』에 나타난 병률은 이러한 홍무연간 군사관련 문 제의 발생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명률』이외에 별도로 홍무제 는 『무신대고』를 반포하여 무관들의 각종 병폐현상을 방지하고자 했다.

<sup>73)</sup> 吳艷紅, 『明代充軍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3. 10~15쪽.

<sup>74)</sup> 김경록, 「명초 홍무제의 국가통치 구상과 대명률」 『법사학연구』53, 2016. 99~100쪽.

<sup>75) 『</sup>大明律』名例律, 處決叛軍. "凡邊境城池 若有軍人謀叛 守禦官捕獲到官 顯跡證佐 明白 鞫問招承 行移都指揮使司 委官審問無寃 隨即依律處治 具由申達五軍都督府 奏聞知會 若有布政司按察司去處 公同審問處治 如在軍前臨陣擒殺者 不在此限"

# 5. 맺음말

이상으로 명초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을 정리했다. 원말 몽골지배층의 착취적인 지배방식은 피지배층의 반발을 초래하여 농 민봉기, 한인군웅의 등장 등 결과를 초래했다. 각종 반발에 대한 원 정부의 대응은 내부분열과 권력투쟁으로 군사측면에서 효율적이 지 못했다. 농민봉기는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급속하게 확대되어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지만, 분파적인 형태로 일원적인 군사활 동이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성장한 주원장은 개인적인 능력과 시 대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한인군웅으로 성장했으며, 군사적 인 측면에서 지휘능력을 발휘하여 유력한 한인군웅세력을 제압하고 명을 건국하였다.

명 건국 이후 홍무제는 일원적인 황제중삼의 통치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군사력의 체계화에 노력했다. 군사편제를 개선하여 대도독부를 오군도독부로 개편하였으며, 전국을 민호와 군호체계로 편제하고 위소체계를 갖추었다. 순차적으로 오 건국과 동시에 군사일변도의 통치기구를 군정과 행정으로 구분하여 국가체계를 갖추었으며, 명 건국과 함께 북벌전쟁 수행 및 이의 원활한 체계화를 위한군사편제를 갖추었다.

호유용의 옥사를 기점으로 중서성을 폐지하고 병부를 비롯한 육부의 직장을 강화함으로써 황제중심의 통치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군사권은 군정과 군령을 구분하여 병부가 군정을 담당한 반면, 군령권은 황제에게 직속된 오군도독부가 담당했다. 기존의 대도독부와 달리 오군도독부는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제로 홍무제의 군사인식에서 나온 군사정책이라 할 것이다.

홍무제는 지속적으로 군사체계의 강화 및 황제에 의한 통제를 강 조하여 원대의 군제를 개혁하면서 건국과정에서 성장한 무장세력을 철저하게 황제의 통치체계에 편입시켰다. 이를 위해 무관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이들의 반발을 무마시켰다. 한편, 홍무제는 명 건국 이후 북원의 정벌전쟁, 요동경략 등을 제외한 주변국과의 군사충돌에 대해서 최대한 억제정책을 펼쳤다. 이는 조훈조장에 수록된 홍무제의 의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홍무제의 군사인식은 구체적인 군사정책으로 홍무연간 시행되어 정착되었다. 명 건국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인 군사편제를 체계화시켰으며, 잔존하는 북원세력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명의 변방 방비체계를 확립시켰다. 홍무제의 군사정책이 크게전환된 시점은 유력 군웅세력에서 명의 건국으로 황제체제를 갖춘 1368년(홍무 1), 호유용의 옥을 계기로 중서성 폐지와 육부체계의확립이 시행된 1380년(홍무 13), 유력한 북원세력이었던 요동의나가추가 투항함으로써 요동경략이 본격화된 1387년(홍무 20) 등이었다. 이러한 시점을 기준으로 홍무제의 군사정책은 무장세력 중심의 지배체제기, 제국으로써 일원적인 군사체계 정립기, 황제중심의 군사체계 강화기, 명 중심 국제질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체계 인정기로 구분할 수 있다.

홍무제의 군사인식 및 군사정책은 이후 동북아의 여러 국가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명대 군사정책의 기본으로 작용했다.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은 전례없이 모든 군사력을 황제에게 일원적으로 집중시켜 운영된 점, 편제상으로 정1품 아문으로 오군 도독부를 두어 문관체계의 최고관부였던 정2품 아문 육부보다 우위에 두어 무관에 대한 우대를 체계화한 점, 건국과정에서 필수적이었던 군사력을 북원제압 및 요동경략의 시작과 동시에 9변군진체제로 정리하여 문치중심의 통치를 시행한 점, 위소체제와 같은 민호와 군호를 명확하게 분리시켜 군사체계를 안정화시킨 점 등이특징이다. 그러나 충군제도의 운영과 폐단, 군수조달체계의 복잡함

등의 한계가 있어 영락제 이후 효율적인 군사활동을 제약하는 결과 를 초래하기도 했다.

홍무제에 의해 정립된 명대 군사인식 및 군사제도는 명의 대외 군사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바탕이 되었으며, 조선을 비롯한 주변국 과의 군사관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조선의 경우, 건국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한 조명간 외교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홍무 제의 군사정책, 명의 군사제도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홍무제의 통치구상, 대조선 군사정책, 홍무 제와 명의 군사제도 및 군사정책이 조선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례로 조선의 여진정벌 및 여진관계, 조선의 대마도 정벌, 왜구문제, 임진왜란시 명의 파병 등은 명의 군사제도와 군사정책에 대한 이해없이 조선의 관점에서만 분석되기 어렵다. 이상의 연구과제는 보다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원고투고일: 2016.4.7, 심사수정일: 2016.5.23, 게재확정일: 2016.5.24.]

주제어 : 홍무제, 통치구상, 병부, 오군도독부, 요동경략, 제사직장, 대명률, 대고

<ABSTRACT>

# Hongwu emperor's military recognition and military policy in the early Ming Dynasty

Kim, Kyeong-Lok

In this paper, I researched Hongwu Emperor(洪武帝)'s plans of country governance, his military recognition and military policy which was the general source of military policy in the Early Ming Empire. First, I will focus on state of a Hongwu period and the process of military system, and let's look at linking Hongwu's rule plan and military policy.

Hongwu period was meaningful in established of the new Military Command System(軍事指揮體系) and instituting the Military System (軍制) besides common change of era. The representative military system of Ming Dynasty, and it is influenced not only China history but also Korea history, Japan history the neighboring countries.

Ming dynasty established, but also it marks the reconstruction of a large number of Han Chinese regime's military system and institutions. In terms of construction of the military system, as the founding emperor of the Ming dynasty, Hongwu emperor considered it very seriously. In the early period of establishment of the Ming Dynasty, Hongwu emperor ordered to to formulate the military system with his military experience. In the Ming Dynasty emperors reign, politics was influenced by the former. Military organization was not only a classic military command system but also reflects Hongwu emperor's military recognition, it contains rich ethical thoughts.

Hongwu emperor's military thought stems from domination history of China and has been influenced a lot by traditional military system in china's history. The political trend to strengthen imperial power continued in Ming dynasty. As we saw before, Hongwu emperor abolished prime ministership by reason of the uprising of Hu, Wei-Yong(胡惟庸), and put 6 Ministry directly under jurisdiction of emperor. Besides that, in order to control military power more tightly. Hongwu emperor divided the office for Joint chief of staff, called Great chief of staff(大都督部), into five office for chief of staff(五軍都督部).

Not long after the Ming dynasty established, the military situation was unstable, and the economy also suffered severe damage. In order to strengthen the centralization of authority and consolidate the new power. Hongwu Emperor drew lessons from the failure of Yuan(元) dynasty, summarized the successful experience on the management of past ages after repeated thinking. Due to a profound historical background and his military experience in his early years, he attached great hatred towards the military official embezzlement. This thoughts ran through the whole process when formulated "the Great Ming Code", "Da Gao"(大誥) and other messages as well as regulations. Despite the limitations of these measures, the effect of military system did not achieve the desired results.

Key words: Hongwu emperor(洪武帝), plans of country governance(統治構想), Military Command System(軍事指揮體系), Ministry of War(兵部), Great chief of staff(大都督府), five office for chief of staff(五軍都督部), Strategic governance against Liáo dōng(遼東經略), Jesajikjang(諸司職掌), Great Ming Code(大明律), Da Gao(大誥)

# 1945~1948년 항공력 건설 노력과 그 의의

김 기 둥\*

- 1. 머리말
- 2. 식민지배의 경험과 유산
- 3. 해방 직후 관련단체 조직을 통한 기반 확보 시도
- 4. 통합단체의 조직과 성과
- 5. 맺음말

# 1. 머리말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항복 선언은 식민지 치하에 놓여있었던 한국인들에게 억눌러 있던 것으로부터의 해방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폭발시켰다. 해방 공간에서 수많은 단체가 폭발적으로 조직되어 생겨났던 사실은 당시 한반도 공간의 열기를 보여준다. 1) 이러한 활동들은 정부 수립 차원의 노력을 넘어서 경제·산업·교육·

<sup>\*</sup> 공군사관학교 인문학과 조교수

<sup>1)</sup> 崔章集,『韓國現代政治의 構造와 變化』, 까치, 1990, 82~83쪽

과학 등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었고, 새로운 국가 건설의 이상을 표방하였다.

당시의 활동은 앞선 시기, 즉 일제시대의 경험과 유산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특히 과학 분야의 경우, 20세기 전반에 이루어졌던 과학·기술상의 혁신을 한반도에 구현하려는 활동이 전개되었다. 20세기의 과학·기술상의 혁신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항의 하나는 항공기의 발명에 따른 인간 활동 공간의 3차원적 확대였다. 항공력은 일제의 대륙침략전쟁과 2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중요한 전쟁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가치가 더욱 부각되었다.

식민지 상황에서도 항공력의 도입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항공력 도입에 대한 식민당국의 목적은 원활한 석민지배와 전쟁 동원에 있었지만, 여기서 육성되었던 인적 물적 자원의 일부는 해방 공간에서 항공력 구축을 위한 기본 자산으로 자리하였다. 한편으로 중국이나 미국 등 망명 공간에서 활동하였던 인물들 가운데 항공 분야에 활동하였던 경우도 상당하였다. 의 일제 패망 이후 이들은 새로운 공간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활동에 대한 구상을 고민하였다.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 항공력은 과학기술상의 최첨단 영역에 있었다. 세계 각국은 2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부각된 항공력에 대하여 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한반도에 진주한 미·소 양국 역시 일제의 항공 유산과 한반도의 항공력 구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항공 분야의 발전 과제 수립과 실행은 이러한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해방 공간에서 항공력

<sup>2)</sup> 미국 이주 한국인들은 임시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에 자체적으로 월로우스 (Willows) 비행학교를 운영하기도 하였고, 중국 방면에서는 중국 공군 소속으로 한국 출신 항공인이 지속적으로 양성되어 임시정부가 이들을 토대로 공군 창설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홍선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군 건설 계획과 추진」, 『軍史』 97, 2015).

건설에 관한 논의는 당시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살펴봐야 하는 주제라 하겠다.

공군과 대한국민항공사(KNA) 창설로 귀결되는 해방 공간의 항공력 건설 활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루어졌다. 국방부와 공군은 공간사(空刊史)로서 군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공군 창설 전의 활동으로 이 시기 항공 분야의 활동을 정리하였다. ③ 군 출신 역사학자의 공군 창설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분석된 바 있다. ④ 또한 항공대학교 등 항공 관련 교육기관이나 항공우주학회와 같은 관련 학회에서도 민간항공산업 성장의 측면에 주목하여 해방 공간에서의 항공 분야를 정리한 바 있다. ⑤ 그리고 당시 활동했던 항공인들의 회고록을 통해 관련 내용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⑥

이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방 공간에서 전개하였던 항공 분야 활동의 개략적인 내용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서술이지닌 한계 또한 명확하여 이 시기 활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군 관련 성과는 건군사 서술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항공인들의 조선경비대 합류 전 활동에 관한 서술은 단편적

<sup>3)</sup> 공간사는 꾸준히 간행되어 왔는데, 최근의 주요 간행물을 보면 아래와 같다. 백기인, 『建軍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공군본부 편, 『공군여군사』, 공군 본부, 2006; 공군본부 편, 『(1집 개정판)공군사』, 공군본부, 2010

<sup>4)</sup> 金暻綠, 「해방 이후 남북한의 공군력 인식과 한국전쟁 준비과정」, 『軍史』 67, 2008; 金暻綠, 「6·25전쟁 이전 공군의 창군과 전력증강」, 『軍史』 73, 2009; 李明 煥, 「공군의 창설과 발전」, 『軍史』 68, 2008

<sup>5)</sup> 한국항공우주학회 편, 『韓國航空宇宙科學技術史』, 韓國航空宇宙學會, 1987; 김진원, 「항공 발달사」, 『韓國航空宇宙學會誌』 20, 1992; 한국항공진흥협회 편, 『航空年鑑』, 韓國航空振興協會, 2000; 임달연, 『한국항공우주사』, 한국항공대학교출판부, 2001; 대한민국항공회 편, 『대한민국 항공사: 1913~1969』, 대한민국항공회, 2015

<sup>6)</sup> 대표적인 회고록은 김광한, 『하늘을 보라, 끝이 없다-창공의 사나이 김광한』, 도서 출판 삶과꿈, 1991; 송석우, 『노고지리의 증언』, 한국항공대학교출판부, 1999; 장지 량, 『빨간 마후라 하늘에 등불을 켜고』, 이미지북, 2006; 김정렬, 『항공의 경종』, 대희, 2010 등을 들 수 있다.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고. 무엇보다 특정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경향 이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 항공 관련 기관의 서술 역시 마찬가지 다. 그러다보니 기존 연구성과는 앞선 서술을 재정리하는 차원의 성과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서술은 당시의 정세를 입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다 루고 있으며, 특히 당시의 복잡한 정세와 친일 문제 등의 민감한 사안 에 대하여 회피하면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 7) 이 글에서는 기존의 서술이 지닌 성과와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먼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가시화될 때까지의 항공계 동향을 정리 한 뒤. 이들이 항공 건설을 위하여 어떤 방략을 취하였는지 살펴보 고. 결국 정부 수립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활동이 어떻게 분화해갔는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서술 대상을 남한 지 역으로 한정하는 까닭은 북한 자료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과 정부 수립 후 남·북한의 항공 분야는 단절적으로 변모해왔기 때문이 다.8) 이상의 고찰을 위해 여기에서는 당시의 미군정 자료와 항공 관련 단체의 발간물. 언론 보도. 그리고 주요 인사들의 회고록 등 을 주요 분석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sup>7)</sup> 예를 들어 1945년 당시 양대 항공단체였던 항공준비대의 경우 대부분의 서술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이것은 항공준비대가 있었던 국군준비대가 좌파 계열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주요 인물이나 사건 등과 관련한 인물들이 생존해있어 서술에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대한국민항공사(KNA) 초대 사장인 慎鏞項에 관한 서술이 그의 친일 경력을 지적하자 유족들의 반발로 출판되지 못하기도 하였다(이윤식, 『비행기로 민심을 격발하고 장내 국내의 대폭발을 일으키기 위함이라』, 민미디어, 2003. 5~20쪽).

<sup>8)</sup> 참고로 북한의 정부 수립 전 항공 분야 건설에 관한 연구는 노획문서와 구소련문 서 및 미군문서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6·25전쟁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김선호, 「북한 공군 창설 과정을 통해 본 식민지 유산의 연속과 단절」, 『현대북한 연구』 15, 2012

## 2. 식민지배의 경험과 유산

동력 항공기의 발명과 발전에 따른 항공력 개념의 등장이 이루어 졌을 당시 한반도는 일제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식민지 상황에서 한국인들에 의한 항공력 도입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식민지는 항공력을 도입하기 위한 자본이나 기술 등 제반 사항이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주권을 상실한 식민지는 전쟁을 통해 중요성이 대두한 항공력의 문제에 있어서 일제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열악한 식민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일제의 지배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항공 분야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1916년 여의도비행장이 개설된 이래 10여 개의 비행장이 건설되어 일본과 만주를 잇는 항공로의 중간 기착지로 활용되었다. 일제는 본격적인 중국 침략에 나선 뒤 일본과 중국의 중간 기착지로 한반도의 입지에 주목하였고, 이에 따라 동양 최대 규모의 허브공항을 건설한다는 명목 아래 1939년 김포공항을 착공하기도 하였다.9)

전시체제로 넘어가면서 일제에 의한 항공력 도입은 군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전쟁 수행 차원에서 한반도 내 군용 항공 시설은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김포공항의 카미카제 훈련소 전환과 제주도 내 군용활주로 건설,<sup>10)</sup> 부산 및 안양의 군용 항공기 생산시설 설치<sup>11)</sup> 등을 들 수 있다.

<sup>9)</sup> 한국항공진흥협회 편. 앞의 책. 2000. 52~53쪽

<sup>10)</sup> 일제는 1937년 중국 남부의 폭격 거점으로 알뜨르(現 모슬포)에 해군비행장을 운용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전황이 불리해지자 1944년 정뜨르(現 제주공항)에 후방 기지로 육군비행장을 운용하였다. 또한 일제는 진드르(現 조천읍 일원)와 교래 (現 대한항공 비행교육원 일원)에도 육군비행장 건설을 추진하여 교래의 경우 종전 직전 완공하였다(강순원,「태평양전쟁과 제주도 내 일본군 군사유적의 실태」, 『일제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보고사, 2008, 181~190쪽).

일제는 한국인들의 항공 관련 기술 습득을 허용하였다. 특히 일 제는 양성된 한국인 비행사들을 자신들에 의해 '근대화'된 식민지의 상징으로 활용하였다. 주된 방식은 고국방문비행과 각종 선전비행이었다. 12) 또한 일제는 전시체제 돌입 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방략으로써 중등교육에 글라이더 교육을 반영하고, 소년항공병을 양성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 인력 육성책을 전개하였다. 13)

식민 치하의 한국인들에게 한국인 비행사들의 존재는 식민지배의 열등감을 떨쳐버리면서 항공력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하였다. 안창 남(安昌男)의 비행 면허 획득에 관한 신문기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사람의 재주가 세계의 어떤 민족보다 뛰어나고 한국민족의 문명이 세계어떠한 민족보다 앞섰던 것은 광휘있는 우리의 과거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라. 다만 일시의 쇠운으로 한참동안 쇠퇴한 일이 있었으나 원래 탁월한 선조의 피를 받은 한국인은 이제 모든 구속의 명에를 벗고 세계민중이 다투는 무대위에서 장쾌한 그의 재주를 발휘하고자 하는 중이다. 이십세기 과학문명의 자랑거리인 비행기에 대하여 우리 한국사람으로 하늘을 나는 사람은 당년 이십세의 청년으로 귀신같은 재주를 가진 안창남(安昌男)군이라. (후략)"14)

이후에도 주요 비행사들의 고국방문비행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 도되면서 매번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의 항공부 대에 들어가 참전한 한국인 조종사들의 행보도 수시로 언론에 보도

<sup>11)</sup> 한국항공우주학회 편, 앞의 책, 1987, 34쪽

<sup>12)</sup> 일제는 주요 선전비행에 동원한 한국인 비행사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제 공하였다. 항공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한국인 비행사들은 경제적 문제로 이에 호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sup>13)</sup> 조선총독부는 1942년 4월 일본 본토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중등학교에 활공과를 정과로 편입하고 초등학교에서 모형비행기 제작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1943년 10월 '청소년항공훈련실시요강'을 발표하는 등 항공전력 확보를 위한 한 국인 출신 항공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배영미 외,『식민지 소년의 창공 에의 꿈』, 국사편찬위원회, 2010, 14쪽).

<sup>14) 『</sup>東亞日報』, 1921. 7. 11. 3면, '新飛行家 安昌男'

되어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sup>15)</sup> 나아가 당시 한국인들에게 비행기술은 차별받는 식민지 출신이 대접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비정되었다.<sup>16)</sup>

따라서 당시 한국인들은 비행기술을 습득하려는 열의가 매우 높았다. 중국과 일본 등 해외의 항공학교로 유학하는 경우도 많았고,<sup>17)</sup> 한반도 내에 항공학교를 세우려는 노력도 전개되었으며, 전쟁 발발 후에는 전쟁 동원을 위한 조종사 후보생 모집에서 지원자의 80%를 한국인들이 차지하기도 하였다.<sup>18)</sup>

식민지배 하의 항공 분야 도입은 어디까지나 일제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일제는 제국 전체의 운영과 전쟁 수 행 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만 조선에 이식하였다. 이런 연유로 조 선의 항공력은 일제에게 종속적이고 기생적인 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왜곡된 형태로나마 해방 직후 한국의 항공력 건설을 위한 활동이 펼쳐질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일제는 패망하여 본토로 철수하였지만, 항공시설이나 장 비, 그리고 인력 등은 남았기 때문이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항공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였다. 태평양전쟁 개전부터 부각된 항공모함의 활용은 이후 주요 해전에서도 승패를 가르는 요인으로 자리하였다. 또한 전쟁

<sup>15)</sup> 언론에 보도된 대표적 인물들은 중국 공군의 경우 徐曰甫와 崔用德, 權基玉 등을 들 수 있고, 일본 항공부대의 경우 池麟泰와 金貞烈, 金昌圭 등을 들 수 있다.

<sup>16)</sup> 소년항공병 출신들의 구술을 정리한 배영미 등의 연구를 살펴보면, 구술자들은 진로 선택이 극히 제한된 식민지 상황에서 상급교육에 대한 갈망과 일본인을 이 겨보겠다는 대항심리 등에 의해 소년항공병에 지원하였다고 증언했다(배영미 외, 앞의 책, 2010, 15~17쪽).

<sup>17)</sup> 미국과 중국, 소련, 일본 등에서 비행 교육을 받았던 사례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항공회편, 앞의 책, 2015, 153~238·251~269·318~319쪽 참조.

<sup>18) 『</sup>매일신보』, 1943. 10. 19. 2면, '大空에의 熱意 爆發-航空飛員 養成 志願者 八割 이 半島人'

말기에 미국이 가했던 대규모 전략폭격은 국가방위에 있어서 항공 력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폭격기를 활용한 원자폭탄의 투하는 항공력이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결국 한국인들은 2차대전을 겪으면서 일제가 패망한 요인 중 항공력의 열세가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했다. 장지량(張志良)의회고를 보면 일본 육사 재학시절 선배들이 앞으로의 전쟁은 공중전이기 때문에 항공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19) 또한 광복군 참모총장인 유동열(柳東說)은 귀국 후 건군의 구상에서 "이번전쟁의 경험으로 보아서라도 금후에도 항공병력(航空兵力)에 많이치중해야 하지 않을까"20)라 했으며, 『자유신문』역시 "2차대전은 공중전이었고, 연합국이 주축국을 격파한 최대의 무기는 우수한 공군이었음은 재론할 것도 없다"21)라고 하여 항공력이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해방 공간에서 새롭게 건설될 국가가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서 항공력은 필수적으로확보해야 하는 요소로 여겼다.

해방 후 한반도에는 항공력의 인적·물적 자원이 미약하나마 있는 가운데 항공력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다. 이것은 해방 후 항공력 건설을 위한 노력이 가능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 건설될 독립국가의 이익에 적합한 형태로 재편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였다.

<sup>19)</sup> 장지량, 앞의 책, 2006

<sup>20) 『</sup>東亞日報』, 1945. 12. 1. 2면, '新國家建設의 새로운 構想-軍事(一)'

<sup>21) 『</sup>自由新聞』, 1946. 1. 1. 부록, '人類의 幸福을 爲한 우리 國軍 計劃'

## 3. 해방 직후 관련단체 조직을 통한 기반 확보 시도

#### 가. 조선항공협회와 국군항공준비대의 결성

해방 직후 항공력 건설을 위한 노력은 조선항공협회(朝鮮航空協會)와 국군항공준비대(國軍航空準備隊)의 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당시 국내의 항공인들은 두 단체를 중심으로 규합하여 인적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신들을 대표 단체로 비정하여 일제의 항공유산에 대한 권한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조선항공협회는 조선항공대(朝鮮航空隊)의 후신이었다. 조선항공대는 조선활공사회(朝鮮滑空士會)를 중심으로 한 단체로서 일제의항복 선언이 나온 바로 다음날 결성되었다. 22) 활공사(滑空士), 즉 글라이더 조종사들은 일제시대부터 조직을 결성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해방 직후에 결성된 항공 관련 단체 조직을 주도할 수 있었다.

조선항공대는 결성 당시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 이하건준)를 방문하여 활동 취지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23) 이미 널리알려졌듯이 건준은 해방 직전 조선총독부로부터 권력 이양을 약속받는 등 당시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조직이었다. 조선항공대는 건준의 권위를 빌려 국내 항공 분야의 대표 단체로 자리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에 남겨진 일본군 항공기의 인수를 꾀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在조선일본군에게 치안권을 넘겨줌에 따라 조선항공대의 일본군 항공기 인수 시도는 재조선일본군의 방해로 좌절되었다.<sup>24)</sup> 미군이 진주한 이후에도 일 본군 무장해제에 대해 민감하였던 미군의 입장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sup>22) 『</sup>항공조선』1, 1945. 12. 14쪽, '朝鮮航空協會設立까지'

<sup>23)</sup> 위의 각주

<sup>24)</sup> 위의 각주

변하지 않았다. 더구나 건준과 이의 결과물인 조선인민공화국(朝鮮 人民共和國, 이하 인공)은 미군정의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기도 하 였다.<sup>25)</sup>

조선항공대는 이런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 방법은 기본적으로 미군정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활동이 정치·군사적 목적이 아닌 항공 건설의 순수한 열망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항공대는 건준과의 관계를 단절하여 정치색을 배제하는 한편, 군사단체로 보이는 명칭을 변경하여 민간 분야에 한정한 활동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sup>26)</sup> 이런 연유로 조선항공대는 항공건설위원회 단계를 거치면서조선항공협회로 재편하였다.

1945년 10월 2일 항공협회가 공식으로 출범, 회장에 장덕창(張德昌), 부회장에 서웅성(徐雄成)과 윤창현(尹昌鉉)을 선임하였다. 27) 또한 이들은 미군정 주요 요인과 독립운동계에서 명망이 높았던 김구, 이승만 등을 명예직으로 초빙하였다. 이들은 주요 인사들의 권위를 빌려 항공 분야 건설에 있어서 대표성을 획득하고자 했던 것이다.

항공협회는 기본적으로 민간항공 분야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sup>25)</sup> 安鍾撤, 「광복 전후의 통일국가 수립운동」, 『한국사』 52(대한민국의 성립), 2003, 101~106쪽

<sup>26) 『</sup>항공조선』1, 1945. 12. 14쪽, '朝鮮航空協會設立까지'

<sup>27) 『</sup>自由新聞』, 1945. 10. 7. 2면, '朝鮮航空協會'; 『중앙신문』, 1945. 11. 2. 2면, '航空 團體統合'

조선항공협회의 결성일에 관해서 항공 관련 단체의 연구물에는 10월 18일로 서술되어 있다. 한편 『중앙신문』은 10월 30일로 보도했으며, 『민주중보』의 10월 보도기사에는 항공건설위원회 단계의 명칭으로 적혀있다. 여기서는 당시 가장 이른날짜로 보도한 『자유신문』의 기사를 신뢰했다. 그 이유는 협회의 기관지인 『항공조선』에 이들이 9월 30일에 새로운 단체로의 재편을 위한 총회를 열었다고 적혀 있어 이 날과 가장 가까운 시점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참고로 서웅성, 윤창현 등도 차례로 회장을 역임하였다.

수립하였다. 항공협회의 설립 목적과 그 실행 방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은 명확히 드러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 본회(本會)는 全조선항공관계자를 종합하야 新조선항공건설을 목적

으로 하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단결을 도모함.

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좌기(左記)의 사업을 행함.

가. 항공교육의 지도와 장려

나. 항공수송의 지도와 장려

다. 항공기제작의 지도와 장려

라. 항공지식보급상 필요한 각종사업"28)

이들은 곧바로 위와 같은 사업에 입각한 구체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장덕창과 서웅성 등은 조선항공수송주식회사(朝鮮航空輸送株式會社)와 비행학교 설립, 항공시설 인수 등을 추진하였다. 29) 또한 이들은 부산 등의 지방에도 지부를 설치함30)과 동시에 항공 관련인력들의 파악에 나서는 등31) 당시 한반도 내 항공인들의 통합에나섰다.

나아가 이들은 항공력 건설의 기반 확대를 위한 활동도 전개하였다. 이들은 대중적 공감대의 확산을 위하여 후원회 결성<sup>32)</sup>과 홍보

<sup>28) 『</sup>항공조선』1, 1945. 12. 31쪽, '朝鮮航空協會會則'

<sup>29) 『</sup>自由新聞』, 1945. 11. 2. 2면, '朝鮮航空輸送會社 창립을 촉진'

<sup>30) 『</sup>항공조선』1, 1945. 12. 32쪽, '消息' 위 자료에는 北朝鮮航空協會(북한 지역에서는 조선항공협회로 명명) 창립에 관한 내용도 짤막하게 수록되어 있다. 조선항공협회가 김일성의 주도 아래 북한 지역 항공단체들이 재편되어 조직된 북조선항공협회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당시 조선항공협회가 파악한 비행사 중 신의주항공대 결성을 주도한 李闊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항공조선』1, 1945. 12. 32쪽, '朝鮮民間航空乘員은 몇名이나 되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호간의 교류가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북한 지역의 항공단체와 관련한 내용에 관해서는 김선호, 앞의 논문, 2012, 254~265쪽 참조.

<sup>31) 『</sup>民主衆報』, 1945. 10. 28. 2면, '航空技術者는 連絡하라'

<sup>32) 『</sup>民主衆報』, 1945. 12. 13. 2면, '朝鮮航空協會 後援會를 組織'

지인 『항공조선』 창간<sup>33)</sup> 등을 실행하였다. 『항공조선』은 항공과 관련한 정보를 소개하면서 항공력이 필요한 이유와 그 건설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협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견해를 반영한 것이었다.<sup>34)</sup>

항공협회와 달리 항공준비대는 명칭에서부터 군 분야의 항공력 구축을 천명하였다. 노정민(盧晶珉)35)과 신치호(辛致浩) 등은 항공병 출신들을 모아 국군항공준비대를 창설하였다.36) 항공준비대는 1945년 11월 군사단체의 통일운동인 전국군사준비위원회(全國軍事準備委員會)에 참여하여37) 조선국군준비대(朝鮮國軍準備隊, 이하국준)와 연계하였다. 노정민은 국준의 항공사령을 맡았다.38)

비록 광복군 계열이 불참한 통합이었지만, 이로 인해 국준의 규모는 확대될 수 있었다. 국준은 통합 후 새롭게 조직을 편성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육·해군과 별도로 공군을 편성하였다는 점이다. 39) 즉, 노정민 등은 단순히 육·해군 산하에 항공부대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독자적인 운용이 가능한 공군의 창설

<sup>33) 『</sup>朝鮮日報』, 1945. 11. 29. 2면, '항공조선 발간'

<sup>34)</sup> 송석우, 앞의 책, 1999, 162~163쪽

<sup>35)</sup> 노정민은 필라델피아 에싱턴(Essington) 비행학교를 졸업한 美해군 비행사 출신으로서 월로우스 비행학교의 교관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洪允靜,「獨立運動과飛行士 養成」,『國史館論叢』107, 2005, 19쪽). 참고로 홍윤정은 노정민의 한자표기를 盧正敏으로 썼는데, 여기에서는 해방 이후 신문기사와 아들들의 증언에따른 盧晶珉을 따랐다.

<sup>36) 『</sup>중앙신문』, 1945. 12. 1. 2면, '國軍航空準備隊'

<sup>37) 『</sup>民衆日報』, 1945. 11. 9. 2면, '軍事統一運動을 전개-全國軍事準備委員會서 宣言 과 陣容을 發表'

<sup>38)</sup> 李剛秀,「解放直後 國軍準備隊의 結成과 그 性格」,『軍史』32, 1996, 221~223쪽 노정민의 차남인 노삼풍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韓佑成,「대한민국 공군 창설 의 起源」, 『월간조선』, 2013. 4.).

<sup>39) &</sup>lt;編成>

<sup>1.</sup>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군사적 훈련을 받은 자와 특별 지원한 청년으로 군대 를 편성함.

<sup>2.</sup> 육군은 육군부, 해군은 해군부, 공군은 공군부로 편성함.(이하 생략)

까지 구상하였고, 이것이 국준으로 통합된 여러 군사단체들의 동의를 얻었던 것이다.

얼핏 보면 항공력 구축에 있어서 민간 분야는 항공협회, 군 분야는 항공준비대로 나뉘어 추진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유신문』에 보도된 국군 계획을 살펴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자유신문의 국군 계획은 육·해군과 별도로 공군편(空軍編)을 마련하였는데, 공군편의 논리와 실행 방안은 항공협회의 그것과 유사하다.

공군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군의 필요성은 2차대전의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서항공력 구축은 필수적이었다. 항공력 구축을 위한 물적 기반은 급한 대로 일본군의 항공시설과 장비를, 인적 기반은 항공협회와 항공준비대가 파악한 1,000여 명 이상의 항공인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향후 인력 양성을 위하여 글라이더 교육과 모형항공기제작 실습을 각각 중등과 초등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40)

항공협회의 『항공조선』에 나타난 항공력 건설의 주요 논조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2차대전에서 미국의 승리 요인으로 항공력을 언급하면서 항공력 건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sup>41)</sup> 이처럼 항공력은 매우 위력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위해를 받지 않는

<sup>40) 『</sup>自由新聞』, 1946. 1. 1. 부록, '人類의 幸福을 爲한 우리 國軍 計劃'

<sup>41)</sup> 日本 各 都市에 對한 米空軍 空襲의 被害慘狀及 第二次歐洲大戰에 依한 諸國 々內 各 都市의 空襲 被害慘狀을 우리가 直接間接으로 듯고 본 것을 生覺할 때 그 航空機에 對한 威力을 再論할 餘地가 업다(『항공조선』 1, 1945. 12. 12쪽, '머리말'). 美國이 獨逸과 日本에게 澈底한 打擊을 주고 完全한 勝利를 얻은 것은 飛行機의 威力이 最大의 條件이라 할 수 있다(『항공조선』 1, 1945. 12. 13쪽, '發刊의 말'). 특히 이들은 종전 직전에 있었던 항공기를 활용한 원자폭탄 투하의 기억도 상기하고자 하였는데, 예를 들어 협회의 설립 과정을 서술한 李相穆의 필명은 原子彈이었다.

강성한 독립국가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며<sup>42)</sup> 나아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다.<sup>43)</sup> 또한 이들은 항공력 건설에 필수적인 항공인력의 양성을 위해 중등교육에 글라이더 과목을, 초등 교육에 모형항공기 제작 실습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4)</sup> 이상의 내용은 『자유신문』의 공군편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항공협회는 미군정에 의해 건준과 인공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주요 권한인 군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활동을 전개하는 일이 유리하지 않다고 보았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조선항공대를 재편한 이유 중 하나도 이것이었다. 따라서 항공협회는 민간 분야에 집중하여 실제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항공준비대 건군에 대한 순수한 열망을 고수하였다. 항공 협회와 달리 항공준비대가 공군 창설을 추진하였던 배경은 미군정 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 때문이었다. 항공준비대가 참여했던 국준은 미군정에게 군사단체 인정의 청원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장 원용덕 (元容德)이 미군정 군사영어학교의 부교장이라는 당시 사정 등을 근거로 「미군정의 적극 협력이 있다」고 오해했다. 45) 따라서 국군 준비대에 합류하였던 항공준비대는 공군 창설 활동을 전개할 수 있 는 여건이라고 보았다.

군 분야의 활동에 대한 우려로 민간 분야에 집중하고 있었던 항 공협회 역시 미군정의 태도는 낙관했다. 협회는 미군정이 민간 분 야의 육성을 내세운 자신들에게 우호적이라고 생각했다.46) 이에

<sup>42)</sup> 祖國의 國土를 完全히 防備·擁護하자면 一日이라도 急速히 航空施設及 空軍養成 이 무엇보다도 必要함을 늦기는 바이다(『항공조선』1, 1945, 12, 12쪽, '머리말').

<sup>43)</sup> 航空에 發達은 그 國家의 興亡을 左右하는 唯一한 科學物이다(『항공조선』 1, 1945. 12. 21쪽, '國家의 航空').

<sup>44) 『</sup>항공조선』1, 1945. 12. 15쪽, '航空의 普及과 緊急事'; 27쪽, '中等學校 運動科目 에 하나론 滑空訓練'

<sup>45)</sup> 임종명,「朝鮮國軍準備隊와 建軍運動(1945.9~1946.1)」,『韓國史學報』2, 1997, 297~298쪽

<sup>46) 『</sup>서울신문』, 1946. 4. 3. '朝鮮航空協會, 解散命令에 陳情書 提出'

힘입은 항공협회는 11월 16일 미군정에 조선비행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와 일본군 항공시설 인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47)

군 분야의 활동이 끼칠 영향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달랐지만, 항공 협회와 항공준비대는 모두 미군정에 대한 우호감과 낙관적 기대를 보였다. 이것은 1945년 단계에서 각자의 적극적 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오해였고, 결 국 항공협회와 항공준비대에게 치명타로 되돌아왔다.

#### 나. 미군정의 통제에 따른 해산

미군정은 남한 내 항공 분야 통제에 매우 민감한 입장이었다. 그 것은 2차대전에서 항공력의 위력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위기관의 방침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11월 중순 당시 미군정이 주도한 한국 항공부대 창설 계획조차 승인하지 않았다. 48) 더구나 11월 18일, 비행 및 항공기 제작, 조종사 양성 등을 금지한 연합군최고사령부(GHQ)의 연합군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301호가 발령되었다. 49) 또한 일본군 항공기와 항공장비의 파괴 지침이 내려져 11월 19일부터 대대적인 파괴작업이 진행되었다. 50) 따라서 하부조직인 미군정은 본토와 GHQ의 방침에 따라 항공 분야에 대한 엄격한 통제 방침을 수립하였다.

<sup>47)</sup> 김진원, 앞의 논문, 1992, 133쪽

<sup>48)</sup> 한국의 치안 및 국방 총책임자인 쉬크(Lawrence E. Shick) 준장의 항공부대 창설 계획안은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중장의 승인을 받아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를 통해 미 본토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미국 삼부조정위원회는 한국의 군대 창설이 국제적 마찰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이 계획안의 실행을 연기 결정하였다(魯永基,『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44~45쪽).

<sup>49)</sup> SCAPIN-301: COMMERCIAL AND CIVIL AVIATION(1945. 11. 18.)

<sup>50) 『</sup>주한미군사』 1, 국사편찬위원회, 2014

또한 미군정은 자생적 군사단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았다. 미군정은 이들의 존재가 남한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 방해요소가 될 것이라 판단했다. 나아가 미군정은 훗날 미군이 철수하면 이들이 한국의 통합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군정은 이를 막기 위하여 자생적 군사단체를 해체한 뒤, 자신들의 통제아래로 재편하는 방책을 채택했다. 이른바 국방경비대의 창설 계획의 수립이었다.51)

미군정은 자신들의 통제 아래 항공 분야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 분야는 신설된 국립조선항공회사를, 군 분야는 국방경비대를 토대로 항공 분야를 운영하고자 했다. 다만 군 분야의 경우 정부 수립에 관하여 소련과 협상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일단 치안 유지에 한정한 육성 방침인 '뱀부 계획 (Bamboo Plan)'이 세워짐에 따라 항공부대 창설은 미루어졌다. 52)

한편 전명섭(全命變)과 감영환(金英煥), 이근석(李根皙)의 무단비행 사건은 미군정으로 하여금 한국의 자생적 항공단체를 통제할 수없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53) 전명섭은 해방의 기쁨에 들떠 여의도비행장의 융구만 연습기에 태극기 문양을 그린 뒤, 영등포 상공을 일주하였다. 김영환 등은 대구 동촌비행장의 조선항공연구소에서 비행교육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대구 상공을 일주하였다. 이것은 미군정의 비행금지령에 위배되는 행위였다.

미군정은 곧 자생적 단체에 대한 해산 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군 분야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전개한 국준에 대한 해산 작업이 이루어 졌다. 미군정은 1945년 12월 29일에 발생한 국준과 우익단체인

<sup>51)</sup> 이강수, 앞의 논문, 1996, 240~241쪽

<sup>52)</sup> 백기인, 앞의 책, 2002, 129~139쪽

<sup>53)</sup> 한국항공우주학회 편, 앞의 책, 1987, 35~36쪽; 김진원, 앞의 논문, 1992, 133쪽; 임달연, 앞의 책, 2001, 67~70쪽

건국청년회 사이의 총격전 사건을 빌미로 삼아 이듬해 1월 28일 국방경비대를 제외한 모든 군사단체의 해산을 명령하였다. 54) 이에 따라 국준이 해산되었고, 항공준비대도 같은 조치를 당하였던 것이다.

국준의 해산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정민 등은 항공준비대와 국준이 서로 상관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존속 의지를 표명하였다. 55) 이는 어떻게든 활동을 이어가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미군정이 우려하는 자생적 군사단체이면서 동시에 통제 대상인 항공 분야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항공준비대가 존속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항공협회 역시 1946년 2월, 미군정에 의한 해산 조치를 당하였다. 미군정은 윤치영(尹致暎)을 통해 식민지배 당시 한국인 중 가장 유력한 항공인이었던 신용욱(愼鏞珥)과 연계하였다. 1946년 2월, 신용욱은 항공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자신이 충당하는 방식으로 미군정으로부터 국립조선항공회사(이후 대한국제항공사로 개칭)의 운영권을 따냈다. 56) 미군정은 신용욱을 활용한 통제를 선택하였고, 여기서 탈락한 항공협회는 해산 조치를 당하였던 것이다.

항공협회는 조직 과정에서 신용욱의 포섭을 시도하였지만, 신용 욱이 미군정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협회와 마찰이 생기자 곧 그를 배격하였다.<sup>57)</sup> 협회에 따르면 이때의 마찰은 신용욱이 자신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공작을 자행하였다는 것이다. 협회는 신용욱을 적 극적 친일파로 규정하고. 그의 은퇴를 종용하였다.<sup>58)</sup>

<sup>54)</sup> 이강수, 앞의 논문, 237~243쪽

<sup>55) 『</sup>중앙신문』, 1946. 1. 11. 2면, '航空隊만은 擴充-國軍準備隊 解散命令'; 『自由新聞』, 1946. 1. 13. 2면, '國軍航空準備隊-全然 無關이라 言明'

<sup>56)</sup> 국립조선항공회사의 사장은 윤치영으로 신용욱은 부사장을 역임하였지만, 설립 자금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 회사 운영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었다(『大東新聞』, 1946. 2. 13. 2면, '國立航空會社組織').

<sup>57)</sup> 김광한, 앞의 책, 1991, 195~199쪽

<sup>58)</sup> 신용욱은 일제시대 당시 한반도 최초의 비행학교를 세우고 상업비행을 개시하는

또한 항공협회는 일본군 비행기를 고철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 이익 문제에 연루되었다. 협회는 해당 비리의 책임이 신용욱에게 있다고 항변하였지만, 신용욱은 무고를 주장하며 대응하였다. 59) 이 사건은 신용욱이 처벌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협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결국 항공협회와 항공준비대는 미군정의 해산 조치에 따라 여러 군소단체로 분열되었다. 3월 9일 김석환(金石桓), 안동석(安東錫), 이원복(李元馥) 등 경성공업전문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수와 학생들은 학생항공연맹을 결성하였고, 15일 김광한(金光漢) 등 활공인들은 중앙활공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60) 조항천(趙恒天) 등은 항공사상 보급을 주목적으로 한 항공기술학회를 결성하였다. 61) 또한 항공준비대 출신인 신치호, 함병선(咸炳善) 등은 조선항공기술동맹을 조직하였고, 62) 서북 출신의 항공인들은 별도의 조직화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63)

등 한국인 중 항공분야를 선도하는 입장이었으나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승전 비행에 참여하고, 일본 해군과 합작하여 부산에 항공기 생산공장을 세우는 등 일 제의 전쟁 수행에 적극 협력하는 친일행각을 벌이기도 하였다. 참고로 신용욱은 노무현 정부 당시 반민족행위자로 공식 규정되었다(『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 고서』 3-3,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sup>59) 『</sup>東亞日報』, 1946. 4. 4. 2면, '妨害分子 處理'; 『朝鮮日報』, 1946. 4. 6. 2면, '航空協會解散에 陳情書提出'; '暴利云々은 不當'; '憤激도 無理아니다'; '最後까지 싸울터'

<sup>60) 『</sup>항공조선』 2, 1947. 2. 40쪽, '航空消息'

<sup>61) 『</sup>家政新聞』, 1946. 6. 12. 2면, '航空講義 發行'

<sup>62) 『</sup>중앙신문』, 1946. 7. 12. 2면, '航空技術同盟 結成'; 『항공조선』 2, 1947. 2. 40쪽, '航空消息'

<sup>63)</sup> 기존 서술에서는 李繼煥, 金性泰 등에 의해 '서북항공대'가 조직되었다고 언급하였다(김진원, 앞의 논문, 1992, 133쪽; 임달연, 앞의 책, 2001, 69쪽). 그런데『항공조선』에 다른 단체와 달리 서북항공대 창설 내용이 없다는 점과 1948년 2월 1일에 서북항공대가 창설되었다는 신문기사(『東亞日報』, 1948. 1. 31. 4면, '西北航空隊 一日 創立總會'; 『중앙신문』, 1948. 2. 1. 2면, '西北航空隊組織')를 감안하면, 이것은 1946년 전반 동남아 전선에서 연합군 포로로 있었던 항공인들이 대거 귀국하는 시점에서 평안도 출신 항공인들이 조직화하는 양상이 있었다는 정도로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신용욱은 미군정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허가를 얻어냈다. 그는 회사 설립을 공고하면서 일본제 비행기의 인수를 포기하고 미·영제 비행기로 비행교육 및 운항을 할 것을 밝혔다. 64) 그는 미군정이 일본의 항공유산을 넘겨줄 것이라 기대한 항공협회나항공준비대와 달리 미군정이 그것을 통제, 파괴할 것을 간파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신용욱의 항공회사는 국제선까지 개시하겠다는 포부와 달리 정부 수립 때까지 비행기조차 확보하지 못한 유명무실한 상태로 존속하였다. 일단 상당수 항공인들이 항공협회에 합류한 상황65)에서 신용욱은 인적 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또한 미군정은 항공회사를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미군정은 군용기를 활용하여 서울에서 대구, 부산과 광주, 제주 등으로 주 2회씩 정기적인 운항을 하고 있었고, 노스웨스트(Northwest)항공과 용역 계약을 맺어 국제선을 유지하고 있었기66) 때문에 굳이 한국인에 의한 항공회사를 지원할 필요가 없었다.

조선항공협회와 항공준비대의 해산과 군소단체의 난립, 그리고 지지부진한 운항 개시라는 1946년 전반의 상황은 항공인들의 노력이 일시적으로 좌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의의를 부여할 수도 있다. 특히 학생항공연맹의 경우 5월 18일 '항공의 날'을 제정하여성대한 기념행사를 치르기도 하였다. 67) 이와 같이 당시 항공인들의

<sup>64) 『</sup>東亞日報』, 1946. 2. 12. 2면, '이달 以內 空輪 開始'

<sup>65) 『</sup>서울신문』, 1946. 4. 3. '朝鮮航空協會, 解散命令에 陳情書 提出'

<sup>66)</sup> 한국항공진흥협회 편, 『航空年鑑』, 韓國航空振興協會, 1997, 479쪽; 임달연, 앞의 책, 2001, 79쪽

<sup>67) 『</sup>朝鮮日報』, 1946. 5. 19. 2면, '學生航空日 十八日 記念式 盛大' 학생항공의 날을 5월 18일로 정한 이유는 윤창현이 모국 방문 비행을 했던 날을

항공 분야 건설 의지는 강력하였고, 새로운 계기가 제공될 경우 다시 분출할 수 있었다.

# 4. 통합단체의 조직과 성과

#### 가. 항공건설협회로의 통합

항공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외 한국인들의 귀환으로 항공 인력은 증가하고 있었다. 1946년에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등에서 미처 돌아오지 못한 한국인들의 환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기에는 중국 공군 소속으로 항일전에 투신하였거나일본군 항공부대 소속으로 전쟁에 동원되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최용덕(崔用德)이나 권기옥(權基玉), 이영무(李英茂) 등과 같이 독립운동에 기여했던 중국 공군 출신의 항공인사들은 전문성 뿐만 아니라 명망까지 지닌 존재였다. 『동아일보』는 최용덕의 귀국에 대해 특집기사를 보도하면서 그를 항공총장으로 상찬하기도 했다.68) 이영무 역시 『동아일보』와 『독립신보』 등에 귀국 기사가 크게 보도되었다.69)

국내의 항공인들은 이들의 귀환을 항공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 여겼다. 최용덕은 광복군의 요직을 맡았던, 임시정부의 주요 인물로 항공인 가운데 독립운동계에서 가장 명망이 높았다. 유창현 등은 자신들의 구상에 이러한 점을 활용하고자 하였고.

기념하기 위해서였다(한국항공우주학회 편, 앞의 책, 1987, 38쪽).

<sup>68) 『</sup>東亞日報』, 1946. 7. 23. 2면, '燦! 抗日作戰에 武勳'

<sup>69) 『</sup>東亞日報』, 1946. 7. 25. 2면, '돌아온 우리 將軍들(完)'; 『독립신보』, 1946. 7. 9. 2면, '抗日航空戰의 勇士-李英茂氏卅六年만에 歸國'

중국에서 항공력의 중요성을 실감하였던 최용덕 역시 이에 호응 하였다.

이들은 최용덕 등이 귀국하자 곧바로 성대한 환영식을 열었다. 이들은 환영식에서 만장일치로 통합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하였 다.70) 그리고 이들은 항공단체통합주비위원회(航空團體統合籌備委 員會)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최용덕을 선임하였다.71)

위 위원회의 주비위원은 윤창현, 김동업(金東業), 이계환(李繼煥), 서현규(徐絃圭), 신치호, 이정희(李貞喜), 김석환 등이었다. 이가운데 신치호는 항공준비대의 핵심 대원이었으며, 나머지는 항공협회의 핵심 회원이었다. 앞 장의 내용과 같이 항공준비대와 항공협회는 1945년 단계의 양대 항공단체였다. 따라서 이때의 통합은 항공준비대와 항공협회로 각각 모인 항공인들을 하나로 재편하면서주로 군 출신이었던 귀국 항공인들까지 포섭하는 이전보다 한 차원높은 단계의 것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통합단체는 군 분야의 활동도 염두하고 있었다. 사실 양대 항공단체는 군 분야를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에 관한 견해가 달랐을 뿐, 궁극적 지향은 같았다. 최용덕 등의 귀국 즈음에 윤창현이 민·군 분야를 아우르는 항공성의 설치를 주장하였던 『한성일보』의 기고문<sup>72)</sup>은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미군정의 태도에 변화의 조짐만 생긴다면, 통합단체는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공군

<sup>70) 『</sup>항공조선』 2, 1947. 2. 40쪽, '航空消息'

<sup>71) 『</sup>항공조선』 2, 1947. 2. 40쪽, '航空消息'; 『大東新聞』, 1946. 8. 4. 2면, '航空朝鮮新建設-崔將軍을 推戴, 籌備委員會 組織'; 『自由新聞』, 1946. 8. 4. 2면, '航空人들의 統合促進'; 『東亞日報』, 1946. 8. 4. 2면, '航空朝鮮을 建設-航空團體統籌委員會誕生' 『동아일보』 기사에는 '최용덕 장군을 중국으로부터 맞이하자 조선에 있는항공기술자들은 새조선항공건설의 결의도 씩씩하게 최장군을 둘러싸고 한마당에모였든 것이다'라고 하여 최용덕의 귀국이 항공계의 재통합 움직임을 촉발시켰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sup>72) 『</sup>漢城日報』, 1946. 7. 21. 4면, '항공조선의 신구상 ①'

창설을 위한 활동까지 전개할 수 있었다.

이때에도 신용욱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은 준비위원 회 단계에서부터 '전쟁에 협력케 한 일본항공에의 협력자와 지도자를 제외한'73)나머지 항공인들을 통합할 것을 밝혔다. 그 대상은 물론 신용욱이었다. 신용욱에 대한 이들의 적대감은 통합 후에도 지속되었다. 이들은 통합단체 출범 후 열렸던 건국공업박람회의 전시장에 「동포(同胞)여 보라! 삼팔이남(三八以南)의 귀중(貴重)한 항공기재(航空機材)는 모리배(謀利輩)가 파괴(破壞)하야 사복(私腹)을 채웟다」74)라는 패널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이듬해 간행한 『항공조선』 2호에서도 '민족반역자 친일파, 파괴주의자의 반성과 은퇴를 요구한다'고 하였다.75)

이러한 추진의 결과로 1946년 8월 10일, 새로운 통합단체로 '한 국항공건설협회(韓國航空建設協會, 이하 항공건설협회)'가 창설되었 다. 이들은 김규식을 회장으로 추대하였으나 김규식(金奎植)의 사 양으로 초빙이 무산되어<sup>76)</sup> 회장은 최용덕이, 부회장은 이영무가 각각 만장일치로 선임되었다.<sup>77)</sup>

항공건설협회는 미군정의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시도로써 김규식을 회장으로 초빙하고자 하였다. 1946년 하반기 단계에 김규식은 새로운 정부의 수반으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 따라서 신용욱이 미군정과 가까운 윤치영과 연계하여 운항 면허를 획득하였듯이 협회도 김규식을 전면에 내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협회는 김규식을

<sup>73) 『</sup>東亞日報』, 1946, 8, 4, 2년, '航空朝鮮을 建設-航空團體統籌委員會 誕生'

<sup>74) 『</sup>항공조선』 2, 1947. 2. 32쪽

<sup>75) 『</sup>항공조선』 2, 1947. 2. 40쪽, '젊은 航空人의 말'

<sup>76)</sup> 한국항공우주학회 편, 앞의 책, 1987, 37쪽

<sup>77) 『</sup>東亞日報』, 1946. 8. 10. 2면, '韓國航空建設協會 十日 基青舘서 發會式'; 『항공조 선』 2, 1947. 2. 40쪽, '航空消息'; 空軍本部政訓監室, 『하늘의 개척자 崔用德 將軍』, 공군본부, 1956, 2쪽

회장으로 초빙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고, 결국 12월 그의 수락을 얻어낼 수 있었다. 78)

항공건설협회는 권력기구와의 연계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였다. 최용덕이 회장 으로 있었을 당시, 이들은 추가로 춘천지부를 조직하고, 79) 건국공 업박람회에 독립 전시공간으로 항공관을 개설하는 등80) 가시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김규식의 취임 후에도 협회는 대전지부 결성과 춘천지부 산하의 활공부 결성, 학생항공연맹 주도 아래 항 공기능시험의 실시 등 활동을 지속하였다. 81)

또한 김석환은 항공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작업도 진행하였다. 이 작업의 결과는 1947년 2월에 발행된 항공조선 2호에 수록되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항공용어를 우리말로 쓰되 이미 널리쓰이고 있는 한자나 외래어에 한하여 예외를 두었다. 다만 예외의 경우에도 발음은 일본식이 아닌 한국식으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새로운 항공 건설에 있어 일제의 잔재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종이었다.

국내 항공인들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항공건설협회의 결성으로 항 공력 구축을 위한 노력은 결집될 수 있었다. 여기에 정부 수립에 대한 미군정의 입장이 변화하면서 이러한 노력은 미약하게나마 항 공력 도입의 성과로 이어졌다.

<sup>78) 『</sup>항공조선』 2, 1947. 2. 40쪽, '航空消息'; 『東亞日報』, 1946. 11. 26. 2면, '航空建設 協會 會長에 金博士就任'

<sup>79) 『</sup>항공조선』 2, 1947. 2. 40쪽, '航空消息'

<sup>80) 『</sup>항공조선』 2, 1947. 2. 40쪽, '航空消息'; 『京鄉新聞』, 1946. 10. 27. 1면, '長安의 人氣는 建國工業博覽會로!'

<sup>81) 『</sup>항공조선』 2, 1947. 2. 40쪽, '航空消息'

#### 나. 항공부대 창설과 항공교육 기반 마련

항공건설협회는 『항공조선』 2호 발행 후 눈에 띄는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항공건설협회가 유야무야된 것처럼 보이기도한다. 그러나 협회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었다.

항공건설협회 결성을 전후하여 통위부(統衛部)의 창설 등 미군정의 주도 아래 군 창설에 관한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항공부대 창설을 위한 교섭도 시도될 수 있었다. 본래 미군정 자체는 한국이 궁극적으로 항공부대를 지녀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통위부장(統衛部長) 유동열(柳東說) 역시 건군에 있어 항공력을 강조하였기 때문에통위부의 창설은 항공부대 창설을 시도하였던 최용덕과 김정렬 등에게 기회로 여겨질 수 있었다.82)

최용덕은 김정렬 등 일본군 출신 및 협회의 주축인 장덕창, 서현 규 등과 협력하여 항공부대를 창설하고자 하였다. 83) 일본 육사 출신의 비행사였던 김정렬은 타이완에 주둔하였던 신유협(申攸浹)의 도움을 받아 일본군 출신의 항공 관련 인력의 규합을 위한 실무적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84) 이들은 항공건설협회 회장 출신으로서항공계의 지도급 인사이자 가장 서열이 높았던 최용덕을 위시하여

<sup>82)</sup> 유동열은 김정렬의 백부인 金基元과 일본 육사 동기로 재학 당시 우애가 매우 좋았다고 한다(김정렬, 앞의 책, 2010, 30쪽).

<sup>83)</sup> 광복군 출신인 최용덕이 일본군 출신과 협력하기 시작한 까닭은 광복군 확군 업무의 경험 때문이었다. 광복군은 해방 직후 확군을 위해 군 경험이 있는 일본군출신들을 대거 영입하고자 하였다(염인호, 「해방 후 韓國獨立黨의 中國 關內地方에서의 光復軍 擴軍運動」, 『역사문제연구』1, 1996, 273쪽). 이것은 건군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과거 경력보다는 현재적 가치에 우선한 조치였다. 이미 광복군은 일본군적에 편입되었던 1,500여 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항공군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기도 하였다(『東亞日報』, 1945. 12. 4. 2면, '兵力업시 獨立업다'). 따라서 최용덕 역시 항공부대의 복무 경력을 지닌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이들과 함께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sup>84) 『6·25</sup>戰爭 證言錄』, 空軍本部, 2002, 23~24쪽; 김경록, 앞의 논문, 2009, 72~75쪽

1946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회합하였다. 이들은 통위부장 유동열 및 고문인 프라이스(Terrill E. Price)와 교섭하여 항공부대 창설을 기도하였는데, 특히 실권자인 프라이스와 주로 접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85)

여전히 미군정은 항공부대 창설에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항공부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미군정의 입장이었다. 미국은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소련과 함께 한반도의 단일정부 수립을 논의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치안 유지를 넘어서 공격 기능을 갖춘 항공부대 창설이 소련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군정은 국방부라는 명칭도 단독으로 군대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련의 항의에 따라 국내경비부(한국측 호칭은 통위부)라 개칭할 정도로 이를 의식하고 있었다. 86) 미군정과의 접촉을 맡고 있었던 김영환은 사퇴까지 불사하면서 미군정을 설득하였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87)

미군정의 비협조적인 분위기로 항공부대 창설이 난관에 봉착하자 최용덕과 김정렬 등은 지속적인 협상을 하면서도 항공부대를 구성 할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대전에서 항공건설협회의 충남지부 산하로 항공학교를 설립하여 학생을 모집하였다. 88)

또한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항공부가 결성되어 항공부대 창설에 힘을 보태고 있었다. 이청천(李靑天)이 주도한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 산하조직인 육해공군동지회와 이범석(李範錫)이 주도한 민족

<sup>85) 『6·25</sup>戰爭 證言錄』, 空軍本部, 2002, 22·32~33쪽, '金貞烈의 증언'

<sup>86)</sup> 미군정은 국내경비부의 명칭이 국방의 뜻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절하다는 한국의 반대를 묵살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측에서는 소련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국방의 뜻을 살리기 위해 국내경비부를 조선말 중앙군의 통칭인 統衛營에서 따온 통위부라 호칭하였다(백기인, 앞의 책, 2002, 104~105쪽).

<sup>87) 『6·25</sup>戰爭 證言錄』, 空軍本部, 2002, 32~33쪽, '金貞烈의 증언'

<sup>88) 『</sup>현대일보』, 1947. 10. 23. 2면, '韓國防衛 爲하여 大田에 航空學校 設立'; 『漢城日報』, 1947. 10. 23. 2면, '航空幹部學生募集'

청년단(民族靑年團)은 각각 항공부를 하부조직으로 두었다.89) 이러한 청년단체들은 건군 활동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항공부대 창설 노력과도 상관성이 있었다.90) 특히 대동청년단의 경우 최용덕과 연계되어 있어 단원들이 대전의 항공학교에 입교하기도 하였다.91)

1947년 하반기부터 단독정부 수립이 가시화되면서 국군 창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미군정은 입장을 바꾸어 항공부대 창설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미군정의 항공부대 구상은 공격 기능을 갖추지 않은 연락기 중심의 경비행기부대였다. 미군정은 남한의 선제공격 을 우려하여 방어용 무기를 중심으로 장비를 구성하고자 하였기 때 문이다.92)

미군정은 항공부대의 창설을 위해 이를 협의해왔던 최용덕 등에게 합류를 요구하였다. 이때 합류 조건은 육군보병학교에서 미국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중국 및 일본군에서 장교경험이 있었던 이들은 이등병 신분으로 입대하라는 요구에 대해 불만도 많았지만, 최용덕의 독려에 따라 입대를 결심하였다.93) 그리고

<sup>89) 『</sup>東亞日報』, 1947. 12. 28. 2면, '聲明書'; 『민중일보』, 1947. 11. 23. 2면, '民族靑年團-航空部 設置를 發起'

<sup>90)</sup> 김수자, 「대동청년단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 현실』 31, 1999, 176쪽; 林鍾明, 「조선민족청년단(1946.10~1949.1)과 미군정의 '장래 한국의 지도세력'양성정책」, 『韓國史研究』 95, 1996, 193쪽

<sup>91) 『</sup>京鄉新聞』, 1947. 11. 25. 2면, '航空國家建設——靑年 血書로 志願' 최용덕은 광복군 시절부터 이청천의 핵심 참모였으며(김기둥·강창부·이지원, 「최용덕(崔用德)의 항공독립운동과 광복군 내 역할」, 『軍史』 95, 2015), 대동청년단에서도 후원회의 총무부장으로 활동하였다(『文化日報』, 1947. 9. 1. 1면, '大同青年團 後援會 結成'; 『漢城日報』, 1947. 9. 11. 2면, '大同青年團 後援會 任員 改選'). 한편 김정렬은 최용덕과 함께 활동하면서도 이범석과 교류하고 있었다(김정렬, 앞의 책, 2010, 94~95쪽).

<sup>92)</sup> 육군의 경우, M-24전차의 도입이 검토되었으나 방어가 아닌 공격무기라는 이유로 국군에 대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Office of the Chief of Milir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GPO, 1962, p.29).

<sup>93) 『6·25</sup>戰爭 證言錄』, 空軍本部, 2002, 33쪽, '金貞烈의 증언'

육군보병학교와 경비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한 뒤 신설된 항공부 대로 편입되었다.

항공부대의 신설은 항공건설협회 출신 항공인들이 전개한 노력의결과물이었다. 신설된 항공부대에 편입된 인물은 임시로 부대장을맡았던 백인엽(白仁燁)을 제외하면 모두 항공건설협회 출신이었다.94) 이들은 군 분야의 항공력 구축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기 때문에 미군정의 승인이란 기회가 주어지자 곧바로 편입하여 항공부대를 창설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향후 항공계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인력 양성과 대중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도 성과를 내고 있었다. 항공건설협회에 합류하였던 학생항공연맹과 김영수 등의 활동이 그것이다.

경성공업전문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된 학생항공연맹은 경성공전 등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환 과정에서 항공조선학과의 신설을 이끌어냈다. 이들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항공건설협회 결성 전부터 치렀던 학생항공의 날 행사를 이어가 모형항공기대회와 항공과학전 람회 등을 개최하였다. 95) 또한 이들은 하계 방학을 활용하여 글라이더 조종과 통신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였고, 96) 동계 방학에는 항공강좌를 열기도 하였다. 97)

김영수는 대구에서 비행학교 운영을 재개하였다. 일제 때부터 조선항공연구소라는 항공인력 양성기관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던

<sup>94)</sup> 당시 부대장으로 차출된 백인엽을 제외한 항공부대 구성원은 최용덕, 이영무, 장 덕창, 朴範集, 이근석, 김정렬, 김영환이었다. 이들은 모두 대전항공학교의 교관 출신이었다(『현대일보』, 1947. 10. 23. 2면, '韓國防衛 爲하여 大田에 航空學校 設立'). 현재 공군은 이들을 공군 창설에 있어서 7인의 주역으로 여기고 있다.

<sup>95) 『</sup>京郷新聞』, 1947. 5. 9. 2면, '學生航空科學展覽會 開催'; 5. 14. 2면, '學生航空科學展覽會 開幕'; 『朝鮮日報』, 1948. 5. 1. 2면, '學生航空의 날 模型飛行大會'

<sup>96) 『</sup>東亞日報』, 1947. 7. 12. 2면, '靑年學徒들 滑空의 饗宴'

<sup>97) 『</sup>東亞日報』, 1947. 12. 26. 2년, '冬期 航空講座'

김영수는 미군정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재개 노력을 거듭하여 1946년 11월 조선비행학교를 개교하였다. 98) 조선비행학교는 적어도 이듬해까지 꾸준히 운영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99) 정부 수립 후 항공대학(100)으로 명칭을 바꿔 운영되었다.

항공부대 창설 노력과 학생들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었던 데 비해 민간항공의 운송 분야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미 허가 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항공건설협회가 추가로 허가를 받는 일도 쉽지 않았다. 자체적인 항공운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인에 의한 항공운송 소요도 많지 않은 상태<sup>101)</sup>에서 미군정이 한국인들에 의한 민간항공의 개시를 적극 지원할 리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측의 갈등은 여전했기 때문에 항공건설협회가 대한국제항공사와 손잡을 리도 없었다.<sup>102)</sup>

비록 민간항공의 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상의 활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반은 역시 항공인들의 대대적 규합에 있었다. 항공부대 창설 주역만 보더라도 중국군계와 일본군계, 그리고 민간항공계로 다양한 출신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계통의 항공인들은 항공건설협회로의 통합을 통하여 조우하였고, 분야별로 합심하여 항공력 건설의 성과에 나아갈 수 있었다.

<sup>98) 『</sup>항공조선』 2, 1947. 2. 40쪽, '朝鮮飛行學校 開校'; 『東亞日報』, 1946. 11. 2. 2면, '航空朝鮮建設에 朗報-五百萬圓으로 大邱에 飛行校 設立'

<sup>99) 『</sup>民主衆報』, 1947. 5. 21. 1면, '(광고)朝鮮飛行學校'

<sup>100) 1953</sup>년에 설립되어 1955년에 승격되었던 국립항공대학(現 한국항공대학교)와는 별개의 학교로 1965년 문교부로부터 부실대학으로 폐쇄 명령을 받았다(『京郷新聞』, 1965. 12. 9. 3면, '3個 初大 폐쇄, 不實 7科 폐과').

<sup>101) 1949</sup>년 정식 운항을 개시한 대한국민항공사는 1회 운항에 4명의 승객을 정원으로 두었는데, 이마저도 확보하기가 아주 어려웠다고 한다(임달연, 앞의 책, 2001, 78쪽). 따라서 정부 수립 전에도 민간의 항공운송 소요는 적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sup>102)</sup> 항공건설협회 출신 인사들은 1949년 반민특위 때까지도 신용욱을 맹비난하였다 (『自由新聞』, 1949. 2. 27. 2면, '愼鏞項 極刑하라, 航空協會 等 國會에 請願').

따라서 항공건설협회의 활동은 다시 조망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상태였을지라도 정부 수립 때까지 협회가 존속하였다는 사실은 당 시 협회가 나름대로의 상징성을 지녔다는 암시를 준다. 항공건설협 회가 주관이 되었던 활동에 국한하기보다 협회로의 규합이 이후 활 동에 끼친 영향에 주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5. 맺음말

항공력의 소개와 도입은 한국인들이 독자적인 주권을 갖지 못한 일제시대에 이루어졌다. 식민지배 상황에서 항공력의 도입은 하나 의 완성된 체계가 아닌 식민모국의 이익과 '제국'전체의 계획 아래 왜곡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한편 식민지를 떠난 한국인들이 독립운 동이나 생존을 위해 항공 분야에 투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제의 패망 후 새로운 주권국가의 항공력 건설은 왜곡된 형태로 산재되어 있는 항공 유산 을 파악, 통합하여 일원화된 체계 아래 재편하는 작업이 요청되었다.

해방 직후 국내 항공인들의 대다수는 조선항공협회와 항공준비대로 규합하여 항공력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일제의 항공 유산을 물적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다. 일제의 항공 유산 확보를 위해서 미군정의 협조는 필수적이었다. 두 단체는 각각 민간 분야와 군 분야의 항공력 건설을 우선시하였는데, 이는 미군정의 협조에 대한기대의 차이에서 기인하였다. 그것은 미군정이 군 분야의 항공력건설까지 긍정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다.

두 단체가 미군정의 태도를 낙관했던 것과 달리, 미군정은 일제의 항공 유산에 대한 철저한 통제의 입장을 취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였던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두 단체에 대한 미군정의 불신을 심화시켰다. 결국 미군정은 군 분야의 활동을 추진하였던 항공준비대부터 시작하여 조선항공협회까지 해산 조치를 단행하였 다. 이로 인해 항공인들의 규합도 일시적으로 와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항공인들의 항공력 건설을 위한 활동은 지속되었다. 각각의 군소단체로 분열되었던 이들은 해외의 항공인들, 특히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던 최용덕, 이영무 등의 귀국을 계기로 재결합하여 한국항공건설협회를 출범하였다. 한국항공건설협회는 조선항공협회와항공준비대뿐만 아니라 귀국한 항공인들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이전의 규합보다 더 높은 수준의 통합이었다.

한국항공건설협회는 통합 직후의 활발한 활동에 비해서 시간이 갈수록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특히 협회는 항공 운송에 관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당시 유일하게 허가를 받았던 신용욱 중심의 대한국제항공사 역시 운항 개시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이었다.

반면에 한국항공건설협회의 구성원들은 통합을 계기로 각자의 분 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비록 초보적 단계일지라도 항공부대의 창설과 항공교육기반의 마련이라는 성과를 낳을 수 있었다. 이것은 항공인들의 통합 노력에 따라 항공력 건설의 인적 기반이확보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므로 한국항공건설협회를 위시한 당시 항공인들의 활동은 그 것으로 인해 가능해졌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협회를 구심점으로 하는 통합으로 이루어진 인적 기반의 파악은 이후 미군정의 제약이 완화되어가는 시점에서 항공력 건설로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이러한 역할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협회는 명맥을 유지하면서 정부 수립 후 대한항공협회로 재편, 발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본격화되었던 항공력 건설은 과거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한 것도 아니었고,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던 항공인들의 열망이 주권국가의 수립과 맞물려 터져 나왔던 것이다. 현재의 항공력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러한 성향이 이어진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해방 직후부터 정부 수립 때까지 항공인들이 전개하였던 노력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원고투고일: 2016.4.3, 심사수정일: 2016.5.20, 게재확정일: 2016.5.23.]

주제어 : 조선항공협회<mark>, 항공</mark>준비대, 한국항공건설협회<mark>, 공</mark>군, 대한국제항공사

<ABSTRACT>

# The meaning of construction efforts of Korean Air power during the period of independence (1945~1948)

Kim, Ki-Doong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orts of airmen to build air power since the Liberation of Korea until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and intends to reveal the significance of such endeavor.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see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National Preparatory Air Force(KNPAF) and conflicts between the airmen in a new light. The gis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After liberation, air facilities and equipments implemented by the Japanese Empire were left behind on the Korean Peninsula. Trained during the colonial era, the airmen rallied around the Korea Aviation Association(KAA) and the KNPAF and attempted to build air power by using the air heritage from the Japanes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cooperation with the U.S military government was indispensable. The U.S military authorities, however, ramped up its control over aviation and dismissed the two organizations as it referred to incidents, such as flying without notice and corruption. Although Korea's dream of building air power appeared fallen to pieces due to U.S intervention, the airmen strived to find ways to stand back up again by forming small organizations in their own specialized fields. Other Air Force figures, such as General Choi Yongduk, returning home from overseas became a cause for the remaining personnel in the nation to gather once again, and this led to the foundation of the Korea Aviataion Establishment Assocation(KAEA). The KAEA was not only an organization that combined the two associations aforementioned, but it also included airmen overseas. Accordingly, the KAEA could

carry out activities in various fields to build air power. One area that produced noteworthy achievements was the military field. in which an air unit was created and the basis for aviation training was established. On the other hand, the transportation sector in civil aviation under performed. Considering that Korea Int'l Airline approved to fly by colluding with the U.S military government ended up not operating, such limitation is more likely due to the influence of U.S military policies than the lack of the KAEA's capabilities. In order to make a result immediately in case the U.S military government showed any sign of shifting its control policies, the airmen continuously put much effort in building air power. Again, the establishment of an air unit and of the basis for aviation training is just one representative instance in line with such exertion. Likewise, the steadily developing air power Korea could maintain before and after the foundation of government can be said to have derived from the effort inside rather than outside. These efforts were not fruitless, for they became the driving force for further development of air power.

Key words: Korea Aviation Association, Korean National Preparatory Air Force, Korea Aviataion Establishment Assocation, Air Force, Korea Int'l Airline

## 6.25전쟁 초기 김홍일의 활동과 예편

- 한강선 방어전투를 중심으로 -

이 동 원\*

- 1. 머리말
- 2. 6·25전쟁 발발과 시흥지구전투사령부의 창설
- 3. 한강선 방어전투의 전개
- 4. 육군 제1군단 창설과 김홍일의 예편
- 5. 맺음말

#### 1. 머리말

6·25전쟁기 한국군 지휘관으로서 그 역할과 성취에 비해 가장 저평가된 인물을 꼽는다면 김홍일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김홍일(金弘壹, 1898.9.23.~1980.8.8)은 일제강점기 중국 국민혁명군과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에 가담하여 항일무장투쟁에 헌신했고, 해방 후에는 만주 일대에 거류하는 한국인 동포의 보호와 본국 송환에 진력하였으며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으로서 6·25전쟁 초기 전투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였고 1951년부터 1960년까지 대만 대사를

<sup>\*</sup>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역임하였다. 그는 5.16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고문, 외무부 장관에 임명되었으나 박정희 대통령의 민정이양 약속 불이행, 한일기본조약 체결에 반대하여 재야인사로 변신하였고, 야당정치인으로서 제7, 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971~1972년 당수로서 신민당을 이끌었다.1)

독립운동가이자 군인, 외교관이자 정치인으로서 김홍일이 보여준입체적 생애는 식민, 분단, 전쟁, 개발독재로 이어지는 한국근현대사의 다양한 측면을 풍부하게 반영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해방 이전 김홍일이 관계했던 단체와 활동들을 중심으로 그의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홍일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근의 두 연구도 해방 이전까지의 생애를 다루거나 1920년대 전반기 항일무장투쟁만을 주제로 하였다. 2)

독립운동가로서 김홍일의 활동을 이해하는 것은 김홍일의 삶의 궤적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선행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의 생애 전반을 이해하고 그의 역할과 기여를 역사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는 6·25전쟁 초기 한강선 방어전투를 중심으로 해방 이후 김홍일의 군인으로서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김홍일 개인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한 인물을 통해 6·25전쟁 초기 한강선 방어전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金弘壹, 1972 『大陸의 憤怒 - 老兵의 回想記-』 文潮社; 이기택, 1987 『韓國野黨史』 백산서당

<sup>2)</sup> 한상도, 1993 「일제하 재중한인독립운동의 국제적 배경 - 중국군벌정권 및 국민당 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건대사학』 8; 한시준, 2001「이봉창 의사의 일왕저 격의거」, 『한국근현대사연구』 17; 신용하, 2003「백범 김구와 한인애국단의 의열 투쟁」,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1; 김주용, 2008「중국 장백지역 독립운동단체의 활동과 성격 - 대한독립군비단과 광복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92; 김 종문, 2014「김홍일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8; 윤상원, 2014「1920년대 전반기 김홍일의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7

한강선 방어전투의 구체적 전투 상황에 대해서는 국방부 군사편 찬연구소에서 출간한 『6·25전쟁사』시리즈 중 제3권에서 이미 상세히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서들이 한강선 방어전투를 어떻게 서술해왔는지 재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들을 해명하고자 한다.3) 비전투부대인 참모학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홍일은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이 수도 서울을 점령한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을 맡을 수 있었는가?유엔군 참전 이전, 북한군과의 현격한 전력 차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이 한강선 방어전투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한강선 방어전투를 이끈 김홍일은 왜 낙동강 방어전투가 한창이던 1950년 8월 말,육군 제1군단장에서 육군종합학교 교장으로 보직을 옮겼고 이듬해 예편하였는가?이에 대한 해명을 통해 한강선 방어전투가 6·25전쟁사에서 갖는 의의와 김홍일의 활동 및 예편의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가 1951년 발간한 『韓國戰亂一年誌』, 미 육군 전사실(戰史室) 전사관 (戰史官) 로이 애플만(Roy Appleman)이 1961년 발간한 South to the Nakton, north to the Yalu(1963년 『유엔군전사, 낙동 강에서 압록강까지 제1집』으로 번역),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1978년 발간한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ume III, The Korea War Part 1 (1990년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 (上)』으로 번역) 등의 공간사를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공산군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에프의 6・25전쟁 보고서 1』(2001)를 참고하였다. 이 밖에 김홍일이 남긴

<sup>3)</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6·25전쟁사 3, 漢江線 防禦와 初期 遅延作戰』 123~242쪽.

회고록『大陸의 憤怒-老兵의 回想記-』와 신문, 잡지 기사, 기타 관련 인물 회고록 등을 활용하였다.4)

#### 2.6 · 25전쟁 발발과 시흥지구전투사령부의 창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전면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 정부와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6·25전쟁사』시리즈는 이 시기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전쟁지도 및 작전지휘가 사실상 부재했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남침 당시군 최고통수권자는 이승만 대통령이었으며 대통령의 군사문제를 보좌하는 직무를 띤 사람은 신성모 국방장관이었으나, 불행히도 이들은 군사문제에 어두웠고 전쟁지도를 수행할 능력이 없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국군 지휘부의 작전 지도는 "단편적이고즉흥적"이었으며 "국군 수뇌부는 전쟁 전 대비와 전략, 전술이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북한군에게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5)

<sup>4)</sup> 大韓民國國防部政訓局戰史編纂會, 1951 『韓國戰亂一年誌』; 육군본부, 1963, 『유엔 군전사,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제1집』(Roy appleman, 1961,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上)』(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1978,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ume III, The Korea War Part 1, Historical Division Joint Secretariat Joint Chiefs of Staff);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에프의 6・25전쟁 보고서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6・25전쟁사 3, 漢江線 防禦와 初期 遲延作戰』

<sup>5)</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6·25전쟁사 2, 北韓의 全面南侵과 初期 防禦戰 鬪॥ 95~96쪽. 이와 관련하여 남정옥의 최근 연구는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발발 후 서울을 떠나기 전까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무초 대사와 회담하였으며 주미

특히 소규모 부대의 축차적 역습 투입은 화력 우위의 적 앞에서 무용지물이었고 아군 피해만 키울 뿐이었다. "북한군의 주공이 지향된 의정부 지역에서의 작전지휘는 여러 가지 되새겨볼 요소가 많았다. 소총, 기관총 박격포만으로 북한군의 전차를 멈추게 할 수없었으며, 부족한 병력으로 실시한 반격은 병력의 소모만 가져와 부족한 병력을 더욱 부족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하였다." "의정부지역에서의 국군의 작전 지휘는 준비태세 미비, 지휘계통의 혼선, 축차적이고 단편적인 역습에 의한 병력 소모, 병력보존을 위한 적극적 고려와 조치의 부재 등과 연관된 문제점을 드러냈다."6)

6·25전쟁 초기 한국군 작전지휘의 '부재'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명림은 6월 27일 새벽 1시에 비상국 무회의가 열렸을 때 "비상 국무회의 벽두 국방장관 신성모의 보고는 여전히 안일하고 낙관적인 것이었다. 전 국무총리 이범석의 핀 잔과 제지로 신성모의 영성한 전황보고는 도중에 중단되었다."고 지적하였다.7)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가 전쟁 중에 발간한 『韓國戰亂一年誌』에서도 전쟁 초기 한국군 사단들이 군 수뇌부의통제 없이 개별적 판단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27일 오후 7, 8시경에 이르러서는 서울 동북방 미아리고지를 방비하고 있던 제5, 7사 진지에 적이 침투하여와 전선은 혼란상황에 빠지고

한국대사관에 미국 지원 요청을 지시하는 등 적절한 전쟁지도를 수행한 점을 조명함으로써 기존 통설에 반론을 제기하였다.(남정옥, 2015 『6 · 25전쟁과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지도』군사편찬연구소, 86~120쪽).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이승만대통령이 헌법 57조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면서 헌법 64조의 계엄령은 7월 8일에서야 뒤늦게 선포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비상계엄사령관이 되고 육군본부가 계엄령 실시의 주체가 되어 비상계엄사령부를 운영해야 되는데, 당시 채 총장이나 육군본부의 능력으로는 전쟁을 지도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령에 따른 편성이나 운영에는 무리가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추론하였다. (남정옥, 위의 책, 98쪽)

<sup>6)</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6·25전쟁사 2, 北韓의 全面南侵과 初期 防禦戰鬪』 97~98쪽.

<sup>7)</sup> 박명림, 2002 『한국 1950: 전쟁과 평화』나남출판, 152쪽.

피아의 구별을 못하게까지 되었다. (중략) 전차가 서울 시내에 침입하고 이미 육군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각 사단장들은 각개로 휘하부대의 노량진 집결을 명령하였다."<sup>8)</sup>

그렇다면 이와 같이 6·25전쟁 초기 한국군 지휘부가 혼란상을 드러내며 즉흥적 작전 지도에 머물렀던 원인은 무엇일까? '1949년 38선 충돌'의 성격과 6·25전쟁과의 관계를 상세히 밝혀낸 정병준은 1949년 이래 '북진통일'로 상징되는 한국군의 공세적 태도가 1950년 진정한 '불의의 기습남침'을 형성하는 주요 배경을 형성했다고 설명한다. 한국군은 38선상으로 전진배치되어 있었고, 방어형 편성이 아니어서 방어에 관한 한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이다.9)

6월 29일 도쿄에서 급거 수원으로 날아온 맥아더 장군도 한강 이남에서 전선을 시찰한 뒤 6월 30일 합참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한국 육군과 해안경비대는 혼란상황에 있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으며, 그들 자체로서는 통솔력도 결핍되어 있었다.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무장으로 편성되고 장비되었으므로, 그들은 전차와 항공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역으로, 그들은 북괴군을 형성하고 있는 그와 같은 부대에 대하여 주도권을 획득할 수도 없었다.

한국 육군은 종심방어, 보급제대 또는 보급체제를 위한 준비도 하지 않았다. 후퇴이동시 보급품과 군수물자의 파괴를 위하여는 아무 계획도 수립되지

<sup>8)</sup> 大韓民國國防部政訓局戰史編纂會, 1951 『韓國戰亂一年誌』, A35쪽.

<sup>9)</sup> 정병준, 2006 『한국전쟁-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673~683쪽. 정병준은 "1950년 6월 한국군의 급격한 붕괴는 병력과 화력의 열세, 그리고 북한이 시도한 기동전·전격전의 영향도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군이 기본적으로 방어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북한군의 주요 예상 공격로를 중심으로 종심 방어를 구축하지 않았고, 주요 도로·철도·접근로에 대한 봉쇄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며, 탱크와 병력 이동에 대비해 대전차·대인지뢰를 매설하지도 않았고, 군수보 급창고의 대부분을 서울 이북 지역에 위치시켰다."고 비판했다. (정병준, 앞의 책, 681쪽)

않았으며, 혹은 수립되었더라도 시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보급품과 중장비를 망실하였거나 폐기하였으며, 전혀 상호연락체제도 갖추지 못하였다."10)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도 1단계 전투결과를 총결한 보고 서에서 한국군의 방어 실상을 평가하면서 한국군이 38선을 따라 방어설비를 구축하는데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종심 깊 이 고밀도로 조직된 방어망을 구축하지 않았고, 보병 경화기 중심 으로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대전차 방어설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적 절한 방어계획이 부재했다고 평가했다.<sup>11)</sup> 비록 미군과 소련군으로 소속은 달랐지만 맥아더와 라주바예프 모두 군사전문가로서 6·25 전쟁 초기 상황에 대해 매우 유사한 상황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이에 따른 한국군의 병력 소모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6월 25일 현재 98,000명이었던 한국군은 6월 말 22,000명으로 보고되었고, 수일 후 피해가 적었던 6사단과 8사단 병력을 합해도 54,000명에 불과했다. 12) 이는 전쟁 발발 수일 만에 전 병력의 약 45%를 잃은 엄청난 손실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과 막대한 병력 손실 속에서 시흥지구 전투 사령부는 어떻게 편성된 것이며, 왜 하필 비전투부대인 육군 참모 학교장 김홍일 장군에게 전투사령관의 중책을 맡겼던 것일까? 공식 전사들은 시흥지구 전투사령부의 편성을 채병덕 총참모장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묘사했다. "서울이 실함되기 직전 총참모장 채병덕 소 장은 한강을 연한 방어선에서 인민군을 저지하기로 결심, 육본을 수원농업시험장으로 이동 개설한 후 육군참모학교 교장 김홍일

<sup>10)</sup> Msg. CINCFE C 56942 to DA for JCS, 30 Jun 50, CMIN 8776. (국방부 전사편 차위원회, 1990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 (上)』94쪽에서 재인용)

<sup>11)</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에프의 6·25전쟁 보고 서 1 178~179쪽.

<sup>12)</sup> 육군본부, 1963, 『유엔군전사,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제1집』16쪽.

소장을 시흥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한강선 방어 임무를 부여 하였다"는 것이다.<sup>13)</sup>

그런데 김홍일의 회고는 공식전사의 설명과는 다른 상황을 보여준다. 14) 전쟁 발발 이틀 후인 1950년 6월 27일 오후, 참모학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홍일 소장은 채병덕 총참모장으로부터 문산지구 제1사단 백선엽 대령의 작전을 지도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문산 방면에는 제1사단 3개 연대 외에 배속된 보병 2개 연대와 국군유일의 포병대대를 보유하여 비교적 정연한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김홍일은 의정부 방향으로 침입하는 적을 견제하기 위해동두천 방면 적의 측배(側背)를 공격하기 위해부서를 짜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밤 12시경에 적 전차가 당시 창경원에 침입하였다는 전보를 접하고 1사단이 적의 포위망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따라서 백선엽 사단장에게 공격 계획을 중지하고 도강 후퇴하여 한강 동안(東岸) 방어에 대비하되 수색과 행주에 속히 공병대를 파견하여 선척을 집합, 지중부대(輜重部隊)를 먼저 도하시키고 부근 민가를 몇 집 헐어 그 재목으로 보병이 통과할 부교를 가설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백선엽은 김홍일의 '지시'를 듣지 않았고 사수하라는 '명 령'의 수행만을 고수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김홍일에 대한 채병덕 의 '작전 지도' 요청은 위기 상황에서 일종의 '고문' 역할을 요청한 것일 뿐 지휘계통 상의 권한 있는 지위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던 것 이다. 이 상황에 대한 김홍일의 한탄 섞인 회고를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sup>13)</sup> 국방군사연구소, 1995 『한국전쟁 (上)』190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6·25전쟁사 3,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138쪽; 온창일, 김광수 外, 2010 『6·25전쟁 60대 전투』황금알, 39쪽.

<sup>14)</sup> 이하 내용은 김홍일, 1964 「나의 六·二五緒戰回顧-漢江防禦作戰에서 平澤國軍 再編成까지-」『사상계』138호, 226~233쪽을 참고.

"백사단장은 시수하라는 명령만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독단으로 후퇴하겠는 가고 결심을 내리지 못하였다. 사단장 이상의 대부대장은 이런 때의 독단 전행(專行)이 필요하거늘 이를 이해치 못하니 가탄할 일이나 또 나에게는 이를 강제할 아무 권한도 없으므로 즉시 육군본부로 달려와 채병덕 소장에게 백사단 도하 후퇴 명령을 급히 하달하도록 이해를 가려서 권고하였으나 전략사상이 없는 그는 후일 퇴각시켰다는 책임을 질 것을 두려워 내 말을 종시듣지 않고 핑계만 하다가 새벽 1시가 지나서 제7사단장 유재흥 대령이 큰소리로 통곡하면서 육군본부에 나타나 적의 전차를 막을 길이 없이 미아리방어선이 무너지고 적이 서울 시내로 진격한다는 보고를 하자 채병덕 총참모장은 황망히 장경근 국방차관과 같이 찝차를 몰아 달아나기에 어디로 가느냐고물어도 대답도 않고 겨우 장차관이 수원으로 간다고 말할 뿐이었다."15)

김홍일은 백선엽에게 다시 한 번 도강 연락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고 하는 수 없이 채병덕을 따라 도강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강교 폭파 굉음을 들었다. 그는 수원을 향하던 중 이응준 장군을 만나 함께 육군 본부로 향했고 그곳에서 채병덕, 이응준 장군과 함께 상황 수습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대한 김홍일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

"도중에서 이용준 장군을 만나 전세를 한탄하면서 정오 수원에 이르러 육군본 부 지휘소를 찾았더니 채병덕 소장은 수일의 피로를 못 이겨 담화 중에도 코를 골며 잠꼬대를 하는 처지이니 작전을 지도할 정신적 체력적 여력은 없었다. 그러나 이용준 장군과 셋이서 전장 수습과 전세 만회책을 협의한 결과 나는 시흥으로 가서 퇴산(退散) 부대를 수습하여 한강방어를 담임하고 이용준 장군은 수원에서 퇴산 부대를 수습하여 전방으로 수송 지원하다는

<sup>15)</sup> 김홍일, 1964「나의 六·二五緒戰回顧-漢江防禦作戰에서 平澤國軍再編成까지-」『사상계』138호, 228쪽. 이 상황에 대해서는 백선엽의 회고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봉일천 초등학교에 마련된 사단사령부에 육군본부 전략지도반장 이름으로 김홍일 소장이 민기식 대령과 함께 방문"했으며 "한강 남쪽으로 후퇴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물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동의하여 후퇴 허가를 기다렸으나 참모총장 명령서는 예상과 달리 '현 진지를 사수하라'고 적혀 있어 철수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백선엽, 2009『군과 나』시대정신, 44~45쪽)

결정을 지어가지고 나는 다시 시흥으로 되돌아왔다."16)

따라서 시흥지구 전투사령부의 창설과 김홍일의 시흥지구전투사 령관 임명은 방어계획이나 채병덕 총참모장의 명령에 의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조치라기보다는 비전투부대를 맡고 있던 두 노장(老將)의 경험에서 나온 즉흥적이고 임시적인, 고육지책의 일환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7) 당시 수도사단 참모장이었던 김웅수 장군이 "김홍일 장군은 상부의 명령 없이 후퇴하는 병력을 모아 한강변에 배치하며 지휘"하였다고 설명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는 "한강 남쪽으로 철수한 육군본부는 김홍일 소장을 시흥지구 전투사 령관으로 사후에 소급 발령해 한강선 방어전을 지휘하게 하였다"고회고하였다.18)

한국군 입장에서는 6·25전쟁 발발 후 3일간의 전투에서 엄청난 병력 손실을 입고 남쪽으로 후퇴하기에 급급했던 군을 일단 수습하 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또한 역설적으로 김홍일과 이응준이 전투부대 지휘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육본을 따라 수원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수습책 마련에

<sup>16)</sup> 김홍일, 1964, 위의 글, 229쪽.

<sup>17)</sup> 중국 국민혁명군 및 광복군 출신인 김홍일과 일본 육사 출신인 이용준의 관계는 그들의 출신과는 무관하게 상당히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김홍일과 이용준은 1976년 『세대』의 지면을 통해 광복군, 창군 시절을 회고하는 대담을 나누면서 창군기에 대해 "李=만주와 중국 출신 그리고 일본 출신 더러는 유해준, 이성가 씨와 같은 광복군도 대거 새로운 조국의 깃발 아래 모여 들었"고 "金=그때의 보기 좋았던 광경은 출신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지만 서로 추천하고 천거하는 모습"이었다고 공감했다. (이용준, 김홍일, 1976「光復軍・創軍時節」『세대』제14권, 통권 157호, 71쪽) 또한 김홍일의 오산학교 후배이자 이세호 주월한국군 사령관의 작전참모를 맡았던 전제현 예비역 소장에 따르면 중국 망명 당시 김홍일 장군의 편지를 망명 3개월 만에 국내의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전달한 사람도 이용준 장군이었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사연구사업단, 「전제현 장군 3차 구술면담」2014.6.9.)

<sup>18)</sup> 김웅수, 2007 『김웅수 회고록』 새로운 사람들, 162쪽.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한강선을 이용하여 지연작전을 펼친다는 개념은 1950년 3월 25일자 육본 작전명령제38호(일명 국군방어계획)에도 어렴풋하게 나마 담겨 있었고, 19) 6월 26일 아침 국방부에 소집된 긴급군사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있었다. 이 자리에는 신성모, 채병덕, 이응준, 김홍일 등 4인의 현역 군 관계인사와 유동열, 지청천, 이범석, 김석원 등 4인의 '재야군인'을 합하여 8인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강 방어선 형성 논리가 대두되었으나 신성모 국방장관과 채병덕 총참모장이 서울 고수론을 펼치는 바람에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산회하였다. 이에 대한 김홍일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

"이 좌석에서 나는 속히 전쟁방침을 정하여 어느 선에서 전병력을 집결하여 고주일척(孤注一擲)의 결전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UN군의 참전까지 시간의 여유를 얻기 위하여 지구전(지연작전)을 하느냐를 결정하여 군 당국으로 하여금 시행케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유감되게도 이 자리에는 전쟁원리나 전략연구를 하여본 인사가 없는지라나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연한고담광론(高談廣論)으로 괴뢰의 이번 공격은 시탐성(武深性)에 지나지 않으므로 UN군이 직접 참전하게 된 오늘날 적은 결코 서울까지의 공격은 못할 것이라는 안이한 적정판단으로만 시중하다가 결론없이 헤어지고 말았다."20

<sup>19)</sup> 육본 작전명령 제38호는 육군을 위주로 38도선상에서 적의 침공을 방어한다는 수세적인 지역고수 방어개념이었다. 만일 38도선에서 적의 침공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한강 이남으로 전략적인 후퇴를 감행하되 한강선, 대전선, 낙동강선에서 지연전을 전개하도록 계획되었다. (서상문, 2005『알아봅시다 6・25전쟁사 1권(배경과 원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20~124쪽) 그러나 지연전의 개념은 구체적이지 않았고 3월 말 수립된 방어계획은 예하부대 자체 방어계획으로 5월 초에야자리 잡았으며, 그나마도 미 군사고문단이 북한의 남침 계획을 경시하여 도상 계획에 불과한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군은 방어 대책이 없이 방어 계획만 가진 상태로 6・25전쟁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강문봉, 김점곤, 이성가 外, 「6・25 스물세돌 특집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당시 일선지휘관들의 증언」『경향신문』 1973년 6월 22일)

<sup>20)</sup> 김홍일, 1964, 앞의 글, 227쪽.

적의 전면 기습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축차적 부대 투입으로 인한 병력 손실을 피하고 병력을 집결하여 '결전'을 선택하거나 유엔군 참전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지구전'을 선택해야 한다는 판단은군사전략상 매우 기본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육본 작전국은한시적 수준의 서울 방어를 선택했고 이는 '수도 서울 사수'라는 당위로 인해 비롯된 작전 실패라고 볼 수 있다. 21)

결국 김홍일이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을 맡게 된 것은 육본에서 있었던 채병덕, 이응준과의 협의의 결과이기는 했지만 그가 한국군 내에서 사단급 이상 대부대의 지휘 경험이 있는 유일한 인물로서 그러한 경험에 기반하여 군사전략을 이해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수 있었기 때문이지도 했다. 22) 비록 고육지책으로 나온 임시적 조치였으나 시흥지구 전투사령부 창설과 김홍일의 전투사령관 부임, 한강선 방어전의 시작은 6・25절쟁 초기 한국군에게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sup>21)</sup> 전쟁 발발 일주일 전까지 육본 작전국장을 맡고 있었고 육본 작전명령 제38호를 작성한 강문봉 장군은 1965년 김홍일, 이성가, 이한림 등과 『사상계』지면을 통해 나눈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그날 저녁에 저희들은 미아리 고개까지 후퇴했습니다. 지금 미아리 고개 언덕까지 일단 후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날 저녁에 서울이 떨어진다고 하기에 서울을 하루라도 더 가지고 무슨 방안이 설 때까지 방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언덕에다가 선을 긋고 미아리 고개에서 방어를 하고 다리 두 개만 끊으면 전차는 서울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전차가 '바이 패스' 한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차라는 것이 하천을 그대로 넘고 올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를 그 정도로 전차에 대해서 무식했습니다. 작전국장이 이 정도였으니까…" (강문봉, 김홍일, 이성가, 이한림 外, 1965 「좌담회, 한국동란비화 -6・25를 치른 지휘관들의 회고와 반성」『사상계』147호, 176쪽)

<sup>22)</sup> 국방군사연구소, 1995 『한국전쟁 (上)』190쪽.

#### 3. 한강선 방어전투의 전개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한강선 방어전투는 한국군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예하 3개 혼성사단(제2, 7, 수도사단) 이 한강 남안에 방어선을 형성해 북한군 제1군단 예하 보병 3개사단(제3, 4, 6사단) 및 전차 1개 여단의 공격을 6일 동안이나 방어한 전투이다. 6월 28일 새벽에 서울에 진주한 북한군 제1군단은 제105 전차여단과 함께 한강 북쪽의 도하지점을 점령하는 한편, 시내의 주요 기관을 장악했다.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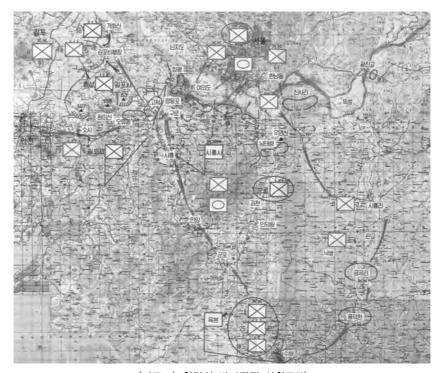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서울 점령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 등 정부가 대전으로 이동하여 한국군의 항전이 계속되고 유엔 해공군의 개입이라는 예상 밖의 상황에 접하자 유엔 지상군의 참전을 의식하여 그 전에 남한을 석권하려는 기도 하에 황급히 미리 계획된 남진 명령을 하달하였다. 북한군은 "미 육군이 증원되기 전에 한강을 강습 도하하여 국방군의 주력을 격멸, 소탕한 후 평택·충주·울진 선의 지역을 점령하며, 이를 위하여 주공을 영등포-수원-평택 방면으로 지향하는 동시에 다른 몇 개의 방향에 대해 조공을 둔다"는 작전방침을 결정하였다. 24)

한강을 도하하여 평택 방면으로 진출한 북한군 제1군단은 군단 주공인 제4사단을 신촌 일대에서 영등포 방면으로, 조공인 제3사단을 용산-한남동 일대에서 말죽거리로 지향하여 도하 준비를 서둘렀다. 한편, 문산 방면에서 합류한 제6사단은 수색 부근에 집결하여 이미 김포비행장 부근까지 진출한 제14연대의 전황을 지켜보면서 그에 대한 지원태세를 갖추었고, 또 제1사단 주력은 서대문

<sup>23)</sup> 온창일, 김광수 外, 2010 <sup>®</sup>6·25전쟁 60대 전투』황금알, 38쪽.

<sup>24)</sup> 북한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81 『조선전사 제25권-조국해방전쟁사 1』 평양 과 학백과사전출판사, 140쪽(국방군사연구소, 1995 『한국전쟁(上)』 187쪽에서 재인용)

쪽으로 입성하여 제3, 4사단을 후속할 예비대가 되었으며, 제105 전차여단은 시가지 경계와 보병부대의 도하를 지원하면서 도하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 1군단은 서울을 점령하자마자 그들 공군이 제공권을 거의 상실하게 되고 미 지상군의 참전도 점차 우려되어 도하를 한층 서두르게 되었고, 한강선 돌파에 선두부대가된 제3, 4사단이 포병연대를 남산 기슭과 신촌 일대에 배치하여화력 지원태세를 갖추었다. 25) 다음 지도는 한강선 방어전투의작전 상황도이다.



〈지도 1〉 한강선 방어작전 상황도26)

<sup>25)</sup> 국방군사연구소, 1995 『한국전쟁 (上)』187~188쪽.

<sup>26)</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6 · 25전쟁사 3. 漢江線 防禦와 初期 遲延作戰 129쪽.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한국군 지도부는 한강선을 방어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경황이 없었다. 다만 적의 주공이 노량진 정면을 돌파해 시흥 - 안양 - 수원의 경부국도로 지향되리라는 판단 아래 병력이 수습되는 대로 부대들을 방어선 이곳저곳에 투입할 뿐이었다. 27)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한강은 적의 전면 남침시에 자연 장애물로써 양호한 지연진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언급되었을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었다. 병사들은 거듭된 전투와 철수로 말미암아 극도로 피로한 상태였고 수습된인원도 1개 연대의 실병력이 대대 규모로 줄어들 정도였다. 군수면에서 한국군이 직면한 실정은 더욱 어려운 상태였다. 한강교 폭파로 사단에 지급될 보급품을 실은 1,318대의 차량들이 전부 한강북쪽에 갇혀 적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28)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시흥지구전투사령관의 임무를 받은 김홍일은 6월 28일부터 한강선 방어 부대를 지휘하였다. 그는 시흥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참모부를 구성하는 한편, 제7사단장 유재흥 준장을 혼성제7사단장, 수도사단장 이종찬 대령을 혼성수도사단장, 제2사단장 임선하 대령을 혼성제2사단장에 임명하고 안양천에서 광진교에 이르는 한강 남안 24km 정면의 방어 편성에 들어갔다. 29)

이때 군의 방어개념은 한강선을 고수한다는 것이었으며, 시흥사 (始興司)는 미 지상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들이 가능한 한

<sup>27)</sup> 온창일, 김광수 外, 2010, 위의 책, 38쪽.

<sup>28)</sup> 국방군사연구소, 1995, 앞의 책, 188~189쪽.

<sup>29)</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6・25전쟁사 3, 漢江線 防禦와 初期 遲延作戰』 139쪽. 이에 대한 김홍일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 "시흥원보병학교(始興原步兵學校)에 도착한 것은 28일 하오 3시경이었다. 때마침 시흥에는 김백일 대령과 강문 봉 대령이 내도하여 퇴산부대 수용에 착수하고 있었으므로 현지에 집결된 장교들로 시흥전투사령부를 조직하고 김종갑 대령을 참모장으로 기타 수명의 장교를 참모로 임명하여 병력수용 사무를 인수하고 김백일 대령과 강문봉 대령은 육군 본부로 귀대시켰다."(김홍일, 1964 「나의 六・二五緒戰回顧-漢江防禦作戰에서 平澤國軍再編成까지-」『사상계』 138호, 229쪽)

북쪽에서 전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고수한다는 작전 개념으로 한강선 방어에 임하였다. 당시 사령부가 하달한 한강선 방어작전의 명령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전투사령부는 한강선을 방어하려 한다. ② 혼성제2사단은 신사리-동작리 정면을 고수하라. ③ 혼성제7사단은 동작리-대방리 방면을 고수하라. ④ 혼성수도사단은 신길리-양평리(안양천) 정면을 고수하라. ⑤ 김포지구전투 사령부는 현 위치(김포)에서 적을 저지하라. ⑥ 각 사단은 적의 도하수단을 적극 분쇄하라. ⑦ 각 사단은 피난민에 대한 검색을 철저히 하여 적색분자의 침투를 저지하라. ⑧ 지휘소는 시흥(보병학교)에 위치한다. 30)

시흥사가 미 지상군 투입을 예상할 수 있었던 배경은 김홍일의 회고에 잘 나타난다. 그는 사령부 설치와 참모부 구성을 마친 6월 29일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이때 마침 원참모학교(原参謀學校) 고문관 로버트 하제레트(Robert Hazlett) 중령이 미고문 5, 6인과 같이 역시 시흥에 도착하여 본 사령부의 고문단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한강방어작전을 토론하던 중 하제레트 중령이 말하기를 UN군이 참전하게 되었으나 서울함락이 예상 외로 너무 빨랐기 때문에 창졸간에 부산으로 수송을 시작한 미군 제24사단이 한강선까지 진출할 려면 적어도 3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만일 3일 이내에 적이 한강을 도하하여 추격하여 온다면 전략상 부산에 상륙을 시작하던 미군도 일단 일본으로 철수하지 않으면 아니될 처지이니 대한민국의 존망이 한강을 3일 이상 고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다고 하였다."31)

김홍일은 이것이 "전략상 명백한 사실"이라고 느꼈고, 3일 이상 한강선을 고수하는 것이 "국운을 걸고 내게 지워질 중대한 책임"

<sup>30)</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한국전쟁사』제1권, 710쪽.(국방군사연구소, 1995, 앞의 책, 190~191쪽에서 재인용)

<sup>31)</sup> 김홍일, 1964, 앞의 글, 229쪽.

이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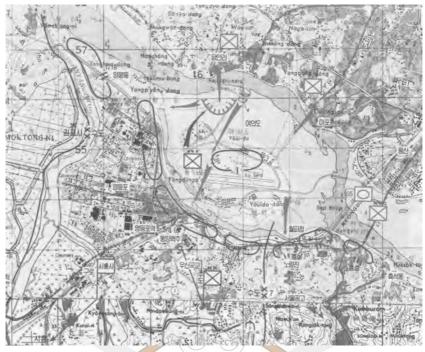
이에 시흥사는 방어명령을 하달한 즉시 시흥에서 병력을 수습하여 그 병력이 500명 선으로 채워지면 곧바로 혼성 몇 대대로 명명하여 한강선으로 투입하는 한편, 새로이 한강 방어 편성지역을 분당한 각 혼성사단으로 하여금 지역 내에서 도하한 병력을 수습하여 강안에 재배치토록 진지 편성을 독려하였다. 특히 김홍일은 적이 교량을 이용할 것에 대비, 노량진 부근을 방어하는 혼성 제7사단에 우선권을 두고 혼성대대들을 투입하였으며, 각 사단도 제각기 책임지역에 있는 나루터 방어에 중점을 두고 방어 편성을 서두른 결과 6월 29일에 가서야 간신히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었다. 32)

시흥사는 29일까지 예하 혼성사단으로 진지 배치를 일단 완료하였으나 혼성사단은 이름만 사단이지 병력은 1개연대 규모에 불과했고,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공용화기란 연대당 고작 박격포 2~3문, 기관총 5~6정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 소총부대 수준이었다. 33) 게다가 당초에 시흥사는 한강선 방어부대에 대한 모든 지휘책임을 맡게 되었으나 통신망의 미비로 혼성제7사단과 혼성수도사단만을 주로 지휘하여 노량진-영등포의 방어에만 치중하게 되었고, 혼성제2사단은 가로막힌 관악산으로 인하여 사실상 육본의 직접 지휘통제를 받고 있었다. 또한 김포사(金浦司)도 29일 현재 예하 6개대대 병력으로써 김포 방면에서 거의 독자적으로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한강선방어부대의 지휘체제의 통일성은 일사불란하게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34) 다음 지도는 6월 29일 당시 노량진-영등포 부근의 상황도이다.

<sup>32)</sup> 국방군사연구소, 1995 『한국전쟁 (上)』191~192쪽.

<sup>33)</sup> 김홍일은 "28일 야반까지 총수용 병력 3천명으로 6개 대대를 편성 전송하였다. (중략) 29일에도 2개 대대 병력을 수용 전송하였으므로 2개 사단의 보병 병력은 거의 충족된 셈"이라고 회고했다. (김홍일, 1964, 앞의 글, 230쪽)

<sup>34)</sup> 국방군사연구소, 1995, 위의 책, 192쪽.



〈지도 2〉1950년 6월 29일, 노량진-영등포 상황도<sup>3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지구 전투사령부 예하 3개 혼성사단(제2, 7, 수도사단)은 미 군사고문단이 기대했던 3일을 넘어 6일을 버텨 내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북한군 주력의 도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6월 29일 오후부터였는데, 그날 밤에 흑석동 방면에서 아군 복장으로 위장한 적 1개 중대가 정밀 도하를 실시하다가 아군에 의해 격퇴되었다. 6월 30일 새벽에는 서빙고 방면에서 북한군 제3사단 예하 부대의 병력이 20~30명씩 목선을 타거나 헤엄을 쳐 도하를 시도했으나, 이를 발견한 아군에 의해 저지당했다. 김포 방면에서 한강을 도하해 김포공항을 지나 점차 동쪽으로 접근

<sup>35)</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6·25전쟁사 3, 漢江線 防禦와 初期 遅延作戰』179쪽.

하던 북한군 제6사단 예하 부대 일부가 6월 30일에 오류동 일대까지 진격했으나, 역시 아군의 선방에 의해 저지되었다. 북한군 제 4사단은 7월 1일부터 마포 방면에서 도하를 시도했으나, 국군 혼성수도사단이 이를 잘 방어했다. 특히 영등포 일대에 배치됐던 국군 제8연대와 제18연대의 일부 병력은 7월 3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적의 도하 공격을 격퇴하면서 여의도를 굳건하게 사수했다. 36)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한국군의 저항과 이에 따른 북한군의 피해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1950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 사이 야간에 제105땅크사단(서울을 해방한 후 제105땅크여단은 제105땅크사단으로 개칭되었으며, '근위' 칭호를 수여받았다)은 적의 조직적인 소총과 기관총 사격 및 포격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한강을 도하, 강의 남쪽 강변에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7월 1일 하루 동안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던 부대들은 적 대규모 보병의 반격에 맞서 격렬한 전투를 수행하였다. 이 전투에서 제105땅크사단 기계화연대는 병력의 약 35%가 전사 혹은 부상당하였다." 그 결과 "구성군 내 다른 부대들의 도하 역시 느린 속도로, 그것도 7월 3일 야간에서야 수행되었다."37)

그렇다면 시흥전투사령부가 한강선 방어전투에서 이렇게 기대 이 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김홍일의 회고는 하 나의 해답을 제시한다.

"나는 결사적 결의로써 후방보급이 되지 않아 병사들과 같이 주먹밥에 소금물을 마시면서 삼일삼아(三日三夜) 한잠도 자지 못하고 부하들을 고무 격려하면서 장병들의 애국심에 힘입어 참으로 기적적이고 위대한 임무를 완수하였던

<sup>36)</sup> 온창일, 김광수 外, 2010 『6·25전쟁 60대 전투』황금알, 39~40쪽.

<sup>37)</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에프의 6·25전쟁 보고서 1』168쪽.

것이다. (중략) 29일부터 포격과 더불어 도하를 시도하는 적의 기도를 분쇄시켰으며 기갑연대는 매일 계속하여 김포비행장까지 원거리 정찰과 아울러 문산방면 제1사단의 후퇴도강 부대를 인접하도록 임무를 수여하여 그 힘을 입음이 실로 컸다. (중략) 28, 29, 30 등 3일간 적은 주간에 맹렬한 포병 엄호사격 아래 한강남안 흑석동 언덕 아래 수도수원지(水道水源也), 사육신묘지, 노량진역 등처(等處)에 일부 병력을 도강시켜 교두보를 구성하려 하였으나 저녁만 되면 우리 병사들의 용감무쌍하고 참렬(慘烈)을 극한 백병전으로 이를 섬멸하여 적의 기도를 분쇄하였다." 38)

김홍일 사령관의 솔선수범과 일선 장병들의 희생, 여기에 한국군 포병의 지원이 비교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한강선 방어전투의 성패를 가른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도 그의 보고서에서 한국군 포병의 사격 결과는 막대한 양의 탄약소비를 통해 얻어졌으나 "포대단위의 경우 매우 효과적이고 견실한 사격 통제, 사격의 정확도 등이 보여졌다"면서 "대대 단위화력집중 역시 서울 점령전, 한강 도하시 영등포(서울 남방), 수원방면 등에서 많이 인지되었다"고 썼다.39)

북한군이 신속한 남하 작전을 펼치지 못했던 것도 한강선 방어전투의 또다른 성공요인이었다. 북한군은 6월 29일 여의도, 흑석동, 신사리 일대에 정찰대를 투입하여 탐색전을 전개하였고, 6월 30일에야 도하 작전을 개시하였다. 40) 라주바예프는 이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각 사단장들은 서울에서 퇴각하는 적을 적극적으로 추격하거나 한강 도선장들을 점령하지는 않은 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모호하게 행동하였다. 또한 제105땅크여단 예하부대들도 서울을 점령한 후 3일 동안 적을 추격하지

<sup>38)</sup> 김홍일, 1964, 앞의 글, 230쪽.

<sup>39)</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에프의 6·25전쟁 보고서 1<sub>1</sub> 180~181쪽.

<sup>40)</sup> 국방군사연구소, 1995 『한국전쟁 (上)』197~198쪽.

않은 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적에게 한강의 남쪽 강변을 강화하고 교량을 파괴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 (중략) 서울을 점령한 후 사단 예하부대 들을 계속 진격시켰다면 6월 29일에 최소한의 손실로 수행할 수도 있었던 제105땅크사단 전체의 도하는 이와 같이 7월 4일에야 대체적으로 완료되었다."41)

라주바예프는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뒤 곧바로 남하 작전을 전개했다면 6월 29일에 북한군 제105탱크사단 전체가 최소한의 손실로 한강 도하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시흥지구 전투 사령부의 사령부 구성과 부대 편성이 6월 28일에 시작되었고 6월 29일에야 부대 배치가 완료된 점을 고려할 때 라주바예프의 평가 는 설득력이 있다. 결국 북한군의 남하 지연과 그 기간 이루어진 신속한 시흥지구 전투사령부의 구성이 한강선 방어전투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한강선 방어전투 성공의 마지막 요인은 미 공군의 신속한 개입이었다. 미국 시간으로 6월 26일 21시에 있었던 블레어 하우스 회의에서 애치슨 국무장관은 미국 해·공군에게 한국 내의 작전에 가해진 제한사항을 철폐하고 북한군 부대, 전차, 포병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여 한국군에게 최대로 가능한 자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6월 27일 아침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해·공군 부대가 한국군 부대에 엄호와 지원을 하도록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맥아더 극동군 사령관에게도 "극동 해·공군부대에 가해진 모든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그들은 한국군에게 재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훈령이 내려졌다.

해공군에게 내려진 세부 훈령의 내용은 "한국 영토의 방위를 지원하고 돕는 데 있어 극동 공군의 완전한 운용을 막아온 종전까지의 모든 제한사항을 38도선 남쪽 작전에 대하여 제거한다. 38도선

<sup>41)</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앞의 책, 166~168쪽.

이남에 위치한 모든 북한의 전차, 대포, 부대 및 기타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군의 공격이 허용된다. 그 목적은 남한에서 북한의 군사력을 제거하는데 있다. 이와 똑같이 해군은 38도선 이남의 연안이나 해상에서 한국에 대한 공격에 참여한 부대에 대하여 제한없이 운용한다"는 것이었다.42)

맥아더 극동군 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가 대통령의 개입 결정을 통보하자마자 곧 극동공군에게 가능한 모든 전력으로 전진하는 적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6월 27~28일(한국시간) 밤에 B-26폭격기에 의한 공격으로 공중작전이 시작되었으나 그 효과는 악천후로 인해 감소되었다. 다음날에는 B-26과 F-80전투기가 B-29에의해 증강되었다. B-29는 괌으로부터 급히 일본으로 전개하였으며 전술무기를 장착하였고 북한군의 부대, 전차, 대포, 철도 등을 표적으로 하였다 43)

서울을 점령당하고 횡급히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를 꾸려 한강선 방어전투를 준비하던 시키 미 공군의 개입과 실질적 폭격의 시작은 한국군의 사기와 전력을 상승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한림은 "28일날 B-29기가 오후 5시쯤 될 것입니다. 우리 부대가 광나루 다리를 건너가는데 B-29편대가 서울 상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되었구나 이런 안도감을 가졌습니다"라고 회고했다. 44) 무초 대사도 6월 28일 아침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전투지원 결정과 처지(John H. Church) 장군의 명령은 사기에 큰 영향을 가져왔으며, 다가오는 공중 공격은 적의 사기를 저상하고 한강 제방 남쪽에서 한국군의 재편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45)

<sup>42)</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 (上). 78~81쪽.

<sup>43)</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 (上), 83~84쪽.

<sup>44)</sup> 강문봉, 김홍일, 이성가, 이한림 外, 1965「좌담회, 한국동란비화 -6·25를 치른 지휘관들의 회고와 반성」『사상계』147호, 179쪽.

<sup>45)</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위의 책, 85쪽.

실제로 6월 말까지 미 극동공군기들은 지상기지에서 172회를 출격하였고 수요가 격증함에 따라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 마이어 (Strate Meyer) 장군은 약 50여대의 F-51 전투기를 추가하여 전투력을 증강시켰다. 46)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경과를 담은 유엔군 작전보고서 1호도 "6월 28일부터 미 공군의항공기는 UN안보리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한국군을 지원하고 북한침략자에 대한 작전을 개시하였다. 미 공군기들은 침략군의 통신, 보급로를 마비시키기 위하여 삼팔선 이북의 군사목표를 공격하였다. 대손상을 입은 한국군은 한강 남안에서 재편을 하고 미 공군의 지원을 얻어 북한군 진출을 저지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47)

한강선 방어전투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6월 30일 새벽 북한군 제4시단이 일부 병력을 노량진 대안에 투입하여 아직 절단되지 않은 경인 상행선 철교의 복구를 시도하였을때, 마침 서울근교 교통망을 차단 폭격하던 미 제5공군 제3폭격전대가 교량을 폭격함으로써 그러한 기도를 무산시켰다. 같은 날 북한군 제3사단이 흑석동 일대와 신사리 방면으로 본격적인 도하를 개시하였을 때에도 흑석동에 위치한 한국군 제9연대 병력의 결사적인 도하저지 사격과 미 공군 제19폭격전대의 지원으로 적의 도하를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날 한국군은 한강 장애물로 인해적 전차의 기동이 억제되는 가운데 미 제5공군의 근접 항공지원을

<sup>46)</sup> 육군본부, 1963, 『유엔군전사,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제1집』25쪽. 스트레이트 마이어 장군은 6월 30일 워싱턴에 F-80 164대, F-82 21대, B-29 23대, C-54 21대 및 F-51 64대의 증강을 요청하였다. 미 공군 당국으로부터는 F-80은 보낼 수 없으나 우수한 상태인 150대의 F-51로 대치하겠다는 회답이었다. F-51은 F-80보다 작전반경이 더 크며 연료가 적게 들고 거친 한국비행장에 적합한 전투기였다. (육군본부, 1963, 『유엔군전사,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제1집』25쪽)

<sup>47) 「</sup>재한 국제연합군 작전보고서 제1호(기간 1950년 6월 25일-7월 15일)」(大韓民 國國防部政訓局戰史編纂會, 1951 『韓國戰亂一年誌』C270쪽)

받게 되자 이에 크게 고무되어 결사적으로 적의 진출을 저지하였 다.<sup>48)</sup>

이와 같이 한강선 방어전투의 성공은 김홍일의 지휘통솔과 육군 보병 및 포병부대의 분투, 북한군의 서울 점령 후 남하 지연, 미 공군의 신속한 개입 결정과 공중 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를 모체로 한 육군 제1군단의 창설과 한강선 방어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끈 김홍일 이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기까지의 과 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4. 육군 제1군단 창설과 김홍일의 예편

1950년 7월 3일, 북한군이 수리를 마친 한강철교로 전차를 동원해 도하를 시도하자 아군의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노량진에 진출한 적 전차는 아군 방어선을 돌파한 이후 곧바로 영등포로 진입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김홍일 사령관은 후일을 기약하고 예하 부대들에게 즉시 안양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전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육군본부도 7월 4일수원을 포기하고 평택으로 철수했다. 49)이 시점에 대한 김홍일의회고는 다음과 같다.

"7월 3일 밤 적은 다시 한강 제2철교의 불완전 폭파점을 이용하여 전차 12량이 도강하여 영등포 로타리를 점령하고 보병도 도강하였으므로 이튿날 새벽 공격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결사대를 조직하여 까소링병(瓶) 등으로

<sup>48)</sup> 국방군사연구소, 1995 『한국전쟁 (上)』 197~198쪽.

<sup>49)</sup> 온창일, 김광수 外, 2010 『6·25전쟁 60대 전투』황금알, 40쪽.

화공(火攻)하였으나 실패하고 7월 4일 새벽 공격을 위하여 부득이 안양선으로 후퇴하였다. "50)

이때는 이미 미 지상군 선발대가 오산에 도달하여 한미연합작전을 고려해야 했고, 서울 방어전과 한강선 방어전에서 한국군이 입은 인원, 장비 손실이 크고 편성이 혼재되어 있어 새로운 작전으로의 전환에 앞서 부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7월 5일부로 시흥지구전투사령부로 제1군단사령부를 창설하고 그 예하에 혼성되어 있던 수도사단과 제1, 제2, 제3, 제5, 제7사단을 수도사단과 제1, 제2사단의 3개 사단으로 재편성하여 개편하였다. 그리고수도사단장은 이준식 준장에서 7월 7일부로 김석원 준장이 맡게되었고, 제1사단장은 백선엽 대령이, 제2사단장은 이한림 대령이맡게 되었다.51)

6월 30일부로 채병덕 총참모장의 후임으로 부임한 정일권은 이날의 재편성에 대해 "당시 제1군단장은 사단급 이상의 부대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유일한 인물인 김홍일 장군을 임명하였고, 수도사단 및 제1, 2사단은 일부 부대가 분산되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대대급 이상의 지휘조직이 건재하였기 때문에 재건사단으로 지정하였고, 제3사단과 제5, 7사단은 지휘조직이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에 해체하여 그 병력으로써 재편된 사단에 보충케 하였다"고 회고하였다.52)

김홍일도 "6개 사단 잔여병력을 통합하여 수도, 제1. 제2 등 3개

<sup>50)</sup> 김홍일, 1964「나의 六・二五緒戰回顧-漢江防禦作戰에서 平澤國軍再編成까지-」 『사상계』138호, 231쪽.

<sup>51)</sup> 국본일반명령 제2호(1950.7.5); 육군본부특명 제9호(국방군사연구소, 1995, 앞의 책, 205쪽에서 재인용) 한국군의 군단창설은 1950년 6월 26일 의정부지구전투사 령부가 효시이고, 29일 시흥지구전투사령부가 두 번째로써 제1군단은 동 사령부의 명칭을 바꾸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군사연구소, 1995, 위의 책, 284쪽)

<sup>52)</sup> 정일권, 1986 <sup>8</sup>6·25비록, 전쟁과 휴전』 동아일보사, 50쪽.

사단으로 축소 재편성하여 제1군단을 조직하니 7월 7일 0시경이었다. 내가 군단장으로 임명되고 유재흥 대령이 참모장으로 이준식대령, 백선엽대령, 이한림대령이 각각 사단장으로 임명되어 경부철도선을 작전 지역으로 정하여 미군이 철도선을 포함한 이서(以西) 지역을, 국군이 그 이동(以東) 지역을 담당하여 이때부터 비교적 정연한 작전을 실시"하였다고 회고했다.

이후 1군단장으로서 김홍일은 낙동강 방어전에 이르기까지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에게 타격을 입히며 아군의 전력을 보존하는 방어전 및 지연전을 계속해 나갔다.<sup>53)</sup>

한강 방어선이 붕괴된 후 한국군과 유엔군은 금강과 소백산맥 일 대에 새로운 저지선을 형성하였는데, 김홍일 1군단장은 예하의 제2 사단 16연대와 제25연대, 독립 제17연대를 지휘하여 진천 남쪽 봉화산-문안산 일대에서 전차와 포병으로 증강된 북한군 제2사단의 남침을 5일 동안 저지하며 적에게 타격을 입혔다.

또한 7월 15일 독립 제17연대는 화령장 북쪽에 매복 작전을 펼쳐 속리산으로 남하하여 상주로 침공하려는 북한군 선두부대를 기습 궤멸시켰다. 제8사단은 안동 북쪽 일대에서 북한군 제12사단의 침공을 저지하던 와중에 서쪽 풍산지역으로 침공하는 북한군 제8사단과 동쪽 배후에 침투해오는 북한군 유격대에 맞서 싸우며 나흘동안 방어전을 전개하였다. 이 전투로 북한군의 안동 지역 진출이상당히 지연되었다. 의성으로 철수한 뒤에는 북쪽 향로봉 일대에 주저항선을 형성하여 국군이 보현산과 기계 지역 정면에 새로운 주저항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하였다.

낙동강 전선으로 철수, 방어에 돌입한 후에는 기계-안강-영덕-포항 일대에 침공해온 북한군에 역습포위 작전을 전개하여 적을

<sup>53)</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6·25전쟁사 3,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6·25전쟁사 4,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작전』; 국 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6·25전쟁사 5. 낙동강선 방어작전』

비학산 방면으로 격퇴하였다. 이 전투로 북한군 2개 사단은 낙동강 전선의 동부지역 돌파작전에 실패하였고, 제1군단은 기계와 포항지 역 북방으로 후퇴한 북한군을 추격하여 다음 단계의 반격작전을 펼 칠 수 있었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1군단장 임무를 수행하던 김홍일은 낙동강 방어전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1일부로 1군단장에서 해임되어 육군종합학교장으로 전임되었다. 3사단장 김석원도 함께 해임되었으며 그 후임으로 신임 1군단장에 김백일, 3사단장에 이종찬이 각각 임용되었다. 54) 김홍일뿐만 아니라 김석원도 정규작전의 전투 지휘관경험이 있는 한국군 내 몇 안 되는 인물이었기에 이러한 인사 조치는 당대에도 의문시되었고 국회는 그것을 파벌에 의한 인사조치라고 비판하고 즉각 거둬들일 것을 촉구하였다. 신성모 국방장관은이에 대해 미 8군 사령관 위치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 해명했고. 무초 대사는 미 국무부에 이 상황을 보고하였다. 55)

당시 상황에 대해 정일권 총참모장은 후일 그의 회고록에서 당시 한국나이로 58세와 53세였던 김석원과 김홍일이 6·25전쟁 발발이후 격전을 치르면서 너무 지쳐있었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전임한 것이라 해명하였다. 56) 그러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특별히 건강상의 이상이 없는 노련한 지휘관을 건강을 염려하여교체했다는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양영조는 이승만 정부의 군부 통제에 관한 연구에서 이 인사 조치를 일본육사 출신인 김석원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신성모와 정일권의 군사원로 배제라는 사적인 파벌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sup>54)</sup> 양영조, 2007「이승만 정부의 군부 통제와 성격」『한국전쟁과 동북아 국가정책』 선인, 154쪽.

<sup>55) &</sup>quot;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September 8, 1950, FRUS 1950 Vol. VII, 문서번호 498.

<sup>56)</sup> 정일권, 1996 『정일권 회고록』고려서적, 201~204쪽.

주장했다. 만주군 출신을 통해 일본육사 출신을 견제하려는 이승만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정일권 총참모장 시기 함경도출신과 만주군 출신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57) 이러한설명은 이승만 정부의 전체적인 군부 통제 매커니즘을 잘 보여주지만 독립군 출신인 김홍일 장군의 해임을 명확히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회고 는 다음과 같이 꽤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6·25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얼마 후 김석원 장군은 3사단장에 임명됐다. 그의 지휘 아래 3시단은 적잖이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번은 너무 앞서 북진해버리는 바람에 미군들이 그를 제 위치에 붙잡아 두느라 무진 애를 먹었다. 그 뒤 영덕 쪽에 재배치되자 이번엔 후퇴명령을 지키지 않다가 때를 놓쳐해로로 겨우 빠져나왔다. 포항 작전 지구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지나치게 서둘러 밀고 올라가는 바람에 뒤쪽이 비었다. 그러자 서쪽의 왜관지구에 있던 적군이 퇴로를 끊고 들어왔으므로 김 장군의 부대는 해안선을 따라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석원 장군뿐 아니라 김홍일 장군도 미 군단장 콜터 장군이나 한국군 제1연대와 함께 있는 브래들리 장군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바로 어제도(8월 28일)부대를 조금 전진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워커 장군의 부탁을 받고 대통령이 경주로 김홍일 장군을 찾아갔다. 김 장군은 빨리 진격해야 된다며 좀 더 기다리라는 워커 장군의 지시에 이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그에게 명령은 명령이니 만큼 따라야 한다고 타일렀다."58)

프란체스카의 회고는 신성모 국방장관의 국회 해명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김홍일, 김석원 두 한국군 지휘관이 작전에 대한 이견으로 미군 지휘관들과 갈등을 빚어 왔고, 대통령도 한국군에

<sup>57)</sup> 양영조, 2007, 앞의 글, 152~154쪽.

<sup>58)</sup> 프란체스카 도너 리, 2010 <sup>®</sup>6 · 25와 이승만』기파랑, 119~120쪽.

대한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이 문제는 8월 30일, 이승만의 교체명령서 서명으로 결론이 났다. 이 날에 대한 프란체스카의 회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성모 국방장관이 대구에서 왔다. 그는 대통령에게 김석원, 김홍일 두 지휘관을 교체할 것을 권했다. 이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므로 교체해야 한다고 콜터 장군이 고집한다는 이야기였다.

지금 상황에서 고위 지휘관을 갈아치우는 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특히 이 두 사람은 휘하 부대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 교체될 경우부대원들의 반응이 어떨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방장관 말대로 교체명령서에 서명했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장군은 그대로 둘 수 없었기때문이다."59)

물론 이러한 설명은 정치적 부담이 있는 군 인사 조치에 대한 이 승만 입장의 설명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홍일도 당시 미군과의 갈등이 있었음을 회고하였다.

"나야 그때 반격 시작하기 전에 그만 둔 사람이니까 불쾌한 일만 많았죠. (중략) 그런데 제일 불쾌한 것은 지금 이 장군(이성가)도 여기에 계시지만 (중략) 이 장군은 철수는 금방 해야 되겠고 새로운 무기와 탄약을 전 부대에 배부하면 잘못하다가는 잃어버리기가 쉬우니까 분배하지 않고 기차에 싣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8사단의 고문관이 보고하기를 무기는 전 부대에 게 주라고 해서 준 것인데 분배하지 않았다, 이것은 지휘관들이 나빠서 그대로 싣고 내려갔다고.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략) 그래서 그 미군 고문단을 뚜들겨주고 싶었습니다."60)

이러한 한국군 지휘관과 미 군사고문단과의 갈등은 단순히 의사

<sup>59)</sup> 프란체스카 도너 리, 2010, 위의 책, 122쪽.

<sup>60)</sup> 강문봉, 김홍일, 이성가, 이한림 外, 1965 「좌담회, 한국동란비화 - 6·25를 치른 지휘관들의 회고와 반성」『사상계』147호, 180~181쪽.

소통의 문제나 상황 인식 차이로 치부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었다. 김홍일은 이에 대해 "전쟁 초기에 있어서는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가 배운 장비로 충분하고 이런 환경에서 배운 전술, 학문 경험으로 방어전을 하라는 것은 되는 일이나, 우리는 형편없는 장비로 20킬로 이상의 방어지역을 담당하는 것을 여기에 와서 그런 두뇌로 하려고 하니 트러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장비도 좋아지고 미국 사람의 전술대로 그렇게 해도 될 그때부터는 나아진 것입니다"라고 설명하였다. 61) 연합작전 초기의 이러한 갈등은 비록한국군이 유엔군의 작전 지휘 하에 있었으나 미군과는 장비 상태등 부대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작전 방식도 달라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연합작전 초기 미군과 한국군 지휘관 사이의 갈등은 실재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김석원, 김홍일 등의 군사원로를 배제하려는 이승만과 신성모, 정일권 등에게 좋은 명분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2) 김홍일은 1950년 9월 1일부로 비전투부대인육군종합학교장으로 전임되었고, 다음 해 3월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뒤 대만 대사로 부임하였다. 이승만은 예편하는 그를 '5성 장군'(중국 국민혁명군 2성+한국군 3성)이라고 칭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한국군은 6·25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대부대 지휘 경험이 가장 많은 노련한 지휘관을 스스로 잃어버린 셈이었다.

<sup>61)</sup> 강문봉, 김홍일, 이성가, 이한림 外, 1965, 위의 글, 182쪽.

<sup>62)</sup> 한편 2장에서 언급했던 전제현의 회고에 따르면, 김홍일은 1군단 사령부 천막에 서 신성모 국방장관과 김석원 장군이 "아무래도 일본 군대를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다고"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어 무슨 얘길하느냐고 호통을 쳤고, 그 얼마 후 육군종합학교 교장으로 갔고 결국 군복을 벗었다고 회고했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사연구사업단, 「전제현 장군 3차 구술면담」2014.6.9.)

### 5.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강선 방어전투가 6·25전쟁 사에서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 여기서 김홍일의 역할이 무엇이었는 지를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본고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한강선 방어전투는 6·25전쟁 발발 직후 방어 태세 미비로 인한 실패를 '지연작전'이라는 명확한 작전 개념 하에 만회하기 시작한 첫 전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홍일 장군과 한국군은 미 지상군 개입을 염두에 두고 한강선 방어에 임했으며 이는 명확한 목표도 없이 남쪽으로 후퇴하기에 급급했던 그이전의 전투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63) 「韓國戰亂一年誌」도 서울이 함락된 뒤 "온갖 수단을 다하여 도하에 성공한 국군병사들은 한강 남안에서 김홍일 소장에 의하여 통합 재편되어 지연작전에의 제일보를 밟게 되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이르기까지 6·25전쟁에서 한국군 작전의 기본 개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64)

또한 한강선 방어전투는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의 전선시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군 지상군 투입을 현실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극동군 주한 전방지휘 및 연락단(ADCOM, GHQ)의 처치(John H. Church) 준장이 6월 28일 맥아더 장군에게 미 지상군 투입의 필요성을 개진하기도 했지만, 6월 29일 단행한 맥아더의 한강선 직접 시찰은 미 지상군 투입 결정을 담은 미 합참과 국무부의 공식메시지가 하달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맥아더는 시찰 후 도쿄로 돌아가 "현재의 선을 확보할 유일한 보장과 상실된 지역을 후에 회복할 능력은 미국의 지상군 전투부대를 한국의 전투지역에 투입하는

<sup>63)</sup> 김홍일, 1964, 앞의 글, 229쪽.

<sup>64)</sup> 大韓民國國防部政訓局戰史編纂會, 1951 『韓國戰亂一年誌』, A35쪽.

데 달려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워싱턴으로 발송하였다. 결국 맥아더의 시찰은 미국이 한국전쟁에 최종적이고도 완전하게 개입하도록 선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65)

마지막으로 한강선 방어전투는 실제로 미 지상군 참전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한 측면이 있었다. 6·25전쟁에 최초로 참전한 미지상군 부대는 7월 1일 부산에 도착한 일명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였다. 미24사단 21연대 1대대장 스미스(Charles B. Smith) 중령이 지휘한 1개 대대 병력 406명은 7월 1일 부산에 도착한 뒤 기차로 이동하여 다음날 대전에 도달했고 그날 밤 평택과 안성에 진지를 편성했다. 66) 이러한 미 지상군의 신속한 전개는 김홍일의 시흥지구 전투사령부가 7월 3일까지 한강 방어선을 사수했기에 가능한것이었다. 7월 4일 시흥사가 수원에서 평택으로 철수한 후부터는 평택-안성선에 전개한 미 지상군이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전선을 담당하고, 한국군은 그 동쪽에서 동해안까지 전선을 분담하여 공동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6·25전쟁에서 한미연합전선의 형성이라는 하나의 큰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67)

따라서 시흥지구전투사령관을 맡아 6일간의 한강선 방어전투를 성공리에 이끈 김홍일의 역할은 6·25전쟁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는 축차적 투입으로 인한 부대 소모 대신 후퇴하는 병력을 집결시켜 방어전 및 지연전을 펼침으로써 6·25전쟁 초기한국군의 실책을 만회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연합작전을 전개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김홍일은 미군 지휘관 및 군사고문단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이는 한국군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당한 성격의 것이었고, 이승만 정권의 군부 통제 차원에서

<sup>65)</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 (上), 84~95쪽.

<sup>66)</sup> 육군본부, 1963, 『유엔군전사,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제1집』 29~32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美國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 (上), 103쪽.

<sup>67)</sup> 국방군사연구소, 1995 『한국전쟁 (上)』 203쪽.

#### 6-25전쟁 초기 김홍일의 활동과 예편 | 255

예편하였으나  $6 \cdot 25$ 전쟁사에서 한국군을 대표할 인물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2016.4.4, 심사수정일: 2016.5.21, 계재확정일: 2016.5.23.]

주제어 : 김홍일, 6·25전쟁, 한강선 방어전투, 시흥지구 전투사령부, 이승만, 맥아더, 채병덕, 백선엽, 김석원



<ABSTRACT>

# General Kim Hong-il and Han river defensive operation in early Korean war

Lee, Dong-Won

The Han river defensive operation that Siheung theater commander, Kim Hong-il led, have a historical significance because it was the first battle that recover the early failures of Korean war under the clear notion of 'delaying tactics.' This tactics had became the fundamental concept of the ROK army operations in Korean war until Nak-dong river defensive operations.

The Han river defensive operation also contributed to the U.S. ground troops deployment as it gave the opportunity of General Macarthur's inspection for the front line. Moreover, it secured the time and space to engage the U.S. ground troops in warfare. Hereby a big turning point, the formation of ROK-US combined operations, was created.

For such a reason, the role of Siheung theater commander, Kim Hong-il who successfully led the 6 days' Han river defensive operation has a important meaning in Korean war history. Since then, Kim Hong-il came into conflict with the U.S. commanders and the military advisory group, and he was discharged as a lieutenant general in March 1951 as a means of president Rhee's controlling the military. But he should be reviewed again as a representative of ROK army in Korean war history.

Key words: Hong-il Kim, Han river defensive operations, Siheung district command, Syngman Rhee, Douglas Macarthur, Eung-joon Lee, Byung-deok Chae, Sun-yup Paik, Suk-won Kim

# 남베트남 패망시기 한국군의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이 신 재\*\*

- 1. 머리말
- 2. 북베트남의 침공과 피난민 문제 등장
- 3. 한국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 결정
- 4. 해군 십자성작전 전개
- 5. 맺음말

### 1. 머리말

1975년 4월 30일 베트남공화국(The Republic of Vietnam, 이하 남베트남)<sup>1)</sup>이 패망했다. 베트남전쟁의 종식을 결정했던 파리 평화

<sup>\*</sup> 이 논문은 2016년 5월 19일 개최된 '십자성작전 재조명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유익한 심사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sup>\*\*</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sup>1)</sup> 이 논문에서는 1975년 4월 30일 패망직전까지 존재했던 베트남공화국(월남, 越南) 은 '남베트남'으로, 베트남민주공화국(월맹, 越盟)은 '북베트남'으로, 한국군이 참전 했던 전쟁의 명칭은 '베트남전쟁'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당시 남베트남의 수도 사

협정이 체결된 지 2년 만이자 1975년 3월 북베트남의 무력침공이 본격화된 지 2개월도 못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남베트남은 1956년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패망직전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양국의 교류 저변에는 식민지와 전쟁의 경험, 그리고 분단국이면서 동시에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에 베트남전쟁 당시 32만 명에 달하는 한국군 파병은 양국관계를 마치 '혈맹' 수준으로까지 올려놓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한국정부에게 패망 위기에 처한 남베트남의 위기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것은 양국관계의 '특수성' 뿐만 아니라 당시 전 세계의 관심이 베트남에 집중되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또한 베트남 현지의 전황(戰況) 속에서위험에 처한 대사관과 교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한국정부는 국가의의무를 이행해야만 했다.2)

그러나 한국정부의 대응은 전투부대를 파병했던 이전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당시 남베트남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구호물자 제공과 피난민 수송지원에 국한되어 전개되고 있 었다. 가장 적극적이었던 미국도 의회의 반대로 군대파견과 군원 (軍援)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sup>3)</sup> 여기에 남베트남도 한국정부에 전투부대의 파병이 아닌 피난민 수송과 구호물자 제공만을 요청

이공(Saigon)에 있었던 한국대사관 등은 당시 정부문서에 표기된 대로 주월대사, 주월대사관으로 표기한다. 아울러 베트남 인명 및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현지 발음에 가깝게 한글로 옮겨 적는다. 대표적 예로는 티우→티에우, 나트랑→ 나짱. 퀴논→뀌년, 푸콕→푸꾸옥 등이다.

<sup>2) 1975</sup>년 당시 헌법(1972.12.27 개정 제8호) 제8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 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sup>3)</sup> 물론 남베트남은 미군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미 의회의 반대로 미군이 올 수 없게 되자 사이공에서는 미국인들을 공격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일도 발생했다. "미 상원 군사위 표결 대월군원 부결", 『동아일보』, 1975년 4월 18일; "부유층'탈출 사이공'소동", 『동아일보』, 1975년 4월 24일; "무법·혼란의 수라장····사이공", 『동아일보』, 4월 30일.

하고 있었다.<sup>4)</sup> 따라서 한국정부는 남베트남의 요청과 국제사회의 지원현황을 고려해 남베트남 지원의 성격을 '순전히 인도주의 차 원'<sup>5)</sup>으로 한정하고 정책을 추진했다.

한국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정책은 해군에 의해 수행되었다. 해군 상륙함(Landing Ship Tank, 이하 LST)을 이용해 구호물자전달 및 전시 피난민 수송, 그리고 교민철수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75십자성계획'으로 명명되고 '십자성작전'으로 불리던 당시 해군의 작전은 한국정부가 최초로 실시했던 해외 난민구호 및 교민철수 활동이었다. 이 작전으로 한국정부가 제공한 구호물자가 남베트남에 무사히 전달되었고, 한국교민과 베트남 '난민(難民, refugee)'6)등 1.335명이 부산으로 무사히 도착했다.7)

한국정부는 이들 난민을 위해서 난민구호소를 설치해 운영했다. 1977년 이후 보트피플(boat people)로 불리던 베트남 난민들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부터는 유엔의 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별도의 난민구호소를 건립해 1993년 2월까지 운영했다. 8) 이런

<sup>4)</sup>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 제3장 가. 남베트남의 지원 요청 부분을 참조할 것.

<sup>5)</sup> 일반적으로 인도주의(人道主義)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국경, 종교적 차이를 초월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속박과 제 한,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려는 사상을 말한다.

<sup>6)</sup>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에 의하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 하는 자"를 말한다. 2012년 제정된 대한민국 난민법도 난민의 정의를 난민협약의 정의를 일부 용어를 수정해 사용하고 있다.

<sup>7) 1,335</sup>명의 국적별 세부현황은 한국국적 354명(남베트남인 중 한국 국적자 35명 포함), 남베트남 국적 953명, 기타 28명이다. 그러나 총 인원수 1,335명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1,341명이나 1,364명 등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1975년 5월 20일 해군본부에서 외교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해본작작 0970-1136(1975,5.20) "과월 특수수송지원작전 경과보고서 제출".

<sup>8) 100</sup>년사 편찬위원회, 『한국적십자운동 100년사』(서울: 대한적십자사, 2006), 366-367쪽.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도 한국에서의 난민구호활동 사례로 베트남 보트피플의 제3국 정착

일련의 난민보호 활동은 한국정부에겐 중요한 경험이 되기에 충분했고, 이것이 해군의 십자성작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은 매우주목할 부분이라 하겠다.

그러나 당시 한국정부와 군의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은 남베트남패망 이후 4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 부산에서 운용된 난민구호소에 관한 연구들은 일부 있지만, 남베트남패망 당시 한국정부의 정세인식과 지원정책 결정과정, 그리고해군의 작전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9) 해군사(海軍史)의 일부로 십자성작전의 전개과정이 편찬되거나 일부작전 참가자들의 수기나 회고가 일부 언론에 소개되는 정도였다.10) 그 결과 한국정부와 군의 첫 해외 교민철수 및 난민 구호활동에 대한 고찰과 평가는 제대로 시도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베트남 패망당시 한국정부가 전개했던 인도 주의적 구호활동에 대해 당시 사료를 바탕으로 입체적인 조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파리 평화협정 체결 및 한국군 철군

지원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http://www.unhcr.or.kr/unhcr/html/001/001004001001001.html(검색일: '16.3.15).

<sup>9)</sup> 부산에 설치되었던 난민구호소의 운영에 관한 연구로는 정인섭, "한국에서의 난민수용 실행," 『서울국제법연구』, 제16권 1호(2009), 197-222쪽; 노영순, "부산입항 1975년 베트남난민과 한국사회," 『사총』, 제81호(2014), 329-364쪽; 노영순, "바다의 디아스포라, 보트피플: 한국에 들어온 2차 베트남 난민(1977-1993)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제7권 2호 (2013), 75-108쪽 등이 있다.

<sup>10)</sup> 십자성작전이 언론에 처음 소개된 것은 해군 LST가 부산에 도착한 1975년 5월 13일이었다. "목숨을 건 결사적 항해," 『동아일보』, 1975년 5월 13일. 이후 십자 성작전이 해군의 역사서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81년 해군본부에서 편찬한 『해군 사 8집』에서다. 그리고 2014년 해군에서 편찬한 『베트남전쟁과 한국해군작전』에는 관련내용이 보다 상세히 수록되었다. 그러나 십자성작전에 관한 연구논문 등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십자성작전 참가자의 수기로는 당시 810 함장이었던 박인석 (예)대령의 월간지 기고문이 대표적이다. "비록, 1975년 '십자 성작전 참여 함장의 증언 上·下", 『월간조선』, 2013년 4·5월호 314-333, 314-335 쪽. 2014년 7월에는 JTBC에서 남베트남 패망을 다룬 다큐멘터리 「사이공 1975」(총 4부작)에서 십자성작전과 당시 한국대사관의 주요 활동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베트남상황과 북베트남의 침공에 따른 남베트남의 위기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과정과 정부 지원정책의 수행자로써 해군의 작전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정부와 군의 첫 해외 교민 및 난민구호 활동을 제대로 규명하고 평가해보고자 한다.

## 2. 북베트남의 침공과 피난민 문제 등장

#### 가. 파리평화협정 체결 이후 베트남 정세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베트남전쟁의 종식을 알리는 평화협정이 조인되었다. 6·25전쟁의 정전협정이 쌍방의 군사령관 간에 체결된 것과 비교할 때 남북 베트남과 미국, 베트남 임시혁명정부(PRG)의 외교장관 간에 체결된 평화협정은 전쟁종식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차원의 합의서였다.<sup>11)</sup>

파리 평화협정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협정에는 서명 후 60일 이내에 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2)</sup> 이에 따라 1973년 3월 23일 주월한국군의 마지막 후발대 118명이 베트남을 떠나면서

<sup>11)</sup> 이 협정의 정식 명칭은 "베트남의 전쟁종식과 평화복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이다. 파리 평화협정은 서문과 본문 9개 장, 총 23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4개의 부속의정서가 있다. 베트남 임시혁명정부(PRG)는 1969년 6월 남베트남에 만들어진 민족해방전선(NLF)의 임시정부로 The Provisional Central Government of Vietnam의약칭이다.

<sup>12)</sup> 평화협정 제5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Within sixty days of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there will be a total withdrawal from South Vietnam of troops, military advisers, and military personnel……(후략).

한국의 베트남참전은 공식적으로 종료된다.13)

그러나 '전쟁종식'과 '평화복구'의 이름을 담고 있는 파리 평화협정은 체결 직후부터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했다. 협정 체결 이후 농촌지역에서는 한 달 평균 1,000명의 남베트남 정규군이 전사할 만큼 전투가 빈번했다. 14)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군사적 충돌이 빈번했던 원인 중 하나는 협정의 내용에 있었다. 협정에 남북 베트남의 군사적 경계선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협정에서는 전쟁종식 후 양측의경계선을 전쟁 이전의 경계선인 북위 17선을 경계로 삼는 것이 아니었다. 협정 제3항(b)은 협정 체결당시 '남베트남 내의 양측 당사자들은 현 지역에 머문다'고 명시함으로써 남베트남 지역에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임사혁명정부가 차지했던 지역의 지배권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남베트남은 이른바 '얼룩말의 무늬'처럼 곳곳이 임시혁명정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새 경계선 획정에 대해 남베트남의 강력한 반발도 있었지만, 미국은 남베트남에게 방위공약을 약속하면서 협정의 서명을 요구했다. 15) 그러나 이후 새로운 경계선 문제가 베트남 혼란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말았다.

당시 남베트남에 남아있던 북베트남 병력의 규모에 대해 이세호

<sup>13)</sup> 당시 한국 국방부는 평화협정의 체결 가능성을 상정하고, 한국군 철군계획인 '개 선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협정 체결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철 군을 시행해 1973년 3월 20일 서울운동장에서 '파월 개선장병 환영대회' 및 '주월 한국군사령부 해체식'을 개최했다. 또 1973년 5월 21일 국회는 전(前) 주월사령관 직책으로 이세호 제3야전군 창설준비위원장을 불러 "파월국군 귀국보고"를 받는 다. "파월국군 귀국보고", 『제86회 국회회의록 제3호(1973.5.21)』(대한민국국회사 무처).

<sup>14)</sup> 마이클 매클리어 저, 유경찬 역, 『베트남: 10,000일의 전쟁』(서울: 을유문화사, 2002), 562쪽.

<sup>15)</sup>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하던 티에우 대통령에게 700만 불을 제공하고, 닉슨 (Richard M. Nixon)이 남베트남에 대한 방위공약을 담은 개인적 친서를 티에우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후에 공개되기도 했다. 『동아일보』, 1975년 1월 14일; VNW-04279, 1975년 4월 23일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

주월사령관은 국회보고에서 30만 명이라고 추정했고,16) 마이클 매클리어(Michael Maclear)는 15만 명으로 추산했다.17) 패망직전까지 남베트남 참모총장을 역임했던 카오 반 비엔(Cao Van Vien)도 남베트남에 남아 있던 북베트남의 병력은 약 10개 사단이었고, 지방 공산군부대 병력의 60-80%가 북베트남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18)

협정 체결 이후 미국은 협정에서 허용한 50명의 군사고문단 이외에 약 7,000명의 예비역 군인들을 미 국방부와의 계약을 통해남베트남에 잔류시켰다.19) 협정이전까지 존재했던 주월 미 군사원조사령부(USMAC-V: US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를 대신해 '동부 펜타곤(Pentagon)'으로 불리던 사이공의 주월 미국방무관실(DAO: Defense Attache Office)이 남베트남에 대한군사원조와 군사고문 역할을 담당했다.20) 남베트남 총참모부와 미국방무관실은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에 대비한 계획도 수립했다.또미국은 태국 낙혼파놈(Nakhon Phanom)에 있던 미군 지원사령부와 남베트남 총참모부간 직통선도 가설하며21), 남베트남에 대한방위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점점 더 혼란 속에 빠지고 있었다.

<sup>16) &</sup>quot;파월국군 귀국보고(1973.5.21)", 『제86회 국회회의록 제3호』(대한민국국회사무 처), 31쪽.

<sup>17)</sup> 마이클 매클리어 저, 유경찬 역, 앞의 책, 554쪽. 매클리어는 1959년 베트남 취재를 시작해 베트남전쟁에 관한 저술과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바 있는 런던출생의 캐나다 언론인이다.

<sup>18)</sup> Cao Van Vien, *Indochina Monographs-The Final Collapse*, (Washington D.C.: Central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3), p.19.

<sup>19)</sup> 마이클 매클리어 저, 유경찬 역, 앞의 책, 563쪽.

<sup>20) 『</sup>동아일보』, 1975년 4월 28일.

<sup>21)</sup> Cao Van Vien, Op. Cit., pp.45-46.

#### 나. 북베트남의 무력침공과 피난민 발생

종전 이후 지속되던 남베트남에서의 혼란은 1974년 12월 북베트남의 무력침공으로 본격화되었다. 12월 13일 북베트남은 사이공북쪽 푸억롱(Phuoc Long) 성(省)을 무력으로 공격했다. 그리고 3주만인 1975년 1월 7일 성도(省都) 푸억빈(Phuoc Bihn)을 점령했다. 22) 당시 북베트남의 푸억롱 공격은 남베트남 군대에 대한 방어태세를 시험함과 동시에 미국의 반응을 엿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남베트남은 무기력했고, 미군의 개입은 없었다. 이후 북베트남은 자신감을 갖고, 본격적인 무력침공을 전개했다.

1975년 3월 10일 북베트남은 남베트남 중서부에 위치한 부온마투옷(Buon Ma Thuot)에 대한 공세를 개시했다. 이곳은 공격을 받은 지 5일 만인 3월 15일 북베트남에 함락되었다. 23) 이후 중부의 플레이쿠(Plei Ku)와 콘톰(Kon Tum)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지역을 확장해 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남베트남 티에우(Nguyen Van Thieu) 대통령의 '오판'은 전세를 일격에 악화시키고 말았다. 티에우는 일부지역의 전황이 악화되자 현재의 전력으로는 전 국토를 방어할 수 없다며, 정치 ·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방어에 집중하기 위해 군대를 재배치했다. 즉, 중부 고원지대를 포기하고 사이공지역에 대한 방어를 강화한 것이었다. 24) 티에우의 이결정으로 북위 17도선 지역부터 남쪽으로 4개 군단으로 분할되어있던 남베트남은 Ⅰ·Ⅱ군단지역을 상실하고 영토의 절반을 잃게 된다. 결국 사이공을 포함한 Ⅲ군단 지역과 사이공 남쪽의 메콩강(Mekong River) 지역인 Ⅳ군단 지역만 남게 되었다.

이때부터 남베트남의 혼란은 급격히 악화된다. 대통령의 결정으

<sup>22)</sup> 마이클 매클리어 저, 유경찬 역, 앞의 책, 563쪽.

<sup>23)</sup> 위의 책, 573쪽.

<sup>24)</sup> Cao Van Vien, Op. Cit., pp.77-78; 마이클 매클리어 저, 유경찬 역, 위의 책, 575쪽.

로 중부의 항구도시인 다낭(Da Nang)이 고립되었고, 이곳으로 철수하던 군인과 피난민 등 최소 100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이 집결하면서 대혼란이 초래되었다.<sup>25)</sup> 남베트남이 한국정부에 피난민수송을 위한 선박을 요청한 것도 고립된 다낭의 피난민을 안전한곳으로 수송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립된 지역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차례로 함락되기 시작했다. 3월 26일 중부지역 고도(古都)인후에(Hue), 3월 30일 다낭, 4월 1일 뀌년(Quy Nhon)이 함락되었다. 4월 2일에는 남베트남 공수부대가 확보하고 있는 공항을 제외한 나짱(Nha Trang)지역도 함락되었다. 그 결과 4월 초 남베트남의 전체 44개 성 중 16개성을 북베트남에 내주었다. 이는 남베트남 전체 면적의 65-70%이자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26)

이후에도 북베트남의 진공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고, 급기야 4월 21일 티에우 대통령은 사임했다. 이후에도 2명의 대통령이 더 바뀌면서 사이공 방어와 북베트남과의 협상을 추진했지만 이미 기울 어진 전세 속에서 1975년 4월 30일 10시 20분 마지막 대통령인 즈엉반민(Duong Van Minh)은 무조건 항복을 발표했고, 남베트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sup>25) 1975</sup>년 3월 30일 주월 한국대사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역별 피난민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다낭 120만 명, 뀌년 15만 명, 투이호아 10만 명, 냐짱 20만 명, 기타지역 20만 명이었다. 이들 피난민 중 약 50만 명은 베트남의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이어진 1번 도로를 따라 사이공을 향해 남하 중이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고한 전문(1975.3.30.)", 외무부 동남아과, 『월남피난민 수송 및 구호원조(CA0005021)』(1975). 이하 CA0005021로 약칭.

<sup>26)</sup> 외무부 아주국, "재월한국인 현황(1975.4.8)"(국방부 자료집).

# 3. 한국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 결정

#### 가. 남베트남의 지원 요청

북베트남의 무력침공에 대해 남베트남 정부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1975년 1월 3일 정부성명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1975년 1월 7일 주한 월남대사 치에우(Pham Xuan Chieu)는 김 동조 외무장관을 예방해 1월 3일자 남베트남 정부성명을 설명하고, 한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한다. 이 자리에서 김동조 장관은 한국정부의 지원 대책을 고려해 보겠다고 답한다. 27) 김영관 주월대사도 외무장관과 국무총리에게 보낸 1월 11일자 전문에서 남베트남의 요청을 전달하고, 한국적십자사가 식량 및 의약품 등의 구호품 수집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 28) 이 전문은 1월 13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도 전달된다. 29) 1975년 2월 7일에는 주한 월남대사가외무부장관을 면담하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티에우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다. 친서의 내용은 북베트남의 파리평화협정 위반에대해 한국정부의 지지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30)

한국정부에 대한 남베트남의 요청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3월 23일 남베트남의 단(Phan Qunag Dan) 부수상은 다낭지역에 고립된 전시 피난민 수송을 위해 선박 및 항공기 지원을 요청했다. 31)

<sup>27) &</sup>quot;면담요록(1975.1.7)"(국방부 자료집).

<sup>28) &</sup>quot;1975년 1월 11일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CA0005021).

<sup>29) &</sup>quot;월남전재민 구호-1975년 1월 13일 외무부에서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낸 전 문"(CA0005021).

<sup>30) &</sup>quot;티우 월남대통령 친서 전달(1975.2.13)," 외무부 동남아 2과, 『한·월남 정무일반 (1972-75)』. 박정희 대통령 이에 대해 지지 성명 대신 친서를 회신해 남베트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박 대통령의 친서는 현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티우월남 대통령 친서에 대한 대통령 각하 회신(안)(1975.2.24)"; "1975년 3월 27일 주월대사의 외무장관 보고," 외무부 동남아 2과, 『한·월남 정무일반(1972-75)』.

<sup>31) &</sup>quot;1975년 3월 25일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CA0005021).

3월 24일에는 남베트남 외무성에서 또 다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32) 3월 26일 주한월남대사는 이를 노신영 외무부차관에게 전달했다. 당시 주한월남대사는 후에와 다낭에 고립된 약 6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을 깜란(Cam Ranh) 등 남베트남 내 안전지대로 수송할 수 있도록 LST, 병원선 또는 화물선등 최소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선박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60만 명에 이르는 피난민 수에 비추어 수송기간은 1개월 반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송수단과 지원기간도 제시한다. 33)

남베트남의 계속된 지원요청을 받고 한국정부의 대응도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당시 한국정부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현지 한국 대사관 및 교민의 안전한 철수를 진행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베트남의 지원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 나. 한국정부의 대응

#### 1) 주월한국대사관 비상계획 수립

외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현지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에게 부여된 의무이다. 이점은 1975년 베트남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대사관 직원과 교민을 안전하게 철수시킬 것인가? 언제 대사관을 폐쇄할 것인가? 이것이 한국정부의 가장 큰고민이었다. 특히 여권만료,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현지 범법행위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는 출국수속이 제한되는 교민 철수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었다.

<sup>32) 3</sup>월 24일자 남베트남 외무부 성명은 전황 소개와 함께 모든 평화, 자유, 애호국 들에게 북베트남의 침략을 규탄하고 남베트남 정부 및 국민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sup>33) &</sup>quot;면담요록(1975.3.26)"(CA0005021).

1975년 1월 베트남에서 전황이 발생하자 주월대사관은 자체 '비 상계획'을 작성했다. 당시 비상계획에는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는 대사관직원 및 교민을 약 1,9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철수수단으로 항공기를 고려했다. 34) 주월대사관의 비상계획을 접수한 외무부는 비상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함 35)과 동시에 교민철수를 위한 항공기 파견 가능성을 민간항공사와 국방부에 검토 요청한다. 36) 당시 국방부는 군용기 지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항공기 철수 대상인원으로 파악한 947명 37)을 C-54 군용기 7대가 총 5회 운항한다는 것이었다. 38)

이후 주월대사관은 외무부의 지시를 받고 철수계획을 보완한다. 보완된 비상계획에는 상황전개에 따라 준비단계로부터 1~3단계까지 총 4단계로 구체화했다. 철수 수단은 항공기를 상정했지만, 항공기별 탑승인원을 고려해 필요한 항공기 소요대수도 산정했다.

<sup>34)</sup> 주월대사관이 작성한 비상계획에 따르면 당시 남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대사관 직원 및 교민 등 1,899명이었지만, 여기에는 외환은행지점 등 한국의 공공기관 직원의 수는 빠진 상태였다. "1975년 1월 23일 외무부 기획관리실장이 아주국장에게 보낸 협조문," 국방부, 『십자성작전관련 자료집』(서울: 국방부, 2015), 14-16쪽. 이 자료집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외교부 자료를 수집·선별하여 발간한 것이며, 이하 '국방부 자료집'으로 표기함.

<sup>35) &</sup>quot;1975년 1월 29일 외무부장관이 주월대사에게 보낸 전문"(국방부 자료집).

<sup>36) &</sup>quot;1975년 1월 29일 외무부장관이 주월대사에게 보낸 전문"(국방부 자료집). 이 전문은 1월 16일자 주월대사가 보고한 비상계획(월총 200-1/1975.1.16)에 대해 추가보완 및 구체적 사항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1975년 1월 23일 외무부 기획관리실장은 아주국장에게 협조문(기예1211-39) "주월남대사관 비상계획 수립"을 보내 동 계획에 대한 검토 및 항공사 및 국방부와 사전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sup>37) 947</sup>명은 1975년 2월 기준 인원이며, 세부내역은 대사관 직원 및 가족 114명, 수 자원사절단, 농업사절단, 의료단, 코트라, 외환은행 지점 등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 90명, 상사 주재원 및 여행자와 그 가족 50명, 일반 취업자 및 가족 550명, 영주교포 및 가족 143명이었다.

<sup>38)</sup> 이것은 C-54기 1대에 약 30명의 교민을 태우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국방부는 군용기 파견을 위해서 일본, 대만, 필리핀, 남베트남과 영공통과 및 착륙인가에 대한 협조, 그리고 항공류 지원 등을 외교적으로 선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또 상황악화 시에 대비해서 대만 또는 필리핀에 사전 전개하는 방법도 검토하였다. "주월대사관 비상철수 계획-국방부측 의견"(국방부 자료집).

탑승인원이 400석인 B-747기의 경우에는 3대, 205석의 DC-8기종은 6대가 필요했다. 사이공 공항이 폐쇄될 경우를 대비해 선박을 이용하는 방법도 예비로 검토했다. 이것은 육로 또는 해로로 사이공 남쪽 항구인 붕따우(Vung Tau)항까지 이동 후 정부에서 보낸 선박을 비롯해 가용한 선편을 이용한다는 것이었다. 39) 그러나 이때의 선박이 군함인지 민간 용선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수준이었다. 40)

이런 가운데 4월에 접어들면서 전황이 더욱 악화되자 주월대사 관은 비상계획에 따라 철수 1단계를 시행한다. 이것은 대사관 직원 가족을 4월 12일까지 철수시키고 현지에 있던 정부산하 각 기관의 직원들 중 잔류할 필요가 없는 인원들은 조기 철수시키는 것이었다. 일반 교민들에 대해서도 자력으로 출국이 가능한 인원들은 조기 출국할 것을 지도해 나갔다. 경제적으로 극빈한 교민들을 위해서 본국에 특별예산지원도 요청했다.41)

당시 주월대사관의 가족 등 철수지시는 물론 남베트남 전황의 악화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국의 요구도 있었다. 4월 3일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담당 참사관이 외무부 미주국장을 찾아와 미국측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하였다. 미국으로서는 약 5,700명에 달하는 남베트남 내 미국인 철수문제로 한국 교민 철수를 지원할 여력이 없으니 한국정부도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 42) 또 남베트남의 전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만큼 한국정부가

<sup>39)</sup> 외무부 동남아과. "주월대사관 비상계획(1975.2.6)"(국방부 자료집).

<sup>40)</sup> 사이공에서 붕따우까지 이동 후 정부 선박을 이용하는 계획은 추후 십자성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사이공에서 붕따우까지 이동하는 것은 선박이 사이공의 뉴포트 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변경되는 정도이다.

<sup>41) &</sup>quot;1975년 4월 2일 12:00 주월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전문"; "주월대사관과 정부산하 각 기관 및 일반 민간인의 철수에 관하여(1975.4.5)-외무부장관이 대통 령(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문건"(국방부 자료집).

<sup>42) &</sup>quot;주월대사관과 정부산하 각 기관 및 일반 민간인의 철수에 관하여(1975.4.5)-외무 부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문건"(국방부 자료집).

추진해오던 남베트남 피난민 수송 및 구호원조계획을 계속 추진해 달라고도 했다.<sup>43)</sup>

베트남에서 직원가족 등에 대한 철수가 시작되면서 국내에서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대사관 및 교민의 안전한 철수, 그리고 남베트 남에 대한 지원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1975년 4월 4일 외무장관은 긴급보고 안건으로 "월남비상철수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한다.44) 이 계획에는 '정부수송편의 지원' 항목에 '민간항공기에 의한 자비퇴거를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기, 군수송기 또는 해군함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여기서 전세기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전세(專費)를 말했다. 군수송기는 이미 국방부로부터 검토를 받았던 C-54기 7대를 말하며, 해군함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내용은 없다. 이 것은 이 무렵 2명의 조사반이 남베트남 현지에서 조사 중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계획의 '행정지원' 항목 중 국방부 조치사항은 "공관 및 교민보호를 위한 경비소대 파견 검토(함정 파견시 동승)"가 있었다. 당시 계획에 나온 베트남 현지 한국인의 규모는 총 861명을 파악되었다.45)

그러나 당시 철수계획 시행에서 가장 크게 직면한 문제는 출국이 어려운 교민들이었다. 이들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① 경제적으로

<sup>43) &</sup>quot;월남 피난민 긴급철수 및 구호원조 문제(1975.4.4)-외무부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문건",(CA0005021). 미국은 4월 19일 주한 미국대사를 한국 외무부로 보내 남베트남인들의 비상철수 작전을 계획 중이고, 이들을 주한 미군기지에 수용하는 것에 대해 한국정부의 동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미국의 요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등 8개국이었다. 4월 21일 한국 국무총리는 미국대사에게 미국의 계획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면담요록(1975.4.19/4.21)," 외무부 동남아 2과. 『한·월남 정무일반(1972-75)』.

<sup>44)</sup> 외무부, "월남비상철수계획(1975.4.4)"(국방부 자료집).

<sup>45)</sup> 이는 세부적으로 대사관, 외환은행, 코트라, 재보험공사, 농업사절단, 의료사절단 수자원사절단, 탄마이 직업훈련소 자문단, 코콩지구 용역단의 직원, 가족 등 191 명, 대한항공, 경남기업 등 6개 진출기업 직원 및 가족 119명, 일반교민 551명이다.

어려워 항공권 구매가 어려운 교민, ②한국여권 만료 및 남베트남 당국에 세금체납 등으로 정상 출국이 어려운 교민, ③교민 중에서 베트남인과 결혼 또는 동거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있지만, 이들이 베트남 국적으로 베트남 당국에 여권 발급 등 출국 수속을 밟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였다. 일부 교민은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도 있었다.

당시 주월대사는 이런 이유 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교민의 규모를 약 800명으로 추산했다. 46) 물론 당시 이런 문제는 한국만 겪는 문제는 아니었다. 상당수의 미국인도 한국교민들과 유사한 점 때문에 출국수속이 지연되고 있었고, 필리핀도 유사한 상황이었다. 대만 같은 경우는 그런 인원이 너무 많아 별도의 조치를 포기한 상태였다. 47)

주월대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에 수송편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현지교민들에게 일단 개인적으로 출국수속을 마칠 것을 독려하고, 본국정부가 주한 월남대사관과 협조해이 문제를 남베트남정부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4월 7일에는 대사관 주도하에 교민회와 협조하여 '재월한국인 철수대책본부'를 조직하고, 한국정부에서 지원한 수송수단을 이용해 귀국하기위한 인원 및 재산, 출국계획 등을 추진했다. 48)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출국이 어려운 교민 출국문제는 쉽사리 풀리지 않았고, 결국 정부가 보낸 해군 LST를 이용해 귀국하게 된다.

#### 2) 정부의 남베트남 전시 피난민 지원책 검토

한국정부는 대사관과 교민철수 이외에 남베트남에서 요청한 전시 피난민 지원책도 함께 검토해야만 했다. 이미 1975년 1월 남베트남

<sup>46) &</sup>quot;1975년 4월 7일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서 보내온 전문"(국방부 자료집).

<sup>47) &</sup>quot;1975년 4월 11일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고한 전문"(국방부 자료집).

<sup>48) &</sup>quot;1975년 4월 7일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서 보내온 전문"(국방부 자료집).

정부의 지원요청을 받은 바 있고, 악화되는 전황 속에서 그 요구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남베트남의 구체적인 지원 요청은 3월 23일 처음 등장했다. 단부수상이 본인의 관저로 사이공주재 외국 공관장과 외국기관 대표를 초청해 다낭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50만 명의 전시 피난민 수송을 위해 선박 및 항공기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주월대사는 현재 남베트남에서 작업 중인 한국 선박의 지원 가능성을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답변한다. 49)

한국정부도 주월대사관을 통해 전해지는 전황과 남베트남 정부의 계속된 요청을 어떤 형태로든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외무부는 당시까지의 베트남 상황과 남베트남의 요구사항을 포함해 "월남정부의 피난민 수송수단 원조요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3월 26일 대통령께 보고한다.50) 이것은 이전까지 베트남 상황을 관망하며 대사관 축소 조치 등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한국정부의 남베트남 지원이 검토와 실행의 단계로 변화되는 시점이다. 3월 28일자 보고에는 현재까지 각국의 지원현황과 남베트남 정부의 요구사항, 그리고 한국정부의 지원 관련 검토사항을 포함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남베트남이 한국정부에 LST 1척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51)

남베트남이 한국에 LST를 요청한 것은 베트남 중부지방에 고립된 피난민 수송을 위해서는 항공기보다 선박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sup>49) &</sup>quot;1975년 3월 25일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CA0005021).

<sup>50) &</sup>quot;월남정부의 피난민 수송수단 원조요청(1975.3.26)-외무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CA0005021).

<sup>51) &</sup>quot;월남 피난민 수송수단 원조 요청(1975.3.28)-외무부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문건"(CA0005021). 보고서에는 미국이 이미 피난민 수송을 진행 중이고 1일 1만 명씩 수송할 경우 약 35만 명 수송에 35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대만도 C-130이 없어 선박을 요청 중이며, 필리핀은 LST 1척이 우선 1회 난민수송 후 원래 목적한 장비를 싣고 귀국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항공기는 이·착륙을 위해 활주로가 있어야 했지만 이러한 시설이 제약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또 비용면에서 항공기보다 선박이 적게 들기 때문이기도 했다. 52) 이와 관련하여 남베트남 적십자사 총재도 한국이 해군함정을 보내줄 경우 적십자기를 게양하고 피난민만을 수송하는 인도적 목적에만 사용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53)

그러나 한국정부의 지원결정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한 국정부는 남베트남 지원의 성격과 규모, 방법을 고민하면서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3월 29일 외무부는 해외주재 대사관에 주재국의 남베트남 지원에 관한 정보수집을 지시한다.54)

당시 종합된 각국의 남베트남에 대한 지원수준과 방법, 그리고 원조의 성격은 대체로 일치했다. 55) 각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에 한 정해 현물 등 구호품과 금전을 지원하는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었 다. 전달수단은 남베트남에 대한 직접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으로 양분되었다. 미국, 필리핀, 호주, 대만, 영국 등은 항공기와 선박을 보내 자국민 철수 및 전시 피난민 수송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철수 대신 현지 잔류를 지시

<sup>52) &</sup>quot;1975년 3월 26일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CA0005021). 당시 국제 적십자사는 미국을 제외한 수송수단 지원국에게 적십자 비용으로 실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었다. "1975년 3월 25일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 (CA0005021).

<sup>53) &</sup>quot;1975년 3월 27일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CA0005021).

<sup>54) 3</sup>월 29일 외무장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총 17개국에 전문을 보낸다. 전문의 내용은 '정부에서 긴급 참고하고자 하니 월남 피난민 수송 및 구호를 위하여 주 재국 정부가 그간 어떠한 내용의 원조 공여를 결정하였는지, 만약 검토 중인 경우에는 어떠한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늦어도 3.31(월) 10시까지 본부에 필착토록 보고 바란다'는 것이었다. 제네바 대사에게는 국제적십자사의 구호활동 계획에 대한 조사 보고 지시를 하달했다. 외무장관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4개국해외주재 대사에게 보낸 전문(1975.3.29,17:40); 외무장관이 주인도/주서전대사에게 보낸 전문(1975.3.29,17:30); 외무장관이 주제네바 대사에게 보낸 전문(1975.3.29,17:30); 외무장관이 주제네바 대사에게 보낸 전문(1975.3.29,17:30)

<sup>55)</sup> 해외주재 한국대사들이 조사해 보낸 전문의 내용은 CA0005021 문서철 참조.

하기도 했고, 일부 국가는 북베트남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북베트 남을 지지하는 국가도 있었다. 각국의 남베트남 지원사항은 이후 한국정부의 지원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반영된다.

#### 다. 한국정부의 지원 정책 결정

한국정부의 지원정책 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상황은 두 가지였다. 첫째, 현지 대사관과 교민들을 언제, 무엇을 이용해서 철수시킬 것인가 였다. 특히 정상적으로는 출국이 어려운 교민문제가중요한 고려 대상이었다. 둘째, 어떤 성격과 규모, 수단으로 남베트남을 지원할 것인가 였다.

각국의 남베트남 지원 상황을 파악한 한국정부는 3월 31일 내부적으로 한국정부의 지원 성격과 수준을 결정한다. 정부는 남베트남지원의 성격을 "순전히 인도적 고려"로 한정하고, 그 방법으로 구호품의 전달 및 난민 수송을 위해 해군 LST를 보내기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원조 방법 등의 협의와 현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조사반을 남베트남 현지에 파견한다. 또 정부의 이 결정은 주월대사 및 주한월남대사에게도 전달된다.56)

한국정부가 해군 LST를 보내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남베트남의 계속된 요청과 주월대사의 의견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에 항공기로는 출국이 어려운 교민을 데려오기 위한 측면, 남베트남에 구호품 전달 수단, 남베트남 적십자사가 선박에 대한 유류 및 인건비 지원방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내린 결정이었다. 이미미국 이외에도 대만, 영국, 필리핀 등의 LST 파견결정도 영향을 미쳤다.

LST파격을 위한 조사반은 김대용 준장(한국함대 참모장)과 이문학

<sup>56) &</sup>quot;1975년 3월 31일 18:50 외무장관이 주월대사에게 보낸 긴급전문"(CA0005021).

중령(해군본부 작전참모부 작전담당관) 등 해군장교 2명으로 편성 되었다. 4월 2일 사이공에 도착한 조사반은 도착 직후 남베트남단 부수상 겸 보건사회부장관을 만나 현지 상황 및 원조 요청사항을 청취했다. 당시 남베트남은 한국 조사반에게 피난민 수송을 포함해서 난민구호 목적으로 선박파견, 피난민 집단수용소로 결정된 푸꾸옥(Phu Quac)57) 섬에 수용시설 건설 협조, 의료 및 식량지원 등을 요청했다. 조사반은 구호물자 관련 업무 협의차 보사부를 방문했고, 수송관련 업무참고차 미국 해군수송선단장(MSC)의 벤톤(Benton) 소장과 남베트남 해군참모총장을 만난다.58) 이들은 당초 10일 일정으로 출국했지만, 주월대사의 LST 조기 파견 요청등을 받고 태국 방콕을 거쳐 4월 5일 귀국한다.59) 사이공 체류시간은 약 31시간정도에 불과했다. 조사반은 귀국이후 곧바로 해군본부에서 '십자성계획'이라는 명칭의 계획을 수립해 4월 7일 국방부에 보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75십자성계획'으로 명명했다.60)

정부는 4월 8일 개최된 제27차 국무회의에 "월남공화국 전시난 민구호 원조방안(안)"을 상정한다. 해군 LST을 이용한 남베트남 지원계획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40분간 개최된 이날 국무회의에는 총 4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sup>61)</sup> 시간상으로 볼때 별다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무회의에 원조방안 계획을 제출한 부서는 경제기획원이었다. 안건에 기술된 '제안이유'는 남베트남에 전시난민 후송을 위한

<sup>57)</sup> 푸꾸옥 섬은 캄보디아에 인접한 섬으로 베트남전쟁시기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 던 곳이다.

<sup>58) &</sup>quot;1975년 4월 2일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 "1975년 4월 3일 김대용 준장이 해군참모총장에게 보낸 전문"(CA0005021).

<sup>59) &</sup>quot;1975년 4월 3일 김대용 준장이 해군참모총장에게 보낸 전문"(CA0005021).

<sup>60)</sup> 해군본부, 『베트남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20쪽.

<sup>61)</sup> 의정 1331-417 "국무회의 상황보고 및 회의록 송부"(1975.4.12) (나라기록포털 http://contents.archives.go.kr: 검색일 2015.12.31).

수송단 파견, 의료진 파견, 구호물자 전달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다. 세부방안으로는 약 45일간 약 2~3만 명의 난민 해상수송지원과 구호지원물자(식량·피복류, 의료품 및 개인용품) 지원이었다. 해상수송단의 구성은 국방부에서 조치하도록 되어있었다. 여기에는 구호용 원조물자와 함정수송단 경비 등 총 410만 불 어치가 사용되었다. 62)

이로써 정부차원의 남베트남 지원계획이 결정되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 사항을 주월대사와 주한월남대사에게 통고했다. 63) 또 같은 날인 4월 8일 언론에도 발표해 각 언론사에서 보도했다. 64) 이후 4월 9일 해군 LST의 출항 이후 외무부는 해외주재한국대사관을 통해 남베트남 주재 각국 대사관의 철수와 폐쇄에 관한 정보수집을 지시하고, 계속적인 상황파악에 주력한다. 65)

# 4. 해군 십자성작전 전개

정부의 남베트남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결정된 이후 그 이행

<sup>62)</sup> 의안번호 제265호 「월남공화국 전시난민구호 원조방안(안)」(1975.4.8).

<sup>63)</sup> 당시 정부가 주월대사에게 보낸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월남의 전시 난민을 후방지역으로 긴급 후송하기 위한 수송선단과 난민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진, 식량류, 피복류, 개인용품, 의료품 등 미화 410만 불 상당의 긴급 원조 물자 및 용역을 무상 제공키로 하였음. "1975년 4월 8일 외무장관이 주월대 사에게 보낸 전문"(국방부 자료집).

<sup>64) &</sup>quot;각의 의결, 월남에 20억원 어치 제공. 난민수송선단 파견도", 『동아일보』, 1975 년 4월 10일. 이 발표는 당시 김동조 외무장관이 언론에 직접 정부결정을 발표한 것을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수송선단의 규모와 파견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sup>65)</sup> 해군 LST 출항 직후 외무장관은 미국 등 15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전문을 보내 각국의 남베트남 주재 대사관 동태 및 철수상황 등에 대한 조사 보고를 지시한다. "1975년 4월 9일 13:45, 외무장관이 해외주재 한국대사에게 지시하는 전문", 『1975년 4월 베트남상황 악화와 각국의 주재공관 철수 정보』(HB2747). HB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료관리번호임.

은 해군에게 부여되었다. 당시 해군은 1975년 4월 7일 국방부에서 작성한 약칭 '75십자성계획'에 따라 파견 준비를 진행했다. 66)당시 해군 십자성작전은 시기별로 ①부산항 출항과 사이공 뉴포트 도착 ②구호물자 전달 및 교민·난민 탑승 ③푸꾸옥 섬 하역과 남베트남 패망 후 귀국 등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표 1〉는 해군 수송선단의 일자별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표 1〉해군수송선단의 일자별 주요 활동

일 자	주 요 활 동
4.6(일)	• LST 2척(810·815함) 부산항 도착(13:00)
4.7(월)	• 구호물자 적재(4.7, 04:00~4.9, 09:30) • 815함상에서 해군 참모총장에게 출국신고(15:00)
4.8(호)	• 해군 <mark>참모총</mark> 장 시찰(18:50)
4.9(수)	• 부산항 <mark>출항(13:00)</mark>
4.21(월)	• 붕따우 외항 도착 <mark>/투묘67</mark> (15:00) * 기관고장으로 2일 지연도착 • 주월무관 정영순 대령 외 4명 협의차 내방(16:00)
4.22(호)	<ul> <li>남베트남 장교 편승(05:30)</li> <li>붕따우 출항→사이공 뉴포트 입행(12:00)</li> <li>815함상에서 한국정부 구호물자 전달식(훈장수여)</li> </ul>
4.23(수)	• 구호물품 하역/남베트남정부의 요청물자 적재(08:00~)
4.26(토)	• 교민/피난민 탑승 개시(11:00) • 출항(810함 18:00, 815함 19:10)
4.27(일)	• 붕따우 외항 도착/투묘(19:00)
4.28(월)	• 붕따우 출항(08:00)
4.29(호)	• 푸꾸옥 외항 도착/투묘(08:00)/ 567명 하선
4.30(수)	<ul> <li>만조 이용 접안 시도, 실패(08:00), 제한적으로 하역 진행</li> <li>남베트남 패망(10:20)</li> <li>월맹정부 성명, 외국선박 50해리 영해 밖으로 이동 경고</li> <li>하역작업 중단 후 출항(11:00)</li> </ul>
5.13(호남)	• 부산 외항 도착/투묘(06:30), 부산항 접안(09:00) • 인원, 물자 하역(∼ 5.16, 10시)
5.16(금)	• 진해 귀항/분대 해체

<sup>\*</sup> 출처: 해군본부 작전참모부, 『해군사』 제7집(대전: 해군본부, 1981), 452-453쪽, 542-548쪽; 해본작작0970-1136(1975.5.20) "파월 특수수송지원작전 경과보고서 제출".

<sup>66)</sup> 국방부, "대월 난민 수송선단 군수지원 지시 및 대월구호물자 선적계획(75 십자 성 계획)", (1975.4.7).

<sup>67)</sup> 투묘(投錨): 배를 정박시키기 위해 닻을 내림

#### 가. 부산항 출항과 사이공 뉴포트 도착

경제기획원에서 작성한 남베트남에 대한 정부지원 계획에서 국방부가 조치할 사항은 구호물자 준비와 수송을 위한 '해상수송단'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원조계획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 '75십자성계획'68)에 따라 4월 6일 부산항에 해군 LST 2척(810함, 815함)69)을 접안시켜 구호물자 선적 작업을 시작했다. '파월특수수송지원분대'70)(이하 수송분대)로 명명된 수송단은 사령관 권상호 대령을 포함해 총 269명(장교 25명, 부사관 149명, 병사 95명)이었다. 이중에는 해병 1사단에서 지원받은 30명의 기동타격대(QRF)도 각함에 15명씩 동승했다.71)

구호물품 선적완료 후 4월 9일 낮 1시 두 척의 LST로 구성된 수송분대는 부산항을 출항했다. 목적지는 대만해협을 지나 4월 19일 20시 붕따우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72) 그러나 수송분대는 항해 도중

<sup>68)</sup> 국방부, "대월 난민 수송선단 군수지원 지시 및 대월 구호물자 선적계획(75 십자 성계획)"(1975.4.7).

<sup>69)</sup> LST 2척은 계봉함(LST-810함), 북한함(LST-815함)이었다. 편의상 810함, 815함으로 표기함.

<sup>70)</sup> 이 분대의 명칭은 문서마다 상이하다. 『해군사』 제7집에는 '파월특수수송분대', 당시 해군본부 인사명령서에는 '특수수송지원분대', 1975년 5월 20일 해군참모총 장이 외교부에 보낸 「작전경과보고서」에는 '한국 해군 파월 특수수송지원분대'라고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는 공식결과보고서와 인사명령상에 기술된 '특수수송지원분대'로 표기한다.

<sup>71)</sup> QRF(Quick Reaction Force)는 기동타격대, 또는 신속대응군 등으로 불린다. QRF는 주월대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1975년 4월 2일 12:00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국방부 자료집).

<sup>72) &</sup>quot;1975년 4월 11일 18:00 외무장관이 주월대사에게 보낸 전문"; "1975년 4월 11일 국방부장관(군수차관보 전결)이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전문"; "75 십자성 계획-국 방부장관(군수차관보 전결)이 외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문서(1975.4.11)"(국방부자료집). 그러나 동 문서에서 목적지는 현지 전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변동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 당시 외무장관은 사이공 입항여부에 대해서는 주월대사가 수송선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1975년 4월 11일 18:00 외무장관이 주월대사에게 보낸 전문" 당시 810함의 박인석 함장은 출항 시지시받은 목적지는 다냥이었으나 베트남으로 가는 도중 전황이 급변해 다냥→냐

기관고장으로 인해 이틀 지연된 4월 21일 15:00 붕따우에 도착한다. 도착 이후 현지에 파견된 국방무관 및 해군연락장교와 협의해사이공의 군항인 뉴포트(New Port)로 목적지를 변경한다. 그리고 4월 22일 05:30분 남베트남 장교가 탑승한 가운데 붕따우를 출발해 사이공강을 따라 이동, 이날 12시 사이공의 뉴포트에 무사히입항한다.

#### 나. 구호물자 전달 및 교민 · 난민 탑승

뉴포트 항에 도착한 수송분대는 4월 22일 16:00 구호물자 전달식을 갖는다. 815함상에서 개최된 전달식에는 주월대사를 비롯해한국대사관 직원 및 교민회 간부 등이 참석했고, 남베트남측은 구호부 차관 외 각 부처 및 각 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물자전달식에서는 남베트남 정부에서 수송분대 사령관과 함장, 그리고 대사관 직원 등 8명에게 남베트남 정부의 훈장(사회복지장)을 수여했다.73)

구호물자 인도식 개최는 수송분대가 한국을 출항하기 전부터 언급되고 있었다. 당시 전문에 따르면 수송분대의 출항 전인 4월 9일 09:40분 주월대사는 외무장관에게 '기항지가 사이공항으로 될 가능성이 많으며, 사이공항으로 입항토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전문 을 보냈다. 이 전문에서 주월대사는 아측이 원하면 인도 시 간소한

짱→붕따우로 변경되었다고 했다. "박인석 전 810함장 인터뷰(2015.5.8)"(국방부자료집).

<sup>73) &</sup>quot;1975년 4월 22일 18:20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국방부 자료집). 당시 훈장 수여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장 1급 김대용 해군준장, 이문학 해군 중령(이상 조사반으로 사이공에 갔던 인원) 사회복지장 2급 권상호 해군대령, 정홍석 해군중령, 박인석 해군중령, 이윤도 해군중령(이상 수송분대 사령관, 참모장, 함장), 김창근 2등 서기관, 김기원 공보관(이상 주월대사관 직원) 주월대사는 이날 훈장수여식이 4월 22일 오전 남베트남 측에서 급작스럽게 통보했다고 보고했다.

행사(ceremony)를 갖겠다는 남베트남 측의 입장을 전했다. 74)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인도식은 주월대사의 판단 하에 시행하되 현 상황에 비추어 간단히 하라고 통보한다. 75) 한국정부가 전달하는 구호물자는 인도식 이후인 4월 23일 08시부터 하역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해군 LST는 왜 최초 계획대로 붕따우항에서 물자를 전달하지 않고 사이공의 뉴포트까지 간 것일까? 그리고 왜 굳이 인도식 개최를 요구한 것일까? 해군 입장에서도 붕따우에 물자를 하역하는 것이 안전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미처 출국하지 못한 한국교민을 데려와야 했기 때문이다. 자력으로 출국이 가능한 교민들은 항공기 등을 이용해 출국한 상태지만 미처 출국하지 못했거나 항공기 등으로 출국수속을 밟을수 없는 교민들을 태워오기 위한 것이었다. 사이공의 교민들을 120여 km 떨어진 붕따우 항까지 이동하는 것에 많은 제한요소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그러나 한국측은 교민수송 계획에 대해서 남베트남측에 언급하지 않았다. 76) 주월대사는 교민수송을 위해 해군 LST를 사이공의 뉴포트까지 들어오도록 요구했고, 구호물자 전달이라는 별도 행사도 요구했지만 교민 수송에 대해서는 함구하였다. 이점은 주월대사의 일종의 '비책'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남베트남 정부는 주월대사의 생각과는 달랐다. 그들은 구호물품 제공과 함께 붕따우에서 자국 피난민을 푸꾸옥 섬으로 수송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주월대사가 구호품 전달식을 구실로해군 LST를 사이공 뉴포트까지 오게 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양측의 이견은 이때부터 수면위로 등장한다. 주월대사는 물자하역 후 교민을 태우고 나가려 했지만 남베트남 정부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남베트남 측에서는 한국 교민들이 정상적인 출국절차를

<sup>74) &</sup>quot;1975년 4월 9일 09:40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고한 전문"(국방부 자료집).

<sup>75) &</sup>quot;1975년 4월 11일 18:00 외무장관이 주월대사에게 보낸 전문"(국방부 자료집).

<sup>76) &</sup>quot;김영관 전 주월대사 인터뷰('15.5.8)"(국방부 자료집).

거칠 것을 요구했다. 오히려 자국민들과 일부물자를 푸꾸옥 섬으로 1회 수송해 줄 것을 한국측에 요구했다. 남베트남 정부는 만약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교민의 안전철수를 방해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무렵 남베트남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한국대사관을 찾아와 자신들의 철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77) 이에 대해주월대사는 남베트남 정부와 협상을 거쳐 타협안을 도출하는데, 그 것은 남베트남 피난민과 물자를 푸꾸옥 섬에 1회 수송해주고, 이때한국 교민도 함께 태워 푸꾸옥 섬으로 보내겠다는 것이었다.78)

결국 현지 주월대사와 해군 수송분대는 협의 후 남베트남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교민들을 승선시키기로 결정한다. 이 협상으로 세금문제 등으로 감옥에 수감 중이던 한국교민들도 함께 탈출할 수 있었다. 79) 주월대사는 남베트남 국민들 중 친미파와 친한파는 한 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생각하고, 당시 대사관 청색 커튼을 이용해리본을 만들어 푸꾸옥 섭에 내릴 사람과 한국으로 갈 사람을 각각 A·B·C그룹으로 분류했다. 80)

4월 22일 사이공 뉴포트에 도착한 해군 LST는 남베트남 피난민과 물자, 그리고 한국교민을 함께 싣고 4월 26일 18시 815함이먼저 출항한 뒤. 이어서 19시 10분 810함이 출항했다. 81) 두 척의

<sup>77)</sup> 그들은 전 주한월남대사, 월남 정보부 정보분석국장, 대사관 고문변호사, 외무성 직원 등 이른바 고위직이면서 친한파들이었다. 외교부는 이들을 미측에 협조하거 나 이것이 불가할 경우 아측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자만 선별, LST에 탑승 귀환 케 하라고 주월대사에게 지시한다. "월남인들의 긴급 피난요청"(국방부 자료집).

<sup>78)</sup> 해군본부, 『베트남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34쪽.

<sup>79) &</sup>quot;이문학 전 해군중령 인터뷰('15.5.8)"(국방부 자료집). 이문학 중령은 당시 정부 조사반으로 사이공에 갔으며, 십자성작전시에는 대사관에서 연락장교 임무를 수 행했다.

<sup>80) &</sup>quot;김영관 전 주월대사 인터뷰('15.5.8)"(국방부 자료집); 해군본부, 『베트남전쟁 과 한국해군작전』, 235쪽.

<sup>81)</sup> 당초 한국해군은 4월 26일 14:00 출항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민들의 집합 지연과 남베트남측의 교민 출국 거부, 대사관 물품 탑재 지연 등으로 예정보다 출항이 늦어졌다.

LST에 탑승한 인원은 총 1,902명이었다.82)

#### 다. 푸꾸옥 하역과 남베트남 패망 후 귀국

사이공강을 야간 항해로 빠져나온 해군 LST는 4월 27일 붕따우 외항에 도착했다. 붕따우항에 남베트남 국민 및 물자를 내려놓고자했으나 상황은 좋지 못했다. 남베트남과의 약속대로 푸꾸옥 섬으로 가고자 했지만 한국 해군참모총장은 이를 불허했다. 83) 이런 가운데 4월 27일 남베트남 정부에서도 사전에 약속한 피난민을 다 태우지 않고 출항한 것에 대해 한국 LST를 나포하겠다는 경고도 보내왔다. 84) 결국 한국 수송분대는 본국의 지시를 거부하고 남베트남과의 약속대로 푸꾸옥 섬으로 향했고, 4월 29일 08:00 푸꾸옥 외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현지 조석표(潮汐表) 등 정보의 부채로 항구에는 접안하지 못하고 해상에서 소형선박을 이용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남베트남 피난민과 일부 물자의 하역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4월 30일 10시 20분 남베트남의 항복과 외국 선박은 50해리 영해 밖으로 이동하라는 공산정부의 경고방송을 듣고 작업을 중단한 채 공해상으로 긴급 이동한다. 85) 이후 부산항을 목적지로 항해를 시작해

<sup>82)</sup> 당시 사이공 뉴포트 항에서 한국해군의 LST에 탑승하는 한국교민과 월남 피난 민의 사진은 당시 국내언론에도 보도되었다. 『동아일보』, 『매일경제』, 1975년 4월 28일자. 그러나 당시 사이공 현지의 한국일보 안병찬 특파원은 이 사이공발 기사에서 '월남 피난민을 실은 해군 선박이 한국으로 향해 출발했다'고 보도하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는 주월대사관에 '당분간 목적지인 한국이 보도되지 않도록 보안조치'하라고 지시한다. 그 이유는 남베트남에 중립내각이 수립될 경우 남베트남 국민을 한국으로 철수시킨 것을 비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1975년 4월27일 20:00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국방부 자료집).

<sup>83) 4</sup>월 27일 08:00 한국 해군 참모총장은 훈령을 통해 푸꾸옥 수송을 불허한다는 전문을 보내왔다. 해군본부, 『베트남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41쪽.

<sup>84)</sup> 박인석, "비록, 1975년 '십자성작전 참여 함장의 증언 下",『월간조선』, 2013년 5월호 316-317.

5월 13일 부산항에 도착한다. 이때 해군 LST에 탑승한 인원은 총 1,335명이었다. 임무를 마친 해군 수송분대는 5월 16일 진해에 귀항해 해체된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남베트남 패망당시 한국정부의 인도주의적 구호활동과이를 이행했던 해군의 십자성작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십자성작전은 남베트남 패망당시 한국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실시한교민 구출 및 해외난민구호 활동이었다. 비록 현지 체류 교민 전체를 데려오지 못했지만<sup>86)</sup>,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인도주의적 정책결정을 군을 통해 실행했다는 점은 정부와 군의 협조체계를 통한 비전투원소개작전(NEO: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의 중요한 선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해군 LST와 이후 각 화물선 등을 타고 한국에 오게 된 베트남 난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구호활동은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첫 난민구호소 운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베트남 보트피플 (Boat People)의 국내 입국 증가로 1977년부터는 새로운 난민구호소를 건립해 유엔 난민기구(UNHCR)의 경비지원을 받아 1993년

<sup>85)</sup> 해군본부, 『베트남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47쪽. 주한 월남대사관은 1975년 5월 17일자로 대사관을 폐쇄한다. "전 주한월남 및 크메르 대사관과 관원에 대한 대우에 관한 건의(1975.5.27)," 외무부 동남아 2과, 『한·월남 정무일반(1972-75)』.

<sup>86) 1975</sup>년 6월 기준 남베트남에 잔류하고 있는 한국인 중 사이공주재 국제적십자위 원회(ICRC) 사무소에 등록한 한국인은 총 208명으로 파악되었다. 외무부, 『공산 월남 현황(75.4.30 이후)』(1976.6).

2월까지 운영했다.87) 국내에 한국정부가 주체가 되어 운영했던 해외 난민수용소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이때의 경험은 한국이 국제적 난민정책을 직접 체험하고, 노하우(Know-How)를 쌓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88)

그러나 정부의 십자성작전 추진과정에는 몇 가지 문제점도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향후 한국정부가 유사한 사례에 접했을 때 참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기에 여기에 기술해 본다.

첫째, 교민철수의 수단과 방법, 국가의 책임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남베트남 패망 시 문제가 된 것은 자력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교민 철수였다. 현지 불법체류자, 철수 불희망자, 한국교민의 현지인 가족, 범법자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 등 자력으로 출국이 어려운 교민들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효과적인 철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의 교섭 방법, 나아가 어느 선까지 현지 자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강제력이 부여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파견부대에 대한 지휘체계상의 문제이다. 십자성작전에 파견된 해군 수송분대는 본국의 군 지휘체계와 현지대사의 2중 지휘를 받았다. 부산항 출항부터 사이공 도착까지 지휘권 이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교민과 피난민 탑승, 사이공 출항과

<sup>87)</sup> 해군 LST를 타고 부산항에 도착한 이들은 구 부산여고 건물(부산시 서구 서대 신동 1가 53번지)에 설치된 난민구호소에 입소해 한국정부의 보호를 받았다. 1975년 말까지 해군 LST와 한국선적 화물선을 타고 국내에 도착한 한국교민과 베트남 난민은 총 1,562명이었으며, 이중 584명은 국내에 정착했고, 977명은 연고를 찾아 해외로 이주했다. 1977년부터는 해운대구 재송동에 새로운 난민구호소를 건립해 운영했다.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적십자운동 100년사』, 366-367쪽; 정인섭, 앞의 논문, 201쪽.

<sup>88)</sup> 물론 1977-1989년까지 국내에 입국한 보트피플 중 단 1명도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제3국으로 송출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난민정책은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정인섭, 앞의 논문, 204쪽. 그러나 이후 한국은 1992년에 이르러 국제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고 1993년에는 난민법을 제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난민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붕따우 및 푸꾸옥 섬의 항해 및 하역과정에서 현지대사와 파견부대 지휘관, 그리고 본국의 지휘체계 간 이견이 돌출되기도 했다. 89) 당초 파견부대에 부여된 임무수행을 강조하는 본국의 군 지휘체계 와 현지의 변경된 상황에 따른 대사의 파견부대에 대한 요구가 상 충했던 것이다. 비록 한국정부에서는 현지대사에게 현지에서의 지 휘권한을 위임했지만, 실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선도 초래되었다.

따라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동일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공간적, 임무적 차원에서 지휘체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 가 있다. 특히, 현지 대사(관)-외무부, 파견부대(장)-국방부의 이 원화된 지휘체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 할 것이다.

셋째,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정확한 정보수집과 평가를 통해 정보오판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남베트남 패망 당시 외교부는 정부의 지원이 결정되기 이전에는 해외 주재 대사관을 통해 각국의 반응과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수집에 집중했다. 이후 해군 십자성작전의 전개이후에는 남베트남 주재 각국 대사관의 움직임 및 폐쇄시기에 관한 정보수집에 주력했다. 이것은 외교부 고유의당연한 업무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의 대사관 폐쇄 등의 정보가 수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정부는 4월 9일 LST 2척을 보내 놓고 사실상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 LST가 사이공에 도착하는 4월 21일까지 약 10여 일간을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물론 남베트남과의 외교관계 속에서 대사관 폐쇄 등

<sup>89)</sup> 본국 해군참모총장과 한국함대사령관은 사이공 뉴포트에서의 하역 및 적재과정, 붕따우 항 하역 및 푸꾸옥 섬 항해 등에 대해 상황의 위험을 지적하고 귀국을 지시했으나, 수송분대 사령관은 본국의 군 지휘계통 지시가 아닌 현지 대사 또는 현지 상황에 따라 분대를 지휘했고, 결과적으로 군 지휘계통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 물론 여기에는 현지 대사가 전직 해군참모총장이라는 다 소 특수한 경우였음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조기에 단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에 대한 정보의존과 일부 정보오판도 있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국교민의 철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고, 한국 외교관이 베트남 공산정권에 억류되는 초유의사건으로 이어진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 한국정부가 LST를 파견한 후 약 10여 일간의 시간동안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함께 사전에 검토했던 항공기를 보내는 노력도 기울였다면 결과는어떻게 달라졌을까? 당시 미국 이외에도 대만은 항공기를 보내 자국민을 태워오고 있었다.90) 혹은 베트남 인접 국가인 태국이나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한국 교민 수용시설에 대해 검토하고 준비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현재 전 세계의 난민 수는 1,950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 비호신청자, 귀환민, 자국내 실향민, 무국적자 등 유엔난민기구에서 보호대상으로 지정한 대상은 5,950만여 명에 달한다. 91) 탈냉전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국제 분쟁 속에서 난민의 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인도적 구호활동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 또한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92)

<sup>90)</sup> 남베트남의 참모총장이었던 카오 반 비엔에 따르면, 사이공의 탄손누트(떤션넷) 공항은 4월 28일까지 야간엔 공수, 새벽엔 중단하는 식으로 잘 진행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4월 29일 부터는 포격 및 폭격을 받아 공중철수는 중단되었다고 했다. Cao Van Vien, *Op. Cit*, p.148.

<sup>91) 『</sup>UNHCR Global Report 2014 연례보고서』 (http://www.unhcr.or.kr/unhcr, 검색일: 2016.4.5).

<sup>92)</sup> 인도주의적 간섭, 또는 인도적 개입이란 타국의 주민을 비인도적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 『21세기 정치학대사전(하)』(서울: 아카데미아-리서치, 2002), 1903쪽. 이에 대해 연구들로는 성재호, "인도주의와 인도적 간섭", 『인도법논총』, 제10-11호(1991), 237-250쪽; 양순창,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문제", 『국제정치연구』, 제13집 1호(2010), 131-152쪽 등의 연구가 있다.

#### 남베트남 패망시기 한국군의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I 287

이점에서 앞으로 한국정부와 군의 국제적 역할은 더 많이 요구될 것이며, 1975년 해군의 십자성작전은 유사시 참고할 만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향후 십자성작전에 관한 추가 적인 연구를 통해 더 발전된 연구성과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원고투고일: 2016.4.6, 심사수정일: 2016.5.17, 게재확정일: 2016.5.23.]

주제어 : 월남, 남베트남, 사이공, 한국정부, 한국군, 인도주의, 난민,

십자성작전, 75십자성계획, 비전투원소개작전, 상륙함



<ABSTRACT>

# The humanitarian relief activities of the Korean Forces during the period of the South Vietnam's collapse

Lee, Sin-Jae

This study is a research on the humanitarian relief activities of the Korean government around the South Vietnam's collapse period.

At that time, The government of ROK was received request by the South Vietnam government. And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support the policy for South Vietnam. But Korea government policy was limited to purely humanitarian level. These are as follows. First, transferring to South Vietnam of aid goods, second, transport support for the refugees, third, support for withdraw of the Korean residents abroad and embassy.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 policy was performed by the Navy. The Navy had organized squad which was consisted of two landing ship(LST), and the Squad was dispatched for South Vietnam. It was called with a "75 Sipjasung plan" or "Sipjasung operation".

The result of operations, aid goods were delivered safely to South Vietnam, and it arrived 1335 persons including the Korean residents abroad and Vietnamese refugees at Busan port safely.

This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NEO) was the first case of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Forces in Korean history. But related study is not proceed until recent. "Sipjasung operation" have a significance as the first overseas NEO case. In the future it seems to need further study.

Key words: Vietnam, South Vietnam, Saigon, Korea, Korean forces, Humanitarian, Refugee, Sipjasung Operation, 75 Sipjasung Plan,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NEO), Landing Ship Tank

#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총력적 대비의 실태와 과제

박 휘 락\*

- 1. 머리말
- 2 핵전쟁과 총력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3. 북한의 핵능력과 사용 가능성 판단
- 4.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의 실태 평가
- 5. 총력적 대비를 위한 과제
- 6. 맺음말

## 1. 머리말

북한은 현재 상당한 숫자의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이것을 탄도미 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정도로 '소형화·경량화'하였으며, 더욱 강 력한 수소폭탄을 개발하는 데도 성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16년 1월 6일에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2월 7일에는

<sup>\*</sup>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2005년부터 지속해오던 개성공단을 폐쇄하였고, 국제사회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2270호를 통하여 최고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에 돌입하게 되었지만,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공언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은 "핵탄두를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마다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인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증강을 다소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개발해버린 핵무기를 없앨 수는 없다. 그래서 한국은 확장억제 (extended deterrence) 개념에 의하여 미국의 핵무기로 응징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이러한 억제가 실패할 경우도 대비하여 '킬 체인'(kill-chain)과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역량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2020년대 중반이 되어야 어느 정도의 능력을 구비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 그때까지는 무방비 상태로 지내야 한다. 결국 정부와 군대는 물론이고, 국민들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핵능력과 사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현 한국군 방어 노력의 충분성여부를 평가한 다음, 총력전 사상에 근거한 대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배경으로 핵전쟁과 총력전에 관한 이론을 먼저 점검하고, 정부, 군대, 국민들로 구분하여 필요한 과제를 식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sup>1)</sup> 국방부, 『2014 국방백서』, 국방부, 2014, 56-59쪽.

## 2. 핵전쟁과 총력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가. 핵무기에 의한 공격

핵무기는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또는 '절대무기'(absolute weapon)라고 불리듯 재래식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에 약 16kt, 나가사키에는 약 20kt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는데 그 결과 두 개의 도시에서 150,000명에서 246,0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서울은 인구밀도가 커서 동일한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6~10배 정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15kt의 핵무기가 서울에 투하되어 지면에서폭발할 경우 12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한국 국방연구원에서 모의 실험한 자료에서도 20kt급 핵무기가 지면에서 폭발할 경우 24시간 이내 90만 명이 사망할 뿐 아니라, 136만 명이 부상을 당할 것이고 낙진에 의한 추가 피해 또한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4)

핵무기가 이와 같이 대규모 살상을 초래하는 것은 폭탄 자체의 위력이 크기도 하지만, 도시를 공격하여 대규모 인명을 살상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

<sup>2)</sup> 허광무, 「한국인 원폭피해자(原爆被害者)에 대한 제연구와 문제점」, 『한일민족문제연구』, 제6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04, 98쪽.

<sup>3)</sup> Matthew G. McKinzie & Thomas Cochran, "Nuclear Use Scenarios on the Korean Peninsula", *Presentation at th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prepared for the Seminar on International Security Nanjing, China (October 12–15, 2004). at: http://docs.nrdc.org/nuclear/files/nuc\_04101201a\_239.pdf (검색일: 2016.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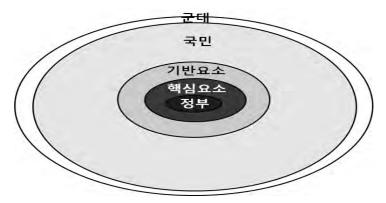
<sup>4)</sup> 김태우, "북한 핵실험과 확대억제 강화의 필요성", 백승주 외, 『한국의 안보와 국 방』, 한국국방연구원, 2010, 319쪽.

하된 핵무기도 도시의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냉전시대부터 미소 양국이 사용해온 '상호확증파괴전략'(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도 서로가 잔존한 핵무기로(제2격) 서로의국민들을 대규모로 살상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입증해보임으로써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억제한다는 개념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와같이 소규모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도 생존성이 높은 잠수함탑재 핵무기로 공격 국가의 1-2개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함으로써 대규모 핵보유국의 핵무기 공격을 억제하는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5)

핵무기에 의한 이러한 공격방식은 현대전 수행에 관한 이론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미 공군대령 출신인 워튼(John Warden, III)은 1995년 발표한 논문을 통하여 (그림 1)처럼 국가의 방어체계가 중요성을 기준으로 5개의 원(five rings)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하면서, 과거에는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서 '군대→국민→기반요소→핵심요소→정부'의 순서대로 격파했지만 현대에는 5개의 원을 동시에 공격하는 병행공격(parallel attack)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승리의 달성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당연히 핵무기는 이러한 병행공격을 위한 가장 위력적인무기이다.

<sup>5)</sup> 핵억제전략에서 최대억제는 상대방이 공격할 경우 최대한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고, 최소억제는 대규모 핵보유국이 공격할 경우 그보다 더욱 큰 피해를 입힐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핵심적인도시나 표적을 공격하여 파괴시키겠다고 위협하고 그에 필요한 보복능력을 보유하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휘락, 「억제이론에 입각한 한국의 대북 핵억제대세 평가와 핵억제전략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53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 152-153쪽; Tom Sauer, Eliminating Nuclear Weapons: The Role of Missile Defense (London: Hurst & Co., 2011), p.9.

<sup>6)</sup> John A. Warden, III, "The Enemy As a System." Airpower Journal, Vol. 9. No. 1(1995), pp.49-55.



〈그림 1〉 5원 모델에 의한 국방의 이해?〉

그렇기 때문에 핵공격은 상대방의 어느 도시에 핵무기를 투하하기만 하면 되는,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 수행된다. 그 투하수단으로 폭격기, 잠수함,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이 활용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편리한 것이 탄도미사일이다. 이것은 속도가 빠르고 탑재중량이 500kg-1,000kg으로 크며,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8) 따라서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즉 '핵미사일'이 현대에는 가장 위협적인무기가 되는 것이다.

### 나. 핵무기 공격에 대한 방어

핵무기는 워낙 대량의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애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즉 억제(deterrence)<sup>9)</sup>가 최선이기 때문에 미국은

<sup>7)</sup> John A. Warden, III, op cit., p.47. 워든은 5원을 동일한 폭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 수가 많고 비중이 큰 요소에 해당되는 원의 면적은 크게 함으로써 차이를 부각시켰다.

<sup>8)</sup>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1.5-7.2km/초로서, 대략 음속의 10배를 초과한다. 윤 기철, 『전구미사일 방어』, 평단문화사, 2000, 146쪽.

<sup>9)</sup> 일반학자들은 deterrence를 억지(抑止)라고 번역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억제(抑制)

최초부터 대량보복전략(Massive Retaliation)을 적용하였고, 나 중에는 '상호확증파괴전략'으로 명명 및 구체화하였다. 소련이 핵무기 공격을 감행할 경우 더욱 엄청난 보복을 각오해야 한다는 점을 확신시킴으로써 자제시킨다는 논리였다.

다만, 억제는 공멸을 각오하거나 비합리적인 적에 대해서는 작용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미국은 억제와 함께 방어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1955년부터 'Nike Zeus'라는 명칭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북극지방 10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소규모 핵탄두를 터뜨려 공격해오고 있는 핵미사일을 격파한다는 개념을 시도하게 되었다.10) 미국은 'Sentinel', 'Safeguard' 등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 구상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핵폭발로 인한 피해가 워낙 크고,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의 개발이 어려우며, 소련과의새로운 군비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1972년 소련과 '대탄도탄 방어(ABM: Anti-Ballistic Missile) 조약'을 체결해서로가 방어조치를 강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오산'(miscalculation)으로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특히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은 '비합리적인 적'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핵 민방위'(civil defense)를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연방비 상관리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의 책임 하에 대피소를 준비하거나 경보체제를 구축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미국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rouge state)들이 10-20kt 규모의 핵무기 공격을 가했을 상황을 가정하여 경보내용을 사전에

로 사용하고 있다. 핵전쟁의 deterrence도 범죄의 deterrence에서 차용된 것으로서 '범죄억제'로 통용되고 있으며, '억지'는 핵과 관련해서만 사용되어 보편성이 적어 서 본 논문에서는 국방부 용법을 채택하였다.

<sup>10)</sup> 윤기철, 앞의 책, 19쪽.

준비해두는 등 필요한 사전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sup>11)</sup> 스위스의 경우에도 1960년대부터 건물마다 대피소를 보유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1990년대에 이미 모든 국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수준을 확보하였고,<sup>12)</sup> 소련은 국방부에 민방위차관을 설치하여 민방위를 독려하였으며, 이를 계승한 러시아도 2014년 비상상황장관(Minister of Emergency Situations)이 대피시설의 수준을 점검하는 등<sup>13)</sup> 민방위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현재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상당한 수준의 대피소를 구축해두고 있다.<sup>14)</sup>

민방위는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들을 온전하게 보호할 수 없고,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은 1983년 '전략적 방어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공격해오는 상대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interception)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부터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sup>15)</sup>가 핵 방어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었다. 미국은 그 동안의 노력을 통하여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30발의 지상배치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게 되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자 2017년까지 14기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여 추진

<sup>11)</sup> Nuclear Detonation Response Communication Working Group, *Nuclear Detonation Preparedness: Communicating in the Immediate Aftermath* (September 2010), p.3.

<sup>12)</sup> Daniele Mariani, "Bunkers for All", swissinfo.ch(July 3, 2009). at: http://www.swissinfo.ch/eng/specials/switzerland\_for\_the\_record/world\_records/Bunkers\_for\_all.html?cid=995134 (검색일: 2015. 3. 2).

<sup>13)</sup> Radio Free Europe, "Russia Checking Its Bomb Shelters", (August 14, 2914). http://www.rferl.org/content/russia-bomb-shelters-inspection/26530750.html(검색일: 2015, 11, 2).

<sup>14)</sup> 각국의 핵 민방위 대비 상황에 대해서는, 박휘락, "핵공격 시 민방위(civil defense)에 대한 비교연구: 북한 핵대비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5권 5호 (2014) 참조.

<sup>15)</sup> 한국에서는 대부분 'MD'라고 말하지만, 이 용어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때 잠 시 쓰였을 뿐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BMD이다.

중에 있다. 또한 해외에 배치된 미군을 보호할 수 있도록 SM-3 해상요격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 지상의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와 패트리어트(PAC-3) 요격미사일들을 개발하여 배치해두고 있다.16) 러시아와 중국도 나름대로의 요격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일본도 나름대로의 BMD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BMD 또한 고도의 기술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상대가 기습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요격의 신뢰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핵무기 공격에 대비하여 억제, 민방위, 요격 등의 다양한 방법이 발전되어오고 있으나, 어느 것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총 력방어 차원에서 국민들까지 나설 수 밖에 없다.

#### 다. 총력전에 관한 이론

'총력전'(總力戰, Total War)이라는 용어 자체는 독일의 루덴도르프(Erich von Ludendorff) 장군이 1935년에 발간한 『총력전론』 (Der Totale Krieg)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7) 이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치열함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였고, 제2차세계대전에서는 전쟁의 총력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핵전쟁은 지금까지의 어떤 전쟁보다 더욱 총력적인 수행이 요구된다.

총력전의 수행과 대비에 관해서는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삼위일체론'(Trinity)이 자주 사용되는데, 그는 국민, 군대, 정부의 삼위일체를 전쟁승리의 요건으로 강조하였다. 18)

<sup>16)</sup> 자세한 사항은 U.S. Missile Defense Agency, The Ballistic Missile System, at: http://www.mda.mil/system/system.html (검색일: 2016. 2. 20).

<sup>17)</sup> 박계호, 『총력전의 이론과 실제』, 북코리아, 2012, 57쪽.

<sup>18)</sup> Carl von Clausewitz, *On War*, ed. and trnas., Michael Howard and Peter Parret, indexed e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4), p.89

이를 활용하여 서머즈(Harry Summers, Jr.)는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은 '국민'의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서 패배하였고, 걸 프전쟁에서는 국민, 군대, 정부 간의 삼위일체를 달성함으로써 승리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19) 당연히 핵전쟁에서도 승리하려면 삼위일체가 보장되어야 한다.

삼위일체를 위하여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의 위협을 식별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조치들을 계획 및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의수반이 총사령관(Commander-in-Chief)의 직책을 겸하여 전쟁의대비와 수행,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확보, 전후의 평화 구축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sup>20)</sup> 핵위협에 대해서도 정부는 핵위협의실체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억제 및 방어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치들을 개발 및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군대'는 국가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특별히 육성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공식적인 강제력으로서, 평시에는 그의 사용 위협(threat)으로 영향을 끼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실제로 싸워 국가의 정책이 구현되도록 한다. <sup>21)</sup> 다만, 현대의 핵무기는 군대를 통과하지 않은 채 후방의 국민들을 직접 공격할 수 있고, 이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재래식 전쟁에 비해 군대의 역할이 감소될 개연성이 높다.

<sup>19)</sup> Harry G. Summers, Jr., On Strategy: The Vietnam War in Context, 민평식역, 『미국의 월남전 전략』, 병학사, 1983; Harry G. Summers, Jr., On Strategy II: A Critical Analysis of the Gulf War, 권재상·김종민역, 『미국의 걸프전 전략』, 자작아카데미, 1995.

<sup>20)</sup> Joseph G. Dawson III, Commander in Chief: Presidential Leadership in Modern War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3), p.ix.

<sup>21)</sup> Klaus Knorr, *Military Power and Potential* (Lexington: D.C. Health and Company, 1970), p.3.

대신 핵무기는 '국민'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핵무기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격해오기 때문이다. 핵전쟁은 워낙 심각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에 어느 정도로 대비할 수 있고, 유사시에 얼마나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가는 국가사회의 일체 감과 정치적 의지, 즉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22) 국민은 핵공격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대상이기 때문에 스스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존에 노력해야 한다.

## 3. 북한의 핵능력과 사용 가능성 판단

## 가. 북한의 핵능력

북한은 2006년 10월 제1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후에, 2009년 5월 실시했던 제2차 핵실험에서 기대했던 위력을 달성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2013년 2월 실시한 제3차 핵실험에서 6-7kt의 폭발위력을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형화·경량화 된원자탄을 사용'했고, '다종화(多種化)된 핵 억제력' 즉, 우라늄을 통한 핵무기 개발의 성공도 암시하였다. <sup>23</sup>) 나아가 북한은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소형화된 '수소탄' 사용, 즉 수소폭탄의 개발에도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원자폭탄에서 수소폭탄으로 이행해 나가는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증폭핵분열 탄(bosted fission bomb)의 개발에 성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sup>24</sup>)

<sup>22)</sup> Michael Howard, "The Forgotten Dimensions of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57, No. 5 (Summer, 1979), p.983.

<sup>23) 『</sup>조선일보』(2013. 2. 13), A1쪽.

<sup>24)</sup> 김귀근, "북 '수소탄'실험 '증폭핵분열탄' 가능성", 『연합뉴스』(2016년 1월 6일).

북한이 1985년부터 가동하다가 6자회담 합의에 의하여 2007년 중단한 영변에 위치한 원자로에서 그동안 추출 가능한 최대한의 플 루토늄 양을 계산하면 플루토늄 핵무기를 어느 정도 만들었을지 계 산할 수 있다. 국방부에 의하면 그 동안 북한은 약 '40여 kg'의 플 루토늄을 추출하였는데.25) 그렇다면 10기를 초과하기는 어렵다.26) 다만 북한은 2010년 해커를 비롯한 미국의 과학자들에게 우라늄 농축 공장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추가적인 비밀 우라늄 농축 공 장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시설을 통하여 북한이 천연상태의 우라늄에서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U235의 순도를 높 이는 작업을 지속하였을 경우 우라늄 핵무기 개발에도 성공하였을 수 있다. 27) 제3차 핵실험에서 이미 북한은 '다종화'라는 용어를 사 용함으로써 그의 개발을 주장하였고, 사실 농축우라뉴만 확보되면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핵무기 제조가 가능할 만큼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박사는 2015 년 1월 현재 북한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핵무기로 10-16개를 보유 하고 있고. 2020년에는 최대 100개까지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전망 하였다. 28)

핵무기 공격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의 직경보다 작게(소형화), 탑재중량보다 가볍게(경량화) 만들어야 한다. 이미 북한은 제3차 핵실험 후 이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였고. 5대

<sup>25)</sup> 국방부, 앞의 책, 28쪽.

<sup>26)</sup> Hans M. Kristensen and Robert S. Norris. "Worldwide deployments of nuclear weapons 2014",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70–5(2014), p.97.

<sup>27)</sup> 국방부, 앞의 책, 28쪽.

<sup>28)</sup> David Albright, "Future Directions in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Three Scenarios for 2020", North Korea's Nuclear Futures Series (U.S.-Korea Institute at SAIS, 2015), pp.19–30.

공식적 핵보유국 중 최근에 개발한 프랑스와 중국이 핵실험 성공후 2년 만에 소형화를 달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 2014년에 이미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스캐퍼로티(Curtis M. Scaparrotti) 대장은 북한이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고,<sup>29)</sup> 한국 국방부에서도 그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다.<sup>30)</sup>

북한은 스커드-B와 스커드-C를 합하여 200~600기 이상 운영 중이고, 노동 미사일을 90~200기 정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여기에서 탑재중량만 살펴볼 경우 스커드-B는 1t, 스커드-C는 0.7t, 노동미사일이 0.7t, 무수단미사일이 0.6t이라고 하기때문에,32) 1t까지만 줄이면 스커드-B에 탑재해도 수도권을 바로타격할 수 있고, 0.7t까지 줄이면 스커드-C나 노동미사일에 탑재하여 한국의 대부분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은 이동하면서도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를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어33) 언제 어디서든 기습적인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4월 23일 시험발사를 실시한 후 '역사적 성공'이었다고 평가하였듯이34)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시험평가도 지속하고 있다. 2012년 12월과 2016년 2월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에도 성공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대륙간탄도탄(ICBM)을 통한 핵무기 발사능력을 구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up>29) 『</sup>연합뉴스』(2014. 10. 25).

<sup>30)</sup> 국방부, 앞의 책, 28쪽.

<sup>31)</sup> 장철운, "남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전력 비교: 효용성 및 대응. 방어 능력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9권 1호(2015), pp.131-132.

<sup>32)</sup> 국방부(2014), 앞의 책, 241쪽.

<sup>33)</sup>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DoD, 2013), p.15.

<sup>34)</sup> 채병건 외, "국방부 "북, SLBM 기술 진전 … 3~4년 내 실전배치", 『중앙일보』 (2016년 4월 25일), p.8.

## 나.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핵무기는 워낙 치명적이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도 사용을 결심하기는 십지 않다. 미국이 응징보복을 가하면 북한정권이 붕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북한의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인류가 수행한 전쟁들의 대부분들이 합리적인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비합리적인 판단, 즉 정책결정자들의 '오인식'(misperception)에 의하여발발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듯이,35) 그리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핵대피소 구축을 강조하면서 적의 '오산'에 의한 핵전쟁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듯이36)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개연성을 고려하지않을 수는 없다.

우선,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재래식 군비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군사전략을 구상해야 할 당위성은 낮지 않다. 37) "북한과 같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핵 무장된 국가는 교착상태를 만들고 처참한 군사적 패배를 막기 위해 재래식 전쟁에서 강압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해야할 압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38) 실제로 미국은 6.25전쟁에서 중국군이 참공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핵무기를 사용해 중국군의

<sup>35)</sup> John Stoessinger, Why Nations Go to War, 11th ed. (Boston: Wadsworth Cengage Learning, 2011). misperception의 경우 오인(誤認)으로도 번역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A라는 사람이나 사물을 B로 착각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의미 차이가 있어서 생소하지만 '오인식'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sup>36)</sup> Homeland Security National Preparedness Task Force, Civil Defense and Homeland Security: A short History of National Preparedness Effort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ep 2006), p.12.

<sup>37)</sup> 홍우택,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3-09, 통일연구원, 2013, 18-19쪽.

<sup>38)</sup> Daryl G Press, 「북한 핵무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략연구』, 제58호, 한 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64-65쪽.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39) 앞으로 북한이 노력하여 100개 정도로 핵무기를 증강하는 데 성공하였을 경우 북한은 미국의 핵 응징보복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핵무기를 '먼저 사용'(first use)하여 한반도를 조기에 석권하려는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0)

참고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해보면, 어 떤 정치적 · 경제적 양보를 요구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수 있 고. 국지도발 후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 한국의 보복을 차단할 수도 있으며. 핵무기를 수단으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추진할 수도 있 다. 혹은 미국에 대하여 직접적인 핵공격을 감행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고, 제한 및 전면전 공격을 감행하면서 반격 시 핵무기를 사 용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으며, 특정 도시에 대한 핵무기 공격으 로 그들의 위협이 공허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수도 있다. 41) 또 한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이 이라크의 지도자였던 후세인 (Saddam Hussein)의 사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참수작전 (decapitation operations)을 실시하였듯이. 그리고 2016년 2월에 이에 관련된 미군 특수부대의 한국 파견 및 훈련사실을 공개하였듯 이 42) 북한도 한국의 정치지도자 또는 지도부를 일거에 붕괴시키 고자 특정지역에 핵무기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그리고 핵무기 사 용으로 위협하다가 한국이 제대로 수용하지 않거나 상황이 예상 외 로 악화되어 핵무기가 사용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sup>39)</sup> Stephen Peter Rosen, "Trends in the Charter of Land Warfare", 제1회 육군력 포럼 발표자료 (2015년 11월 20일), p.23.

<sup>40)</sup> Joel S. Wit and Sun Young Ahn, *North Korea's Nuclear Futures: Technology and Strategy,* North Korea's Nuclear Future Series, U.S.-Korea Institute at SAIS (2015), pp.29–30.

<sup>41)</sup> 권태영 외(2014), 앞의 책, 190-198쪽.

<sup>42)</sup> 전현석, "'참수작전' 美특수부대 한국 왔다", 『조선일보』(2016, 02, 04), A1쪽,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동기는 다양할 수 있고, 국가와 군대가 존 재하는 본연의 임무는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고 있 다. 2014년 11월 유엔에서 대북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자 북한은 "핵전쟁이 터지면 청와대는 안전하겠나."라고 협박한 적이 있고.43) 김정은은 2016년 3월 "현재 배치되어 있는 핵무기를 임의의 순간 에 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고 강조하기도 하였다.44) 북한이 2013년 4월 1일 채택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제5조에서는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 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 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45)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적대적인 핵 보유국'인 미국과 그에 '야합'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7차 당대회에서 동일한 맥락으로 "침략 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였지 만. 외신들 대부분이 그 진의를 믿지 않듯이46) 이것은 오히려 자 주권을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선언으로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sup>43)</sup> 최재혁, "北 '핵전쟁 터지면 청와대 안전하겠나' 협박", 『조선일보』(2014년 11월 24일), A1쪽.

<sup>44)</sup> 임은진, "北김정은 '핵탄두,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준비해야", 『연합뉴스』 (2016년 3월 4일).

<sup>45)</sup> 권태영 외,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서울: 북코리아, 2014), 196쪽.

<sup>46)</sup> 한미희 외, "외신, 김정은 '핵 선제공격 안 한다' 진의에 의문(종합3보)", 『연합뉴 스』 (2016년 5월 9일).

## 4.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의 실태 평가

#### 가. 정부

지금까지 북한 핵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책은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비핵화와 한미동맹에 근거한 억제였다. 외교적 비핵화의 경 우 최초에는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협상에 기대하였지만, 그것이 실패하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북한으로 '6자회담'을 구 성하였다.

즉, 1994년 10월 카터(Jimmy Carter) 전 미국 대통령이 중재하여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대신에 미국은 그동안의 전력생산을 위한 중유를 제공하면서 앞으로의 전력생산을 위한 2기의 발전소를 지어주는 것"이었다. 47) 그러나 2002년 10월 미국의 협상대표가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북한의 고위인사가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하여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고, 이로써 중유 공급은 물론발전소 건설공사도 중단되었으며, 미북 간의 제네바 합의는 붕괴되었다. 다만, 2003년부터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이 시작되어 2005년 9월 '919 공동성명'에 합의하였고, 이로써 미국이 북한의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북한은 현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뿐만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로 복귀하기로 하였다. 48) 그러나 북한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채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6자회담도 형식화

<sup>47)</sup> 조성렬, 「북핵문제 외교적 해법의 실패원인과 시사점: 6자회담의 재평가와 재개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19권 2호 통권 제37호, 고려대학교 일민국 제관계연구원, 2014, 75쪽.

<sup>48)</sup> 앞의 논문, 78쪽.

되고 말았다.

현재 한국 정부가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약속하는 '확장 억제'가 약속대로 이행되도록 필요한 보장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확장억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한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대신 하여 응징보복한다는 개념으로서 냉전시대부터 미국이 나토를 비롯 한 동맹국들에게 약속하던 사항이다. 이러한 확장억제 개념에 기초 하여 한·미 양국군은 2013년부터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이라는 개념으로 북한 핵무기의 위협단계. 사 용임박단계. 사용단계로 나누어 다양한 정치적. 군사적인 조치들을 개발해왔다. 그리고 2015년 4월 기존의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를 '한 · 미 억제전략위원회'(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로 개편 하였고, 최근에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4D 전략'(Detect. Disrupt. Destroy, Defend: 탐지, 교란, 파괴, 방어)으로 더욱 구체화하여 작 전계획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49)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실 제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연 미국이 약속한대로 핵 응징 보복을 실 시할 것인지의 여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확장억제는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는 시늉 만 하면서 협상을 통해 교착상태로 환원시키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50)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채택해온 정책의 방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통합된 노력에 의존하는 것이었고, 한국의 능력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식별 및 강구하는 자구적인 노력은 미흡하였다. 예를 들면, 2014년 7월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하였으나 '국가안보

<sup>49)</sup> 양승식, "北 이동발사대 선제 타격, 韓美 '통합대응책' 만든다", 『조선일보』(2015 년 4월 17일), A8쪽.

<sup>50)</sup> Daryl G. Press, 앞의 글, 74쪽.

전략 기조'라고 하여 "튼튼한 안보대세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신뢰외교 전개"라는 3가지 내용만 제시하고 있을 뿐 북한의 핵위협에 관해서는 '북한 WMD 대응능력 확보'라는 제목 하에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기대나 군사적 대비조치를 열거하는 데 그치고 있다.51)

#### 나. 군대

한국군은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연합 핵억제태세에 의존하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방어책도 강구하고 있다. 그것은 서론에서 언급한 킬 체인과 KAMD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2020년대 중반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52

킬 체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데 대한 '명백한 징후'가 발견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타격하겠다."는 입장에 근거하여 발전된 개념으로서,53) "적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표적 위치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타격수 단으로 결심한 후 타격하는 일련의 공격체계"라고 정의되어 있다.54)30분 이내에 북한 핵미사일 발사를 '탐지 → 식별 → 결심 →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다는 것이다.55)다만, 타격능력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2개 대대인 F-15전투기와 다양한 정밀유도무기(PGM: Precision Guided Munition)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구비된 편이지만, '탐지 → 식별 → 결심'을 위한 정보 및 지휘통제

<sup>51)</sup>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전략』, 국가안보실, 2014, 17쪽, 45-46쪽.

<sup>52)</sup> 국방부(2014), 앞의 책, 59쪽,

<sup>53) 『</sup>조선일보』(2013. 2. 7), A1쪽.

<sup>54)</sup> 국방부(2014), 앞의 책, 58쪽.

<sup>55)</sup> 권혁철, 「북 핵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킬 체인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신안보 연구』, vol., no.178, 2013, 38쪽.

역량은 매우 미흡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금방 개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군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Global Hawk)를 도입하고, 지대지미사일의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첨단의 공대지유도탄을 확보하여 전투기에서 원거리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다는 구상을하고 있지만,56) 글로벌 호크의 경우 획득이 계속 지체되어 왔을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북한의 모든 이동미사일 발사대를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위와 같은 선제타격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군이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은 공격해오는 북한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 안인 탄도미사일 방어, 즉 BMD이다. 한국은 2003년부터 KAMD라 는 명칭으로 독자적인 BMD를 구축해오고 있으나, 일부 지식인들 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미국 MD 참여"라면서 미국과의 협력 소 지가 있는 무기체계의 획득을 반대함에 따라57) 한국은 하층방어 (lower-tier defense)만 추진하게 되었고. 이것은 다층방어 (multi-layered defense)를 기본으로 하는 정상적인 BMD 개념에 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나마도 한국은 공격해오는 적 미사 일의 몸체를 직접 가격하여 파괴시키는 '직격파괴'(hit-to-kill) 능 력이 없는 PAC-2 요격미사일만 구비하고 있어 요격 자체가 어렵 다. 2012년 이스라엘로부터 그린파인(Green Pine) 레이더를 구입 하였고. 작전통제소도 구축하였으며. PAC-2 미사일을 직격파괴 능력이 있는 PAC-3로 개량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아직은 북한 의 핵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한국군은 2020년 중반까지 중거리 및 장거리 지상 요격

<sup>56)</sup> 국방부(2014), 앞의 책, 58쪽.

<sup>57)</sup> 정욱식, 『미사일 방어체제(MD)』, 살림, 2003.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중첩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58) 개발의 성공 여부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은 PAC-2와 PAC-3 하층방어체계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미군이 상층방어체계인 THAAD 요격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경우 방어태세가 다소 향상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 다. 국민

재래식 민방위의 경우 한국은 1975년에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면서 민방위 훈련이나 업무가 축소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20세에서 40세까지의 대부분 남성이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370만 명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최대 30시간에 이르렀던 훈련시간이 4시간으로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연 12회에서 8회로 줄기는 하였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공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민방위과가 편성되어 이러한 사항들을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핵 민방위의 경우 개념상으로는 현 민방위 활동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실천되고 있지는 않다.<sup>59)</sup> 2006년 10월 북한이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국회에서 지하 핵 대피 시설의 의무화에대한 법률안이 상정된 적이 있으나,<sup>60)</sup> 통과되지 못하였고, 이후에는

<sup>58)</sup> 국방부(2014), 앞의 책, 59쪽.

<sup>59) 2012</sup>년 실시된 민방위 훈련의 월별 및 훈련별 중점을 보면, 철도, 댐, 선박, 지하철의 사고, 유해물질 유출 등 사고의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었고, 핵무기에 관한 사항은 한번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립방재연구원, 『민방위실태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기획연구를 중심으로』, 국립방재연구원, 2012, 46쪽.

<sup>60)</sup>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하 핵 대피시설 구축 방안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2008, 1쪽.

그러한 시도조차 거론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현재 필요에 비해 221%의 민방위 대피시설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61) 수용인원이나 환기 등 내부시설의 세부적 기준에 있어서 핵 대피는 물론이고 재래식 전쟁에 대한 대피시설로 사용하기에도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고, 그 중에서도 상당수는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62)

## 5. 총력적 대비를 위한 과제

한국의 경우 북한의 핵위협은 점점 심각해집에 반해 정부 차원의 비상한 조치나 국민들의 대비는 그에 부합되는 정도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핵위협 대응은 성격상 정부, 군대, 국민의 삼위일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총력적 대비를 지체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 군대, 국민별로 노력해야 할 몇 가지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가. 정부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이면서 체계적인 외교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듯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유엔의 경제제재안 2270호에 대한 적극적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북한을

<sup>61)</sup> 정수성, 『2011 국정감사 자료집 II: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 방안』, 정수성 국회의 원실, 2011년 9월 20일, 6쪽.

<sup>62)</sup> 국내의 대표적인 민방위 대피시설에 관한 설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하 핵 대피시설 구축 방안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8, 35-46쪽 참조.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비핵화의 협상테이블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제시하더라도 각국이 현혹되지 않도록 북한의 진의를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할 경우 유엔헌장 제42조에 근거하여부분적인 군사적 조치도 포함되는 더욱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유엔에 제안할 필요도 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면 전환을 위한 북한의 대화제의에 말려들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가 있다. 비록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줄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금은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 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 지도부에 유입될 수 있는 어 떠한 경제협력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북정책에 대하여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일관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의 경우 북한의 동의 없이 개최될 수가 없고, 천신만고 끝에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파기해버리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한국, 미국, 일본 등 동맹 및 우방국들 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3개국의 외교관들이 수시로 만나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듯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가동되었던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을 재가동시키는 문제도 검토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3개국 간의 상설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간의 더욱 긴밀한 안보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과거사 문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들에게 북핵 대응을 위한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2년 서명 직전에 취소된 군사비밀

보호협정을 재추진할 필요도 있다.

한국은 미국과 확장억제의 이행에 필요한 의사결정의 과정과 세부적인 절차들을 평시부터 발전시키고 필요한 합의를 명시하는 등한미동맹 공약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연합사령관의 책임의식을 강조함으로써 유사시 확장억제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된 이후 2번이나 연기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북한핵위협이 해결될 때까지 논의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필요도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핵억제 및 방어를 위하여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미군의 경비를 적극적으로 분담한다는 정책도 표방해야할 것이다. 동시에 미 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요청하거나, 나토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미 양국군이 함께 응징보복 계획을 작성하거나, 미국의 핵무기 중에서 대 북한용을 별도로 할당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거나 유사시 방어하는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모든 관련부처의 노력을 통합 및 조정하여야할 것이다. 경제에 대한 고려가 핵 대응태세에 지나치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핵위협의 심각성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한다. 현재의 청와대 안보실을 '북핵대응실'로 전환시킴으로써 북핵대응을 위한 국가의 모든 노력을 총괄하도록 하고, 국정원에는 북핵 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해야 한다. 북핵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억제 및 방어 전략을 발전 및 구현해 나가고, 군에게 필요한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지도 및 감독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낮은 수준에서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억제전략은 유인책과 조화를 이룰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적 해결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핵개발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경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실천함으로써 우호적인 남북관계가 상호간에 이익이 됨을 인식시키고, 그로 인하여 북한이 군사적 도발보다는 남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쪽을 선호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63) 그리고 남북한 간에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이나 작은 규모의 군사적 충돌이 불필요하게 악화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보장하고,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MB: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를 합의 및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64) 불필요한 언사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일보다는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 상생, 공영 등을 강조함으로써 남북 화해협력을 향한 한국의 진심이 북한에게 전달되어 호응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나. 군대

한국군은 군사 분야에서 국가의 핵억제 및 방어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의 구현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실천해나가야할 것이다. 국방부 및 합참은 북한의 핵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부터 개편하고, 업무의 우선순위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며, 간부들의 연구 및 논의주제도 핵 대응 위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재래식 전면전이나 국지도발 등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핵위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가용한 모든 노력과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더라도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태세를 조기에 구비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미군의 것을 학습하여 적용하고자 했던 능력기반

<sup>63)</sup> 정재욱, 「북한의 군사도발과 '적극적 억지전략'의 구현 방향」, 『국제정치논총』, 제 52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151-152쪽.

<sup>64)</sup> 박휘락, 「한국의 북핵정책 분석과 과제: 위협과 대응의 일치성을 중심으로」, 『국 가정책연구』, 제29권 1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5, 155-156쪽.

국방기획(capabilities-based planning)에서 벗어나 위협기반 국방기획(threat-based planning)을 적용함으로써 북핵 위협 대응에 필요한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증강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위협에 모두 대비할 여력이 없고, 북한의 핵위협은 너무나 엄중해졌으며, 사용할 수 있는 국방재원조차 제한되었다는 것이 현실이기때문이다. 오로지 북한 핵위협 대응을 위한 시급성과 효과 측면에서 전력증강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동안자주성 차원에서 미군의 첨단 전력을 한국군의 자산으로 대체하고자 노력해왔으나, 북핵 위협 대응의 긴박성으로 인하여 한미연합전력의 분업체제를 다시 적용하여 전력증강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필요도 있다. 북한의 핵 대응 차원에서 미군어 즉각적으로 지원하기어렵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증강해 나감으로써 단기간에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한미연합 핵 대응력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미연합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개념 구현을 위한 협력에 최선을 다하되, 최소억제 차원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를 제거(de-capitation)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지하 벙커를 공격할 수 있는 특수탄을 확보하는 등 능력을 과시할 수 있어야 한다. (65) 북한 지도부야말로 북한의 중심 (center of gravity)일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수뇌부 제거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를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구비할 경우 억제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산출될 수 있다. (66) 나아가 이러한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 이외에 북한이 공격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태세. 즉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sup>65)</sup> 박휘락, 「핵억제이론에 입각한 한국의 대북 핵억제태세 평가와 핵억제전략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53권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년, 171쪽.

<sup>66)</sup> 정재욱, 앞의 논문, 148쪽.

denial) 태세도 강화함으로써 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상당한 방어능력을 구비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로 공격하더라도 성공하지도 못하고 보복만 받을 것으로 판단하여 공격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67)

억제가 실패할 경우 국가지도부에서 선제타격을 실시하도록 지시 할 수 있는데. 한국군은 이러할 때 100%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 인 선제타격 능력을 구비하고. 사전 연습 등 필요한 준비조치를 최 대한 강구해야 한다. 특히 유사시 공격해야 할 표적들을 모두 식별 해두고. 각 표적들의 특성과 그에 대한 공격방법을 연구해둘 필요 가 있다. 지시가 하달될 경우 편성할 항공기와 무장을 사전에 정해 두고, 방공망을 회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타격 이 종료된 이후 귀환경로는 물론이고, 세부적인 모든 사항들을 사 전에 생각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 둔 다음, 계획대로 연습 하여 성공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계획을 계속 수정하여 현실성을 보강함으로써 확실한 성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68) 적의 공격 지후를 포착한 후 적이 발사하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에 성공해야 한다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의 한계를 감안하여 그보다 더 욱 앞서서 타격하여 파괴해버리는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의 개념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국가수뇌부에서 이를 결심할 경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당연히 한국군은 효과적인 BMD 체제를 서둘러 구축하고자 노력 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한미 또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sup>67)</sup> 군의 거부적 억제 역할에 대해서는 박휘락, 「북한핵에 대한 한국 억제전략의 분석: '거부적 억제' 개념에 의한 방어노력의 재조명」, 『국제정치논총』, 제55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5, 293-319쪽.

<sup>68)</sup> 구체적 타격 및 귀환의 방법은 박휘락·김병기, 「북한 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와 과제 분석」, 『국제관계연구』, 제17권 제2호,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2, 97쪽.

한국이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능력을 한미 양국과의 협조로 보완시킬 필요가 있고, 하층방어용의 PAC-3 요격미사일을 긴급하게 추가 구매하여 주요 도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근접한 서울에서도 2회의 요격이 가능하도록 중층방어 (middle-tier defense) 개념을 설정하여 현재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대공미사일로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중부 이남의 도시에 관해서는 상층방어(upper-tier defense)를 위한 THAAD를 도입하여역시 2번의 요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 상황과 여건에서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해상요격미사일인 SM-3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다. 국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정부와 군대의 정책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북한 핵위협의 실상과 대응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현실적이면서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와 군대에게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정부가 최우선 안보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69)를 보장할 수 있는 핵억제 및 방어 전략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군에게도 실질적인 선제타격과 BMD 역량을 구비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한미 간의 BMD 협력을 방해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의 선동에 현혹되지 않아야할 것이고, 중국과 일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을 가짐으로써 국가정책이 국민감정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정부와 군대에서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과 같은 위험한 대안도검토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의지와

<sup>69)</sup> 국가안보실, 앞의 책, 15쪽.

태도를 과시할 필요성도 있다.

국민들은 핵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최악의 생각을 바탕에 두고 그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강구함과 동시에 정부와 군대의 적극적인 지침과 지원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핵 공격용 사이렌이나 문자 등을 비롯하여 핵 공격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경보체제 구축, 유사시를 대비한 최소한의 대피소(shelter) 구축 및 지정, 그러한 대피소나 핵공격이 없는 지역으로의 소개(疏開, evacuation)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할 것이다. 현재 재래식 전쟁 위주로시행되고 있는 민방위 훈련에 핵공격 상황을 포함시킴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발굴하여 시정하도록 요청하고, 표준적인 대피소를 구축하여 체험훈련을 실시하거나 세부적인 행동요령을 개발하여 제시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공격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강구하고자 할 경우 정부-군대-민간 간의 협치(協治, governance) 개념도 발전 및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들간의 협조와 일체된 행동은 필요한 제반 조치의 실천력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정부는 핵 대피에 관한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군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대피시설 및 대피요령을 구비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국민들은 재원의 분담, 자치조직의 활성화,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고취 등을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협치기구를 통해 주기적으로협의, 점검함으로써 전체적인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중앙 및 지역 방위협의회를이러한 목적으로 확대시키거나 전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실질적인 조치로서 정부 - 군대 - 국민들은 협치기구를 중심

으로 기존의 시설 중에서 최소한의 노력만 투입할 경우 효과적인 대피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선별하고. 이들에 대하여 필 요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강구해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주 요도시별로 발달되어 있는 지하철역이나 선로에 공기를 여과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다수의 인원이 일정 기간 동안 고립되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식수, 식량, 침구, 용변 및 위생에 관한 조치 를 사전에 강구해둘 수 있다. 도심지의 고층빌딩. 상가의 지하시설 이나 주차장.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등도 노출된 벽면이나 입 구를 보강하고. 일정량의 식수와 식량. 생활용품 등을 사전에 준비 해둘 수도 있다. 앞으로 빌딩을 짓거나 집을 지을 경우 핵 대피를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을 추가할 수도 있다. 서울 소재 고급빌라인 '트라움 하우스'가 스위스의 핵 대피 기준에 근거하여 대피호를 만 들어 대비하고 있듯이 70) 이미 일부 국민들은 스스로 필요한 조치 를 개발 및 실천해 나가는 것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각자 가 자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개발 및 실천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 요한 조치이다 71)

나아가 국민들은 북한의 핵무기 공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 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상식을 구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응급처치 에 관한 상식이 생명을 구하듯이 핵 생존에 관한 상식을 국민들이 숙지하고 있을 경우 생존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국민들은 스스로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자 노력하고. 협치기구 에서는 필요한 자료들을 국민들에게 전파 및 학습시킬 필요가

<sup>70)</sup> 트라움하우스 홈페이에서는 "최고수준의 안전시스템"이라면서 "철벽 수준의 방공호 설치"라고 자랑하면서 설명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at: http://www.traumhaus.co.kr/sub\_traum\_02.asp (검색일: 2016. 2. 25).

<sup>71)</sup> 핵폭발 시 생존 책에 관해서는 박휘락,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대피 조치의 필요성과 과제.. 『군사논단』, 79호, 한국군사학회, 2014, 116-138쪽.

있다. 또한 국민들은 대피소와 같은 좁은 공간에서도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규칙을 평소부터 숙지할 필요가 있고, 대피소 단위별로 통제책임자와 구역별 책임자도 임명할수 있도록 하며, 유사시 주민들이 지시에 철저히 따르도록 필요한 규칙을 미리 제정해둘 필요가 있다. 국민 모두가 이와 같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보일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 6. 맺음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였다는 것은 기존의 군사력에서 조금 더 강해진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를 북한이 보유하게 됨으로써 남북한 간의 군사력 균형이 전혀 다르게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1941년 12월부터 1945년 8월까지 근 4년을 싸우고도 승리하지 못하였던 태평양 전쟁이 핵무기2발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 그의 실증적 사례이다. 그렇기 때문에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군사력증강 및 전쟁대비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핵위협의 성격 상 군대만의 대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군대,국민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확고한 대비태세를 구비해 나가야 한다.

삼위일체의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외교적 노력을 통한 비핵화에 진력하되, 미국의 확장억제가 약속대로 이행되도록 다양한 보장 장치를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핵 억제 및 방어를 위한 국가 수준의 전략개념을 정립해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군대 및 국민들의 필요한 노력을 지도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제부터 정부의 모든 업무는 북한의 핵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노력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군대는 북한의 핵 대응을 위한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되, 현재 노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명백할 경우 이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 능력을 구비하고, 그것이 실패할 경우 공격해오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KAMD' 능력을 최단시간 내에 충분한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동시에 '4D 전략'에서 보듯 미군과 연합으로 군사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최소억제를 위하여 유사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수뇌부들을 제거하겠다는 참수작전의 계획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역량을확보해 나가야 한다. 군대의 모든 중점을 재래식 대비에서 핵 대비로 전환해야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도 북한의 핵 대응 및 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핵무기는 국민들을 향하여 공격해올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하다는 점을 냉 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정부와 군대에게 필요한 억제 및 방어조치 를 강구하도록 촉구하여야하고, 스스로도 정부와 군대의 노력을 다 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은 가용한 범위 내 에서 핵무기 공격을 받더라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 구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결연한 의지를 행동으 로 결집해 나갈 때 이것이 전달되어 북한도 핵무기 사용을 쉽게 결 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을 국민들은 없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회피한다고 하여 없어지지 않는다. 총력적 차원에서 대비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무기는 국민의 대규모 살상은 물론 국토를 불모지대로 만들어 민족의 역사를 중단시킬 수 도 있다. 정부, 군대, 국민의 진정한 삼위일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국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각오를 할 때 가능할 것 이다.

[원고투고일: 2016.4.3, 심사수정일: 2016.5.20, 게재확정일: 2016.5.23.]

주제어 : 북핵, 북한핵, 핵위협, 핵대응, 삼위일체, 총력전

<ABSTRACT>

## An Analysis on the Current Preparedness and Necessary Task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ddress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ased on Total War Theories

Park, Hwee-Rhak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se the unique nature of a nuclear threat compared to a conventional one and recommend right approaches based on the analysis. It concludes that nuclear weapons targets the people directly,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warfare. It also concludes that the nuclear threat cannot be defended by the military alone and needs the systematic division of labors among the people,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based on Clausewitz's "Trinity" theory.

As recommendations, South Korean government, the military and the people of the country should achieve the trinity regarding their preparedness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engage in various diplomatic efforts to compel North Korea to return to the negotiation table for the denuclearization and make the comprehensive deterrence and defense strategy to protect its people from the worst case scenario.

The South Korean military needs to change its organizations, priorities among various tasks and budget demands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ective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t should expedite the construction of its capabilities for the Kill Chain and KAMD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It needs to ensure the reliable combined nuclear defense posture as soon as possible by using the division of labor concept with the U.S. military. The South Korean military should focus on building up the capabilities that the U.S. military may not be able to provide, while depending on the U.S.'s extended deterrence.

South Korean people should understand the serious nature of curren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demand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to provide necessary defense measures for them. Furthermore, they should try to implement necessary civil defense measures to survive even the nuclear attack.

Key words: North Korea, North Korean nuclear weapon, nuclear threat, trinity, total war, nuclear preparedness



#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군사적 천재'의 의미

임 익 순\*

- 1. 머리말
- 2. 전쟁 연구에 대한 시대적 영향과 관점
- 3. 군사적 천재의 정신적 특성
- 4. 군사적 천재의 의미
- 5. 맺음말

## 1 머리말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전쟁에 관한 언어의 마술사다. 그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거나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여 그만의 현란하면서도 고유한 언어로 전쟁을 논하였다. 그는 전쟁이라는 현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조합하여 만든 새로운 용어나 군사적으로 재해석한 용어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적대감정과 적대의도'(feindseligen

<sup>\*</sup> 육군교육사령부 군교수

gefühl und feindseligen absicht), '절대전쟁과 현실전쟁' (absoluter und wirklicher krieg), '경이로운 삼위일체' (wunderliche dreifaltigkeit), '우연'(zufall), '마찰'(friktion), '전쟁의 목적과 수단'(zweck und mittel im kriege), '군사적 천재'(kriegerische genius), '중심'(重心, centra gravitatis, schwerpunkt), '한계정점'(kulminationspunkt)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클라우제비츠 자신의 전쟁 경험과 전쟁 역사에 대한 분석, 전쟁을 지휘한 뛰어난 군인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전쟁이라는 주제에 천착(穿鑿)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물이다. 이 용어들은 하나하나가 전쟁을 구성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모든 개념들이 가치 있는 연구 대상이지만 필자는 그 중에서도 '군사적 천재'²)와 관련이 있는 몇 가지의 개념에 주목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에 대해 고찰한 『전쟁론』 1편에서 '전쟁이란 무엇인가?'와 '전쟁의 목적과 수단'에 이어 세 번째 주제로 '군사적 천재'를 논하였다. 그는 먼저 '전쟁이란 무엇인가?'에서 전쟁이라는 현상을 끝까지 분석한 뒤 이론적 연구를 위한 본질적인 출발점으로서 전쟁을 두 사람 간의 대결로부터 '확대된 양자 간의 결투'3〕로 보았다. 이어서 그는 전쟁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

<sup>1)</sup> 클라우제비츠 저, 류제승 역, 『전쟁론』, 서울; 책세상, 2008; 클라우제비츠 홈페이지, http://www.clausewitz.com/index.htm, Text, Vom Krieg(ed. Werner Hahlweg, 1991)에서 필자 임의로 선정하였음. 앞으로 이 논문의 분석을 위한 주 텍스트는 류제승의 번역본과 클라우제비츠 홈페이지의 독일어 원문이며, Peter Paret과 Michael Howard가 번역한 『On War』를 참조할 것임. Peter Paret & Michael Howard, On War,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76.

<sup>2) &#</sup>x27;군사적 천재'는 '전쟁 천재'로 번역되기도 한다. 클라우제비츠는 'Der kriegerische Genius'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군사적 천재'라는 번역은 Paret의 영어번역인 'Military Genius'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kriegerische'를 전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현대 독일어 사전의 용례에 나와 있는 대로 '군사' 또는 '군무'라는 의미를 반영하여 '군사적 천재'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클라우제비츠홈페이지, 앞의 웹주소)

<sup>3)</sup> 류제승 역, 위의 책, p.33.

들을 설명하고, 그 결론으로서 전쟁을 지배하는 세 가지 성향이 복 합적으로 나타나는 전쟁의 '경이로운 삼위일체'를 제시하였다. 이후 의 논의는 이 삼위일체로부터 파생되는 관념들에 대한 것이다. 그 는 2장에서 전쟁의 목적을 부여하는 요소와 수단을 운용하는 요소 와의 관계를 설명하였고. 3장에서는 2장에서 설명한 수단으로서의 전쟁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존재로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

'군사적 천재'란 클라우제비츠만의 독창적인 표현이지만 역사적으 로 이와 유사한 인물들은 수없이 등장한다. 전쟁 사례를 기록해온 역사가나 연구자들이 상세한 전쟁의 원인과 경과 결과 등의 분석 과 함께 빼놓지 않고 기록한 것은 그 전쟁을 누가 지휘했느냐이다. 이것은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이 그 국가의 왕이 되었든 임명된 장 수였든 상관없이 전쟁과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최고지휘관 또는 야 전사령관)4)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클라우제비츠는 야전사령관의 중요성을 그의 독특한 표현인 '군 사적 천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19세기 초 유럽의 시대 적 상황. 자신의 전쟁 경험. 전쟁 사례에서의 현상과 본질에 대한 분석 등을 종합하여 이론으로 정립하면서 전쟁이라는 전체의 틀 안 에서 '군사적 천재'의 필요성을 보았던 것이다. 야전사령관은 전쟁 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 중 하나지만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전쟁에 접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현상이다. 따라서

<sup>4)</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57. 클라우제비츠는 『Vom Krieg』에서 전쟁의 '경이로운 삼 위일체'를 제시하면서 'dem Feldherrn und seinem Heer'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클라우제비츠, 앞의 웹주소, Text, Vom Krieg, Erster Teil, Erster Kapitel, 'Was ist der Krieg?'), 류제승은 이 용어를 '야전사령관과 군대'라고 번역하였으며, 번역 자에 따라 '최고지휘관과 군대', 또는 '지휘관과 군대'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는 원문의 의미와 현대의 개념을 더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류제승의 번역 을 사용하였다.

'군사적 천재'란 최고지휘관 또는 야전사령관의 중요하고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 표현이다.

'군사적 천재'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단편적인 것으로 정기간행물의 기고 성격의 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군사적 천재'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드물게 보인다. 한국에서는 2012년 양승모의 석사논문이 있고, 미국에서는 1986년에 미 육군대학의 블레어 (Joseph M. Blair Ⅲ) 중령이 쓴 논문이 있다. 이 두 논문은 클라 우제비츠가 제시한 '군사적 천재'의 특성을 인물 사례에 비추어 분석한 실증연구 성격의 논문이다.5)

필자는 실증연구와는 달리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 자체와 이에 관련된 몇 가지의 주요한 개념들을 연구주제로 삼았다. 전쟁의 본질 안에서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 개념의 의미와 현대의 우리에게는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논리 전개를 위해 Ⅱ장에서는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이론과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 시대적 상황으로부터 받은 영향과 다양한 관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Ⅲ장에서는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군사적 천재'에게 요구되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요약할 것이다. Ⅳ 장에서는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이 삼위일체론 등 『전쟁론』의 주요 개념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논의하고, Ⅴ장 결론에서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이 현대의 전쟁에 대비하는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sup>5)</sup> 양승모, 『李舜臣 將軍의 리더십 分析: 클라우제비츠의 軍事的 天才 概念을 中心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이 논문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클라우 제비츠의 '군사적 천재'의 요소에 따라 분석한 실증논문이다.

Joseph M. Blair III, *THE INGREDIENTS OF MILITARY GENIUS*, US Army War College, 1986. 이 논문은 남북전쟁 시 Stonewall Jackson 장군의 리더십을 클라우제비츠의 '군사적 천재' 개념에 대입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 2. 전쟁 연구에 대한 시대적 영향과 관점

전쟁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클라우제비츠의 표현을 빌리면, "연구는 그 자신의 문법은 가지고 있으나 스스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에 대한 논리는 전쟁을 둘러싼 상황과 현상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세울 수 있지만, 그 논리를 기술(記述)하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문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의 상황과 현상을 분석하고 기술할때 그 시대의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가 중요하게 된다. 클라우제비츠가 어떤 관점에서 전쟁을 보았는지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그의 입장, 즉 정체성과 무관하지않다.

클라우제비츠는 입헌군주국가인 프로이센 왕국의 군인이며 장군으로서 국왕의 신하이자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7) 또한 기독교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기적인 명예욕을 벗어나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8) 그는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애국심 투철한 프로이센의 국민이라는

<sup>6)</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411, p.54; 허남성,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의 '3위1체론' 소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 제57호, 2005, p.328; 클라우제비츠 홈페이지, 앞의 웹주소, Text, Achtes Buch: Kriegsplan, Sechstes Kapitel: B.;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그 자신의 문법은 가지고 있으나 스스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Er hat freilich seine eigene Grammatik, aber nicht seine eigene Logik.)"라고 하였다. 이 말은 전쟁은 수단에 불과하므로 수단이 운용될 때는 그 자신의 문법에 따르게 되지만 전쟁이라는 전체의 논리는 목적을 부여하는 정치가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목적과 수단은 항상 상호작용하게 된다.

<sup>7)</sup> Peter Paret & Michael Howard, 『On War』, p.3, p.19. 클라우제비츠는 1818. 9월 에 장군으로 진급한 뒤 그해 12월에 베를린에 있는 'War Academy'의 교장으로 부임하여 이후 1830년까지 12년에 걸쳐서 『전쟁론』을 집필하였다.

<sup>8)</sup> 류제승 역, 위의 책, p.9. 1832년 『Vom Krieg』를 출간한 클라우제비츠의 부인 마리는 출간사에서 클라우제비츠의 신앙인으로서의 내적 욕구에 대한 일면을 밝혔다.

자부심이 매우 강했다. 1812년 프랑스의 강압에 의해 프로이센이 러시아 원정에 나서게 되었을 때 발표한 '충성서약'(I Believe and Profess)은 그의 국가에 대한 애정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져 야 할 마음자세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나는 확신하고 고백하건대 한 국민의 존재에 있어서 위엄과 자유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없음을; 이것은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함을; 이보다 더 신성한 의무는 없으며 이보다 더 숭고한 법칙은 없음을; 겁쟁이의 굴종에 의한 수치의 자취는 영원히 지울 수 없음을; 굴종의 독약 한 방울이 국민들 핏속에 섞여 후손들에게 이어지면 다음 세대의 힘을 약화시키고 마비시킨다는 것을 ·····."9)

클라우제비츠 자신의 이러한 정체성은 전쟁의 본질을 이론으로 정립할 때 객관적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면서도 객관적 관점에 영향을 주는 주관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10) 클라우제비츠에 있어 객관적·주관적 관점의 상호작용은 전쟁을 분석하고 이론으로 종합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적 관점과 전쟁역사에 대한 관점, 사상적·철학적 관점이 중첩되어 나타나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각각의 관점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편의상 나누어서 살펴본다.

<sup>9)</sup> 허남성, 앞의 논문, p.314에서 재인용

<sup>10)</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466.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 제8편 9장 '적의 타도를 목표로 하는 전쟁계획'에서 프랑스에 대한 주관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만일 150년 동안 유럽을 억압해온 프랑스가 다시 그 오만함(Übermut)을 보인다면 우리는 매번 이러한 방식으로 프랑스를 타도하고 길들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파리 서쪽 루아르 강 선까지 진출해야만 비로소 유럽의 평화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프랑스의 행위를 오만하다고 표현한 것은 프랑스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상대방인 프로이센 왕국의 군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관적 입장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다.

### 가. 방법론적 측면

클라우제비츠가 학문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전쟁을 연구하면서 적용한 연구방법은 책의 서문이나 본문에 제시된 몇 가지 단서와 논리를 전개한 흐름 안에서 유추해 봄으로써 찾을 수 있다.

먼저 클라우제비츠는 발간사에 수록된 1818년경 작성된 것11)으로 보이는 메모에서 "이러한 논술 의도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자 몽테스키외(B.Montesquieu)가 사용했던 연구방법론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12)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전쟁론』 본문의 시작을 "연구 주제와 관련된 개별 요소들과 개별 부분들을 사유하고, 최종적으로 내적 연계 하에 전체를 고찰하고자 한다. 즉, 단일한 것에서 복합적인 것으로 진전되는 연구방법론이다."13)라고 하였다. 이두 가지 단서로부터 우리는 그가 전쟁의 본질적인 개별 요소를 찾기 위한 분석방법과 개별적인 전쟁의 본질적 요소를 종합하여 이론으로 체계화하는 방법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몽테스키외의 방법론은 『법의 정신』에서 정치체제의 형태를 찾아

<sup>11)</sup> Peter Paret & Michael Howard, 앞의 책, p.63.

<sup>12)</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7; Peter Paret & Michael Howard, 앞의 책, p.63; 클라우 제비츠 홈페이지, 앞의 웹주소. 류제승은 "이러한 논술 의도는 나 자신과의 약속 이자 몽테스키외가 사용했던 연구방법론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로 번역했으며, 원문은 "Die Art, wie Montesquieu seinen Gegenstand behandelt hat, schwebte mir dabei <u>dunkel</u> vor."이다. 또한 파렛과 하워드는 "The manner in which Montesquieu dealt with his subject was <u>vaguely</u> in my mind."로 번역 하였다. 독일어 <u>dunkel</u>은 '희미하게', '뚜렷하지 않게'라는 의미이고, 영어 <u>vaguely</u>는 '어럼풋이'라는 의미인 것을 고려하면 대략 '몽테스키외가 주제를 다루던 방법을 어럼풋하게 마음에 그렸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클라우제비츠가 몽테스키외의 연구방법을 적용했다고 할 수 있다.

<sup>13)</sup> 위의 책, p.33. 『Vom Krieg』 원문에는 연구방법론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류제승은 이 문장을 클라우제비츠의 연구방법이라고 본 것이다. "Wir denken die einzelnen Elemente unseres Gegenstandes, dann die einzelnen Teile oder Glieder desselben und zuletzt das Ganze in seinem inneren Zusammenhange zu betrachten, also vom Einfachen zum Zusammengesetzten fortzuschreiten."

내기 위해 적용했던 분석-종합방법14)으로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이 라는 복잡한 현상 속에서 본질적인 요소를 찾아내려 했던 방법을 말한다. 알튀세르(Louis P. Althusser)는 몽테스키외가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 속에 뒤엉켜 있는 '논리'와 '바탕'을 끄집어냈으며, 역 사적인 사실에만 근거하여 정치체제의 일반요소와 법칙을 찾아냈다 고 하였다.<sup>15)</sup> 아롱(Raymond F. Aron)은 몽테스키외가 다양성의 배후에 놓여 진 하나의 질서, 혹은 역사적 진리를 개념적으로 파악 했다고 평가하였다.16) 한편. 카시러(Ernst Cassirer)는 몽테스키 외가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힘들의 최대 자유를 위해 '권력분립'이라 는 상호 견제로 균형을 유지해야 함을 밝히려 했다고 보았다 17) 알튀세르와 아롱이 평가한 몽테스키외의 방법론은 클라우제비츠의 '양자대결', '무제한<mark>적 폭력'</mark>, '불확실성과 <mark>우연'</mark> 등과 같은 분석결과 로 나타난다. 또한 카시러의 몽테스키외에 대한 평가와 클라우제비 츠가 밝힌 단일한 것에서 복합적인 것으로 체계화한 흐름은 '경이 로운 삼위일체', '군사적 천재' 등과 같은 이론으로 종합되어 드러 나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원인에서 결과를 추론하는 역사적 고찰의 비판에서는 어떤 사실을 근본 요소까지 분석하는 것, 즉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까지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sup>18)</sup>고 하였다. 아울러 인과관계의 분석에 대하여 "비판은 인간의 계산적 사고와 신념의 범위에서 모든 것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부분, 즉 사실과 상황의 인과관계를 그 결과가

<sup>14)</sup> E. Cassirer 저, 박완규 역, 『계몽주의 철학』, 서울: 민음사, 1995, p.37.

<sup>15)</sup> Louis Althusser, *Politics and History*, London: Verso, 1972, pp.13~14, p.2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aujun&logNo=60058434367(구글 검색, 몽테스키외 방법론, 검색일: 2016.1.15)

<sup>16)</sup> 레이몽 아롱 저, 이종수 역, 『사회사상의 흐름』, 서울: 홍성사, 1980. pp.22~25.

<sup>17)</sup> 박완규 역, 위의 책, pp.37~38.

<sup>18)</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136.

말하도록 해야 한다."<sup>19)</sup>고 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전쟁의 본질은 그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들과의 관계에 따라 전쟁 이론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클라우제비츠의 생각은 자신의 연구방법이 몽테스키외의 방법처럼 역사 속의 구체적 사실에서 법칙을 찾아내려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나. 역사적・군사적 측면

인류가 겪어온 전쟁 역사를 군사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군사사(軍事史)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 중에서 미국의 매트로프(Maurice Matloff)의 정의와 구소련의 『기초군사용어사전』의 정의를 인용하면, '군사사란 역사의 넓은 흐름속에서 사회의 군사적 경향과 지적(知的)·사회적·경제적·정치적·외교적 요인의 상호작용과 합류점을 탐색함으로써 과거의 군사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연구'20'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유럽의 역사에서 국가 간의 적대관계가 시작된 연원을 당시로부터 150년 전 프랑스의 주변국 침략에서 찾고 있 다. 그는 나폴레옹 전쟁에 따른 독일제국의 해체와 유럽의 혼란을 불러온 역사적 기원을 루이 14세가 1667년부터 영토 확장을 위해

<sup>19)</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143.

<sup>20)</sup> 이종학, "현대 군사사의 연구방항", 『한국 군사사 연구』, 대전: 충남대출판부, 2010, pp.21~24에서 재인용; Maurice Matloff, "The Nature and Scope of Military History", Essay in Some Dimensions of Military History, vol. 1, Carlisle Barracks, Pennsylvania, 1972. p.7. "군사사는 사회의 군사적 경향과 지적(知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요인의 상호작용과 합류점을 다루게 된다. 그 상호작용과 합류점은 역사의 넓은 흐름 속에서 찾아야 한다."; Dictionary of Basic Terms(A Soviet view), Pu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p.37. "역사학의 한 분과요, 마찬가지로 군사학의 한 분과인 군사사는 현대 군사학의 발전 근원의 하나로서 작용하는 과거의 군사경험의 일반화이다."

주변 국가를 침략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프랑스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영토 확장을 위해 주변국을 침략하면서 국가 간의 적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국민이 전쟁에 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대관계는 쌍방 국가 간의관계였고 상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적대감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국민모두의 적대감정은 한 국가의 내부에서 촉발되었는데 그 적대감정이 쌍방 국가 간의 적대관계와 충돌했을 때 쌍방 국민 간의 적대감정으로 전이(轉移)된다. 이러한 국민들의 적대감정이 전이된현상을 보여준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었다. 프랑스 대혁명은 사회적불평등의 확대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적대감정을 표출한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프랑스 대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나타난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인간들 간의 싸움은 본래 두 개의 상이한 동기, 즉 적대감정과 적대의도로 구성되어 있다. (···) 요컨대 최고 문명국민들 사이에도 상호 적대감정이 격렬하게 불타오를 수 있다."<sup>21)</sup>

그러면 군사적 경향과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클라우제비츠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이에 대한 관점을 '무제한적폭력'으로부터 '절대전쟁'에 이르는 개념의 흐름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아우스터리츠 전역이나 예나-아우어슈테트 전역 등 초기의나폴레옹 전쟁이 무제한적 폭력에 의해 절대전쟁 개념에 가깝게 구현된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유럽의 역사와 초기의 나폴레옹 전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폴레옹 군대의 무제한적 폭력이 프랑스국민의 에너지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22) 클라우제비츠는 전 국민이국가 대사(大事)인 전쟁에 참여한 유럽의 첫 사례로 프랑스의 혁명

<sup>21)</sup> 류제승 역, 앞의 책, 제1편 1장, '전쟁의 본질', p.35.

<sup>22)</sup> 위의 책, pp.369~370.

정부가 구제도를 타파한 국민의 자유의지를 군대로 <del>흡수</del>하여 수행 한 혁명전쟁을 들었다.

"1793년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전투력이 등장했다. 전쟁은 돌연히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자신을 국민으로 여기는 인구는 총 3천만 명이었다. (···) 프랑스 국민이 전쟁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정부와 군을 대신해 전체 국민의 비중이 힘의 균형을 좌우하게 되었다. 전쟁이 수행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더 이상 방해받지 않았다."<sup>23)</sup>

그러나 프랑스 혁명군대의 무제한적 폭력에는 전투원 집단과 장군단, 정부의 전쟁지도 자체에 기술적인 불완전성이 있었다. 나폴 레옹은 이러한 프랑스군의 미숙함을 보완하여 절대적 수준의 전쟁을 수행하였다. 24) 클라우제비츠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혁명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국민 대중의 에너지가 절대전쟁 수준에 이르는데 필요한 무제한적 폭력의 근원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다음은 정치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점이다. 사회의 군사적 경향과 정치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클라우제비츠의 관점은 유명한 명제인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에 불과하다.", "전쟁은 정치의 한 도구이다."와 같이 큰 틀에서 전쟁은 정치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정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해진다.<sup>25)</sup>

클라우제비츠는 물리적 폭력이 동원된 양자 간의 결투에서 '의지를

<sup>23)</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387.

<sup>24)</sup> 위의 책, pp.389~391.

<sup>25)</sup> 허남성, 앞의 논문, p.326; 클라우제비츠가 사용한 'Politik'란 독일어는 '정치'와 '정책'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으므로, 영문판으로 번역한 Paret는 문맥에 따라 'politic'과 'policy'를 혼용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정치, politic'라는 의미에서만 논의를 진행한다.

적에게 강요'하는 주체가 국가이며, 이 폭력은 국제법(völkerrechtlicher) 으로도 제한하지 못한다고 함으로써 대결하는 쌍방을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26)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정치의 개념은 전쟁의 정치적 목적을 분석하면서 나타난다. 전쟁의 정치적 목적은 현실적인 관계에서 양측 국가의 목적이라고 함으로써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과 관련된 정치개념은 국제관계에서의 정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7) 또한 전쟁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관계에서 수행하는 국가의 정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으로써 국내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정치는 국내 행정의 모든 이해관계, 인간의 이해관계, 철학적 이성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등을 통합하고 조정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 면 정치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며 다른 국가들과 대립되는 모든 이해관계를 단순히 대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28)

한편 클라우제비츠는 역사적으로 전쟁 현상의 관찰을 통해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비법한 군사적 성취를 이룬 인물들의 공통 특성인 천재성을 발견하였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나폴레옹 전쟁의 초기 전역에서 나타난 나폴레옹의 독특한 군대 운용에 자극을 받았다. 또한 유럽의 다양한 전쟁 역사에 대한 관찰을 통해 최초로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과 나폴레옹을 군사적인 면에서 천재성을 발휘한 인물로 평가하였다 29)

<sup>26)</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34.

<sup>27)</sup> 위의 책, pp.43~44.

<sup>28)</sup> 위의 책, p.413; 그러나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수행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 관해 논의할 경우, 우리가 비난해야 할 대상은 정치의 영향이 아니라 정치 그 자체이다. 정치가 옳다면, 즉 정치가 스스로의 목표에 부합하면 전쟁 수행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현실의 국내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같은 책, p.415)

<sup>29)</sup> 위의 책, p.384.

### 다. 사상적・철학적 측면

클라우제비츠가 살았던 18세기에서 19세기 초는 사상적으로 계몽주의 시대라고 불린다. 르네상스와 과학혁명의 시대를 거쳐 기독교 세계관에 도전한 '비판적 탐구와 이성의 적용을 지향하는 새로운 관념'을 지칭하는 계몽주의가 18세기에 꽃을 피우고 19세기 초까지 영향을 미쳤다. 프로이센은 계몽주의의 발전이 늦었지만 볼프(F. von Wolff, 1679~1754)로부터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헤겔(Wilhelm F. Hegel, 1770~1831)에 이르면서계몽주의 철학이 만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 클라우제비츠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계몽주의의 핵심가치인 이성, 경험주의, 과학, 자유 등이 전쟁론 전체를 관통하는 클라우제비츠의 생각들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에서 볼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가 계몽주의 사상에서 받은 영향은 다양한 지식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792년 소년병으로 군에 입대하고 1795년 소위로 임관한 후 교양과 군사지식에 대한 자료와 자극이 부족하여 1801년 베를린 군사학교에 입학하였다. 여기서 샤른호르스트 (Gerhard von Scharnhorst)로부터 지도를 받아 수학과 군사학지식에 있어 철저한 군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1803년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30) 클라우제비츠의 이러한 지식에 대한 관점은 "지식은 능력이 되어야 한다. 지식은 야전사령관의 정신과 삶에 완전히 동화됨으로써 진정한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31)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

클라우제비츠의 철학적 관점은 계몽주의 철학의 사유(思惟)방식과 유사하게 전쟁을 사유한 방법에 특징이 있다. 계몽주의 철학의

<sup>30)</sup> Paret & Howard, 앞의 책, pp.8~9.; 이종학, 『클라우제비츠와 전쟁론』, 서울: 주류성, 2004. pp.41~43.

<sup>31)</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128.

사유방식은 뉴턴(Isaac Newton, 1642~1727)의 분석 방법(귀납적 방법)을 계승한 것이다. 뉴턴의 방법은 관찰된 사실(현상)에서 원리로 가는 것, 즉 분석에서 종합으로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계 몽적 사유의 형식은 개별적 공리나 학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여 묻고, 허물어 헤치고, 다시 세우는 사유의 생성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이와 같은 계몽주의 철학의 사유방식을 적용하여 전쟁이라는 현상에 대해 의심하고 허물고 다시 세우는 작업을 했던 것이다.

"비판적 설명은 의혹이 있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규명하고 확정하는 것이다. (···) 전쟁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사건을 그 발단까지 사실적·객관적으로 추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모든 원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본질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비판적 분석은 이론의 고유 영역에 도달하게 된다."32)

클라우제비츠는 위에서 논의한 분석과 종합을 위해 계몽주의 철학의 특징인 이성을 활용하였다. 그는 이성의 기능인 분석과 종합을 활용하여 전쟁을 분석하고 이론으로 종합하였다. 그는 또한 이러한 이성 또는 정신에 의한 사유, 즉 관념적인 사유에 있어서 당시의 독일 철학을 주도한 칸트와 헤겔로부터 그들이 사유한 내용과형식을 부분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33) 클라우제비츠는 각주에서 보는바와 같이 칸트가 사용한 'sinnlichkeit'(감성)는 한 번도사용하지 않았고, 대신 'gemüt'(마음, 정서)나 'gefühl'(감정, 감각)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성에 대해서는 'vernunft'(이성) 보다 'verstand'(오성, 지성)를 많이 사용하였고, 정신은 'geist'(정신)를

<sup>32)</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p.136~137.

<sup>33)</sup> Howard는 클라우제비츠가 칸트의 책을 읽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지만, 그가 칸트와 같은 지적 접근방식을 부분적으로 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Michael Howard, *Clausewitz*, London: Oxford Univ. Press, 1985. p.13.

많이 썼다.<sup>34)</sup> 클라우제비츠가 사용한 어휘의 분석을 통해 추정할수 있는 것은, 먼저 현상을 받아들이는 감성(감정 또는 감각)과 받아들인 현상을 개념에 의해 판단하는 오성(지성)이 시간을 매개로하여 종합되어야 통각(統覺)에 이를 수 있다는 칸트의 사유 내용<sup>35)</sup>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또한 클라우제비츠는 헤겔이 주장하는 바, 즉 대상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실재하는 힘이 자기 자신이라고 확신하는 오성이 진리까지 인도하고, 이 진리로부터 자기 자신을 세계로 삼아 세계를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게 되는 이성이 정

<sup>34)</sup> 클라우제비츠가『전쟁론』전체에 걸쳐 사용한 심리와 관련된 주요 단어가 사용 된 문단의 통계는 클라우제비츠 홈페이지의 원문을 엑셀파일로 전환 후 찾기 기 능을 활용하여 분석한 것이며, 빈도는 다음 표와 같다.

		-							
구분	계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sinnlichkeit	0_	0	0	0	0	0	0	0	0
gemüt	52	28	6	8	3	0	0	1	6
gefühl	53	20	10	0	7	5	7	2	2
vernunft	4	0	0	1	0	0	1	1	1
verstand	88	43	18	8	4	0	0	3	12
geist	150	35	49	41	10	0	0	6	9

류제승은 gemüt와 gefühl의 번역에서 감성과 감정을 혼용하였고, verstand와 vernunft를 이성으로 번역하였으며, geist를 정신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칸트에 있어 감성은 sinnlichkeit이고 이성은 vernunft이며, verstand는 이성의 전 단계인 오성 또는 지성이다. 류제승의 번역 '예 1'(1편 3장, p.84) : 'gefühl'; "Zweitens sehr Regsame, deren Gefühle aber nie eine gewisse Stärke überschreiten, und die wir als **gefühlvolle**, aber ruhige Menschen kennen." → "두 번째, 매우 민 활한 유형으로서 이러한 유형의 감성은 결코 특정한 강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 며 **감정**이 풍부하지만 침착한 인간형이다."; '예 2'(8편 6장 2. p.412.) : 'vernunft'; "aber sie ist nichtsdestoweniger kein bloßes diplomatisches Herkommen, über welches sich die Vernunft hinwegsetzen könnte, sondern tief in der natürlichen Beschränktheit und Schwäche des Menschen gegründet."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식방법은 **이성**에 의해 무시될 수 있는 순 수한 외교적 관례가 아니라 인류의 본성적 결점과 약점에 깊게 뿌리를 두고 있 는 관례이다."; 여기서 클라우제비츠가 사용한 'vernunft'는 'verstand'의 의미인 오성과 같다. 따라서 클라우제비츠는 'vernunft'의 의미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verstand'의 의미인 오성 또는 지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sup>35)</sup> 김정주, 『칸트의 인식론』,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1, p.249.

신으로 나타난다는 사유내용<sup>36)</sup>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이러한 감성과 오성의 통합이라는 연장선에서 칸트가『판단력비판』에서 설명한 천재와 예술가의 독특한 특성이 전쟁이라는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천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이다.

# 3. 군사적 천재의 정신적 특성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많은 개념들이 신선하고 독특하지만 특히 '군사적 천재'라는 표현은 기발한 착상(着想)이다. 당시의 관념론적 사상은 '미'(美)의 개념을 분석하면서 나타난 예술에서의 정신을 천재와 동일시하는 경향37)이 강했다. 스코틀랜드의 제라드 (Alexander Gerard)는 과학 분야에서의 천재를 인정하기도 했지만, 칸트는 자신의 논리를 유지하려고 천재라는 개념을 예술 영역으로 한정하고 학문적·정치적·사회적 배경을 제외시켰다. 38) 이런 이유로 클라우제비츠가 군사 분야에서 천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 1편에서 전개한 '삼위일체'의 균형 개념 연결과 논리구조를 보면 필연적으로 군사 분야의 천재가 등장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클라우제비츠의 '군사적 천재'는 획기적인 표현이며 치열하게 전쟁을 경험한 그의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다.

제라드(1728~1795)는 『An Essay on Genius』에서 천재를

<sup>36)</sup> F. Hegel 저, 임석진 역, 『정신현상학 2』, 서울: 한길사, 2005, pp.155~156.

<sup>37)</sup> 한동원, "칸트의 천재론", 『인문과학연구』6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p.224.

<sup>38)</sup> 한동원, 위의 논문, pp.229~230.

하나의 마음의 능력(Imagination)으로 보았다. 그러나 독일의 볼 프는 천재에 대해 라이프니츠(Gottfried W. Leibniz)의 조화이론을 바탕으로 한 선천적인 능력들의 관계라고 규정하고, 그 능력으로 기억력·구상력·판단력·통찰력·재치를 들었다. 39) 또한 칸트는 볼 프의 견해를 수용하여 『판단력비판』 40)에서 정신·구상력·오성을 천재의 능력으로 들었다. 클라우제비츠는 천재라는 개념을 칸트의 천재론과 예술론의 사유내용 일부와 제라드의 견해를 수용하여 설명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관념론적 입장에서 천재의 정신적 힘을 분석하였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클라우제비츠는 칸트의 예술에서의 천재와 구별하여 전쟁 현상에서 등장하는 군사적으로 천재성을 보여야할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독특한 특성으로 재해석하고 그만의 고유한 언어로 설명한 것이다.

## 가. 칸트와 클라우제비츠의 '천재' 개념 비교

칸트는 『판단력비판』의 '천재론'에서 천재와 예술의 복합된 개념을 "천재는 예술에 규칙을 부여하는 타고난 재능이다."라고 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천재를 설명하고 "예술과 예술이론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예술을 설명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넓은 의미에서 예술이란 자연이 직접 주거나 만들지 않은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능력이다. 예술이란 개발된 능력을 말한다."41)

<sup>39)</sup> 한동원, 앞의 논문, p.224

<sup>40)</sup> 칸트의 3대 비판서인 『순수이성비판』(1781, 1787), 『실천이성비판』(1788), 『판단력비판』(1790) 중 제3비판서로 불리며, 제1부 미학상 『판단력비판』과 제2부 목적론상 『판단력비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판단력에 이성과 감성을 조화롭게 중재하는 능력을 인정하고, 이 실천이성의 상징인 도덕으로써 생각할 범위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간주되는 신에게 인간을 향하게 하는 계기를 설명한다. 천재론은 1부 취미론의 부록처럼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다.

<sup>41)</sup> http://gutenberg.spiegel.de/buch/kleine-schriften-4071/21(구글 검색, "Über Kunst und Kunsttheorie", 검색일 2016. 1. 21)

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전쟁론』 1편 3장 '군사적 천재'를 시작하면서 "모든 행동이 대가(大家, Virtuosität)의 행동답게 이루어지려면 그 행동은 독특한 성향의 이성과 감성을 필요로 한다. 이자질이 고도로 탁월하고 비범한 실행능력으로 나타날 때 이러한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는 천재로 표현된다."42)라고 함으로써 '대가'를 천재의 일례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클라우제비츠가 사용한 'Virtuosität'는 독일어 사전에 따르면 '(특히 음악에서) 예술적기교의 완벽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결국 칸트와 클라우제비츠는 똑같이 천재와 예술의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칸트와 클라우제비츠가 천재와 예술을 설명하는데 있어 공통점은 재능과 규칙 그리고 정신적 힘이다. 규칙과 관련하여 클라우제비츠는 칸트의 '천재론'에서 천재가 기존의 규칙에 제한 받지 않고 독창적으로 또 다른 규칙을 만든다는 것에 착안하여 군사적 천재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칸트는 타고난 재능 및 규칙과 천재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천재란 예술에 규칙을 부여하는 타고난 재능이다. 이 재능은 예술가의 생산적 능력으로서 그 자체가 자연에 속하는 것이므로, 천재란 생득적인 심의의 소질(ingenium)이요 이것을 통해서 자연은 예술에 규칙을 부여하는 것이 다."<sup>43)</sup>

여기서 칸트는 '예술에 규칙을 부여하는 재능'에 대해 규칙을

<sup>42)</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72. 류제승은 'Virtuosität'를 '대가'로 번역하였으며, 번역자 에 따라 대가와 유사한 '거장' 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sup>43)</sup> D. 타이헤르트 저, 조상식 역, 『판단력비판』, 서울: 이학사, 2003, p.139; 정혜윤, "왜 베토벤인가", 『철학과 현실』 92집, 철학문화연구소, 2012, p.147; 김현경, "위대한 베토벤", 『대한토목학회지』 61집, 대한토목학회, 2013, p.108. 정혜윤과 김현경은 독일 음악가 베토벤(1770~1827)의 9번 교향곡 '합창'이 당시의 교향곡을 작곡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깨고 새로운 규칙(기악과 성악의 결합)을 창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넘어서는 독창성을 발휘하며, 기존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규칙을 만들어 내는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하였다.<sup>44)</sup> 클라우제비츠의 천재는 전쟁에서 나타나며 이 천재의 재능과 규칙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칸트와 유사하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편협한 고찰을 통해 얻은 빈약한 지혜가 도달할 수 없는 모든 것은 학문적 범주를 벗어나 있었고, 결국 모든 원칙을 능가하는 천재의 영역에 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 원칙들은 천재에게는 너무 평범하고, 천재는 이 원칙들을 능가하기 때문에 항상 이 원칙들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다. (···) 천재가 행하는 것은 곧 최선의 원칙이어야 한다."45)

칸트가 설명한 규칙을 넘어서는 독창력은 음악의 기본요소에 대한 규칙을 예로 들 수 있다. 음악의 기본요소에는 음과 화음, 박자가 있는데 음이 잘 어우러지는 화음과 그 화음에 맞게 박자를 맞추는 것을 토대로 많은 음악가들이 그때까지의 방식대로 표현하는 것을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천재는 이 일반적인 규칙을 넘어서는 독특한 창의력과 새로운 방식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표현해 냄으로써 또 다른 규칙을 만든다. 이것이 규칙을 넘어서는 천재의 천부적인 재능이다.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기존의 규칙도 당시의 군사적 경향인 수적 우위나 보급 등 물리적 요소에 대한 수학적 규칙과 기지・내선 등 기하학적이고 도식적인 일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규칙이 천재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른다. 천재가 규칙을 넘어서는 독창적인 규칙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칸트가 제시한 것이 정신의 힘이다. 칸트는 천재의 능력으로 정신・구상력・오성을 제시하고 정신이 구상력・오성・감성과 결합하여 힘으로 나타나 천재의 능력이 된다고 하였다.

<sup>44)</sup> 한동원, 앞의 논문, p.219.

<sup>45)</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p.117~122.

클라우제비츠는 칸트와 같이 천재와 예술을 설명하였지만 칸트가 천재의 영역을 예술로 한정한 것과는 달리 이를 확대하여 군사 분 야에서의 천재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였다.

"천재라는 개념은 그 범위와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며, (···) 철학자나 문법학자를 자처하지 않는다면 언어 사용에서 통용되는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천재의 능력이란 특정한 행동을 위한 고도의 정신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46)

여기서 클라우제비츠가 '특정한 행동을 위한 고도의 정신력'이라고 한 것은 예술가가 그의 예술적 느낌을 악보나 화폭에 옮기는 행동에 정신적 힘이 작용하는 것과 같이 예술분야 이외의 영역에서도무엇을 결심하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가 위한 심리적 동기가작용한다는 것을 이른다. 클라우제비츠는 칸트가 천재를 한 가지능력으로 이해하지 않은 것처럼 군사적 천재란 용기와 같은 단일한요소가 아니라고 보았다. 47) 클라우제비츠는 군사적 천재는 모든정신적요소의 조화로운 배합체로서,하나 또는 다른요소가 우월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어떤요소들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고하였다. 또한 그는 이성과 감성 등모든 정신요소의 조화로운 배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성적 힘의 계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이성의 중요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48) 클라우제비츠는 이러한 천재로서의 일반적인 능력과 군사 분야에서의정신적 힘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군사적 천재의 특성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종합하였다.

<sup>46)</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73.

<sup>47)</sup> 위의 책, p.73.

<sup>48)</sup> 위의 책, pp.73~74.

### 나. 군사적 천재의 정신적 특성

클라우제비츠가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을 1편 3장에서 분석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1편의 논리전개 흐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1장의 결론으로 전쟁의 '경이로운 삼위일체' 요소인 국민(폭력성), 야전사령관 및 군대(우연), 정부(이성)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이 세 요소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론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2장 '전쟁의 목적과 수단'에서 정부의 몫인 전쟁을 수행하는 목적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야전사령관과 군대가 주체인 전투력을 제시하였다. 이제 전쟁이 개시되면전투력을 운용하여 전쟁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전투력의 운용에는 야전사령관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전투력(군대)을 운용하는 최고지휘관의 천재적인 특성인데 이것을 '군사적 천재'로 개념화하고, 그 '군사적 천재'에게 요구되는정신적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3장의 목적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 1편 '전쟁의 본질' 1장에서 군사적 활동이 존재하는 영역을 위험의 영역이라고 정의하고, 이 영역에서 전쟁 현상을 극복하는 최고의 정신능력은 용기라고 하였다. 그는 1장에서 제시한 '위험의 영역'과 이 영역에서 필요한 최고의 정신적 특성인 '용기'라는 개념을 3장에 투사하여 확장된 영역에서의 확대된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위험의 영역'을 전쟁 분위기를 형성하는 네 가지 영역(위험, 육체적 노력과 고통, 불확실성, 우연)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확장된 영역에서 필요한 군사적 천재의 정신적 특성은 '용기'를 포함하는 다양한 정신능력으로 확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된 이성과 감성의 힘을 분석하고, 상상력과 같은 오직 이성만을 필요로 하는 군사적 활동으로서 전쟁과 지형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지형감각적 자질을 제시하였다.

#### 1) 전쟁분위기를 형성하는 영역에서의 정신적 특성49)

먼저 전쟁은 위험의 영역이다. 이러한 위험한 영역에서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정신적 특성은 용기이며, 개인적 위험에 대한 용기와 책임에 대한 용기 두 가지가 있다. 책임에 대한 용기는 외부 압력에 대응하는 내적인 힘으로서 양심에 의한 용기이다. 개인적 위험에 대한 용기는 위험에 대한 냉담함과 적극적 동기에 의한 용기가 있다. 위험에 대한 냉담함은 인체구조·생명 경시·습관 등에기인하며, 이러한 용기는 불변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명예욕,조국애, 모든 종류의 열광 등 적극적 동기에 의한 용기는 감성과감정에 기인하며, 모험적이고 때로 이성을 흥분시키게 된다. 이 두가지의 용기가 결합되면 가장 완전한 유형의 용가가 형성된다.

육체적 노력과 고통의 영역에서 필요한 특성은 건전한 이성이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과 고통을 견뎌내려면 육체와 정신의 확고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의 영역에서도 이성의힘이 필요하다. 전쟁에서 행동의 기초가 되는 요인의 4분의 3이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있으므로 기민한 판단력으로 진리를 인지하려면 대상을 꿰뚫어 보는 이성이 필요하다.

우연의 영역에서 필요한 특성은 혜안(coup d'oeil)과 결단력, 침착성이다. 우연은 모든 상황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며, 모든 정보와 가정이 불확실하고 우연이 지속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교전자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위대한정신의 인물이 예기치 않은 요인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려면 두 가지의 자질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하나는 암흑 속에서 진리로 이끄는 내면의 불빛의 흔적에 비유되는 이성으로서의 혜안이며, 하나는 이 희미한 불빛을 좇는 이성에 의해 발원

<sup>49)</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p.74~79. 전쟁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위험, 육체적 노력과 고통, 불확실성, 우연의 네 가지 영역에서 요구되는 정신적 자질은 류제승의 번역본을 참고하여 요약한 내용이다.

하는 감성으로서의 정신적 용기인 결단력이다. 혜안은 평범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거나 오랜 고찰과 사색 끝에야 볼 수 있는 진리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능력이다. 결단력은 개별적인 경우에 나타나는 책임에 대한 용기, 즉 정신적 위험에 대한 용기이다. 따라서 이성은 용기의 감정을 일깨워야 하며 이 용기는 감정에 의해 유지되고 지탱된다. 혜안과 결단력에 밀접하게 관련된 침착성은 전쟁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쟁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네 가지 요소인 위험, 육체적 노력과 고통, 불확실성, 우연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와 같은 장애 요소가 확실하게 극복되려면 이성과 감성의 독특한 힘이 요구된다.

#### 2) 상황에 따라 변형된 이성과 감성의 힘50)

전쟁에서 교전자의 정신적 힘은 적의 활동·저항·행동과 부분적으로 관련된 중압감·부담감·저항감에 의해 자극 받고, 다양하게 변형된 이성과 감성의 힘이 에너지·견고함·지구력·강한 감성과 개성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행동의 에너지는 야전사령관의 정신적 힘을 유발한 동기의 강도를 표현한다. 이 동기의 근원은 이성적 확신이나 감성적 자극에 있으며, 위대한 힘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감성적 자극에 의한 동기가요구된다. 감성적 자극은 올바로 평가된 공명심과 명예욕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병사들의 근면성, 경쟁심, 자극 등을 통해 군의 행동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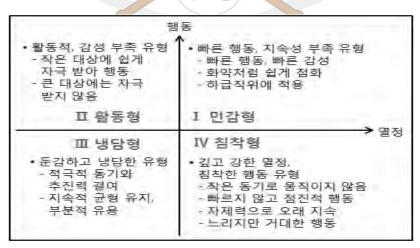
견고함은 타격의 강도와 관련된 의지의 저항을 이르며, 이 견고함은 순수하게 감정의 강도에 근원을 두고 있다. 지구력은 장기간지속되는 의지의 저항을 이르며, 이것은 이성에 더 많은 근원을

<sup>50)</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p.79~89.

두고 있다. 군사 활동의 계획성은 활동의 지속시간과 함께 증대되고 지구력은 부분적으로 이 계획성을 통해 그 힘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감성 또는 정신의 힘은 최고조의 흥분, 최고도의 격렬한 열정의 질풍 속에서도 이성에 복종하는 능력을 말한다. 격렬한 감성이 작용하는 순간 이성에 복종하는 힘을 자제력이라고 하며, 이것은 흥분된 열정에 싸인 강력한 감성 속에서 그 열정을 파괴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또 다른 감정이다. 자제력은 평형력이며, 이 힘은 타고난 통찰력과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행동하도록 만드는 인간의 존엄성, 고귀한 자부심, 내적 심연의 정신적 욕구이다.

감성과 관련된 유형은 감성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열정과 이에 따른 행동에 의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민활함을 거의 갖지 않은 유형으로 냉답하거나 무감각한 유형이라고할 수 있다. 둘째는 매우 민활한 유형으로 이 감성은 특정한 강도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며, 감정이 풍부하지만 침착한 유형이다.



〈그림 1〉열정과 행동에 따른 유형별 특징51)

<sup>51)</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p.83~86. 열정과 행동에 따르는 유형별 특징에 대한 그림

셋째는 매우 예민한 유형으로서 이러한 유형의 감성은 화약처럼 신속하고 격렬하게 발화되지만 지속적이지 못하다. 넷째 유형은 작 은 동기로는 움직일 수 없는 유형으로 결코 빠르지 않게 점차적으로 움직이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감정은 강제력에 의해 뒷받 침 될 경우 매우 오래 지속되며, 힘이 넘치고 깊숙이 내재된 열정을 가진 유형이다. 각각의 유형별 특징은 앞의 〈그림 1〉과 같다.

#### 3) 지형감각적 특성52)

전쟁에서 감성과 무관하게 오직 정신능력만을 필요로 하는 강력 한 군사적 활동은 전쟁과 지형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군대의 군사 적 행동은 반드시 일정한 공간에서 일어나며, 이 관계는 모든 전투 력의 작전에 영향을 머치고 때로는 그것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때문 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띤다. 또한 이 관계는 한편으로는 지형의 가 장 작은 특성과 연관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넓은 공간 에 적용되기도 한다. 전쟁에서 야전사령관은 그의 활동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공간에 의지해야 하는데, 이 지형적 공간은 육안으로 전 체를 개관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조사할 수도 없으며 지표물의 지 속적인 변화로 인해 친숙해지기 어려운 공간이다. 이러한 난점은 지형감각이라는 독특한 정신적 자질로 극복되어야 한다. 지형감각 이란 모든 지형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기하학적으로 상상하는 능력이며. 그 능력에 따라 어떤 장소도 언제든지 쉽고 정확하게 찾 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형 파악은 육안과 이성에 의해 가능한 데 이성은 학문과 경험에 의해 형성된 통찰력으로 육안관찰의 결함 을 보충하고 수집한 부분들을 종합하여 전체를 구성한다. 이 전체 는 인간의 내면에 그려진 지도로 계속 유지되지만 개별 특징들이

은 필자가 클라우제비츠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sup>52)</sup> 위의 책, pp.89~95.

반복적으로 조각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상상력이라고 불리는 정신력이 작용해야 한다.

최고사령관이 전체 전쟁 또는 전역이라고 일컫는 가장 큰 군사적 행동에서 빛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보다 상위의 국가상황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그는 한편으로 모든 국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용수단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여기서 고도의 정신능력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은 경이로운 정신의 눈으로 승화된 통합력과 판단력이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진리에 대한 순수한 동기는 극히 약하기 때문에 아는 것(인식)과 하고자 하는 것(의지), 알고 있는 것(지식)과 할수 있는 것(능력)에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전쟁에서 형제와 자녀들의 안녕과 조국의 명예와 안전보장을 맡길 수 있는 인물은 창조하기보다는 탐구하는 두뇌, 편협하기보다는 포괄적인 두뇌, 뜨겁기보다는 차가운 두뇌의 소유자인 군사적 천재여야한다.

# 4. 군사적 천재의 의미

클라우제비츠가 '군사적 천재'에 대해 논의한 이유는 전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군대라는 전투력, 즉 폭력의 운용을 지도하는 최고사령관의 정신적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전쟁은 쌍 방이 자신의 의지를 상대에게 강요하기 위해 폭력을 운용하는 것이 므로 전쟁은 의지의 싸움이다. 물리적 폭력이 직접 충돌하는 현장 에서도 의지, 즉 정신적 힘은 중요하다. 그러나 물리적 충돌의 성 과를 토대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최고지휘관은 상대의 의지 를 꺾기 위해 더 큰 의지의 힘인 정신적 힘을 발휘해야 한다.

최고지휘관의 정신적 힘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은 단지 천재 수준의 정신적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끼워 넣은 것이 아니다. '군사적 천재'는 1편 1장 '전쟁이란 무엇인가?'의 결론인 '삼위일체론'을 근원으로 『전쟁론』 전체에 영향을 주는 개념이며, 전쟁의 행위적 주체로서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핵심이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필연적 이념으로서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이 『전쟁론』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군사적 천재'와 '삼위일체론', '불확실성', '전쟁이론', '전략'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 가.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중재자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삼위일체'에 대해 1편 1장의 결론 외에는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1편 1장의 논리구조를 살펴보면 그는 이미 서두에서 전쟁의 본질적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복선을 깔아 놓았다. 그는 전쟁을 '확대된 양자대결'로 정의한 뒤 추상적 개념의 상호작용과 극단(極端)으로서 '폭력성의 극단', '의지의 극단', '힘의 극단' 등 세 가지를 설명하였다(2절~4절). 그는 이러한 추상적 의미의 극단이 인간의 불완전성과 전쟁 현상의 개연성 등현실적인 제한에 따라 극단으로 치닫지 못한다고 보았다. 현실에서의 전쟁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6절~9절). 이에 따라 그는현실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전쟁과 관련된 요소로서 개별 국가와 정부를 먼저 설명하고 국민의 폭력적 성향을 설명하였다(10절~11절). 그리고 전쟁에서의 군사적 활동이 정지되는 원인으로 공격・방어의 양극성, 불확실한 상황 파악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전쟁에서 군대의 유용이 우연과 확률이라는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12절~22절). 이러한 분석에 따라 1장의 결론이자 전쟁이론을 위한 결론으로 제시한 것이 전쟁의 '경이로운 삼위일체'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경이로운 삼위일체'에 대해 논의하면서 추상적(이론적) 개념과 구체적(현실적) 개념의 논리적 이중구조로 설명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실제적인 모습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먼저 '국민-야전사령관과 군대-정부'라는 구체적 개념을 찾아냈고, 그 요소들의 추상적 속성으로서 '감성(감정)-우연-이성(오성)'을 분석해 내면서 논리적 이중구조를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이 개념들을 종합하여 논술하는 과정에서는 추상적 속성을 먼저 제시하고 이것을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행위 주체와 연계하는 순서로 개념화 한 것이다. 53) 여기서 필자는 클라우제비츠가 사용한 '경이로운 삼위일체' 개념의 논리적 이중구조의 연원과, 삼위일체의 한 요소로서 '야전자령관과 군대'가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연원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종교계에서 연구된 용어로『가톨릭대사전』에서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

"삼위일체는 하나의 실체(實體) 안에 세 위격(位格)으로서 존재하는 하느님적 신비를 지칭한다. 하느님의 육화(肉化)와 은총(恩寵)과 함께 그리스도의 3대 신비를 형성하는 이 삼위일체 신비는 내재적 삼위일체와 구세경륜적 삼위일체

<sup>53)</sup> 김태현, "『전쟁론』 1편 1장에 대한 이해와 재해석: 전쟁의 무제한성(Entgrenzung)과 제한성(Begrenzung)을 중심으로", 『군사』 95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p.202; 김태현은 "가변적 성격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감성-이성-우연'이라는 경이로운 삼위일체를 식별하였고 이를 '국민-정부-군대'의 속성과 연계하여 전쟁의 본질을 '카멜 레온'으로 정리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필자의 논의와 상반되는 의견이다.

로 구별되어 파악되다 "54)

이 설명에서 나타난 세 위격이란 개념이 삼위일체의 요소들이다. 이 요소의 개념과 생성에 대한 『가톨릭대사전』의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아우구스티노에 의해 계발되고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심화된 이른바 '심리학적 삼위일체론'(心理學的 三位一體論, De Trinitate psychologica)은 사계에서 고전적이고 전통적 삼위일체론으로 간주되고 있다. (・・・) 그는하느님 본질의 단일성과 세 위격들의 구별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비(類比)를 인간영혼(anima)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래서 기억(mens), 인식(notitia), 사랑(amor)이 영혼의 세 가지 속성으로 파악되고, 이들이 삼위일체의 내재성을 특정하게 이해토록 하는 유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기억하고 인식하고 사랑하는 영혼의 유비 속에서 본질적으로 하나인 실재의세 현실적 요소들로서의 위격들을 본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기억이 성부에,인식이 성자에, 사랑이 성령에 해당된다고 설명된 것이다."55)

아우구스티노(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399~420년 어간 저술)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개념은 신적인 삼위일체와 인간의 영혼적 삼위일체를 대비시키는 유비적 표현<sup>56)</sup>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논리적 이중구조이다. 이것은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이중구조와 유사한 전개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삼위일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와 유사하게 유비적인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쟁은 경이로운 삼위일체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그 전쟁을 지배하는 성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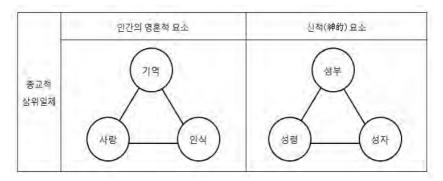
<sup>54) 『</sup>가톨릭대사전』,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search.asp(다음 검색, 삼위일 체, 검색일 : 2016. 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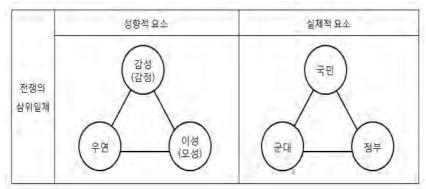
<sup>55)</sup> 위의 웹주소

<sup>56)</sup> 유비(類比)란 두 개의 사물이 몇몇 성질이나 관계를 공통으로 가지며, 또 한쪽의 사물이 어떤 성질이나 관계를 가질 경우, 다른 사물도 그와 같은 성질이나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된 전체 현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첫째, 전쟁은 그 구성요소인 적대감정과 적대의도에서 연원된 원초적 폭력성을 갖는다. 이 폭력성은 맹목적인 본능과 같은 것이다. 둘째, 전쟁은 전쟁을 자유로운 정신활동으로 만드는 확률과 우연의 게임이다. 셋째, 전쟁은 정치적도구로서 정치에 종속된 본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쟁은 순수한 이성의 영역에도 귀속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전쟁의 세 가지 측면 중에서 첫 번째 측면은 국민, 두 번째 측면은 야전사령관과 군대, 세 번째 측면은 정부와 깊은 관계가 있다."57)

위에서 논의한 삼위일체의 유비적 표현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와 클라우제비츠의 논리적 요소를 비교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종교적 삼위일체와 전쟁의 삼위일체 비교

<sup>57)</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p.57~58.

이와 같이 클라우제비츠는 종교적 삼위일체에 대한 아우구스티누 스의 논리를 차용하여 전쟁의 현상에서 분석한 삼위일체 요소를 각 각의 위격으로 설명하려 한 것이다. 또한 클라우제비츠의 '경이로 운 삼위일체(wunderliche Dreifaltigkeit)'도 종교적인 용어를 차용하여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 당 시 독일의 종교 인사들의 표현에 '신비로운 삼위일체(mystische Dreifaltigkeit)'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58) 클라우 제비츠는 종교적 용어인 'mystische'라는 표현을 'wunderliche. 경이로운'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종교적인 용어와 차별을 두려고 했던 것이다.

### 2) 삼위일체 요소의 중재자로서 '군사적 천재'

다음은 삼위일체의 한 요소로서 '야전사령관과 군대'가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론이 성립하려면 삼위일체의 각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균형 개념은 몽테스키외가 정 치체제 각각의 권력 주체들이 최대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햇젓권 -입법권-사법권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삼위일체에 있어서도 행위 주체들인 국민-야전사령관 및 군대-정부가 최대한의 자유로 일체가 되려면 균형 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sup>58)</sup> Gin Tagblatt, 『Das Ausland』, 1831, p.199.(http://books.google.co.kr/books, 구글 검색, mystische Dreifaltigkeit, 2016. 2. 5), G. 타크블라트는 이 책에서 "우리는 첫째로 깨달음과 함께, 둘째 곤경과 함께, 셋째 깨어 있는 상태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다. 신비로운 삮위일체에 대한 깨달음이여!" "Wir steigen die erste stiege hinauf, sie ist mit unschlitt erleuchtet, die zweite mit pech, die driette, die ins allerheiligste fahrt, mit wachs. Eine mystische dreifaltigkeit erleuchtung!"라고 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성향은 상이한 법칙처럼 보이지만, (…) 만일 하나의 이론이 다른 이론을 무시하거나 다른 이론과 어떤 자의적인 관계를 성립하고자 한다면, 그 순간 이론은 이미 파괴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이 세 가지 성향, 즉 세 가지 인력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다."59)

클라우제비츠는 몽테스키외의 균형 개념과 함께 종교적 삼위일체 의 각 위격들이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동등하고, 분리되지 않으며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를 배척할 수 없다는 본성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에서의 삼위일체도 이처럼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동등 한 본성을 갖고 있고 서로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 다. 종교적 삼위일체는 '성령'이나 '사랑'이라는 위격에 의해 매개되 는데, 이 위격은 매개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격들과 동등하 다. 이는 전쟁의 삼위일체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성향적 요소들 은 우연이라는 요소가 매개하는데, 이것은 칸트에 있어서 감성과 이성을 매개하는 것이 시간60)인 것과 같은 논리이다. 이 우연은 매개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감성과 이성이라는 요소와 동등하고 분리 되어서는 안 된다. 우연에 유비되는 야전사령관과 군대도 전쟁에 있어서 국민과 정부를 매개하는 요소이지만 다른 요소들과 동등하 다. 그러나 종교적 삼위일체와 전쟁의 삼위일체가 다른 것은 전쟁 에서는 인간이라는 실체적인 존재가 공통요소라는 것이다. 추상적 개념의 종교적 삼위일체는 세 위격들의 관계 정립만으로 균형이 유 지되지만 전쟁의 삼위일체는 다르다. 전쟁의 삼위일체에서 행위 주 체인 각각의 요소들은 작위적(作爲的)인 의지를 발휘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세 요소들 간의 관계에서 최대의 자유를 확보하면

<sup>59)</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58.

<sup>60)</sup> 김정주, 앞의 논문, pp.248~249. 시간의 형식적 직관은 한편으로는 감성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성(오성)적이다. 모든 실재적인 현상들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한 시간은 인식능력으로서 감성과 지성(오성)의 표상내용을 매개한다.

서 일체로서의 모습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이 균형을 설명하기 위해 각각의 요소들이 같은 힘으로 서로를 끌어당기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우주의 천체들이 만유인력에 의해 유지되는 것처럼 전쟁의 삼위일체 요소들이 삼각형을 이루고 동등한 인력으로 끌어당기는 개념을 상정했던 것이다. 그는 'Anziehungspunkten(인력+점)'과 'schwebend(떠 있는)'이라는 단어로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전쟁의 삼위일체의 각 위격들은 크기나 무게, 거리라는 개념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상징적인 요소로서의 특성만 있을 뿐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각각의 요소를 '점(spunkten)'으로 상정하고, 각각의 요소(점)들이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Anziehung)'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인력이 작용하는 장소를 지표면이 아닌 가상의 공간으로 상정하여 '떠 있는(schwebend)'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sup>61) &#</sup>x27;인력'과 '떠 있는'에 대한 독일어 원문과 피터 파렛의 번역, 류제승의 번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 독일어 원문: "Die Aufgabe ist also, daß sich die Theorie zwischen diesen drei Tendenzen wie wischen drei <u>Anziehungspunkten</u> <u>schwebend</u> erhalte."(앞의 웹주소, 클라우제비츠 홈페이지)

b. 피터 파렛 번역문: "Our task therefore is to develop a theory that maintains a balance between these three tendencies, like an object <u>suspended</u> between three <u>magnets</u>."(Peter Paret & Michael Howard, 앞의 책, p.89)

c. 류제승 번역문: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이 세 가지 성향, 즉 세 가지 <u>인력</u> (引力)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다."(류제승, 앞의 책, p.58.)

<sup>\*</sup> 필자는 두 번역이 클라우제비츠가 '인력'을 우주 공간의 물체들이 상호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개념으로 상정했던 것을 다르게 이해함으로써 약간씩 다르게 번역한 것으로 본다. 파렛은 이러한 인력을 '자석(magnet)'으로 번역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각각의 요소들이 극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파렛의 번역에서 가장 큰 오류는 '세 개의 자석 사이에 떠 있는 물체'로 번역한 것이다. 필자는 이 부분을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세 개의 성향, 즉 세 개의 인력점들이 공간에 떠 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파렛이 '자석사이에 떠 있

최대한의 자유와 균형을 확보한 전쟁의 삼위일체 요소들은 이제 자체의 고유한 이론과 법칙에 따라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에게 삼투 (渗透)하게 된다. 국민은 군대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정부에 대해 전쟁에서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 감시를 한다. 정부는 군대에 정치적 목적에 따른 목표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전쟁의 진행상황을 홍보하며 최대의 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야전사령관과 군대는 정부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고 전쟁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각각의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고 고유의 이론에 따른다 하더라도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을 타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군사적 천재는 전쟁의 삼위일체 요소들인 감성(폭력성, 국민)과 이성(정부)을 중재하는 존재이며, 다른 요소들에게 최대의 자유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이다.

### 나. 불확실성과 우연의 지배자

### 1) 불확실성과 우연의 근원

클라우제비츠 시대의 전쟁은 인간에 의해 지리적 공간에서 물리적 폭력이 충돌하는 현상이었다. 전쟁을 구성하는 인간과 지리적 공간, 물리적 폭력 중 가장 큰 변수는 인간적 요소이다. 적대 쌍방의 인간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현상을 지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전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클라우제비츠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된 정신적 힘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인간의 불완전성에 있다.

는 물체'로 번역한 것에 대해 Bassford가 이것의 오류를 지적하는 실험을 했는데 상세한 것은 앞의 웹주소 클라우제비츠 홈페이지 Reading 메뉴에서 CHRISTOPHER BASSFORD "TIP-TOE THROUGH THE TRINITY"를 참조)

"불완전한 인격체인 인간은 절대적 완전성에는 도달할 수 없으므로 양측 상대에게 공히 나타나는 이러한 불완전성은 하나의 완화 원리가 된다."62)

클라우제비츠는 폭력이 극단적으로 발휘되어 절대적 수준에 도달 하는 이론적 전쟁이 현실적 수준의 전쟁으로 완화되는 출발점을 인 간의 불완전성으로 보았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불확실성을 낳는다. 이 불확실성이 전쟁을 개연성의 영역으로 밀어 넣고, 개연성의 영 역에서는 우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우연적 현상이 자기 에게 유리한 확률을 계산하도록 하여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는 카드 게임과 같은 도박의 성질을 갖는 전쟁이 되는 것이다.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클라우제비츠는 대략 두 가지 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그때까지의 일반적인 방법이었 던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축소하는 것이고. 하나는 불확실성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이 불확실성을 이용하는 방법 이다

"이성은 항상 투명성과 확실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정신은 때때로 불확실성에 이끌려 지각하기도 한다. 인간의 이성은 (・・・) 철학적 탐구와 논리적 추론의 좁은 오솔길을 헤쳐 나가기보다는 상상력과 함께 우연과 행운의

<sup>62)</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40. 1편 1장 7절, '전쟁은 결코 고립된 행동이 아니다'; 류 제승은 이 문단이 포함된 7절의 제목에서 클라우제비츠가 사용한 'isolierter'를 '고립된'으로 번역했는데 단어의 의미로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문맥을 살펴보면 클라우제비츠가 의도했던 것은 '혼자', '단독'이라는 의미가 아닌가 한다. 왜냐하 면 이 7절의 내용은 적대 쌍방 간의 상호작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인성, "죤. 히크의 신정론 연구", 『철학논총』 20집, 2000. p.10; 이승현, "슐라이 에르마허의 인간이해에 대한 소고". 『대학과 복음』 5집. 대한복음학회. 2001. p.128. 전통적인 종교의 시각에서 '신인동형론(神人同形論)'은 인간의 완전성을 주 장하지만, 독일의 종교철학자인 F. 슐라이어마허(1768~1834)는 "죄와 악은 신의 목적의 포괄적인 영역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것은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다. 구원은 불완전성을 전제로 한다고 볼 때 불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은 신의 은총 속에서 신이 원하는 완전성에로의 도달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여 인간의 불완 전성을 주장하였다.

영역에서 안주하기를 원하기 마련이다. 이성은 빈약한 필요성보다는 풍부한 가능성에 탐닉한다."63)

클라우제비츠 당시나 그 이전에 군사문제를 다룬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제한하여 확실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18세기와 19세기 초에는 과학적·수학적인 접근을 통해전쟁에서 확실성을 달성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로이드(Henry Lloyd: 1720~1783)나 뷜로우(Dietritch A. H. von Bülow: 1757~1807)는 지도나 지형적 계측, 행군계획표, 군수조달, 전선(戰線)과 보급선에 관련된 수학적·기하학적 정확도를 추구하여 원칙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하였다. 64) 전쟁 현상을 분석하면서 과학적·수학적으로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인간이 정확성과 확실성을 아무리완벽하게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 자신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하는 불확실성까지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 클라우제비츠는 이러한도식적이고 교조주의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 이론적 시도들은 오직 고정된 가치만을 추구하고 있지만, 전쟁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므로 모든 계산은 가변적 크기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이론적 시도들은 오직 물질적 크기만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전체 군사적 행동은 여러 정신적 힘과 그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론적 시도들은 오직 한편의 활동에 대해 고찰하고 있지만 전쟁은 양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다."65)

<sup>63)</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52.

<sup>64)</sup> 허남성, 앞의 논문, pp.321~322.

<sup>65)</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117.

#### 2) 불확실성과 우연을 지배하는 힘

적대적인 양측은 각각 상대방의 성격·제도·상태·상황 등에 기초하여 개연성의 법칙에 따라 상대의 행동을 추론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이 추론과 행동의 결정, 행동의 실행과정에서 쌍방의 의도와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하여 우연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더구나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불완전성이 야기하는 고통과 피로와 공포라는 전쟁의 독특한 분위기가 마찰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 불확실성과 우연을 확대한다. 불확실성과 우연의 영역에서 양자 간의 물리적 폭력의 수준과 정확성·확실성의 추구 수준이 현격하게 차이 난다면 승리는 수준이 높은 쪽에 돌아갈 확률이 크다. 이러한 정확성과 확실성의 수준이 비슷하다면 고통과 피로와 공포를 극복하는 정신적 요소의 힘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된다. 66 심지어 계량적인 정확성과 확실성의 수준에서 열세라 하여도 최고지휘관의 군사적인 천재성을 보여 주는 정신적인 힘으로 극복하고 승리한 여러 사례를 우리는 볼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가주장하는 정신적 힘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연원한다.

클라우제비츠가 생각하는 불확실성과 우연에 대응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러한 정신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빈약한 확실성의 추구에 대한 필요성보다 인간 정신의 풍부한 가능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7) 클라우제비츠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용하는 풍부한 가능성인 위대한 정신적 힘은 용기로부터 출발한다고 하였다. 이 용기가 모험, 행운, 대담함 등으로 나타나 불확실성과 우연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군사적 활동이 존재하는 영역은 위험의 영역이다. 위험의 영역에서 최고의 정신능력은 용기이다. (···) 모험성, 행운에 대한 믿음, 대담함, 무모함 등은

<sup>66)</sup> 이종학, 앞의 책, pp.107~108.

<sup>67)</sup> 허남성, 앞의 논문, pp.324~325.

용기의 다른 표현이다. 이러한 정신적 특성들은 구성요소인 우연을 좇는다."68)

불확실성의 광야에서 카멜레온 같이 다양하게 변하는 전쟁의 모습은 최고지휘관에게 용기와는 다른 감성(감정)과 이성(오성)이 통합된 정신적 힘을 요구한다. 전쟁 현상의 세계에서 불확실성과 우연은 불가피한 성향이다. 불완전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이며 적대적인 양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적에게나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적보다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이의지가 정신적인 힘이다. 이 정신적 힘이 때로는 대담함이나 무모함으로 발휘되어 불확실성과 우연이 도처에 숨겨진 도박과 같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나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할 수 있게 한다. 군사적 천재의 강한 의지로 나타나는 위대한 정신적 힘은 그래서 최선의 원칙을 만들어 가는 행동을 통해 불확실성과 우연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것이다.

### 다. 전쟁이론과 전략 수행의 중심

### 1) 전쟁이론 정립의 중심

현대 사회과학의 이론적 접근에 대해 컬린저(F. N. Kerlinger)는 "이론이란 논리적 차원에서 나타난 사실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예언(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인(변수)들 간의 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현상의 체계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개념, 정의, 명제들이다."69)라고 정의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현대의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른 이론의 정의와 같이 전쟁 현상에 접근하였다. 그는 전쟁을관찰한 결과에 따라 사실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변수들 간의 관

<sup>68)</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52.

<sup>69)</sup> F. N. 컬린저 저, 고흥화 외 역, 『사회·행동과학 연구방법의 기초』(F. N. Kerlinger, Foundation of Behavioral Research), 서울: 성원사, 1989, p.37.

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전쟁의 체계적인 모습을 보이고자 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 1편 1장의 결론에서 삼위일체의 '세 가지 인력'이 균형을 이루는 이론으로 정립하는 방법을 2편에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2편 1장에서 그는 세 가지 인력 요소 중 '주어진수단'으로서 야전사령관과 군대를 첫 번째 변수로 설명하였다. '주어진 수단'(야전사령관과 군대)을 운용하는 것을 전쟁술로 정의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그는 전쟁술을 전쟁지도(戰爭指導, Krieg-führung)라고 하면서 전쟁지도를 전술과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전술적인 지도는 전투력을 운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전략은 전쟁 목적을 위한 전투의 운용에 관한 지도라는 것이다. 70) 전쟁이론은 전쟁지도이론을 포함하는 전체 전쟁에 대한 논리적 접근의 결과물이다. 전쟁이론에 있어서 전술과 전략은 수단과 목적 측면에서 본질적인 고찰이 이루어져야 함을 클라우제비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론은 목적과 수단의 본질을 고찰해야 한다. 전술에서 수단은 싸움을 수행해야 하는 훈련된 전투력이며 그 목적은 승리이다. (···) 전략은 이러한 승리를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한다. 전략은 전투에 이 목적을 부여하고 그 목적은 고유의 가치를 형성한다."71)

이러한 목적과 수단의 운용에 대한 전쟁지도이론은 전쟁 수행의 주체인 인간이라는 변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나타난다. 전쟁지도이론의 난점(難點)은 군사적 활동의 본질에 포함된 특성을 심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72) 클라우제비츠는 이런 난점을 해소하고 세 가지 인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은 최고지휘관의 천재성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sup>70)</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110.

<sup>71)</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125.

<sup>72)</sup> 이종학, 앞의 책, p.205.

"천재가 행하는 것은 곧 최고의 원칙이어야 한다. (기존의) 이론은 어떻게, 왜 그런가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역할이 없다. (기존의) 이론은 천재에게 순응할지라도 모순을 개선할 수는 없다. (・・・) 천재는 법칙의 범주밖에서 행동하며 (기존의) 이론은 실제와 모순된다."<sup>73)</sup>

클라우제비츠는 이로써 기존의 이론을 능가하는 전쟁이론을 정립 하는데 있어 군사적 천재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 한 것이다. 74)

#### 2) 전략의 수립과 실행에서의 중심

다음은 전략의 수행과 군사적 천재의 관계에 대한 논의이다.

현대적인 전략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방안을 모색하고 그 행동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병력, 장비, 물자 등 군사적인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5) 전쟁의 목적에 따른 수단의 운용에 있어 전투를 운용하는 전략은 군사적 행동방안에 대한 모색과 그 실행을 위한 군사자원의 사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최고지휘관의 천재성을 필요로 한다. 전략과 전체 행동의 조화를 위한 천재의 중요성에 대해 클라우제비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군주 또는 야전사령관의 천재성은 전쟁을 그 목적과 수단에 따라 정확하게 준비하고. 과다 또는 과소행동을 하지 않는데서 가장 잘 입증된다. (・・・) 우리는 무언의 가정의 적중과 성공적인 최종결과를 통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전체 행동의 조화'에서 천재성을 발견하고 감탄한다."<sup>76)</sup>

<sup>73)</sup> 위의 책. pp.117~122.

<sup>74)</sup> 류제승 역, 위의 책, pp.119~123.

<sup>75)</sup> 이종학, 앞의 책, p.221.

<sup>76)</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152.

최고지휘관으로서 군사적 천재는 물리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현상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꿰뚫는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전략의 수행과 관련한 군사적 환경에 대해 클라우제비츠는 당시 유럽 각국의 군 수준이무기·조직·훈련 면에서는 서로 비슷하지만 군의 무덕, 야전사령관의 재능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77) 물리적인 환경면에서는 대등하여 큰 변수가 되지 않지만 군대의 정신적 요소와 군사적행동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지휘관의 능력은 중요한 변수로서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고찰해야 할 변수로서 중요한 정신능력을 군의 무덕, 군의 국민정신, 야전사령관의 재능 등을 들었다. 또한 그는 이 정신적 요소를 단체정신(innungsgeist; esprit de corps, 團體精神)으로서 군대의 무덕(kriegerische Tugend,武德)과 적의 약점에서 이점을 끌어내는 진정한 창조적 힘으로서대당성(kühnheit, 大膽性) 등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야전사령관의 정신적 요소와 관련된 천재성을 강조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요인 중 단체정신으로서 군의 무덕을 먼저 설명하였다. 무덕의 첫째 성격은 절제되고 고차원적 요구에 순응하는 용감성이며, 둘째는 전쟁에서 군인들의 자연적 힘들을 결합시키는 단체정신이다. 셋째는 전쟁의 위험·공포·피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불굴의 노력을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군사정신이다.

두 번째로 설명한 대담성을 클라우제비츠는 "수송병에서 야전사 령관에게 이르기까지 가장 고귀한 덕이며, 무기가 예리함과 광채를 띠도록 해주는 진정한 강철이다."<sup>78)</sup>라고 하여 모든 군인이 갖추어 야할 중요한 정신적 요소로 보았다. 그는 군인의 대담성을 찰나의

<sup>77)</sup> 위의 책, p.170.

<sup>78)</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163.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기회의 순간을 이용함으로써 이점을 최대로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신능력이라고 하였다. 또한 최고지휘관의 전략 실행은 소심함보다는 무모함에 가까운 대담한 결심이 오히려 더 낫다고 하였다.

클라우제비츠가 3편 '전략'에서 정신적 요소를 강조한 이유는 1편에서 설명한 군사적 천재의 개인적인 정신능력에 추가하여 전략을 다룸에 있어 전체 군대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정신적인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전략은 전술적인 승리를 토대로 목표를 달성하고 전쟁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므로 전체 군대의 단체정신으로서 무덕이 필요하다. 또한 전략에서 적의 약점을 이용하여 승리하려면 도박에서처럼 배짱 있게 밀고나가는 대담성이 필요한 것이다. 79) 클라우제비츠는 알렉산더가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다리우스 군의 대형에 간격이 발생한 약점을 이용하여 승리한 전사와 상대의 의표를 찌르는 기동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나폴레옹 군대의 전사로부터 대담성과 무덕의 필요성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클라우제비츠는 최고지휘관으로서 군사적 천재는 전체 군대가 단체정신을 함양하도록 해야 하고, 배짱 있는 기질을 토대로 대담성을 발휘함으로써 전략을 실행하여 승리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 5. 맺음말

현대전의 양상은 클라우제비츠가 19세기 초에 경험한 전쟁과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크게 변화되었다. 지상에서 운용되는

<sup>79)</sup> 허남성, 앞의 논문, p.323.

무기, 해상과 수중, 공중과 우주 공간에서 운용되는 무기 등 그 종 류와 수량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고 많다. 심지어 모든 수단이 동원된 전쟁을 일거에 끝낼 수 있는 핵무기까지 사용되었다. 게다 가 적의 활동을 파악하고 의도를 읽기 위해 군사위성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으며,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휘통제시스템이 운 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공할 최첨단 무기와 장비가 동원되는 현대 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전쟁이 인간과 인간의 상 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싸움 에서 이점을 얻기 위해 인간은 일찍이 싸움의 욕구를 바탕으로 특 별한 발명에 힘썼다. 이로 인해 싸움은 크게 변화되었다. 그러나 싸움이 어떠한 양상을 띠든 간에 그 개념은 변하지 않는다."80)라 고 하였다. 그는 전쟁의 역사 속에서 동원되는 무기와 장비의 물리 적인 속성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전쟁은 상대에게 의지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는 개념은 바뀌지 않는다는 진리를 간파했던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의 이 현명한 통찰은 현대에도 유효하다. 여기에 클라 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군사적 천재'가 현대의 우리에게 주는 함 의가 있다.

첫 번째 함의는 전쟁의 본질적 요소의 조화인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현대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행위 주체에 따른 전쟁의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국민-야전사령관과 군대-정부라는 요소가 중요한 것은 각각의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고 최대의 자유를 유지할 때 가장 큰 힘이 나오기 때문이다. 전쟁의 삼위일체는 모든 요소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공통요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국민과 정부라는 요소와의 균형을 파괴하고 국민과 정부의 자유를 박탈한 야전사령관과 군대 요소로서의 일본군에 의해 수행되었던 군

<sup>80)</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109.

국주의 사례로부터 삼위일체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야전사령관이라는 요소와의 균형을 파괴하고 야전사령관의 자유를 박탈한 정부 요소로서의 히틀러와 스탈린그라드 전투 사례를 통해서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삼위일체 요소가 각각의이론에 의해 움직이도록 자유를 보장할 때 그 조화와 균형 속에서전쟁이라는 현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발휘될 수있다. 전쟁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는 현대에도 그 중요성을 잃지않고 유효한 것이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의 불확실성은 영원히 제거되지 않으므로 불확실성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전쟁에 있어서도 쌍방 간의 무기와 장비, 제도 등 물리적 요소의 차이는 '재빠른 모방자'에 의해 대등해 질 수 있다. 81) 쌍방 간의 첨단 감시장비 등을 이용한 '교묘한 확실성'의 추구는 '영활한 회피자'에 의해 또 다른 불확실성이 파생된다. 결국 더 높은 확실성을 위해 '불완전한 현명함'으로 완전성에 도달하려는 인간 자체의 모순과 이 모순에 의지(依支)한 쌍방 간의 자유의지(意志)가 불확실성을 배태(胚胎)한다. 불확실성을 지배하기 위해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확실성으로 승리하기 위한 불변의 원칙이나 법칙은 있을 수 없으므로 우리의 노력은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에 집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사적으로 천재성을 발휘해야하는 지휘관은 전쟁을 구성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지적(知的) 탐구와 함께 용기, 결단력, 대담성 등 정신능력의 함양을 통해 불확실성을 지배해야할 것이다.

셋째는 지적·정신적 능력을 겸비한 군사적 천재로서 탁월한 리더십 역량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은 최고지휘관 한 사람에 의해 지휘되지만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하 구성원

<sup>81)</sup> 류제승 역, 앞의 책, p.236.

들에 의한 개별 전투에서의 승리가 필수적이다. 이 개별전투에 투 입되는 전체 군대에도 정신적인 능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군의 무덕 으로서 단체정신이다. 단체정신은 어떠한 위험도 극복하고 승리하 겠다는 모든 군대 구성원의 정신적 힘이며 이 정신을 고양시키는 것은 더 없이 중요한 것이다. 군사적 천재에게 필요한 정신적인 능 력은 기존의 규칙을 뛰어넘는 새로운 규칙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 다. 손자가 말한 전승불복(戰勝不復)과 같은 의미에서 현대의 전쟁 을 지휘하는 군인에게도 승리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창출하는 천재 로서의 정신적인 능력은 중요한 가치임이 분명하다. 또한 전쟁이라 는 현상의 전개에 따라 나타나는 적의 약점을 이용하여 승리를 달 성하려면 도박과도 같은 신속한 결심과 실행이 필요하다.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이 일거에 전세를 역전시킨 것처럼 대담한 결심과 실 행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 따라서 현대의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를 쟁취하려는 지휘관은 자신의 역량을 최고모로 향상시키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전체 군대가 응집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구성 원들에게 지적(知的)으로 자극을 주며, 영감적(靈感的)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개별적으로 배려함으로써 이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군사적 천재'는 전쟁에서 나타나고 드물게 출현 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 천재성은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만 하급지휘관에서부터 최고지휘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꾸준히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클라우제비츠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군사적인 무력을 행사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지휘관은 천재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전쟁의 본질 속에서 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목 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군사적 천재가 삼위일체 요소들 간의 중 재자로서. 불확실성과 우연의 지배자로서. 전쟁이론과 전략수행의

#### 368 | 軍史 第99號(2016. 6)

중심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투고일: 2016.4.1, 심사수정일: 2016.5.20, 게재확정일: 2016.5.23.]

주제어 : 전쟁론, 군사적 천재, 삼위일체, 자유와 균형, 전략, 전쟁이론,

불확실성, 용기, 대담성, 단체정신



<ABSTRACT>

### The meaning of 'Military Genius' in Clausewitz's On War

Im, Ik-So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research that how to Clausewitz figure out the concept of 'Military Genius' in *On War* through analyzing for the nature of war and developing the war theory, and that what is the 'Military Genius', and that which meaning and implication is for today.

Clausewitz's perspective in developing for war and 'Military Genius' was searching for nature factors in variety and complicated phenomena of war by Montesquieu's analysis – synthesis method for searching of type of a political structure in *The Spirit of Laws*. In the flow of history, Clausewitz spread out the logic that borrowing the thought and format from Kant and Hegel through core value of Enlightenment – reason, empiricism, science, universalism, freedom, simplicity of human nature.

The concept of 'Military Genius' is the outcome that Clausewitz developed the logic about correlation between the appeared genius in war phenomena and unique traits of genius and artist in Kant's Critique of Judgment. Clausewitz accepted the thought of Kant's Theory of Genius and Theory of Art and A. Gerard's opinion. But, Clausewitz explained the mental capacity in his own ward re-interpreting unique trait for Military Genius in war phenomenon that distinguish Kant's genius in the Theory of Art.

The Meaning of Military Genius in *On War* is that he is the existence of playing a main part for maintaining maximum freedom and balance to element of trinity as the arbitrating exist. And that he play a

center part for developing the victorious strategy thinking over all physical and mental elements, passing through the total phenomenon world in war. And he has to dominate the uncertainty through the courage as private mental capacity and a piercing eye(coup d'oeil), determination, equanimity, the power of self-control, sense of topography as supreme commander. And he has to play a center part for victory and implementing the strategy through fostered the total force's team spirits and demonstrating the fearlessness.

Given the implicature for us today by Clausewitz's *On War* and 'Military Genius' is that we can control and overcome the uncertainty because the uncertainty can't be eliminated forever. And to the soldier, in commanding war, private mental capacity is the highest value in any war. Furthermore, it's also very important for military's team spirit and commander's fearlessness in war. In addition, it's very important value today that we have to right understand trinity as the harmony of nature element in war.

Key words: On War, Military Genius, Trinity, Freedom and Balance, Strategy. War Theory, Uncertainty, Courage, Fearlessness, Team spirit

# 19세기 카프카스 전쟁과 체르케스 민족의 이주 문제

신 동 혁\*

- 1. 머리말
- 2. 19세기 중반 체르케스인의 오스만제국으로의 이주 배경, 과정, 성격
- 3. 맺음말

#### 1 머리말

#### 가. 문제제기

2007년 7월 러시아 흑해 연안 도시이자 조지아, 압하스와 인접해 있는 소치가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면서 소치 역사를 둘러싸고 러시아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역사전쟁(history war)이 본격화되었다. 소치는 19세기 카프카스1) 전쟁 말기 체르

<sup>\*</sup>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연구원

케스인(아듸그인)<sup>2)</sup>들의 최후 항거지였기 때문이다. "체르케스 문제" 혹은 "체르케스 제노사이드"라고 표현되는 역사전쟁은 19세기 카프카스 전쟁이 낳은 비극적 유산으로, 소련 해체 이전까지 러시아에서 관련 주제는 기피 대상이었다. 소련 말기부터 체르케스 문제는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19세기 카프카스 전쟁에 대한 새로운 연구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체르케스 문제에 대한 관심은 중앙과 지방의 정기적인 학술회의와 저술, 체르케스인 디아스포라의 활동, 카프카스 전쟁 기념물 건립을 둘러싼 '역사기념물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카프카스 지역 사회단체의활동과 시민 참여 추모 행사를 통해서 표출되어 왔다. 이렇듯 오늘날 러시아에서 19세기 카프카스 전쟁은 과거이자 현재의 문제이다. '체르케스 문제'가 특히 러시아 국외에서 이슈가 되자 "역사의정치화" 즉 "체르케스 문제의 정치화" 문제가 대두되었다.<sup>3)</sup> 주로

<sup>1) &#</sup>x27;카프카스'라는 용어는 러시아어 카프카스(Kabkás), 영어 코카서스(Caucasus), 영 어를 기준으로 한 캅카스 등으로 쓰이고 있으나, 역사학계의 지역어 표기 경향에 따라 본 글에서는 카프카스로 사용함.

<sup>2)</sup> 체르케스인(черкесы)은 북서카프카스에 사는 민족으로 체르케스인들은 자신들을 아듸그인(адыги)이라 부른다. 카프카스 전쟁을 계기로 전체의 10% 정도만 북카프카스 지역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 90%는 터키, 요르단, 시리아, 리비아, 레바논, 독일, 미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여러 통계에 따르면 5~7백만 명의 체르케스인(아듸그인)이 러시아 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체르케스인을 구성하는 민족으로 아듸그인, 카바르딘인, 샵슈기인 우브 흐인, 아바드제흐인, 브제두그인, 하투카이인, 나투하이인, 테미르고예브인, 아바진인, 베스레네예브인 등이 있다.

<sup>3) 2008</sup>년 조지아-러시아 전쟁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된 가운데, 2011년 5월 20 일 조지아 의회는 카프카스 전쟁에서 러시아제국의 체르케스인 제노사이드를 인 정하는 결정문을 승인하였다. 이 외에 '정치화'를 둘러싼 논쟁은 А. Скаков, Н. С илаев, "Черкесский фактор в современ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Кавказском регионе", Московский центр Канерги, Российская экспертн ая группа, Доклад № 2010/1. сс.1-4; Н.С. Белякова, "Роль и место Черкес ского вороса в политике США, ЕС и Турции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Вестник РУДН, сер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2015, № 1), сс.177-183 참조.

러시아의 중앙과 루스끼<sup>4)</sup> 학자들을 중심으로 체르케스 문제의 정치화를 비판하고 있다.<sup>5)</sup> 다른 한편에서 체르케스 문제는 19세기 카프카스 전쟁 말기 체르케스인들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밝히고 이를 통한 체르케스인 민족정체성 회복은 물론 역사 바로 세우기였다. 주로 카프카스 지역 학자들을 중심으로 카프카스 전쟁 말기 북서카프카스 지역에서 차르 정부가 실시한 오스만제국으로의 체르케스인 이주정책을 비판하고 있다.<sup>6)</sup> 체르케스 문제는 발생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국내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식민정책), 루스끼와 카프카스 민족들의 관계(민족정책), 정교도(기독교도)와 무슬림간의 관계라는 카프카스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또한 오늘날에도 체르케스 문제에는 카프카스 지역 전체의 안정문제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체르케스인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어 있는 터키와의 관계, 체르케스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서방의 관계 등 지정학및 국제정치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sup>7)</sup> 이러한 관점에서 '체르케스

<sup>4)</sup> 이 글에서 '루스끼'라는 용어는 러시아 연방 내에서 동슬라브계나 非카프카스계를 의미함.

<sup>5)</sup> 이와 관련된 자료로는 2014년 1월 29일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원탁회의 "Кавказс кая вой на в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к 150-летию оконча нию вой ны)" 참조. https://www. youtube.com/watch?v=ujTCb6vhJjs(검색일:2015-10-10); А.Ф. Авидзба, "«Черкесский вопрос» как фактор антиросси й ской политики на Кавказе",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Кавказ от прошлого к настоящему. Сборник материал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 ции(Ростов-на-Дону: Фонд науки и образования, 2014), с.35.

<sup>6)</sup> 관련 학술회의 성과(발표집)인 *Материалы круглого стола* <<*Черкесский во рос: опыт, проблемы, перспективй научного осмысления*>>. Кабардино -Балкарский институт бизнеса. Нальчик. 2013; *Кавказская вой на: акту 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истор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к 150-летию окончания)(Нальчик. 2014) 참조.

<sup>7) 2011</sup>년 4월 시리아 내전 발발로 시리아에 살고 있는 체르케스인들의 카프카스로 의 귀향 문제가 체르케스인 디아스포라와 러시아 정부,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내 공화국(카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 간의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시 리아 거주 체르케스인 포함 해외 거주 체르케스인의 귀국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И.С. Бичиева, "Репатриация адыгов на рубеже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림 1〉 VIRGINIA W. MASON, NGM STAFF

SOURCES: SUFIAN ZHEMUKHOV,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annah Thoburn, Brookings Institution.

출처: http://ngm.nationalgeographic.com/2014/01/sochi-russia/circassia-map (검색일: 2015 -03-05).

XX-XXI вв.(К проблеме преодоления последствий Кавказской войны", Кавказская война: уроки истор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ы (Материалы Всероссийск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состоявшейся 19-22 мая 2004 г.) (Майкоп. 2006), сс.31-38 참조.

본 글에서는 19세기 카프카스 전쟁의 역사적 유산인 '체르케스 문제'와 그 핵심인 1850~1860년대 체르케스인(아듸그인)들의 이주8)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연구 전통을 간략히 소개하고 본문에서는 최근 15년 동안의 연구 성과와 관련 학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르 정부의 카프카스 전쟁 정책과 식민정책, 19세기 전반 체르케스인의 오스만제국 이주의 배경, 과정, 성격과 결과를 살펴본다. 특히 체르케스인들의 '이주'가 무하쥐르스트보<sup>9)</sup>, 자발적 이주, 반강제이주, 강제이주, 추방, 민족청소 혹은 제노사이드의 결과인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체르케스 문제"가 단순히 역사 정치화의 산물인지 체르케스인들의 "역사 정의" 회복 문제인지고찰한다.

나. 카프카스 전쟁10)에 대한 3가지 역사서술 전통

2001년 "역사서술에서의 카프카스 전쟁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sup>8)</sup> 카프카스 전쟁과 체르케스 문제를 바라보는 학자들이나 사회단체들의 입장에 따라 '이주'와 관련된 표현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관계로, 중립적으로는 '이주(пер еселение)'라는 표현을 사용하되 구체적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선택한 표현('추방 депортация', '강제 퇴거 выселение', '강제이주', '반강제이주', '청소 очищение' 등)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였다. 특히 사료의 직접 인용 시에는 원어 표기를 병행하였다.

<sup>9)</sup> 러시아에서 '무하쥐르스트보(이주)'(мухаджи́рство, muhajirun, '무하쥐르(이주자들)', мухаджи́ры, muhajirs)는 非무슬림 국가에서 무슬림 국가로의 이주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의 '이주'를 말하며, 무엇보다도 기독교 국가에 의한 무슬림 영토합병과 같은 전쟁행위의 결과가 이주의 원인이다. 또한 합병으로 무슬림이 종교적소수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여 일어나는 이주를 말한다. Абдурахман из Газику муха Книга Воспоминания(Махачкала, 1997), с.96 참조.

<sup>10)</sup> 카프카스 전쟁이란 '용어'와 '전쟁기간'에 대한 입장 속에서 카프카스 전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읽을 수 있다. 『러시아 역사 백과사전』에 "카프카스 전쟁은 1817-1864년 동안 러시아제국과 북카프카스 민족들 간의 전쟁"으로 설명되어 있다.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с древней 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 Энтикл 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Составители: Б. Ю. Иванов и др.(Москва: Болыш ая Рос. энцикл., 1999), с.228; 반면에 체르케스(아듸그)인 역사학자들을 중심으

있다"<sup>11)</sup>는 현대 러시아 역사가인 올레이니코프(Д.И. Олей ников) 의 표현에서 소련 해체 이후 카프카스 전쟁을 둘러싼 러시아 역사학계의 동향과 사회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로부터 10년이 더지난 2014년 10월 카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의 수도인 날치크(Нальчик)에서 열린 카프카스 전쟁 15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카프카스 전쟁에 대한 연구사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고주장했다. <sup>12)</sup> 카프카스 전쟁을 둘러싼 학문적 견해 차이 이상의 무엇이 존재함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카프카스 전쟁에 관한 연구는 러시아어권 외에도 여러 언어 권에서 진행되었다. 연구 성과는 세 개의 주요 정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러시아제국, 카프카스 산악민족들(무 슬림 저항운동 지지자들), 서구열강이다. 이러한 전통은 역사학에 서 카프카스 전쟁의 해석과 평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지난 한 세기 반 동안 계속되고 있다. 첫째 러시아제국주의 전통은 특히 러 시아 혁명 이전에 지배적이었다. 러시아 혁명 전에는 로마노프스키

로 "러시아-카프카스 전쟁"과 "러시아-체르케시야 전쟁", 특히 후자의 수용과 더불어 전쟁기간 또한 1763-1864년, 101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주장이다. 1763년은 차르군대가 모즈독(Моздок: 카바르다(Кабарда)의 북쪽. 오늘날 북오세티아 공화국 남부)에 요새를 세우기 시작한 해로 차르군대 장군이자 전쟁역사가인 바실리 포토(В.А. Потто, 1836-1911)는 모즈독 요새 건설을 "카프카스 정복의 초석"으로 평가하였다. В.А. Потто. Кавказская вой на. Том 1. От древней ших времён до Ермолова(Ставрополь, 1994(1899)), с.56. 이에 근거하면 카프카스 전쟁은 체르케시야에서 시작해서 체르케시야에서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Б.Х. Бгажноков. "Моздок в истории Кавказской войны." Кавказская вой на события, факты, уроки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щии (г. Нальчик 15 - 19 октября 2014 г.)(Нальчик, 2014), сс.3-22 참조.

<sup>11)</sup> Д.И. Олейников, "Россия в Кавказской войне: поиски понимания", Россия и Кавказ сквозь два столетия(СПб., 2001), с.69.

<sup>12) &</sup>quot;Рекомендаци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Ка вказская вой на: символы, образы, стереотипы (к 150-летию со дня ок ончания)»" http://www. heritage-institute.ru/images/docs/kav-v-conf2014-rekom.pdf(검색일: 2016-01-10).

(Д.И. Романовский )<sup>13)</sup>를 필두로 혁명 이후에는 미국 이민자 후 손인 랴자노프스키(N.A. Riazanovsky), 오늘날 러시아에서는 블 리예프(М.М. Блиев)와 데고예프(В.В. Дегоев)가 그 전통을 이었 다.14) 제국주의 전통의 핵심 개념은 "카프카스 평정(안정화)"과 "식민화"였다. 둘째 전통은 산악민족해방운동으로 소비에트시기에 만들어진 학문 전통이다. 핵심 개념은 "정복 vs.저항"이다. 레슬리 블랑쉬(Lesley Blanch), 로버트 바우만(Robert F. Baumann). 모쉬 감머(M. Gammer) 등 적지 않은 서방학자들이 산악민족들의 저항운동론을 지지했다. 15) 이들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러시아 문 서 보관소의 1차 사료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 가 운데. 바우만은 주로 "카프카스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간섭"에 관심 을 두었다. 감머는 주변국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맞선 샤밀의 저항에 주목한 가운데 러시아 국외 문서 보관소에 산재해 있던 1차 자료들을 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시기에는 본 연구의 주 요 연구 대상인 카프카스 전쟁 말기 체르케스인 이주 원인과 과정. 이주의 성격과 카프카스 전쟁에서 체르케스인의 피해에 대한 객관 적인 연구자체가 불가능했다. 셋째는 서방에서 지배적인 지정학적 전통이다. 이 전통은 먼저 데이비드 어크하트(David Urguhart) 의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페르시아와 터키를 보호하는 '방패'로서

<sup>13)</sup> Д.И. Романовский, *Кавказ и кавказская вой на Публичные лекции*(СП 6., 1860) 참조.

<sup>14)</sup> N.A. Riazanovsky, *A History of Russia*(N.Y.: Oxford, 1993), р.389; М.М. Блиев и В.В. Дегоев, *Кавказская вой на*(Москва,1994) 참조.

<sup>15)</sup> Lesley Blanch, The Sabres of Paradise: Conquest and Vengeance in the Caucasus (a biography of Imam Shamyl and history of Imperialist Russian rule in early 19th century Georgia and the Caucasus)(London: BookBlast ePublishing, 1960); Robert F. Baumann, Russian–Soviet Unconventional Wars in the Caucasus, Central Asia, and Afghanistan (Leavenworth: Combat Studies Institute, 1993), pp.1–7; M. Gammer. Muslim Resistance to the Tsar: Shamil and Conquest of Chechnya and Daghestan(London: Routledge, 1994).

카프카스의 이미지에서 발견된다. 이런 전통의 고전적 연구로는 존바델리(John F. Baddeley)의 The Russian Conquest of the Caucasus<sup>16)</sup>가 있다.

본 글의 핵심 연구대상인 '체르케스인 이주 문제'에 대한 최근 연구는 주로 카프카스 민족 출신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17) 러시아 중앙의 학자들은 대부분 체르케스인들의 많은 희생<sup>18)</sup>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러시아제국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체르케스 문제의 초점을 체르케스인들이 오스만제국으로 이주한 후의 상황과 오스만제국의 동화정책으로 인한 체르케스인들의 희생에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카프카스 전쟁에 대한

<sup>16)</sup> John F. Baddeley, *The Russian conquest of the Cauc*asus(London, New York, Bombay, Calcutta: Longmans, Green and Co., 1908). 이 외에도 *North Caucasus Barrier. The Russian Advance toward the Muslim World*/Ed. by M.Bennigsen(London: C. Hurst & Company, 1992)에서 지정학적 연구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sup>17)</sup> А.Х. Бижев, Адыги Северо-Западного Кавказа и кризис Восточного воп роса в конце 20-х — начале 30-гг. XIX века(Май коп, 1994); А.Д. Пане щ, Западная Черкесия в систем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и с Турцией и имаматом Шамиля в XIX в (до 1864 г.)(Май коп, 2007); Э.А. Шеуджен. Кавказская вой на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К 145-летию окончания Кавказской вой ны (Май коп, 2009); История адыгов в доку ментах Осм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рхива Вып. 1. отв. Ред. Б.Х. Бга жноков, сост. А.В. Купіхабиев(Нальчик, 2009).

<sup>18)</sup>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은 19세기 러시아제국군에 내몰려 체르케스인(아듸그인) 90%가 고향인 카프카스를 떠나야 했으며, 10%만이 고향에 남았는데, 150년이 지난 지금 체르케스인 전체의 90%가 여전히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고, 10%만이 카프카스를 중심으로 러시아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터키를 중심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체르케스인은 450~7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터키에만 약 1백50만 명~3백5십만 명 이상의 체르케스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Б.Р. Алиев,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ая диаспора: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втора и половина XIX - XX вв.)(Махачкала: Новый день, 2001), с.94; А.В. Ку шхабиев, Проблемы репатриации зарубежных черкесов история, полит ика, социальная практика(Нальчик: КБНЦ РАН, 2013), с.40 등 참조. 참고 로 터키와 시리아를 비롯하여 해외 거주 체르케스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추정 치만 있을 뿐이다.

해석은 중앙과 지방, 루스끼와 카프카스인(특히 체르케스인, 체첸인, 다게스탄인)으로 단순 구분이 가능할 정도이다.

한국 내에서 카프카스 전쟁사 연구19)는 정세진에 의해 시작되었 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북카프카스에서 카프카스 전쟁과 이슬람적 요소. (모스크바, 2005년)은 카프카스 전쟁에 대 한 국내 연구 중 선구적인 학문적 접근이었다. 그는 당시까지 중요 성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19세기 카프카스 전쟁에서의 이 슬람 요소를 연구하였다. 비슷한 시기 박태성의 「러시아의 북카프 카스 병합과정과 의미 (2005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태성 의 연구는 러시아의 북카프카스 병합과정을 16세기~19세기 카프카 스 전쟁 종료까지 통시적으로 다뤘다. 결과적으로 그의 연구를 심 화·발전시킨 정세진의 더시아제국의 확장과 북카프카스: 이념, 정복, 그리고 저항」(2013)은 최근의 연구동향을 반영하고 있는 가 운데, 제국이념, 폭력, 그리고 저항의 관점에서 러시아제국 확장의 이념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가장 최근의 연구 성과로는 이정하의 「크림전쟁 직후 러시아제국의 카프카스 경략 - A.I. 바라틴스키 의 구상과 그 영향 (2015)이 있다. 그는 카프카스 지역을 비롯한 남부국경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바라틴스키가 카프카스에 대한 군 사 정복의 완수와 카프카스와 아시아를 중추로 삼은 전략을 경략 차원을 넘어선 대전략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하였다고 본다. 즉. 19세기 중반 러시아제국의 카프카스에서의 군사 활동을 당시

<sup>19)</sup> Чжун Се Чжин. "Кавказская вой на и Исламский фактор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Первая половина XIX века)": Дис. …канд. наук; Исторические науки(Москва, 2005); 박태성, 「러시아의 북카프카스 병합과정과 의미」, 『슬라브研究』, 21권 1호, 러시아연구소, 2005, 113~139쪽; 정세진, 「러시아제국의 확장과 북카프카스: 이념, 정복, 그리고 저항」, 『동유럽발칸연구』, 36권, 동유럽발칸연구소, 2013, 269~300쪽; 이정하, 「크림전쟁 직후 러시아제국의 카프카스 경략: А.І. 바랴틴스키의 구상과 그 영향」, 『史叢(사총)』, 87권, 역사연구소, 2016, 245~275쪽.

제국이 처했던 군사적, 전략적 상황과 바랴틴스키라는 인물을 중심 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합해보면, 한국 내 기존의 연구는 19세기 카프카스 전쟁과 관련해 주로 북카프카스와 북동카프카스 지역인 체첸과 다게스탄에 집중되었다. 즉, 북서카프카스 지역인 '체르케스 문제'를 카프카스 전쟁의 일부로 간략히 언급한 정세진과 박태성의 연구 외에 카프카스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체르케스인 이주'와 관련된 구체적인 국내 학술 연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20)

## 2. 19세기 중반 체르케스인의 오스만제국으로의 이주 배경, 과정, 성격

가. 이주 배경: 차르 정부의 북서카프카스 정복정책

1860년대 차르 정부의 카프카스 지역 식민정책은 1861년 9월 차르 알렉산드르 2세(Александр II, 1818~1881)가 체르케스인 (샵슈기인, 아바드제흐인, 우브흐인, 나투하이인)의 대표들에게 한 최후 통첩에 잘 나타나 있다. 차르는 한 달 이내에 체르케스인은

<sup>20)</sup> 이 외에도 북카프카스, 자카프카지예 지역에 대한 다수의 논문이 있지만, 이들 논문에서는 카프카스 전쟁을 소련 해체 이후 발생한 분쟁들과 이 분쟁들의 정 치·사회·문화적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배경 지식으로 간략히 통사적으로 언 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황성우, 김선래, 「北카프카스 지역갈등의 사회문화적 요 인- 체첸 공화국을 중심으로 -」, 『슬라브研究』, 22권 1호, 러시아연구소, 2006, 143~174쪽; 박태성, 「러시아 역사발전 과정에서의 자카프카지예: 자카프카지예의 발전과정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슬라브硏究』, 22권 2호, 러시아연구소, 2006, 105~140쪽. 황성우, 김선래, 「자카프카지예 지역갈등의 사회문화적 요인」, 『국제 지역연구』, 11권 4호, 국제지역연구센터, 2008, 479~497쪽 등.

그들이 살던 땅을 떠나 러시아 정부가 정해준 곳으로 이주하던지 러시아군의 공격을 감내하던지 선택하라고 말했다 21)

앞에서 언급한 차르의 선택지와 달리 차르 정부의 체르케스인 이주정책은 체르케스인을 국외(오스만제국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 다. 카프카스군 사령부 책임자인 육군소장 밀류틴(Д.А. Милютин, 1816~1912)은 카프카스 정복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하나는 지역민들을 정복하고 그들이 살던 지역에 놔두는 것,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빼앗고 정복자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특히 동카프카스 민족들에게 유용하였지만 "자쿠반 지 역 체르케스인들에게는 그러한 방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밀류틴 은 판단했다. 22) 사실상 차르가 제시한 선택지와 차르 정부의 이주 정책에 체르케스인들이 자신들의 땅에 남을 수 있는 권리는 없었다.

체르케스인의 국외 이주 계획은 1860년대 처음이 아니었다. 하 지만 이전에는 모든 산악민들을 제거하려는 고려는 없었다. 중장 세레브랴코프(Л.М. Серебряков, 1792~1862)는 1853년 6월 17일 "경솔한" 나투하이인들의 평화애호적인 약속에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나투하이인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서 그들을 무력으로 추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동시 에 그들의 땅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켜야 한다"고 카프카스 총사 령관에게 보고했다. 23)

1860년대 차르 정부의 정책은 처음부터 체르케스인들의 국외 이 주였음이 차르가 제안한 국내 이주 계획에서도 확인된다. 차르 정 부는 토지와 새로운 거주지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체르케

<sup>21)</sup>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ЦГВИА). Ф.38, оп.30.286, св.870. д.19.

<sup>22)</sup> Акты, собранные Кавказскою Археограф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ей. Т.ХІІ, Ч.II(Тифлис, 1904), с.762; 우측 지도 자료 출처: http://www.geocurrents.info/ geopolitics/ circassia-and-the-2014-winter-olympics(검색일: 2016-03-05).

<sup>23)</sup> Там же. с.700.

스인의 국내 이주보다 손쉬운 방법인 국외(오스만제국)로의 강제이 주를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서 종전(終戰)을 앞당길 수 있고 전쟁 을 "영원히" 끝낼 수 있으며 북서카프카스에 대한 러시아 소유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차르 정부군 측에 복종을 전제로 진행한 쿠반 좌측 연안으로의 체르케스인 이주정책은 선언 적 성격을 지녔다고 봐야 한다 24) 이유는 차르 정부군은 체르케스 인들의 오스만제국으로의 이주에만 관심을 가졌고 이를 위한 가능 한 모든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세르만(А.Л. Зиссерм ан, 1824~1897)은 야전사령관 바랴틴스키(А.И. Барятинский, 1815~1879)에 관한 전기(傳記) 논문에서 바라틴스키와 예브도키모 프(Н.И. Евдокимов, 1804-1873)는 "설사 그들이 원할지라도 산 악민족들을 평원으로 이주시키는 것보다. 오스만제국으로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25)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실제로 차르 군대는 산악민들의 대부분을 쿠반 지역으로가 아닌 해안으로 내몰았다. 이 상황에서 산악민들은 오스만제국으로 떠나는 거 외에 는 다른 길이 없었다. 카프카스 능선의 북쪽 길은 산악민들에게는 되돌아 갈 수 없는 길이 되었다.26) 차르 정부가 제시한 쿠반 지역 의 체르케스인 이주 제안이 처음부터 선언적이었음은 1858년부터 쿠반 지역 책임자가 이미 쿠반 지역의 토지 부족을 이유로 정복된 산악민들의 쿠반 이주를 반대한 데에서도 확인된다. 1858년 6월 28일자 바랴틴스키가 바실리치코프(A.H. Bach, Ibunkob, 1818~1881) 공(公)에게 보낸 문서의 내용은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어찌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재도 미래 지방권력에게

<sup>24)</sup> А.П. Берже, "Выселение горцев с Кавказа",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1882), Т. 33. с.348.

<sup>25)</sup> А.Л. Зиссерман, "Фельдмаршал князь А.И.Барятинский", *Русский архи* в. Кн.І, Вып.ІІ, (М.,1889), сс.246,269.

<sup>26)</sup> Его же. с.177.

도 큰 어려움이다. ... 또 토지 부족으로 스타브로폴 지역에 그들을 이주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 카자키 계층으로 편입을 위해 돈(Дон) 지역으로 보낼수도 있지만 이 역시 불가능하다. 산악민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때문이다. ... 어쨌든 정부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산악 지역에서 나온 이 산악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산악민들 사이에 남겨 둘 수도 없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복종을 약속하고우리에게 피난처를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형벌을면하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들의 복종 약속을 거부할 것인가?"27)이었다.

결국 6만 명 이상의 체르케스인들이 쿠반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쿠반 지역 책임자나 카프카스군 수뇌부간의보고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주한 산악민들에게 처음부터사실상 농경이나 목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는 차르정부가 새로운 지역에서의 이들의 정착에 별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박애는 러시아인들에게: 나는 러시아인의 이익을 마지막까지 만족시킨 연후에 남는 것을 산악민들에게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28)고 한 예브도키모프의 체르케스인 "청소(очищение)"계획에 부합되었다. 결국 대다수 쿠반 지역 체르케스인 이주자들은 그 곳을 떠나야만 했다.

차르 정부의 체르케스인 국내이주정책이 선언적이었던 것과 달리 국외이주정책은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이었다. 차르가 임명한 카프카스 대리자는 먼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러시아 대표에게 "터키정부가 이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줄 것"29)을 요청했다. 로리스-멜리코프(М.Т. Лорис-Меликов, 1825~1888)

<sup>27)</sup> *Акты, собранные Кавказскою Археограф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ей*, Т.ХІІ, Ч.ІІ (Тифлис, 1904), с.782.

<sup>28)</sup> Р.А. Фадеев, "Письма с Кавказ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орядок. Россия и Кавказ*(Москва, 2010), с.184.

<sup>29)</sup> Г.А. Дзидзария, *Махаджирство и проблемы истории Абхазии XIX столе тия*(Сухуми, 1982), с.206.

육군소장은 모든 터키 선박 소유주들에게 러시아 항구에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염려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관검사 없이 물품 하역이 가능하며, 이는 흑해 전 연안에서 체르케스인들을 승선시키는 일에도 적용된다고 알렸다. 30) 또 다른 관련 근거로 카프카스 대리자는 쿠타이스크(Кутаисск) 총독이자 육군 중장인 스뱌토폴크-미르스키(Д.И. Святополк-Мирский, 1825~1899) 공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산악민족들이 이주하는데 중요한 장애는 심각하게 부족한 수송수단이다. 이에 우리는 잠시 동안 우리의 행동방식을 바꿔야만 한다. 한시적으로, 터키선박들이 밀수품을 적재하고 있더라도, 산악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연안의어떤 곳에 정박하더라도 그들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그들이 돌아갈때 터키로 이주하는 산악민족들을 증선시킬 경우에는 선박을 세우지 말아야한다. 이주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의 행동은 카프카스 전역의정복을 앞당길 것이다.31"

차르 정부는 체르케스인들의 국외(터키) 이주를 위해 법 제정과 외교적 지원을 강화했다. 1862년 5월 10일 차르 정부는 〈카프카스 위원회〉의 「산악민들의 이주에 관한 법」을 제정했으며 〈터키이주를 돕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는 북카프카스 산악민 이주자들의 수송을 위해 선주(船主)들과의 협상을 주도했다. 32)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차르 정부의 체르케스인 이주정책은 분명 '다른 선택이 없는 강제 민족 단위 국외 이주' 혹은 '추방' 정책으로 봐야 할 것이다.

Трагические последствия Кавказской войны для адыгов вторая поло вина XIX века.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и материалов(Нальчик, 2000), с.75.

<sup>31)</sup> Там же. с.84.

<sup>32)</sup>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Ответ. редакторы В.О. Бобровников, И.Л. Бабич(Москва, 2007), с.164;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 лерий Перхавко, "Итоги Кавказской войны и переселение горцев Кавказа", Вестник Российской нации, (2014), № 1. с.33.

#### 나. 체르케스인의 오스만제국 이주 과정과 성격

1) 무하쥐르스트보, 강제이주, 추방, 민족청소, 제노사이드?

19세기 북서카프카스 역사에서 핵심적이며 복잡한 주제는 카프 카스 전쟁 말기와 종전(1864년) 직후에 있었던 카프카스 산악민족들의 대규모 이주 문제이다. 이 시기에 일어난 '대규모 이주'는 보는 관점에 따라 무하쥐르스트보(МУХАДЖИ́РСТВО, muhajirun)<sup>33)</sup>, 강제이주, 추방, 민족청소, 제노사이드로 볼 수 있다. 체르케스 문제에서 무하쥐르스트보는 오늘날 북서카프카스(카바르디노-발카리야, 카라차예보-체르케시야, 아듸기야, 크라스노다르 크라이)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 <sup>34)</sup> 19세기-20세기 초 동안 북서카프카스지역 산악민 90% 이상이 자신들의 땅을 떠나야만 했던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발레리 티쉬코프(Baлерий Типков)<sup>35)</sup>에 의하면 카프카스에서의 무하쥐르스트보는 1817년~1864년 카프카스 전쟁 말기와 19세기 마지막 10년~20세기 초 동안 러시아제국에 의해 정복된 카프카스 지역 토착민의 오스만제국으로의 대규모 탈출(주로 무슬림 원주민)을 말한다. 티쉬코프는 이들 중에 아듸그인(체르케스인)들이

<sup>33)</sup> 무하쥐르스트보에 대해서는 각주 '9)'번 참조.

<sup>34)</sup> 이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입장은 "Черкесская диаспора", Адыгская (черкес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Москва, 2006), сс.405-472; А.Х. Боров, «Черкесский в опрос» как историко-политический феномен(Нальчик, 2012); Черкесск ий вопрос история, проблемы и пути решения(Нальчик, 2012); Кавказ ская вой на: уроки истор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ы (Материалы Всероссий ск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состоявшейся 19-22 мая 2004 г.) (Майкоп. 2006) 참조.

<sup>35)</sup> 발레리 티쉬코프는 현재 러시아 학술원 회원이며 1989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학술원 산하 인종인류학 연구소 소장으로 러시아 내 민족문제를 비롯하여 카프 카스 문제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서 '체르케스 문제', 특히 체르케스인 이주 성격에 대한 그의 입장은 러시아의 중앙과 주요 루스끼 카 프카스 전문가의 일반적인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다수라는 입장이다. 36) 티쉬코프는 무하쥐르스트보의 원인으로 전쟁·정치적, 종교적, 혈연적, 지정학적, 사회·경제적 등 복합 적<sup>37)</sup> 원인을 지적하면서도 무하쥐르스트보의 주된 원인을 주로 사회·경제적, 지정학적('동방문제, восточный вопрос')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전쟁·정치적 측면에서 티쉬코프는 차르 정부가 주도한 「산악민들의 추방 계획」의 잔혹성<sup>38)</sup> 외에도 전쟁기간 동안 내부 이주(산악민들의 평원으로 이동), 중앙과 북서카프카스 지역에 방어적 성격을 지닌 마을이나 도시-요새들의 축성, 러시아군의 식민정책을 무하쥐르스트보의 원인으로 본다. 아울러 강제이주는 러시아군뿐만이 아니라 샤밀(Шамиль, 1797~1871)에 의해서도 이마마트 (имамат, 신정국가)에 반대하는 산악민들에게 행해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종교적 측면에서 티쉬코프는 무슬림 성직자들이 무하쥐르스트보에 영향을 끼친 점에 주목하였다. 아듸그인 무슬림 성직자들은 정교 차르 권력 하에 있기를 원치 않아 이주를 택했으며, 여기에 더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 심각한 소문이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루스끼들이 지역민을 러시아군에 징집할 것이며 징집되면 이슬람 전통의식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었다. 39) 실제로 이러한 종교적 측면은 다게스탄(아바르인들과 라르긴인들)에서 특별한의미를 지녔는데, 다게스탄에서의 무하쥐르스트보는 북서카프카스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규모라고 설명한다. 그런가 하면 티쉬코프는 이맘 샤밀 대리자들의 터키로의 이주가 무하쥐르스트보 확산의

<sup>36)</sup>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с.23. '체르케스인 이주-무하쥐르스트 보'라고 주장하는 다른 학자들과 달리 강제성("강제된 이주자-무하쥐르")을 인정 한다

<sup>37)</sup>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с.163.

<sup>38)</sup> Р.А. Фадее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орядок Россия и Кавказа(Москва, 2010).

<sup>39)</sup>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с.30.

촉매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카프카스 산악민들의 이주에서 종교적 요소를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다. 40) 티쉬코프의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무하쥐르스트보에서 종교적인 요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못했다면 티쉬코프가 말하는 당시의 체르케스인 무하쥐르스트보가 '강제된-무하쥐르스트보'이든 아니든 무하쥐르스트보라 규정할수 있는가이다.

실제로 체르케스인의 오스만제국 '이주' 과정에서 이슬람 요소는 다른 카프카스 산악민족들과 달리 매우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이슬람 요소의 핵심이어야 할 이슬람 정신으로 무장한 對러시아 투쟁인 '뮤리디즘(МГОРИДИЗМ)'<sup>41)</sup>, 즉 이슬람 제자운동이 아듸그인들 사이에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트루이드교(Друидизм)와 아듸게 하브제(адыгэ хабээ)였다. 전자는 다신교적 특성을 지닌 전통신앙으로서 19세기 중반 즉 1864년 체르케스인들이 고향을 떠날 때까지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후자인 '아듸게 하브제'('체르케스 에티켓')는 체르케스인들 사이에서 계승되어 온 관습이자 약속인 것이다. <sup>42)</sup> 우네줴프(K.X. Унежев)는 카프카스의 다른 민족들에게서와 달리 아듸그인들의 삶에서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아듸게 하브제는 거의 모든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종교보다 더 많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sup>43)</sup>

티쉬코프는 무하쥐르스트보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아듸그인 (체르케스인) 귀족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듸그인들이 러시아군의

<sup>40)</sup> Их же.

<sup>41)</sup> 뮤리디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세진. "19세기 카프카스 전쟁과 이슬람 요소" 『슬라브연구』 21(1), 2005, pp.165~188 참조.

М. Кандур, Мюридизм: история Кавказских вой н 1819–1859(Нальчик, 1996); Б.С. Агрба, С.Х. Хотко, «Островная» цивилизация Черкесии(Май к оп. 2004), сс.39–40; Б.Х. Бгажноков, Адыгская этика(Нальчик, 1999).

<sup>43)</sup> К.Х. Унежев, Феномен адыгской (черкес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льчик. 1997).

통제 하에 있는 지역에 머물 것인가 혹은 터키로 떠날 것인가 선택 의 기로에 처했을 때 귀족들이 대규모 무하쥐르스트보에 앞장섰다 는 견해다. 이유는 농노해방(1861년)에 따른 노동력 손실은 물론 그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줘야 했던 당시 상황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귀족들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킨 건 1862년 산악지역으로부 터 이주한 노예들을 해방하고 그들을 살기 용이한 곳으로 이주시키 기를 바란다는 카프카스 러시아 행정당국의 발표였다는 것이다. 44) 아마도 귀족들로부터(지배층으로부터) 산악민들을 분리시킴으로써 산악민들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배층을 약화시켜 카프카스 정복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었다. 티쉬코프가 지적한 대로 농노해방령 선포의 또 다른 효과 는 카프카스에서 기반을 잃은 귀족들이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들이 거나 이주하는 것이었다. 귀족들이 떠나자 일반 산악민들도 따라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주에 필요한 경제력 보유 여부를 떠나 다른 때보다도 전쟁 상황에서 이주를 이끄는 지 도층(귀족)의 역할은 더욱 컸을 것이다. 하지만 1860년대 전반 치 열하게 전투가 진행되던 북서카프카스 지역에서 이런 상식은 통하 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1864년 일시에 북서카프카스의 흑해연 안으로 내몰린 수십 만 체르케스인들의 규모와 비교하면 귀족들이 주도한 이주 규모는 소규모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한편 티쉬코프는 무하쥐르스트보의 또 다른 사회적 요인으로 많은 경우 산악민들은 종교나 사회적 상층부의 영향력 있는 일가친척 들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견해다. 이들은 종족 내부의 관습과 전통을 악용하였으며 이들의 영향 하에 이주자들은 순진하게 당시의 러시아군에 의한 고통스런 삶과 모욕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했으리라는

<sup>44)</sup>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с.28; *Россий 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 ый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Ф. 14257. Оп. 3. Д. 534. Д. 1–2 об.

지적이다. 45) 이런 주장은 데고예프(B.B. Дегоев)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그는 "대규모의 이주를 촉진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체르케스 귀족들에 의존하였다. 군사·정치적 문제들보다는 오히려 러시아 권력 하에서 개인적 사회·경제적 미래를 염려했다" 46)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티쉬코프는 귀족들뿐만 아니라 대규모 무하쥐르스트보가 가능했던 사회·경제적 이유로 토지와 재산을 잃은 참전자들이 가족과 함께 기꺼이 오스만제국으로 떠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산악민들에게 익숙했던 인질 획득과 거래는 이제과거가 되었으며, 자쿠반 체르케시야에서 특히 우브이흐인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이었던 노예와 전쟁포로들을 이용한 노예무역 역시불가능해졌으며, 그래서 우브이흐인들은 카프카스 전쟁 종전 이후북카프카스를 떠났다는 것이다. 47) 이러한 주장 역시 시기, 장소, 상황에 따른 이주 규모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티쉬코프의 입장은 명확해진다. 산악민들의 대규모 이주(무하쥐르스트보)는 전쟁·정치·종교적 이유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농노해방령을 계기로 귀족들이 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산악민들을 압박, 설득, 선동한결과라는 것이다. 즉, 티쉬코프는 대규모 무하쥐르스트보(이주) 책임 문제에 있어서 산악민족들의 상층부인 귀족들에게 책임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1858~1864년 전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특히 1864년 최소 50만 명 이상의 체르케스인들이 일시에 흑해연안으로 내몰렸던 당시 상황에서 귀족들, 친척들의영향이 컸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티쉬코프의 주장은 1864년

<sup>45)</sup>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с.29.

<sup>46)</sup> В.В. Дегоев. Кавказ и великие державы (Москва, 2009), с.442.

<sup>47)</sup>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с.29;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Ответ. редакторы В.О. Бобровников, И.Л. Бабич (Москва. 2007), с.164.

이전의 체르케스인들의 이주나 카프카스 다른 지역에서의 무하쥐르 스트보 설명에 부분적으로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 시기, 상황에 따른 이주 규모와 성격이 달랐던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티쉬코프는 카프카스 산악민족들의 이주 문제는 러시아와 터키 정부의 관심사로 무하쥐르스트보는 근동지역에서 계속되던 러시아-터키 간 경쟁의 일부였으며, 경쟁은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 서구 열강들의 간섭으로 복잡해졌다는 견해다. 그는 당시 터키 정부의 적극적인 체르케스인 유입 정책 목적은 첫째는 소요 위험성이 높은 발칸 지역과 소아시아에서 기독교인 대비 무슬림의 균형 맞추기, 둘째는 오스만제국 내 민족해방 운동 진압을 위한형벌적 수단으로써 체르케스인 이용, 셋째는 러서아에 맞서 터키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이주자들로 터키 군대를 충원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넷째는 서구 열장, 특히 영국이 산악민들의 정서를이용해 러시아를 견제하려 했는데, 영국인들은 억울해하는 산악민들 속에서 러시아에 대항할 무기를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카프카스 산악민족들의 오스만제국으로의 이주는 차르 정부의 정책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견해다.48)

티쉬코프가 제시한 터키와 영국의 체르케스인 유입 정책은 대부분 사실에 가깝고 이러한 상황이 19세기 전체에서 발견되지만, 제시한 네 가지 사항은 시기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례로 북서카프카스에서 러시아-터키, 러시아-영국 간 경쟁, 즉 제시한 모든 내용을 차르 정부에 의한 체르케스인 이주정책 시기인 1858~1864년에는 적용시킬 수 없다는점이다. 티쉬코프는 체르케스인 이주가 1864년에 집중된 원인과국제관계의 연관성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를

<sup>48)</sup>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сс.30-31; И.В. Бестужев, *Крымск* ая вой на(Москва, 1956), с.17 참조.

포함시켜 체르케스인 이주 문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터키와 열강의 이해관계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서카프카스 지역을 둘러싼 열강들의 정책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바뀌었다. 일례로 북서카프카스에서 체르케스인들의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자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세력 확대를 우려한 영국이 이주 초기와 달리 이주에 반대하도록 터키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이주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터키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49)

오히려 북서카프카스 지역에서 차르 정부의 체르케스인 이주정책은 크림전쟁 패배 이후 흑해지역에서 러시아 세력의 약화와 남부국경 지역의 불안정성 증가, 국가재정 악화와 사회적 불안 증가, 카프카스 전쟁 장거화에 따른 부담과 관련짓는 것이 합당하다. 즉, 북서카프카스 경략 과정에서 차르 정부의 이주나 추방이라는 수단의 동원은 차르 정부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앞서 지적한대로 19세기 중반 대규모 이주에 대한 터키 정부의 반대도 있었다. 따라서 터키와 영국 등이 카프카스 내·외부에서 러시아에 대한 저항세력으로서 체르케스인과 체르케스인 이주자를 이용하고자했던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1864년의 대규모 체르케스인 이주의주된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50) 차르 정부는 흑해와 인접한 북서

<sup>49)</sup> Е.А. Мурзаканова, "Кавказская вой на и махаджирство." Кавказская вой на: уроки истор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атериалы Всероссийской научно – 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состоявшейся 19–22 мая 2004 г.) (Майкоп. 2006), с.389;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с.173.

<sup>50)</sup> 북서카프카스(체르케시야) 지역을 둘러싼 러시아와 터키를 비롯한 서구열강의 '동방정책' 혹은 '동방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카프카스 전쟁 말기 체르케스인의 오스만제국으로 '이주'와 관련해서만 간략히 언급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Архи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им перии. Ф. Турецкий стол. Оп. 502-а. Д. 4502. Лк. 5-5 об. Его Сиятельст ву Графу К.В. Нессельроде. 4 ноября 1843 г. (Тифлис); А.В. Фадеев, Россия и восточный кризис 20-х гг. XIX века(Москва, 1958; А.К. Чеучева,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на Север о-Западном Кавказе в 50-60-х гг. XIX в.", Вестник Адългейского госу

카프카스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차르 정부는 북서카프카스 지역에서 전세가 이미 러시아 쪽으로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보다는 이주정책을 통해 '영원히' 제거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티쉬코프는 카프카스 무하쥐르스트보의 역사를 6단계로 구분하였다. ① 1850년대 후반, ② 1860년대 전반, ③ 1860년대 후반 -1870년대 초, ④ 1870년대, ⑤ 1880년대-1890년대 초, ⑥ 1890년대 후반-1920년대로, 무하쥐르스트보의 정점은 크림전쟁 (1853-1856)과 러시아-터키 전쟁(1877-1878) 사이라는 입장이다.51) 티쉬코프의 '정점'시기 구분과 달리 본 글에서는 제2단계인 1860년대 전반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유는 2단계의 이주자 수가전체 6단계 총합의 70-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 카프카스 지역에서체르케스인의 90%가 고향을 떠나야만 했기 때문이다.

우선 1860년대 전반 이전인 1840-1850년대 특징은 산악민족 이주가 비공개적으로 메카와 메디나로의 성지순례 명분으로 소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52) 그렇다면 이 시기의 이주가 성지순례 명분으로, 소규모로 진행된 배경은 무엇인가? 1858~1861년에 오스만제국 정부에서 러시아로부터 이주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러시아 정부는 산악거주민들의 종교적 감정을 존중하여 순례를 떠나려는 이들을 막을 수 없다고 터기 정부에 해명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예르몰로프(AII Ермолов, 1777~1861) 시기인 1820년대~1850년대까지 오랫동안 러시아

*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 2, (2012); 정세진,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 의 국제관계에 대한 소고 - 전쟁과 종교적 특성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7권 1호, 국제지역연구센터, 2013, 115~140쪽 참조.

<sup>51)</sup>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с.32.

<sup>52)</sup> Их же, с.32.

정부가 카프카스 거주민들, 특히 지역 대표들의 성지순례를 제한하거나 방해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북서카프카스 산악민 이주정책이 1860년대 초에 바뀐 것이다. 53) 1860년대 초 카프카스의 차르 대리자인 바라틴스키는 군사적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아듸그인(체르케스인)을 평원이나 쿠반의 좌안, 혹은 터키로 최대 30만 명을 이주시키는 것 이상의 더 급진적인 정책 승인의 필요성을 알렉산드르 2세에게 설명했고 그를 설득하였다. 54) 그 결과 제2단계에 해당하는 1862년부터 러시아 정부는 저항하는 카프카스인들(체르케스인들)을 성지순례로 가장해서 터키로 이주시켰다. 예르몰로프 시기와반대로 러시아 정부는 이주를 최대한 늘렸다. 이에 대해서는 카프카스군 장군이었던 아르벨리아니(Г.Д. Орбелиани, 1804~1883)가 쿠반주 사령관인 예브도키모프에게 보낸 1862년 9월 11일자 서신에 잘 나타나 있다.

"1858년부터 시작된 우리 무슬람들의 터키로의 이주(переселение)는 우리 정부와 터키 정부 간의 매우 적극적인 외교 노력의 결과였다. 본인이 외교문서들을 보고 놀란 것은 터키 정부는 이주민들을 받을 의향이 이전부터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산악민들의 대규모 이주에 따른 어려움과 불만을 표시해 왔다는 사실이다. 터기 장관성은 수차례 터키 주재 우리 대표를 통해 우리 외무성과 차르의 카프카스 대리자에게 이주를 중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명분으로 이러한 불평과 요청을 거절했다. 우리 정부는 무슬림들을 쫓아내는(Выселение) 것이 아니라 메카로의 순례를 위해 그들에게 단지 휴가를 주는 것이며 이는 종교관용정책의 일환으로 아마도 터키 정부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역시 그러한 휴가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하였다. 왜냐하면 이주자들은 자신의 비용으로 갔기 때문이며, 터키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주자들의 규모가 곧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주자들이 대규모로 흑해연안 항구로 몰려들었을 때 그들의 개인 비용이

<sup>53)</sup> Д.А. Милютин, *Воспоминания*. 1856-1860(Москва, 2004), с.156.

<sup>54)</sup>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с.32.

아니라 국고(國庫)로 용선하였고 그로인해 이주자들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전처럼 터키 정부의 불평을 거절할 그럴듯한 명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은 당장은 터키 정부가 이주자들의 수를 제한 없이 받는데 동의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① 최대한 선박을 많이 용선하되 가능한 한 비공개로 해야 한다. ② 터키 정부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이주자들이 가능한 한 소규모로 떠날 수 있도록 한다. ③ 산악민들 중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는 가족들은 국고로라도 떠나게 해야 한다. 이유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멀리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55)

인용된 사료는 1860년대 전반 북서카프카스 산악민들의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국외 이주 대상에 '저항하는 산악민들'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 규모로 볼 때 사실상 북서 카프카스 산악민(체르케스인)들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예브도키모프의 입장에서도 확인된다. 1860년대 러시아군에 저항하는 카프카스 민족들에게 가혹한 태도로 유명한 쿠반주 군사령관 예브도키모프는 1862년 산악민들의 터키 이주에 대해 "서카프카스 정복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며 터키는 산악민들이 절망에 이르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자유로운 출구를 열 것이다. 산악민들은 러시아 정부에 정복당하는 것보다 분명히 죽음과 파괴를 선호할 것이기때문이라고"56) 피력했다. 한편 1860년대 초 북서카프카스 아듸그인(체르케스인) 거주지를 러시아군이 원을 그리며 조여들어간 결과산악민 피난민 규모는 급격히 증가했다. 러시아군의 공격을 피해체르케스인들이 떠난 자리에는 러시아군의 지시로 카자키 마을들이들어섰다

<sup>55)</sup> *Акты, собранные Кавказскою Археограф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ей*, Т.ХІІ, Ч.ІІ, (Тифлис, 1904), сс.1010–1012.

<sup>56)</sup> С. Кухарук, "Николай Евдокимов", *Родина*, (1994), No. 3/4, cc.64-65.

#### 다. 체르케스인 전쟁난민들의 불가피한 비극, 만들어진 비극?

카프카스 전쟁 말기 차르 정부는 북서카프카스 산악민들의 육로 이주를 불허함으로써 대규모(40~50만) 이주자들이 흑해 연안으로 몰려들게 되었다. 이주 과정에서 소수의 부유한 산악민들은 스스로 배를 빌려 흑해를 통해 터키로 떠날 수 있었지만, 그런 능력이 없었던 대다수 산악민들은 흑해 연안으로 나가 기약 없이 배를 기다리거나 터키로 가기 위한 다른 방도를 찾아야 했다. 러시아군에게 내몰려진 수많은 산악민들을 수송할 배는 매우 부족했다. 또한 어느 누구도 해안에 피난민들의 임시 거처를 세우는데 관심을 두지않았다. 산악민들은 식량, 돈과 따뜻한 옷도 없이 배를 기다려야 했고 때로는 3-6개월 혹은 그 이상을 기다리면서 비조차 가릴 수 없는 해안에서 견뎌야 했다.57)

북서카프카스 산악민-피난민들이 전혀 준비도 없이 흑해 연안으로 내몰린 상황을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크림전쟁 (1853~1856)에서 벗어나 카프카스 정복에 집중하기 시작한 차르정부는 사실상 카프카스 전쟁에서 이미 승기를 잡은 때인 1860년 대 전반 "체르케스인들이 살던 땅에서 그들을 '청소(очищение)'하는 계획을 세우고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북카프카스에 집중시켰다.58) 카프카스 산맥의 세 방향에서 포위되어 남쪽으로 쫓겨난

<sup>57)</sup> 티쉬코프는 재산이 없는 무하쥐르들(이주자들)이 대규모로 모여 있던 지역에 첫째 1863-1864년 동안 기후조건은 1810년 이후 없었던 나쁜 기후환경(추운 겨울)이었으며, 둘째 전염병 확산으로 러시아인 선박 소유주의 수송 거부, 셋째 터키선주들이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 인원을 초과하여 운항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с.34.

<sup>58)</sup> А.С. Марзей, "Выселение адыгов Западной Черкесии в Османскую Им перию в период с 1862 по 1865 годы: определяющие факторы процесс а", Материалы круглого стола << Черкесский ворос: опыт, проблемы, перспективй научного осмысления>>, Кабардино-Балкарский инстит ут бизнеса(Нальчик. 2013), с.34.

체르케스인들은 "... 바다로 내몰렸으며, 그들에게는 터키로 가는 길만이 남아 있었다."59)

러시아군에 끝까지 저항했던 북서카프카스의 체르케스인에 대한 이주정책은 카프카스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터키로의 이주정책과는 달랐다. 북서카프카스와 달리 중앙과 북동카프카스 지역에서의 이주 는 자발적 측면도 있었지만, 대규모 이주는 없었다. 1865년 오세 티야인과 체첸인 거의 5천 세대가 무사 쿤두호프(Myca Kyhдyxob, 1818-1889)의 지도 아래 터키로 이주했다. 이주비용으로 국고에 서 은화 13만 루블이 사용되었다. 육로인 군용-그루지아 도로를 따라 블라디카프카스로부터 출발한 각각의 이주 그룹에게는 이동 중 숙식을 위해 150루블이 지급되었다. 그들에게는 가축과 이동용 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런데 북카프카스로부터의 아듸그-무하쥐르들은 그러한 좋은 이주 조건은 갖지 못했다. 차르 정부는 이들의 요구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재정지원도 없었다. 이와 관련 티쉬코프는 체르케스인(아티그인) 이주에 중앙과 북동지역 카 프카스인들에게와 같은 지원이 없었던 이유는 첫째 러시아 정부가 체르케스인 인구를 잘못 파악했으며(파악한 인구보다 훨씬 많았 다). 터키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둘째. 너무 서둘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60) 이러한 주장 관련 체르케스인 이주정책을 주도했던 인 물들의 발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설사 그들이 원할지라도 산악민족들을 평원으로 이주시키는 것보다 터키로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 - A. J. 지세르만<sup>61)</sup> "첫째. 박애는 러시아인에게: 나는 러시아인의 마지막 이익까지 만족시킨

<sup>59)</sup> Г.А. Дзидзария, Махаджирство и проблемы истории Абхазии XIX столе тия, с.199.

<sup>60)</sup>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с.35.

А.Л. Зиссерман, "Фельдмаршал князь А.И.Барятинский", Русский архи в. Кн.І. Вып.ІІ. (Москва,1889), сс.246,269.

연후에 남는 것을 산악민족들에게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 H.M. 예브도키모프62)

"정복되지 않는 부족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적대적인 산악민들의 제거 차원에서 카프카스 밖의 이주 장소를 찾아야 한다." - Д.А. 밀류틴<sup>(3)</sup>

"바다에 이주자들이 많을수록 앞으로 정복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어려움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 Д.Α. 밀류틴<sup>64)</sup>

"귀국은 있을 수 없다." - 차르 알렉산드르 II세(1872년 8,500 세대를 대표하여 터키 이주자 대표들이 고향이나 러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차르에게 허락을 요청했을 때 차르의 답변)65).

한편, 체르케스인들이 직면한 참혹상에 대해 티쉬코프는 카프카스 산악민족들의 오스만제국 이주 과정에서 잘못된 조치에 대한 책임은 러시아와 터키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대규모 이주와 이주 과정에서 러시아와 터키 이주자 수용소에서의 높은 사망률은 의심할 여지없이 아듸그 민족 역사에서 엄청난 비극이었다고인정한다. 하지만 차르 정부에게는 아듸그인(체르케스인)의 제거목적이 없었으며, 카프카스에서 차르 정부 정책의 중요한 과제는흑해 연안을 지키고 제국의 새로운 국경을 공고히하는 것이었다는입장이다. 이 외에도 최근 북카프카스 지역 전문가들과 해외 체르케스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체르케스 제노사이

<sup>62)</sup> Р.А. Фадеев, "Письма с Кавказ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орядок Россия и Кавказ(Москва, 2010), с.184; 예브도키모프가 체르케스인 이주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и мперии, Ответ. редакторы В.О. Бобровников, И.Л. Бабич(Москва, 2007), с.163.

<sup>63)</sup> *Акты, собранные Кавказскою Археограф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ей*, Т.ХІ. Ч.ІІ, (Тифлис, 1904), с.772.

<sup>64)</sup> Там же, с.893.

<sup>65)</sup> http://adygi.ru/index.php?newsid=8034(검색일: 2015-03-05);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с.36; http://adygi.ru/index.php?newsid=8034(검색일: 2015-03-05).

드"문제에 대해, 티쉬코프는 무하쥐르스트보를 야기한 러시아 쪽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엄격한 법률적 측면(1948년 유엔 협약기준)에서도 제노사이드로 평가될 수 없다. 차르 정부가 지시한 내용은 산악민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악인들을 정복하기위해 조직적인 반강제이주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견해다. 그는 19세기 사건들에 현대의 법적 기준 적용은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러 통계에 따르면 50만 명~1백5십만 명의 북카프카스 출신자들이 오스만제국의 여러 지역(소아시아, 근동, 발칸)으로 이주하였다.66) 일정기간 북카프카스 서쪽 지역은 사실상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67) 즉, 지난 5백년 이상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 온 사람들이 불과 2~3년 사이에 없게 된 상황을 '이주', '무하쥐르스트보', '강제된-무하쥐르스트보', '조직적인 반강제이주' 등 어떤 표현으로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카프카스 전쟁에서 살아남아 북서카프카스를 떠난 체르케스인은 전체의 90%로 알려져 있다.68)

# 3. 맺음말

'체르케스 문제'는 19세기 카프카스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sup>66)</sup> А.П. Берже, "Выселение горцев с Кавказа",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1882), Т.33. сс.163, 176; Т.Х. Кумыков, "К вопросу о переселении адыгов в Тур цию", Ученые записки Кабардино-Балкар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Нальчи к, 1971), Вып. 43. с.12; А.А. Ганич, Черкесы в Иордании особенности ис торическ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Москва, 2007), с.36.

<sup>67)</sup>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с.36.

<sup>68)</sup> 전쟁 중 희생자와 이주 과정에서의 희생자 등을 고려할 때 전쟁 전에 북서카프 카스에는 150만 명~200만 명이 거주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요소이자 한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를 담고 있다. 1864년 카프카스 전쟁의 종전과 함께 '체르케시야(Черкессия, Circassia)' 라는 지명은 사실상 지도에서 사라졌다. 5백년 이상 북서카프카스 지역에서 살아온 체르케스인(아듸그인)들은 카프카스 전쟁으로 인 해 인구의 약 90%가 자신들의 땅인 북서카프카스를 떠나야만 했 으며, 그들이 살았던 그 곳에는 21세기에도 체르케스인 전체의 10% 정도가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가고 있으며, 나머지 90%는 여전히 전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다. 소련의 해체로 국내ㆍ 외 체르케스인들은 민족정체성 회복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그 일 확으로 '카프카스 전쟁'과 전쟁의 비극적인 유산인 '체르케스인 이 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체르케스인들의 역사 찾기 와 역사 바로 세우기는 소련 해체 이후 체첸 전쟁과 북카프카스 지 역의 오랜 불안정으로 인해 주목을 받지 못했다. 러시아의 주류 학 자들. 러시아 중앙 언론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과거 체르케시야 지역(현재의 카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 카라차예보-체르케시야 공 화국. 크라스노다르 크라이) 출신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카프카스 전쟁을 주제로 큰 규모의 학술회의가 5년 단위로 지방에서 개최되 어 왔다. 그러다가 '체르케스 문제'는 과거 체르케시야의 중심이었 던 소치(Sochi)가 2007년 동계올림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체르케 스인 디아스포라와 서방 언론들에 의해 소치 역사, 즉 체르케스인 들의 역사가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그 중심에 19세기 말 체르케스 인들의 오스만제국으로 대규모 이주 문제가 있다. 이러한 외부적 자극에 의해 러시아 국내에서도 '19세기 카프카스 전쟁(체르케스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마침내 카프카스 전쟁 종전 150 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2014년 1월 모스크바에서도 개최되었다.69)

<sup>69) &</sup>quot;Кавказская война в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к 150-лет ию окончанию войны)" 补丞.

혹자는 소치가 올림픽 개최지가 된 이후 '카프카스 전쟁(체르케스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열기를 "카프카스 전쟁에 대한 학술회의 전 쟁"에 비유하였다.<sup>70)</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 카프카스 전쟁(체르케스 문제)'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중앙(주로 루스끼 학자들)과 지방 학자들(주로 카프카스 지역 출신들)71) 사이에 명확한 입장의 차이가 발견된다. 전쟁 과정에서의 불가피성, 가혹한 정복 정책과 이에 따른 체르케 스인들의 큰 희생을 인정하면서도 차르 정부에게는 절대로 체르케 스인들을 제거할 목적이 없었으며. 카프카스에서 차르 정부 정책의 중요한 과제는 흑해 연안을 지키고 제국의 새로운 국경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가장 민감한 사안인 체르케스인 이주의 원인과 성격에 대해서는 북서카프카스 지역을 둘러싼 러시아-터키 -영국 등의 이해관계의 산물임을 강조하면서 간혹 '강제된'이란 표 현을 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하쥐르스트보'였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러시아제국시기의 해석과 다르지 않다. 반면에 본 논문에 인용된 1차 사료들과 카프카스 지역 학자들의 연구에서 확 인 되듯이 크림전쟁에서 패배 이후 차르 정부의 북서카프카스 지역 에 대한 식민정책은 다른 북카프카스(체첸과 다게스탄)와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체르케스인 이주정책이 카프카 스 전쟁의 전세가 이미 러시아 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체르케스인들처럼 정복 지역의 90%

<sup>70) 2010</sup>년-2014년 동안 체르케스 문제를 다룬 학술 및 전문가 회의가 러시아에서 26회, 터키에서 37회 개최되었다. В.В. Цибенко, "«Вой на конференций »: че ркесская проблематика в научном сообществе России и Турции." Север о-Западный Кавказ: от пропилого к настоящему: Сборник материал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Ростов-на-Дону: Фонд науки и образования, 2014), с.29.

<sup>71)</sup> 서방 연구자들 중에 W. Richmond는 "체르케스 제노사이드"로 평가한다. Walter Richmond. *The Circassian Genocide*(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2013), pp.54~97참조.

거주민을 카프카스 밖으로 몰아낸 경우는 없었다. 러시아 역사 전 체에서도 강제이주는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국경 밖으로 몰아낸 경 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차르 정부는 체르케스인들을 북서카프카스 지역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간주하고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보다 는 영원히 없애는 쪽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가 체르케스인들의 오스만제국 이주였다고 볼 수 있다. 이주정책이나 이주과정에 '무 하쥐르스트보'. '강제된-무하쥐르스트보'. '강제 퇴거'. '추방' 등의 요소가 혼재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족단위국외추방' 혹은 '민 족청소'의 성격이 더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특정 사건이나 역사를 둘러싼 '역사 전쟁' 혹은 '역사의 정치화'문제는 한 국가 안에서, 국가 간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 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록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 은 같은 '체르케스 문제'가 '동방정책' 혹은 '동방문제'라는 이름으로 19세기에도 있었고 21세기에 와서는 소치 동계올림픽 계기로 다시 제기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체르케스 문제가 '역사의 정치화'와 연 관되는 이유 중에는 1차 사료에 근거한 체르케스 문제의 학문적 연 구보다는 시류의 영향을 받거나 지나칠 정도로 기존의 학문적 전통 을 고수하는 연구 풍토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한 특징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러시아 역사교과서의 카프카스 전쟁 서 술이다. 72) 이러한 면은 19세기 카프카스 전쟁관련 학술회의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특징으로 사료에 기초한 객관적 연구보다는 러시아 혁명 이전의 역사서술 전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존의 주장들이나

<sup>72)</sup> 러시아 역사 교과서에 "카프카스 전쟁이 러시아 경제 발전을 지역시켰다"고 묘 사하였다. 관점에 따라 카프카스 전쟁 기간은 차이가 있지만 100년 이상이 소요 되고, 양측이 엄청난 희생과 비용을 치른 '카프카스 전쟁사'는 『19세기 러시아 역사 교과서』(쉬꼴라 8학년용) 전체 303쪽 중에 1쪽이 할애되어 있다. 물론 '체 르케스인 이주'에 대한 언급은 없다. А.А. Данилов, Л.Г. Косулина, История России, XIX век 8 класс: учебник для общеобразват. органицзаций (Mo сква, 2014), с.83.

해석을 반복하는 방어적 성격의 글들이 자주 발표된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검증된 사료에 기반한 연구가 이루어질 때 19세기 북 카프카스 역사의 핵심인 카프카스 전쟁 연구에 대한 학문적 진보는 물론 한 민족의 '역사 바로 세우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투고일: 2016.4.3, 심사수정일: 2016.5.19, 게재확정일: 2016.5.23.]

주제어 : 카프카스 전쟁, 체르케스 문제, 북서카프카스, A.I. 바랴틴스키, A.I. 에브도키모프, 무하쥐르스트보(무하지룬), 추방, 민족청소



<ABSTRACT>

# The Caucasus war and the emigration problem of the Circassian nation in the 19th century

Shin, Dong-Hyug

The "Circassian question" is an important element defin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Caucasus war in the 19th century and contains the tragic history of an ethnic group. This article examines the "Circassian question" as a result of the Caucasus war of the 19th century, that is, studies the cause and process of large—scale Circassian migration into the Ottoman Empire from the Northwest Caucasus to 1864 after the Crimean War.

The interpretation and assessment about the 19th century the Caucasian war(the Circassian question) shows a clear different position between the central (mainly russkie scholars) and local scholars(mainly from the Caucasus regions). Russkie scholars recognize an inevitability, a harsh conquest policy in war process and Circassian's big victim as it's result. Also they assert that Tsar's government had no goal of eliminating Circassians, there were important assignments of Tsar's government policy that to keep Black Sea coast and to strengthen the new frontier of the empire in the Caucasus. Russkie scholars, emphasizing that as the most sensitive issue the cause and characteristic of Circassian migration are an outcome of Russia-Turkey-Britain interests surrounding the Northwest Caucasus, using sometimes 'forced-muhajirun' expressions they insist that Circassian's migration was 'muhajirun'. This stance doesn't differ much from interpretation of Russian Empire period.

On the other hand, the first source cited in the text and like

the Caucasus region researchers did prove in their studies, after defeat in the Crimean War Tsar's colonial policy in the Northwest Caucasus was not different \( \sigma \) from that of other Caucasus (Chechnya and Dagestan). There is a need to give an eye to that Circassian migration policy was implemented, in the situation that Russia already seized the chance to victory in Caucasus war. And there was not the case of driving out 90% inhabitant of the conquest of areas outside Caucasus like Circassians anywhere. Deportation has occurred frequently in history of Russia, but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of driving an ethnic group out of country. But Tsar's government regarded Circassians as the potential risks of the northwest Caucasus region, it decided to get rid of them permanently rather than to manage the risk element. And the result was the large-scale Circassian migration into the Ottoman Empire. Therefore in spite that the Circassian migration has elements such as 'muhajirun', 'forced-muhajirun' and 'deportation' in fact, there are more distinctive things like 'the deportation of an ethnic unit' or 'an ethnic cleansing.'

Key words: Caucasus war, Circassian question, Northwest Caucasus, A.I. Bariatinskii, A.I. Evdokimov, Muhajirun, Deportation, Ethnic cleansing

# 연구소 동정

#### 1. 연구소 대외교류 및 활동

- 미국 군사(軍史)연구기관 방문
  - 기간 / 장소 : '16.4.4(월)~4.9(토) / 미국
    - ·미 국립문서기록청(NARA, 뉴욕문서기록청) / 유엔 아카이브
    - · 미 육군군사연구소(CMH) / 국방대학교(NDU)
    - •기타 주요전적지 탐방
  - 방문인원 : 연구소장, 백기인 책임연구원, 박동찬 선임연구원
- 2016년 국방기관업무 워크숍 참석
  - 일시/장소: '16.4.29(금)/육군회관
  - 주관 / 참석 : 국방기관업무 평가관 / 중점과제 담당자 3명
  - 내용: 2016년 연구소 성과계획서 설명 및 토의
- ㅇ '북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십자성작전의 재조명' 세미나
  - 일정/장소: '16.5. 19(목)/육군회관
  - 참석인원 : 50명 (국방부, 각군, 연구소, 민간단체 등)
  - 진행

14:00 ~ 14:20	개회식(국민의례, 베트남전쟁 및 참전방법 소개)
14:20 ~ 16:00	주제발표 및 토론
	<ul><li>- 남베트남 패망시기 한국군의 인도주의적 구호활동</li><li>- 남베트남 패망과 비전투 소개작전</li><li>- 국제법적 측면에서 본 십자성작전</li></ul>
16:00 ~ 17:00	종합토론

○ 2016년 전반기 전적지 답사

- 일정 / 장소 : '16.5. 25(수) / 연희고지(104고지), 행주산성

- 참석인원 : 연구소 전 직원

- 진행

09:30 ~ 10:30	답사	104고지	브리핑, 현지답사
10:30 ~ 11:10	이동	104고지 → 행주산성	차량
11:10 ~ 13:00	답사	행주산성	브리핑, 현지답사

○ 전쟁사와 국방정책 2016-2 「한국 군사사상의 기원」 발간 : '16.6월

2. 인사이동: 없음

#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 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 됩니다.

#### ◇ 연락처

• 주 소:()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 〈자료이용안내〉

####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 이용시간

• 평 일: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www.imhc.mil.kr

• 주요내용: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호국전몰용사공후록 DB 검색 등

# 『軍史』誌 投稿案內

####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전략・군사제도・전쟁/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유관한 정치사·외교사·軍事史 분야에 관 한 내용
- 다. 가·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서평, 연구동향, 자료소개, 연구논문 번역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 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 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 예 : 홍길동,「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 예: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誌를 참조하기 바람.

#### 3. 투고 요령

-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 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군사편찬연구소 우측상단에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 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 4. 원고 심사 및 고료

-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 (기념품)을 지급함.
-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 6. 문의 / 연락처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67(정정모)

• FAX: 02-709-3111

• E-mail: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 DB검색

등), 신간안내, 회원모집

#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1

부분개정 2008.12.1

부분개정 2009.11.1

# 제1장총 칙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 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 제 4조(용어의 정의)

-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 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

- 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 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 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 는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및 기능)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 6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 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 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 8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 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제 9 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 조사는 운영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 도록 하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부·실장 또는 해당 분야 전공 연구원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 켜서는 아니된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 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 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 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 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화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14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 제 3 장 검증 이후의 조치

#### 제16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 ① 최종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가 명백한 경우
-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7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 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 편집위원장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 ☞ 편집위원(가나다순)

기광서(조선대학교) 김종수(군산대학교) 남정옥(군사편찬연구소) 손규석(군사편찬연구소) 오영섭(연세대학교) 이명환(前공군사관학교) 이상호(군사편찬연구소) 정용욱(서울대학교) 홍규덕(숙명여자대학교) 김용달(독립기념관) 김태국(연변대학교) 서상문(군사편찬연구소) 신명호(부경대학교) 이근욱(서강대학교) 이민웅(해군사관학교) 이재범(경기대학교) 진석용(대전대학교)

## ☞ 편집간사

정정모(군사편찬연구소)

## 重 史 2016/6(第99號)

2016년6월8일印刷2016년6월15일發行

發行處\_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748-1667 FAX: 709-3111

**印刷處\_ 국군인<sup>소</sup>바**상 \_M16050510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 Military History

Vol. 99, 2016, 6

Kim, Kang-Hun	Revival Movement of Koguryo in Liaodong Region and Kommojam
Hong, Young-Ho	A study on the frontline guard post[Soo, 戌] in Eastern frontier province[Donggye, 東界], Goryeo Dynasty
Shin, An-Sik	Th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late of Goryeo Dynasty(918~1392) - focusing on Ssanseongchonggwanbu and Dongnyeongbu -
Yi, Hong-Du	The Import of Manchurian Horses and the Installation of Manchurian Horse Ranches in the Joseon Dynasty
Kim, Kyeong-Lok	Hongwu emperor's military recognition and military policy in the early Ming Dynasty
Kim, Ki-Doong	The meaning of construction efforts of Korean Air power during the period of independence(1945 $\sim$ 1948)
Lee, Dong-Won	General Kim Hong-il and Han river defensive operation in early Korean war
Lee, Sin-Jae	The humanitarian relief activities of the Korean Forces during the period of the South Vietnam's collapse
Park, Hwee-Rhak	An Analysis on the Current Preparedness and Necessary Task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ddress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ased on Total War Theories
lm, lk-Soon	The meaning of 'Military Genius' in Clausewitz's On War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nation in the 19th century



Shin, Dong-Hyug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The Caucasus war and the emigration problem of the Circassian